

/중/국/

CHINA

1. 최근 중국의 수출입 현황
 2. 관세·통관제도
 3. 수출입 검사제도
 4. 식품 위생제도
 5. 수출입 규제제도
 6. 기타 사항

● ● ● 목 차 ● ● ●

1. 최근중국의수출입현황	265·
가. 중국농산물수출입현황(2005년)	265·
나. 중국수산물수출입현황(2005년)	330·
다. 한·중농산물교역동향(2005년).....	340·
2. 관세·통관제도.....	348·
가. 화물수출입관리제도	348·
나. 세관관리제도	351·
다. 세관관세제도	356·
라. 원산지규칙	409·
마. 수출입통관절차	414·
바. 관세평가제도	424·
사. 관세의추가징수, 추가납세, 환급 감면.....	428·
아. 관세법위반시 제재조치.....	431·
자. 납세분쟁처리방법	439·
차. 지적재산권의세관보호제도.....	441·
3. 수출입검사제도.....	445·
가. 검험·검역관리체제	445·
나. 검험·검역범위, 형식및 방법	453·
다. 검험·검역절차및 제도	457·

● ● ● Contents ● ● ●

4. 식품위생제도	494
가. 수출입식품안전관리제도	494
나. 식품표준체계	519
다. 유전자변형식품관리제	532
5. 수출입규제제도	537
가. 수출입금지 · 제한화물	537
나. 수출입규제제도	541
다. 반덤핑정책	569
라. 중국의WTO 가입이한중농산물무역에대한영향	573
6. 기타사항	577
가. 농산물(식품) 관련법률 · 법규	577
나. 관련주요정부기관내역	579
다. 참고자료(문헌)	584

1. 최근 중국의 수출입 현황

가. 중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2005년)

- 2005년도는 중국이 WTO 가입 후의 4년째 되는 해로 중국 농산물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포함)의 수출입이 계속 증가하여 수출입액은 562.9억 달러로 증가
- 2005년도는 최근 6년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증가폭이 가장 큰 한해, 농산물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70.0% 하락, 곡물은 2004년의 순수입에서 순수출로 전환
-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외부환경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수출 성장은 비교적 큰 잠재력이 있음.

1) 농산물 수출입 현황

- 2005년 중국 농산물 수출입액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 수출 증가폭은 수입 증가폭보다 훨씬 초과하였지만 농산물 무역적자는 2004년보다 대폭 하락.
- 2005년 중국 농산물 수출입액은 558.3억 달러로 전년대비 0.1% 증가. 그 중, 수출액은 271.8억 달러로 전년대비 17.7% 증가, 수입액은 286.5억 달러로 전년대비 2.4% 증가, 농산물 무역적자는 2004년의 48.8억 달러에서 70.0% 하락한 14.6억 달러에 도달.
- 2005년 중국 농산물 수출입액은 중국 전체 수출입액(14,221.2억 달러)의 3.9%를 차지. 그 중, 농산물 수출액은 중국 전체 수출액(7,620.0억 달러)의 3.6%를 차지, 농산물 수입액은 중국 전체 수입액(6,601.2억 달러)의 4.3%를 차지.

2005년 중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수출입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적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558.3	0.1	271.8	17.7	286.5	2.4	14.6	-70.0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2005년 중국 품목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만 달러)

No.	품 목	2004년 수출액	2005년 수출액	증감(%)
1	산동물	33,025.5	32,877.1	-0.4
2	가축육 및 설육	56,209.6	54,839.4	-2.4
3	가금육 및 설육	14,484.8	19,442.4	34.2
4	수산물, 해산물	405,997.1	435,020.2	7.1
5	유제품, 조란, 벌꿀, 기타 식용 동물산품	23,427.7	26,741.7	14.1
6	기타 동물산품	97,543.6	101,160.3	3.7
7	산식물 및 화초	6,433.0	7,710.7	19.9
8	식용 채소	253,761.4	305,224.2	20.3
9	식용 과일 및 견과류	91,653.8	106,717.6	16.4
10	커피, 차, 마테차 및 향신료	86,472.4	92,748.2	7.3
11	곡물	74,046.3	141,245.5	90.8
12	제분공업 생산품	17,026.2	19,999.1	17.5
13	유료작물, 공업용또는약용식물, 벚짚, 줄기및사료	119,596.2	138,326.7	15.7
14	식물 액, 즙	7,275.1	11,331.8	55.8
15	편조용 식물재료	4,347.1	4,925.2	13.3
16	동· 식물 유지 및 그 분해산품	15,832.0	28,400.2	79.4
17	육류제품	89,015.9	117,954.3	32.5
18	수산물제품	259,716.2	318,484.2	22.6
19	당류와 설탕과자	25,223.9	41,839.3	65.9
20	코코아 및 그 제품	6,959.4	10,987.8	57.9
21	곡물, 식량가루, 전분제품, 케이크	65,298.6	75,972.1	16.3
22	채소, 과일, 견과 등 제품	257,834.3	309,492.6	20.0
23	각종 조제 식품	61,275.0	71,542.1	16.8
24	음료, 주류 및 식초	74,309.5	71,861.9	-3.3
25	식품공업 쓰레기, 폐기물, 조제한 동물 사료	50,243.7	47,806.0	-4.9
26	연초 및 그 제품	51,359.9	53,724.6	4.6
27	기타 농산물	60,631.3	72,021.7	18.8
	합계	2,308,999.5	2,718,396.9	17.7
	축산물*	198,317.9	210,284.2	6.0
	가금산품*	107,069.4	135,563.9	26.6

비고 : * 항목은 전문 통계항목으로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2005년 중국 품목별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만 달러)

No.	품 목	2004년 수입액	2005년 수입액	증감(%)
1	산동물	21,991.0	10,890.5	-50.5
2	가축육 및 설육	32,207.4	25,230.4	-21.7
3	가금육 및 설육	15,371.4	33,441.2	117.6
4	수산물, 해산물	234,047.2	287,901.1	23.0
5	유제품, 조란, 벌꿀, 기타 식용 동물산품	44,807.7	46,236.2	3.2
6	기타 동물산품	24,920.4	22,142.8	-11.1
7	산식물 및 화초	5,138.1	6,867.6	33.7
8	식용 채소	40,484.2	52,369.1	29.4
9	식용 과일 및 견과류	61,873.8	65,747.7	6.3
10	커피, 차, 마태차 및 향신료	3,240.6	4,165.7	28.5
11	곡물	221,851.2	139,378.1	-37.2
12	제분공업 생산품	18,908.7	18,573.1	-1.8
13	유료작물, 공업용또는약용식물, 벚짚, 줄기및사료	737,185.6	816,082.6	10.7
14	식물 액, 즙	5,859.9	6,290.8	7.4
15	편조용 식물재료	8,783.2	6,777.9	-22.8
16	동·식물 유지 및 그 분해산품	420,882.6	331,073.7	-21.3
17	육류제품	255.7	298.6	16.8
18	수산물제품	2,367.1	2,575.5	8.8
19	당류와 설탕과자	33,618.9	45,140.4	34.3
20	코코아 및 그 제품	13,566.0	17,749.5	30.8
21	곡물, 식량가루, 전분제품, 케이크	19,478.8	23,996.3	23.2
22	채소, 과일, 견과 등 제품	14,199.5	15,657.2	10.3
23	각종 조제 식품	47,520.8	30,538.0	-35.7
24	음료, 주류 및 식초	26,107.9	40,955.8	56.9
25	식품공업 쓰레기, 폐기물, 조제한 동물 사료	94,648.0	130,577.8	38.0
26	연초 및 그 제품	29,200.9	38,380.9	31.4
27	기타 농산물	618,775.2	645,723.5	4.4
	합계	2,797,291.8	2,864,762.0	2.4
	축산물*	356,021.7	359,495.4	1.0
	가금산품*	22,907.5	45,513.4	98.7

비고 : * 항목은 전문 통계항목으로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2) 농산물 수출입 특징

☐ 토지 밀집형 농산물 수출입 현황

○ 곡물 수출은 대폭 증가, 수입은 대폭 하락하여 순수출로 전환.

- 곡물 수출은 대폭 증가, 수입은 대폭 하락하여 2004년의 순수입에서 순수출로 전환. 주요 원인은 최근 2년간 중국 식량 생산은 증산을 회복하여 수요와 공급관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임. 품목별로 보면, 밀의 수입은 뚜렷하게 하락, 옥수수의 수출은 대폭 증가.
- 2005년 중국 곡물 수출량은 1,017.5만 톤으로 전년대비 1.1배 증가, 수입량은 627.2만 톤으로 전년대비 35.7% 하락하여 2004년의 495.8만 톤 순수입에서 2005년의 393.3만 톤의 순수출로 전환.
 - 쌀산품(쌀, 쌀가루, 벼 및 벼 종자를 포함) : 2005년 수출량은 68.6만 톤으로 전년대비 24.6% 하락, 수입량은 52.2만 톤으로 전년대비 31.9% 증가하여 순수출량은 16.4만 톤으로 전년대비 15.0% 증가.
 - 옥수수산품(옥수수, 옥수수가루, 기타 가공 옥수수와 종자용 옥수수를 포함) : 2005년 수출량은 864.2만 톤으로 전년대비 270% 증가, 수입량은 4,017.3톤으로 매우 적어 순수출량은 863.8만 톤으로 전년대비 2.7배 증가. 주요 원인은 국가 거시적 경제조절과 중국 옥수수 공급이 충족하였기 때문임.
 - 밀산품(밀, 밀가루 및 종자용 밀을 포함) : 2005년 수출량은 60.5만 톤으로 전년대비 44.5% 하락, 수입량은 353.8만 톤으로 전년대비 51.3% 하락하여 순수입량은 293.4만 톤으로 전년대비 2.4% 하락.
 - 보리산품 : 2005년 수입량은 217.9만 톤으로 전년대비 27.7% 증가.

2005년 중국 곡물 수출입 현황

(단위 : 만 톤)

구 분	수출량	증감(%)	수입량	증감(%)	순수출량	증감(%)
곡물	1,017.5	110	627.2	-35.7	390.3	04년 순수입량: 495.8만톤
- 쌀	68.6	-24.6	52.2	31.9	16.4	15.0
- 옥수수	864.2	270	0.4	-	863.8	270
- 밀	60.5	-44.5	353.8	-51.3	-293.4	-52.4
- 보리	-	-	217.9	27.7	-	-

자료출처 : 중국농업정보망(www.agri.gov.cn)

- 식용 유료작물의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였고 무역적자는 확대. 식용 식물유의 수출은 증가, 수입은 다소 하락하여 무역적자가 감소.
 - 식용 유료작물 : 2005년 수출량은 136.0만 톤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 수입량은 2,704.2만 톤으로 전년대비 30.3% 증가. 그 중, 대두 수출량은 41.3만 톤으로 전년대비 18.6% 증가, 수입량은 2,659.1만 톤으로 전년대비 31.4% 증가.
 - 식용 식물유 : 2005년 수출량은 22.8만 톤으로 전년대비 2.5배 증가, 수입량은 621.3만 톤으로 전년대비 8.2% 하락. 그 중, 두유 수출량은 6.3만 톤으로 전년대비 2.2배 증가, 수입량은 169.4만 톤으로 전년대비 32.7% 하락. 유채유 수출량은 3.1만 톤으로 전년대비 4.6배 증가, 수입량은 17.8만 톤으로 전년대비 49.7% 증가. 종려유 수입량은 433.0만 톤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 식용 식물유의 수출 증가 주요 원인은 옥수수유와 두유의 증가가 비교적 빨랐기 때문임.

2005년 중국 식용 유료작물, 식용 식물유의 수출입 현황

(단위 : 만 톤)

구 분	수출량	증감(%)	수입량	증감(%)
식용 유료작물	136.0	16.8	2,704.2	30.3
- 대두	41.3	18.6	2,659.1	31.4
식용 식물유	22.8	250	621.3	-8.2
- 두유	6.3	220	169.4	-32.7
유채유	3.1	460	17.8	49.7
종려유	-	-	433.0	12.3

자료출처 : 중국농업정보망(www.agri.gov.cn)

- 면화 수입량은 증가, 수출량은 하락하여 무역적자가 하락. 설탕 수출입은 모두 증가, 무역적자는 다소 확대.
 - 면화 : 2005년 수출량은 0.8만 톤으로 전년대비 33.1% 하락, 수입량은 265.3만 톤으로 전년대비 33.7% 증가.
 - 설탕 : 2005년 수출량은 35.8만 톤으로 전년대비 3.2배 증가, 수입량은 139.0만 톤으로 전년대비 14.4% 증가. 수출량 증가의 주요 원

인은 원료 수입가공방식과 위탁가공무역방식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05년 중국 면화, 설탕 수출입 현황

(단위 : 만 톤)

구 분	수출량	증감(%)	수입량	증감(%)
면 화	0.8	-33.1	265.3	33.7
설탕	35.8	320	139.0	14.4

자료출처: 중국농업정보망(www.agri.gov.cn)

□ 노동 밀집형 농산물 수출입 현황

○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등 노동 밀집형 농산물의 수출은 계속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유지. 주요 원인은 중국 농산물의 품질이 끊임없이 향상, 가격 경쟁력이 비교적 우위임.

- 채소, 과일 수출은 증가하여 무역흑자가 모두 확대.

· 채소: 2005년 수출량은 680.0만 톤으로 전년대비 13.0% 증가, 수출액은 44.8억 달러로 전년대비 18.1% 증가, 수입량은 9.7만 톤으로 전년대비 9.2% 하락, 수입액은 0.82억 달러로 전년대비 10.6% 하락.

· 과일: 2005년 수출량은 364.6만 톤으로 전년대비 16.6% 증가, 수출액은 20.3억 달러로 전년대비 23.5% 증가, 수입량은 114.5만 톤으로 전년대비 7.9% 증가, 수출액은 6.6억 달러로 전년대비 12.7% 증가.

2005년 중국 채소, 과일 수출입 현황

(단위 : 만 톤, 억 달러)

구 분	수 출				수 입			
	수 량	증감(%)	금 액	증감(%)	수 량	증감(%)	금 액	증감(%)
채 소	680.0	13.0	44.8	18.1	9.7	-9.2	0.82	-10.6
과 일	364.6	16.6	20.3	23.5	114.5	7.9	6.60	12.7

자료출처: 중국농업정보망(www.mofcom.gov.cn)

- 축산물, 수산물의 수출입은 모두 증가, 축산물의 무역적자는 대폭 하락, 수산물의 무역흑자는 다소 증가.
- 축산물: 2005년 수출액은 36.0억 달러로 전년대비 13.0% 증가, 수입액은 42.3억 달러로 전년대비 4.7% 증가, 무역적자는 6.3억 달러로 전년대비 26.2% 하락. 그 중, 산돼지 수출액은 9.5억 달러로 전년대비 2.0% 하락, 수입액은 1.8억 달러로 전년대비 25.3% 하락. 가금제품 수출액은 9.1억 달러로 전년대비 40.8% 증가, 수입액은 3.5억 달러로 전년대비 1.1배 증가.
- 수산물: 2005년 수출액은 78.9억 달러로 전년대비 13.2% 증가, 수입액은 41.2억 달러로 전년대비 27.2% 증가, 무역흑자는 37.7억 달러로 전년대비 1.1% 증가.

2005년 중국 축산물, 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 분	수출액	증감(%)	수입액	증감(%)	무역흑자	증감(%)
축산물	36.0	13.0	42.3	4.7	-6.3	-26.2
- 산돼지	9.5	-2.0	1.8	-25.3	7.7	-
- 가금제품	9.1	40.8	3.5	110	5.6	-
수산물	78.9	13.2	41.2	27.2	37.7	1.1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3) 농산물 수출입 현황

☐ 지역별 동향

- 중국 농산물 수출입 무역은 여전히 동부지역을 위주로서 수출 비중은 다소 하락하였지만 수입 비중은 약간 증가. 중부지역의 수출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수입 비중은 약간 하락. 서부지역의 수출입 비중은 모두 약간 증가.

- 2005년 동부지역의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14.6% 증가한 216.5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78.5%를 차지하여 수출액 비중은 전년대비 2.3퍼센트 하락. 수입액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269.3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93.8%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0.5퍼센트 증가.
- 2005년 중부지역의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38.4% 증가한 38.2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13.9%를 차지하여 수출액 비중은 전년대비 2.0퍼센트 증가. 수입액은 전년대비 10.1% 하락한 12.2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4.2%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0.6퍼센트 하락.
- 2005년 서부지역의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21.7% 증가한 21.1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7.6%를 차지하여 수출액 비중은 전년대비 0.2퍼센트 증가. 수입액은 전년대비 9.8% 증가한 5.7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2.0%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0.1퍼센트 증가.
 - 2005년 성(省)별 농산물 수출액 순위를 보면, 산둥(山東)성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23.4% 증가한 69.0억 달러로 1위, 광둥(廣東)성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35.8억 달러로 2위, 절강(浙江)성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24.5억 달러로 3위를 차지.
 - 2005년 성(省)별 농산물 수입액 순위를 보면, 산둥(山東)성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13.9% 증가한 50.2억 달러로 1위, 광둥(廣東)성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15.1% 하락한 38.8억 달러로 2위, 강소(江蘇)성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11.1% 증가한 31.0억 달러로 3위를 차지

2005년 중국 지역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 만 달러

지 역	2004년 수출액	2005년 수출액	증감(%)
상해(上海)	77,922.2	88,974.2	14.2
운남(雲南)	42,620.4	48,323.5	13.4
내몽고(內蒙古)	18,590.8	28,929.5	55.6
북경(北京)	87,060.9	117,205.4	34.6
길림(吉林)	48,361.0	85,775.2	77.4
사천(四川)	43,628.9	44,255.8	1.4
천진(天津)	44,563.6	51,953.2	16.6
닝하(寧夏)	1,267.9	1,766.1	39.3
안휘(安徽)	27,223.3	33,345.5	22.5
산둥(山東)	558,775.4	689,807.2	23.4
산서(山西)	4,546.2	3,775.6	-17.0
광둥(廣東)	344,271.1	357,568.1	3.9
광서(廣西)	28,588.8	32,398.5	13.3
신강(新疆)	27,681.7	39,987.7	44.5
강소(江蘇)	87,398.6	104,183.2	19.2
강서(江西)	14,650.1	13,082.4	-10.7
하북(河北)	68,762.0	77,977.5	13.4
하남(河南)	36,174.7	40,993.5	13.3
절강(浙江)	223,789.4	245,132.8	9.5
해남(海南)	11,930.5	14,761.7	23.7
호북(湖北)	27,289.2	30,759.3	12.7
호남(湖南)	23,206.8	27,813.5	19.9
감숙(甘肅)	11,119.4	15,849.6	42.5
복건(福建)	178,692.9	196,152.4	9.8
서장(西藏)	3,024.5	3,360.3	11.1
귀주(貴州)	6,937.0	6,854.4	-1.2
요녕(遼寧)	186,596.1	216,465.7	16.0
중경(重慶)	9,679.9	11,673.3	20.6
섬서(陝西)	19,689.5	26,865.1	36.4
청해(青海)	491.5	618.7	25.9
흑룡강(黑龍江)	44,464.8	61,788.3	39.0
합 계	2,308,999.1	2,718,397.2	17.7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2005년 중국 지역별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 만 달러)

지 역	2004년 수출액	2005년 수출액	증감(%)
상해(上海)	227,603.2	285,903.0	25.6
운남(雲南)	5,042.5	8,088.2	60.4
내몽고(內蒙古)	7,469.3	6,065.6	-18.8
북경(北京)	595,258.8	514,435.4	-13.6
길림(吉林)	18,178.9	24,215.9	33.2
사천(四川)	13,416.0	9,880.3	-26.4
천진(天津)	92,400.7	111,317.2	20.5
닝하(寧夏)	245.4	510.1	107.9
안휘(安徽)	11,672.6	16,344.9	40.0
산둥(山東)	440,841.6	502,214.3	13.9
산서(山西)	796.6	170.1	-78.7
광둥(廣東)	457,276.4	388,170.3	-15.1
광서(廣西)	57,815.6	67,122.9	16.1
신강(新疆)	11,937.0	13,251.8	11.0
강소(江蘇)	279,680.7	310,681.5	11.1
강서(江西)	1,345.6	1,638.6	21.8
하북(河北)	62,209.9	73,080.8	17.5
하남(河南)	50,113.3	43,050.4	-14.1
절강(浙江)	136,490.4	150,600.6	10.3
해남(海南)	4,848.1	3,185.6	-34.3
호북(湖北)	11,886.8	9,592.0	-19.3
호남(湖南)	24,810.6	17,035.9	-31.3
감숙(甘肅)	125.1	410.3	228.0
복건(福建)	104,610.1	121,331.2	16.0
서장(西藏)	299.7	354.6	18.3
귀주(貴州)	379.2	75.0	-80.2
요녕(遼寧)	153,032.2	150,884.2	-1.4
중경(重慶)	3,838.3	13,904.0	262.2
섬서(陝西)	4,788.4	2,824.2	-41.0
청해(青海)	5.1	0.3	-94.4
흑룡강(黑龍江)	18,873.5	18,422.8	-2.4
합 계	2,797,291.6	2,864,762.0	2.4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대륙별 동향

○ 아시아지역에 대한 농수산물 수출입은 모두 증가.

- 아시아지역은 중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으로서 2005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13.7% 증가한 179.5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66.0%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2.4퍼센트 하락. 그 중,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수출액은 24.2억 달러로 전년대비 14.4% 증가.

※ 그 중, 수출 5위 대상국(지역) 순위 : 일본 79.3억 달러(7.2%↑), 한국 28.5억 달러(34.3%↑), 홍콩 26.4억 달러(1.5%↑), 말레이시아 6.9억 달러(30.7%↑), 인도네시아 4.2억 달러(6.6%↑)

- 아시아지역은 중국의 세 번째 농산물 수입시장으로서 2005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56.5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19.7%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19.7%)과 같았음. 그 중, 동남아국가연합(ASEAN)으로부터의 수입액은 36.8억 달러로 전년대비 0.9% 하락.

※ 그 중, 수입 5위 대상국 순위 : 말레이시아 13.4억 달러(6.8%↓), 태국 9.8억 달러(0.4%↑), 인도네시아 9.2억 달러(5.0%↑), 인도 4.0억 달러(46.4%↑), 우즈베키스탄 3.9억 달러(14.9%↓)

○ 유럽에 대한 수출입은 모두 증가.

- 유럽지역은 중국의 두 번째 농산물 수출시장으로서 2005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33.0% 증가한 45.0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16.5%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1.9퍼센트 증가. 그 중,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액은 34.6억 달러로 전년대비 33.5% 증가.

※ 그 중, 수출 5위 대상국 순위 : 독일 9.3억 달러(37.5%↑), 러시아 7.3억 달러(22.7%↑), 네덜란드 5.4억 달러(30.9%↑), 영국 3.9억 달러(25.6%↑), 스페인 3.8억 달러(69.6%↑)

- 유럽지역은 중국의 네 번째 농산물 수입시장으로서 2005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31.4% 증가한 33.8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11.8%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2.6퍼센트 증가. 그 중,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0억 달러로 전년대비 30.3% 증가.
- ※ 그 중, 수입 5위 대상국 순위 : 러시아 11.5억 달러(35.2%↑), 프랑스 6.8억 달러(71.8↑), 네덜란드 2.6억 달러(22.6%↑), 영국 2.2억 달러(38.5%↑), 덴마크 2.1억 달러(4.4%↓)

○ 북미, 남미에 대한 수출이 증가.

- 북미지역은 중국의 세 번째 농산물 수출시장으로서 2005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22.7% 증가한 32.2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11.8%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0.4퍼센트 증가.
- ※ 그 중, 수출 2위 대상국 순위 : 미국 28.4억 달러(22.5%↑), 캐나다 3.9억 달러(24.5↑)
- 남미지역은 중국의 다섯 번째 농산물 수출시장으로서 2005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29.5% 증가한 5.2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1.9%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0.2퍼센트 증가.
- ※ 그 중, 수출 3위 대상국 순위 : 멕시코 2.2억 달러(9.9%↑), 브라질 0.7억 달러(89.6↑), 쿠바 0.6억 달러(111.2%↑)

○ 북미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하락, 남미로부터의 수입은 증가.

- 북미지역은 중국의 첫 번째 농산물 수입시장으로 2005년 북미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13.7% 하락한 78.9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27.6%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5.1퍼센트 하락.
- ※ 그 중, 수입 2위 대상국 순위 : 미국 67.2억 달러(12.6%↓), 캐나다 11.5억 달러(20.4↓)
- 남미지역은 중국의 두 번째 농산물 수입시장으로 2005년 남미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14.3% 증가한 75.3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

입액의 26.3%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2.7퍼센트 하락.

※ 그 중, 수입 5위 대상국 순위 : 브라질 30.1억 달러(5.9%↑), 아르헨티나 30.0억 달러(10.7%↑), 페루 7.5(39.5↑), 칠레 3.2억 달러(54.5↑), 쿠바 1.2억 달러(9.1↑)

○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입은 모두 비교적 빠르게 증가.

- 아프리카지역은 중국의 네 번째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2005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6.6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2.4%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0.2% 하락.

※ 그 중, 수출 5위 대상국 순위 : 모로코 1.1억 달러(20.5%↑), 남아프리카 1.0억 달러(29.2%↑), 알제리아 0.8(18.5↑), 가나 0.6억 달러(140.1↑), 이집트 0.5억 달러(47.8↓)

- 아프리카지역은 중국의 여섯 번째 농산물 수입시장으로 2005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16.2% 증가한 10.7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3.7%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0.4% 증가.

※ 그 중, 수입 5위 대상국 순위 : 부르키나파소 1.6억 달러(31.6%↑), 짐바브웨 1.4억 달러(6.7%↑), 베닌 1.3(15.8↑), 코트디부아르 0.8억 달러(21.0↓), 말리 0.8억 달러(25.8↓)

○ 대양주의 수출입액은 전년대비 다소 하락.

- 대양주지역은 중국의 여섯 번째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2005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13.9% 증가한 3.4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1.2%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0.1% 하락.

※ 그 중, 수출 2위 대상국 순위: 호주 2.8억 달러(14.8%↑), 뉴질랜드 0.5억 달러(32.6%↑)

- 대양주지역은 중국의 다섯 번째 농산물 수입시장으로 2005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3.4% 하락한 31.2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10.9%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0.6% 하락.

※ 그 중, 수입 2위 대상국 순위: 호주 24.1억 달러(1.3%↓), 뉴질랜드 7.1억 달러(10.2%↓)

2005년 대륙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 만 달러)

대륙별(국가/지역)	2004년 수출액	2005년 수출액	증감(%)
아시아	1,578,805.8	1,794,557.5	13.7
- 일본(1위)	739,296.7	792,688.5	7.2
- 한국(2위)	212,213.3	284,918.0	34.3
- 홍콩(3위)	260,479.8	264,333.5	1.5
- 말레이시아(4위)	53,031.1	69,295.6	30.7
- 인도네시아(5위)	44,781.8	41,809.4	-6.6
유럽	338,103.5	449,679.6	33.0
- 독일(1위)	67,728.8	93,116.0	37.5
- 러시아(2위)	59,464.8	72,947.1	22.7
- 네덜란드(3위)	41,079.8	53,757.6	30.9
- 영국(4위)	31,095.8	39,055.9	25.6
- 스페인(5위)	22,171.2	37,600.1	69.6
북미	262,475.0	322,085.7	22.7
- 미국(1위)	231,782.1	283,867.8	22.5
- 캐나다(2위)	30,640.2	38,157.6	24.5
아프리카	59,582.1	66,051.3	10.9
- 모로코(1위)	9,297.5	11,204.9	20.5
- 남아프리카(2위)	7,950.1	10,270.3	29.2
- 알제리아(3위)	6,682.2	7,916.8	18.5
- 가나(4위)	2,665.3	6,399.9	140.1
- 이집트(5위)	10,952.7	5,718.6	-47.8
남미	40,291.9	52,161.7	29.5
- 멕시코(1위)	19,647.2	21,600.8	9.9
- 브라질(2위)	3,678.9	6,974.9	89.6
- 쿠바(3위)	2,609.2	5,509.7	111.2
- 푸에르토 리코(4위)	3,094.8	2,350.4	-24.1
- 컬럼비아(5위)	1,450.1	2,056.5	41.8
대양주	29,741.1	33,861.1	13.9
- 호주(1위)	24,140.3	27,718.6	14.8
- 뉴질랜드(2위)	3,511.0	4,654.9	32.6
합 계	2,308,994.4	2,718,396.9	17.7

ASEAN*	211,832.8	242,246.3	14.4
중동지역*	75,414.7	101,188.0	34.2
EU 15개 국가*	232,382.0	319,466.5	37.5
EU 25개 국가*	259,484.6	346,460.4	33.5
CIS*	77,839.6	103,964.9	33.6

비고 : * 항목은 전문 통계항목으로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2005년 대륙별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 만 달러)

대륙별(국가/지역)	2004년 수입액	2005년 수입액	증감(%)
북미	915,111.7	789,490.7	-13.7
- 미국(1위)	768,971.7	671,928.4	-12.6
- 캐나다(2위)	144,082.9	114,628.5	-20.4
남미	658,982.0	753,103.9	14.3
- 브라질(1위)	284,490.3	301,179.2	5.9
- 아르헨티나(2위)	270,279.8	299,304.6	10.7
- 페루(3위)	53,570.4	74,709.7	39.5
- 칠레(4위)	20,981.0	32,421.6	54.5
- 쿠바(5위)	11,162.3	12,174.9	9.1
아시아	550,457.6	564,619.4	2.6
- 말레이시아(1위)	143,683.5	133,912.6	-6.8
- 태국(2위)	97,479.5	97,890.2	0.4
- 인도네시아(3위)	87,672.1	92,067.4	5.0
- 인도(4위)	27,183.4	39,791.8	46.4
- 우즈베키스탄(5위)	33,927.1	38,977.1	14.9
유럽	257,491.4	338,262.5	31.4
- 러시아(1위)	85,157.4	115,118.5	35.2
- 프랑스(2위)	39,308.5	67,514.3	71.8
- 네덜란드(3위)	21,343.1	26,168.9	22.6
- 영국(4위)	15,962.7	22,111.3	38.5
- 덴마크(5위)	21,776.0	20,825.1	-4.4
대양주	322,959.9	312,058.9	-3.4
- 호주(1위)	243,679.9	240,621.1	-1.3
- 뉴질랜드(2위)	78,568.0	70,565.0	-10.2
아프리카	92,211.2	107,177.9	16.2
- 부르키나파소(1위)	12,411.1	16,329.0	31.6
- 짐바브웨(2위)	13,528.5	14,411.7	6.5

- 베닌(3위)	10,903.4	12,629.3	15.8
- 코트디부아르(4위)	9,966.6	7,974.9	-21.0
- 말리(5위)	10,666.5	7,915.6	-25.8
합계	2,797,213.8	2,864,713.3	2.4
ASEAN*	371,529.9	368,166.7	-0.9
중동지역*	17,488.0	17,175.0	-1.8
EU 15개 국가*	150,306.2	196,924.6	31.0
EU 25개 국가*	153,531.5	200,004.1	30.3
CIS*	128,599.9	163,815.8	27.4

비고 : * 항목은 전문 통계항목으로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무역방식별 현황

- 중국 농산물 무역은 주로 일반무역방식이며 수출액은 증가하였지만 수입액은 하락하였다. 원료 수입가공방식의 수출입은 모두 증가.

○ 수출 현황

- 일반무역방식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8.3% 증가한 205.7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75.7%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75.3%)과 비슷하였음.

-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9.4% 증가한 58.6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21.5%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21.3%)과 비슷하였음.

※ 그 중, 원료 수입가공방식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7.5% 증가한 45.0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16.5%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16.6%)과 비슷하였으며, 위탁가공방식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26.1% 증가한 13.7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5.0%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4.7%)보다 0.3퍼센트 증가.

- 변경지역 소액무역방식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23.2% 증가한 5.1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1.9%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 (1.8%)과 비슷하였음.

2005년 무역방식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 만 달러)

무역방식	2004년 수입액	2005년 수입액	증감(%)
일반무역	2,061,627.5	2,016,361.6	-2.2
가공무역	519,951.5	568,428.1	9.3
- 위탁가공 수입설비	2.6	1.8	-29.6
- 위탁가공무역	132,831.3	144,169.2	8.5
- 원료 수입가공무역	387,117.6	424,257.1	9.6
변경지역 소액무역	20,339.1	20,448.1	0.5
물물교환무역	12.3	17.9	45.4
기타 무역	37,875.1	23,984.2	-36.7
- 무상 원조와 증증	1,153.7	1,289.9	11.8
- 대외 청부프로젝트 화물	17.6	32.9	87.3
- 원료 수출가공무역	347.3	418.7	20.5
- 보세창고 수출입	26,111.5	9,719.5	-62.8
- 보세창고의 항구이전 화물	7,004.8	7,888.9	12.6
- 기타	3,232.1	4,603.6	42.4
-위탁판매, 대리판매무역	8.1	30.6	275.6
합 계	2,308,999.3	2,718,397.1	17.7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수입 현황

- 일반무역방식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2.2% 하락한 201.6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70.4%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3.3퍼센트 하락.
 - 가공무역방식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9.3% 증가한 56.8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19.8%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1.2퍼센트 증가.
- ※ 그 중, 원료 수입가공방식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9.6% 증가한

42.4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14.8%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1.0퍼센트 증가, 위탁가공방식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8.5% 증가한 14.4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5.0%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4.7%)보다 0.3퍼센트 증가.

- 변경지역 소액무역방식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2.0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0.7%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 (0.7%)과 같았음.

2005년 무역방식별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만 달러)

무역방식	2004년 수입액	2005년 수입액	증감(%)
일반무역	2,061,627.5	2,016,361.6	-2.2
가공무역	519,951.5	568,428.1	9.3
- 위탁가공 수입설비	2.6	1.8	-29.6
- 위탁가공무역	132,831.3	144,169.2	8.5
- 원료 수입가공무역	387,117.6	424,257.1	9.6
변경지역 소액무역	20,339.1	20,448.1	0.5
물물교환무역	14.2	3.2	-77.4
기타 무역	195,357.9	259,520.7	32.8
- 무상 원조와 증증	35.9	55.9	53.7
- 화교 기증	35.9	55.9	55.8
- 임대무역	3.4	12.3	259.3
- 외자기업 투자수입설비	26.9	62.6	132.4
- 원료 수출가공무역	782.0	724.8	-7.3
- 면세 외화상품	228.5	310.8	36.1
- 보세창고 수출입	50,461.7	62,616.2	24.1
- 보세창고 항구이전 화물	142,972.7	194,635.7	36.1
- 기타	390.1	400.7	2.7
수출가공구 수입설비	1.6	0.2	-86.3
합 계	2,797,291.8	2,864,761.9	2.4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기업성격별 현황

○ 수출 현황

- 국유기업 : 2005년 국유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74.6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27.4%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3.4퍼센트 하락.
- 외자투자기업 : 2005년 외자투자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6.1% 증가한 116.7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42.9%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0.6퍼센트 하락.
- ※ 그 중, 중외 합작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0.9% 하락한 8.8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3.2%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0.7퍼센트 하락, 중외 합자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2.6% 증가한 59.8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22.0%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1.0퍼센트 하락, 외국 독자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24.9% 하락한 48.1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17.7%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1.0퍼센트 하락,
- 공영기업 : 2005년 공영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13.3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4.9%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0.5퍼센트 하락.
- 사영기업 : 2005년 사영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44.4% 증가한 67.4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24.8%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4.6퍼센트 증가.

2005년 기업성격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만 달러)

기업성격	2004년 수출액	2005년 수출액	증감(%)
국유기업	712,220.5	743,666.3	4.4
외자투자기업	1,005,188.0	1,167,131.5	16.1
- 중외 합작기업	89,102.4	88,298.5	-0.9
- 중외 합자기업	530,602.2	597,515.9	12.6
- 외국 독자기업	385,483.4	481,317.1	24.9
공영기업	124,159.9	132,946.4	7.1
사영기업	467,148.0	674,394.9	44.4
개인사업자	4.5	207.4	4,472.8
기 타	278.5	50.5	-81.9
합 계	2,308,999.4	2,718,397.0	17.7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수입 현황

- 국유기업 : 2005년 국유기업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11.1% 하락한 104.3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36.4%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5.5퍼센트 하락.

- 외자투자기업 : 2005년 외자투자기업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17.4% 증가한 116.6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40.7%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5.2퍼센트 증가.

※ 그 중, 중외 합작기업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33.2% 하락한 3.9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1.4%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0.7퍼센트 하락, 중외 합자기업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52.9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18.5%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1.5퍼센트 증가, 외국 독자기업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30.7% 하락한 59.9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20.9%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4.5퍼센트 하락,

- 공영기업 : 2005년 공영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0.1% 하락한 21.0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7.3%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1.1퍼센트 하락.

- 사영기업: 2005년 사영기업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11.8% 증가한 44.4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입액의 15.5%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보다 1.3퍼센트 증가.

2005년 기업성격별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 만 달러)

기업성격	2004년 수출액	2005년 수출액	증감(%)
국유기업	1,172,623.9	1,042,665.8	-11.1
외자투자기업	993,117.0	1,166,365.2	17.4
- 중외 합작기업	58,235.3	38,912.0	-33.2
- 중외 합자기업	476,915.9	528,913.0	10.9
- 외국 독자기업	457,965.7	598,540.2	30.7
공영기업	233,783.3	210,297.9	-10.1
사영기업	396,924.1	443,717.7	11.8
개인사업자	1.7	50.5	2,904.8
기 타	841.8	1,674.7	98.9
합 계	2,797,291.8	2,864,771.8	2.4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4)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 찻잎

- 2005년 중국 찻잎 수출량은 286,562.9톤으로 전년대비 2.3% 증가, 수출액은 48,430.6만 달러로 전년대비 10.9% 증가.

○ 대륙별 찻잎 수출 현황

- 수출량 : 아프리카 124,740.9톤(2.7%↑), 아시아 108,919.6톤(6.1%↑), 유럽 33,269.2톤(11.7%↓), 북미 19,121.6톤(6.6%↑), 남미 285.6톤(8.8%↑), 대양주 226.0톤(30.1%↑).

- 수출액: 아프리카 21,754.5만 달러(12.3%↑), 아시아 17,480.0만 달러(9.3%↑), 유럽 5,833.3만 달러(4.8%↑), 북미 3,190.4만 달러(21.9%↑), 대양주 88.7만 달러(22.3%↑), 남미 83.7만 달러(40.9%↑).

2005년 국가(지역)별 중국 찾임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국가(지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아시아	102,6930	15,999.8	108,919.6	17,480.0	6.1	9.3
북미	17,932.4	2,617.7	19,121.6	3,190.4	6.6	21.9
대양주	173.7	72.5	226.0	88.7	30.1	22.3
남미	262.5	59.5	285.6	83.7	8.8	40.9
유럽	37,669.8	5,565.9	33,269.2	5,833.3	-11.7	4.8
아프리카	121,461.4	19,369.1	124,740.9	21,754.5	2.7	12.3
합 계	280,192.	43,684.5	286,562.	48,430.	2.3	10.6
중동*	69,259.5	11,498.7	78,036.3	13,810.4	12.7	20.1
CIS*	38,781.1	3,243.8	43,980.3	3,982.2	13.4	22.8
EU 25개 국가*	21,274.7	3,606.0	16,127.4	3,367.9	-24.2	-6.6
EU 15개 국가*	16,252.0	2,914.4	13,065.6	2,883.1	-19.6	-1.1
ASEAN*	5,465.1	1,165.2	7,488.3	1,437.1	37.0	23.3

비고 : * 항목은 전문 통계항목으로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무역방식별 찾임 수출 현황

- 일반무역방식 : 수출량 283,895.8톤(2.5%↑), 수출액 47,527.3만 달러(10.5%↑)

- 가공무역방식 : 수출량 1,456.1톤(7.1%↓), 수출액 620.7만 달러(51.4%↑).

※ 그 중, 원료 수입가공방식의 수출량 953.4톤(10.4%↓), 수출액 491.2만 달러(70.4%↑), 위탁가공방식의 수출량 502.7톤(0.2%↓), 수출액 129.4만 달러(6.3%↓).

- 변경지역 소액무역방식: 수출량 964.7톤(33.2%↑), 수출액 154.0만 달러(64.9%↑).

2005년 무역방식별 찾입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무역방식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일반무역	276,847.8	43,005.6	283,895.8	47,527.3	2.5	10.5
가공무역	1,567.8	409.9	1,456.1	620.7	-7.1	51.4
- 원료 수입가공무역	1,064.1	288.2	953.4	491.2	-10.4	70.4
- 위탁가공무역	503.7	121.7	502.7	129.4	-0.2	-6.3
변경지역 소액무역	1,592.3	175.6	964.7	128.6	-39.4	-26.8
기타 무역	184.9	93.4	246.4	154.0	33.2	64.9
- 기타	3.6	4.1	0.1	0.7	-96.7	-82.6
- 기타	3.6	4.1	0.1	0.7	-96.7	-82.6
- 보세창고 항구이전 화물	86.4	55.9	137.8	95.9	59.5	71.4
- 보세창고 수출입	94.9	33.3	108.5	57.4	14.3	72.2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기업성격별 찾입 수출 현황

- 국유기업 : 수출량 125,742.7톤(20.3%↓), 수출액 22,062.6만 달러(14.6%↓).
- 외자투자기업 : 수출량 7,609.6톤(26.7%↑), 수출액 2,369.7만 달러(35.8%↑).
- ※ 그 중, 중외 합작기업의 수출량 325.9톤(23.2%↑), 수출액 159.4만 달러(177.3%↑), 중외 합자기업의 수출량 3,481.6톤(18.8%↓), 수출액 1,203.4만 달러(8.9%↓), 외국 독자기업의 수출량 3,802.1톤(161.5%↑), 수출액 1,006.9만 달러(174.6%↑).
- 공영기업 : 수출량 36,931.8톤(6.5%↓), 수출액 5,424.4만 달러(0.5%↑).
- 사영기업 : 수출량 116,277.7톤(51.1%↑), 수출액 18,572.9만 달러(73.2%↑).

2005년 기업성격별 찾잎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기업성격	2004년		2005년		증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국유기업	157,713.5	25,827.6	125,742.7	22,062.6	-20.3	-14.6
외자투자기업	6,007.8	1,745.5	7,609.6	2,369.7	26.7	35.8
- 중외 합작기업	264.4	57.5	325.9	159.4	23.2	177.3
- 중외 합자기업	4,289.4	1,321.4	3,481.6	1,203.4	-18.8	-8.9
- 외국 독자기업	1,454.0	366.7	3,802.1	1,006.9	161.5	174.6
공영기업	39,501.4	5,390.6	36,931.8	5,424.4	-6.5	0.6
사영기업	76,967.4	10,720.5	116,277.7	18,572.9	51.1	73.2
개인사업자	-	-	1.1	0.9	-	-
기타	2.8	0.3	-	-	-	-
합 계	280,192.9	43,684.5	286,562.9	48,430.5	2.3	10.6

자료출처: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지역별 찾잎 수출현황:

- 찾잎 수출량 순위(1-5위) : 절강(浙江)성 161,919.3톤(6.4%↑), 호남(湖南)성 22,982.5톤(13.4%↑), 안휘(安徽)성 22,342.9톤(28.5%↑), 복건(福建)성 16,666.9톤(20.1%↑), 광둥(廣東)성 13,795.2톤(41.3%↓).
- 찾잎 수출액 순위(1-5위) : 절강(浙江)성 25,834.3만 달러(13.7%↑), 복건(福建)성 4,444.2만 달러(25.2%↑), 광둥(廣東)성 3,204.7만 달러(25.4%↑), 호남(湖南)성 3,132.8만 달러(14.9%↑), 안휘(安徽)성 2,980.3만 달러(29.1%↓).

2005년 지역별 중국 찾기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지 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북경(北京)	10,477.4	1,865.8	7,467.9	1,653.0	-28.7	-11.4
천진(天津)	0.1	0.0	-	-	-	-
내몽고(內蒙古)	175.8	4.8	-	-	-	-
요녕(遼寧)	588.2	105.6	464.4	89.0	-21.0	-15.7
길림(吉林)	-	-	0.1	0.0	-	-
흑룡강(黑龍江)	60.1	5.3	-	-	-	-
상해(上海)	9,935.4	1,611.7	6,435.1	1,310.2	-35.2	-18.7
강소(江蘇)	2,932.0	640.4	4,923.1	856.3	67.9	33.7
절강(浙江)	152,183.8	22,728.9	161,919.3	25,834.3	6.4	13.7
안휘(安徽)	17,391.0	2,308.8	22,342.9	2,980.3	28.5	29.1
복건(福建)	13,875.1	3,551.0	16,666.9	4,444.2	20.1	25.2
강서(江西)	4,259.1	792.3	6,243.4	1,206.3	46.6	52.3
산둥(山東)	2.6	0.8	2.1	1.0	-18.0	29.3
하남(河南)	-	-	175.0	7.9	-	-
호북(湖北)	2,833.5	540.7	2,777.4	734.7	-2.0	35.9
호남(湖南)	20,264.9	2,727.5	22,982.5	3,132.8	13.4	14.9
광둥(廣東)	23,514.5	4,293.5	13,795.2	3,204.7	-41.3	-25.4
광서(廣西)	1,712.3	247.0	2,257.1	381.6	31.8	54.5
해남(海南)	955.0	67.9	621.4	59.7	-34.9	-12.1
중경(重慶)	12,353.7	759.8	10,961.5	654.2	-11.3	-13.9
사천(四川)	398.7	115.3	509.6	140.1	27.8	21.5
운남(雲南)	6,237.1	1,315.7	6,003.8	1,739.2	-3.7	32.2
서장(西藏)	0.7	0.3	-	-	-	-
신강(新疆)	42.0	1.3	14.0	1.0	-66.7	-26.3
합 계	280,193.0	43,684.4	286,562.7	48,430.5	2.3	10.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품목별 찾기 수출 현황

- 홍차 : 수출량 35,847.2톤(8.9%↓), 수출액 3,994.4만 달러(3.0%↑), 단가 0.1만 달러(6.5%↑).

- 녹차 : 수출량 206,170.4톤(5.1%↑), 수출액 33,078.7만 달러(12.4%↑), 단가 0.2만 달러(6.9%↑).
- 특종차 : 수출량 44,545.4톤(0.2%↓), 수출액 11,357.5만 달러(12.1%↑), 단가 0.3만 달러(12.3%↑)

2005년 품목별 차잎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품 목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단 가	수 량	금 액	단 가
홍 차	35,847.2	3,994.4	0.1	-8.9	-3.0	6.5
녹 차	206,170.4	33,078.7	0.2	5.1	12.4	6.9
특종차	44,545.4	11,357.5	0.3	-0.2	12.1	12.3
합 계	286,562.9	48,430.5		2.3	10.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대과

- 2005년 중국 대과 수출량은 88,138.8톤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 수출액은 4,787.4만 달러로 전년대비 8.7% 증가, 단가 543달러/톤으로 전년대비 2% 하락.

○ 대륙별 대과 수출 현황

- 수출량 : 아시아 87,899.0톤(11.1%↑), 북미 205.1톤(1.1%↑), 유럽 34.7톤(35.5%↑)
- 수출액 : 아시아 4,776.8만 달러(8.8%↑), 북미 9.1만 달러(13.4%↓), 유럽 1.6만 달러(3.9%↑)

2005년 국가(지역)별 중국 대파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국가(지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아시아	79,149.5	4,392.1	87,899.0	4,776.8	11.1	8.8
북 미	203.0	10.5	205.1	9.1	1.1	-13.4
대양주	29.2	1.5	-	-	-	-
유 럽	25.6	1.5	34.7	1.6	35.5	3.9
합 계	79,407.3	4,405.6	88,138.8	4,787.5	11.0	8.7
ASEAN*	3,081.5	41.9	6,649.8	84.0	115.8	100.5
EU 25개 국가*	25.6	1.5	19.1	1.1	-25.2	-25.1
EU 15개 국가*	25.6	1.5	18.6	1.1	-27.2	-27.4
CIS*	-	-	15.6	0.4	-	-
한 국*	816.2	23.0	410.4	11.8	-49.7	-48.8

비고 : * 항목은 전문 통계항목으로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무역방식별 대파 수출 현황

- 일반무역방식 : 수출량 82,756.7톤(9.4%↑), 수출액 4,640.7만 달러(7.9%↑)
- 가공무역방식 : 수출량 1,614.9톤(35.3%↑), 수출액 113.5만 달러(45.8%↑).
- 변경지역 소재무역방식 : 수출량 3,767.3톤(47.5%↑), 수출액 33.1만 달러(22.0%↑).

2005년 무역방식별 대파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무역방식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일반무역	75,659.0	4,300.5	82,756.7	4,640.7	9.4	7.9
가공무역	1,193.4	77.9	1,614.9	113.5	35.3	45.8
- 원료수입가공무역	1,193.4	77.9	1,614.9	113.5	35.3	45.8
변경지역 소재무역	2,554.8	27.2	3,767.3	33.1	47.5	22.0
합계	79,407.2	4,405.6	88,138.9	4,787.3	11.0	8.7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기업성격별 대파 수출 현황

- 국유기업 : 수출량 11,398.3톤(6.5%↑), 수출액 240.3만 달러(44.6%↓).
- 외자투자기업 : 수출량 48,697.4톤(2.3%↑), 수출액 2,369.7만 달러(6.5%↑).
- ※ 그 중, 중외 합작기업의 수출량 1,131.0톤(160.3%↑), 수출액 75.4만 달러(146.7%↑), 중외 합자기업의 수출량 17,575.1톤(25.1%↓), 수출액 1,174.6만 달러(12.1%↓), 외국 독자기업의 수출량 29,991.3톤(15.7%↑), 수출액 1,919.4만 달러(19.2%↑).
- 공영기업 : 수출량 5,128.6톤(10.3%↑), 수출액 153.5만 달러(30.8%↑).
- 사영기업 : 수출량 22,914.6톤(61.0%↑), 수출액 1,224.1만 달러(39.4%↑).

2005년 기업성격별 대파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기업성격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국유기업	10,699.3	433.8	11,398.3	240.3	6.5	-44.6
외자투자기업	49,825.7	2,976.5	48,697.4	3,169.5	-2.3	6.5
- 중외 합작기업	434.5	30.6	1,131.0	75.4	160.3	146.7
- 중외 합자기업	23,459.6	1,336.3	17,575.1	1,174.6	-25.1	-12.1
- 외국 독자기업	25,931.7	1,609.6	29,991.3	1,919.4	15.7	19.2
공영기업	4,651.4	117.4	5,128.6	153.5	10.3	30.8
사영기업	14,230.9	878.0	22,914.6	1,224.1	61.0	39.4
합 계	79,407.3	4,405.7	88,138.9	4,787.4	11.0	8.7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지역별 대파 수출현황:

- 대파 수출량 순위(1-5위) : 산둥(山東)성 33,361.4톤(13.0%↓), 복건(福建)성 23,592.0톤(43.1%↑), 상해(上海)시 12,036.1톤(8.4%↓), 광둥(廣東)성 11,956.0톤(165.6%↑), 운남(雲南)성

3,932.9톤(40.4%↑).

- 대파 수출액 순위(1-5위): 산둥(山東)성 2,051.9만 달러(3.5%↓), 복건(福建)성 1,452.7만 달러(46.9%↑), 상해(上海)시 855.1만 달러(4.8%↓), 절강(浙江)성 192.1만 달러(8.2%↑), 광둥(廣東)성 163.3만 달러(140.3%↑).

2005년 지역별 중국 대파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지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북경(北京)	51.7	3.4	-	-	-	-
천진(天津)	14.6	0.3	10.4	0.3	-28.7	26.8
하북(河北)	-	-	12.3	0.3	-	-
요녕(遼寧)	4.5	0.2	89.1	8.9	1,875.8	3,637.6
흑룡강(黑龍江)	-	-	25.1	1.3	-	-
상해(上海)	13,146.1	898.2	12,036.1	855.1	-8.4	-4.8
강소(江蘇)	1,671.3	108.5	341.1	20.3	-79.6	-81.3
절강(浙江)	2,309.7	177.6	2,643.9	192.1	14.5	8.2
복건(福建)	16,481.4	989.1	23,592.0	1,452.7	43.1	46.9
산둥(山東)	38,358.6	2,126.0	33,361.4	2,051.9	-13.0	-3.5
하남(河南)	-	-	2.5	0.1	-	-
호북(湖北)	-	-	8.0	0.4	-	-
광둥(廣東)	4,501.8	67.9	11,956.0	163.3	165.6	140.3
광서(廣西)	-	-	11.0	0.1	-	-
사천(四川)	66.8	4.3	-	-	-	-
운남(雲南)	2,800.8	30.1	3,932.9	34.3	40.4	13.8
신강(新疆)	-	-	117.1	6.4	-	-
합 계	79,407.3	4,405.6	88,138.9	4,787.5	11.0	8.7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마늘

- 2005년 중국 마늘 수출량은 1,259,031.톤으로 전년대비 2.6% 증가, 수출액은 69,929.4만 달러로 전년대비 43.6% 증가.

○ 2005년 중국 마늘 수출 국가와 지역은 128개에 이르렀음. 동남아연합(ASEAN) 10개 국가와 남아시아 6개 국가(방글라데시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말라가시)는 중국 마늘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중국 마늘 수출량의 57%를 차지. 그 중, 인도네시아는 중국 마늘의 최대 소비시장으로 2005년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수량은 27.8만 톤으로 중국 마늘 수출량의 25%를 차지.

○ 대륙별 마늘 수출 현황

- 수출량 : 아시아 808,202.0톤(4.6%↓), 유럽 159,287.7톤(5.8%↑), 남미 152,036.1톤(43.2%↑), 북미 88,939.9톤(4.3%↑), 아프리카 37,630.4톤(50.0%↑), 대양주 12,935.0톤(3.1%↑).
- 수출액 : 아시아 37,968.1만 달러(28.8%↑), 유럽 10,941.3만 달러(57.8%↑), 북미 9,456.8만 달러(42.9%↑), 남미 8,440.5만 달러(107.4%↑), 아프리카 2,084.3만 달러(107.8%↑), 대양주 1,038.4만 달러(68.9%↑)

2005년 국가(지역)별 중국 마늘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국가(지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아시아	847,481.9	29,471.5	808,202.0	37,968.1	-4.6	28.8
북 미	85,264.8	6,616.2	88,939.9	9,456.8	4.3	42.9
대양주	12,551.6	614.6	12,935.0	1,038.4	3.1	68.9
남 미	106,138.3	4,069.9	152,036.1	8,440.5	43.2	107.4
유 럽	150,543.7	6,931.8	159,287.7	10,941.3	5.8	57.8
아프리카	25,086.4	1,002.9	37,630.4	2,084.3	50.0	107.8
합 계	1,227,066.7	48,706.9	1,259,031.1	69,929.4	2.6	43.6
ASEAN*	565,205.8	17,670.3	522,844.7	21,849.7	-7.5	23.7
EU 25개 국가*	86,045.5	4,393.2	101,872.3	7,859.8	18.4	78.9
EU 15개 국가*	78,779.6	4,067.3	97,132.3	7,456.3	23.3	83.3
중동*	80,060.9	3,003.7	103,924.3	5,383.1	29.8	79.2
CIS*	48,759.7	1,890.3	43,898.7	2,372.0	-10.0	25.5

비고 : * 항목은 전문 통계항목으로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무역방식별 마늘 수출 현황

- 일반무역방식 : 수출량 1,163.505.2톤(4.5%↑), 수출액 67,292.4만 달러(46.2%↑)
- 가공무역방식 : 수출량 2,820.3톤(3.0%↑), 수출액 406.8만 달러(142.5%↑).
- ※ 그 중, 원료 수입가공방식의 수출량 2,799.3톤(9.0%↑), 수출액 405.1만 달러(161.0%↑), 위탁가공방식의 수출량 21.0톤(87.5%↓), 수출액 1.8만 달러(85.9%↓),
- 변경지역 소액무역방식 : 수출량 92,398.8톤(16.5%↓), 수출액 2,214.6만 달러(11.3%↓).

2005년 무역방식별 마늘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무역방식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일반무역	1,113,732.3	46,039.7	1,163,505.2	67,292.4	4.5	46.2
가공무역	2,737.4	167.8	2,820.3	406.8	3.0	142.5
- 원료 수입가공무역	2,568.9	155.2	2,799.3	405.1	9.0	161.0
- 위탁가공무역	168.5	12.6	21.0	1.8	-87.5	-85.9
변경지역 소액무역	110,639.7	2,496.1	92,398.8	2,214.6	-16.5	-11.3
기타 무역	57.3	3.4	306.9	15.5	435.8	353.0
- 기타	21.6	0.4	0.1	0.0	-99.7	-99.1
- 보세창고 항구이전 화물	35.7	3.0	2.3	0.2	-93.7	-94.0
- 보세창고 수출입	0.0	0.0	304.6	15.3	0.0	0.0
합 계	1,227,066.7	48,707.0	1,259,031.2	69,929.3	2.6	43.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기업성격별 마늘 수출 현황

- 국유기업: 수출량 124,037.4톤(48.9%↓), 수출액 7,963.0만 달러(17.3%↑).
- 외자투자기업: 수출량 288,978.톤(11.9%↑), 수출액 17,890.7만 달러(57.7%↑).
- ※ 그 중, 중외 합작기업의 수출량 7,362.0톤(3.7%↑), 수출액

350.5만 달러(57.9%↑), 중외 합자기업의 수출량 108,494.톤(5.3%↑), 수출액 7,322.3만 달러(56.6%↑), 외국 독자기업의 수출량 173,122.0톤(16.9%↑), 수출액 10,218.0만 달러(58.4%↑).

- 공영기업 : 수출량 90,004.2톤(23.0%↓), 수출액 5,360.9만 달러(3.9%↑).

- 사영기업 : 수출량 756,011.4톤(24.5%↑), 수출액 38,714.7만 달러(71.9%↑).

2005년 기업성격별 마늘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기업성격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국유기업	242,844.5	9,623.3	124,037.4	7,963.0	-48.9	-17.3
외자투자기업	258,315.4	11,348.3	288,978.1	17,890.7	11.9	57.7
- 중외 합자기업	7,102.4	11,348.3	288,978.1	17,890.7	11.9	57.7
- 중외 합자기업	103,062.3	4,676.6	108,494.1	7,322.3	5.3	56.6
- 중외 합자기업	103,062.3	4,676.6	108,494.1	7,322.3	5.3	56.6
- 외국 독자기업	148,150.8	6,449.8	173,122.0	10,218.0	16.9	58.4
공영기업	116,948.4	5,157.8	90,004.2	5,360.9	-23.0	3.9
사영기업	607,395.0	22,519.3	756,011.4	38,714.7	24.5	71.9
기타	1,563.4	58.4	0.1	0.0	-100.0	-100.0
합 계	1,227,066.7	48,707.1	1,259,031.2	69,929.3	2.6	43.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지역별 마늘 수출현황:

- 마늘 수출량 순위(1-5위) : 절강(浙江)성 161,919.3톤(6.4%↑), 호남(湖南)성 22,982.5톤(13.4%↑), 안휘(安徽)성 22,342.9톤(28.5%↑), 복건(福建)성 16,666.9톤(20.1%↑), 광둥(廣東)성 13,795.2톤(41.3%↓).

- 마늘 수출액 순위(1-5위) : 절강(浙江)성 25,834.3만 달러(13.7%↑), 복건(福建)성 4,444.2만 달러(25.2%↑), 광둥(廣東)성

3,204.7만 달러(25.4%↓), 호남(湖南)성 3,132.8만 달러(14.9%↑), 안휘(安徽)성 2,980.3만 달러(29.1%↑).

2005년 지역별 중국 마늘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지 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북경(北京)	3,726.9	222.8	3,822.5	283.2	2.6	27.1
천진(天津)	9,280.4	506.9	6,814.7	651.3	-26.6	28.5
하북(河北)	3,188.4	142.0	2,879.7	198.6	-9.7	39.9
산서(山西)	214.6	9.1	455.5	20.1	112.3	121.7
내몽고(內蒙古)	4,504.5	137.7	3,928.7	136.6	-12.8	-0.9
요녕(遼寧)	1,466.3	55.9	694.5	70.6	-52.6	26.5
길림(吉林)	2,904.4	71.1	8,212.5	383.6	182.8	439.4
흑룡강(黑龍江)	11,558.9	327.3	8,093.4	248.5	-30.0	-24.1
상해(上海)	24,379.7	1,410.8	24,380.7	2,540.6	0.0	80.1
강소(江蘇)	65,851.8	2,300.8	117,580.3	5,857.8	78.6	154.6
절강(浙江)	7,845.1	497.5	9,013.9	930.7	14.9	87.1
안휘(安徽)	17,505.1	1,105.7	21,813.9	1,996.6	24.6	80.6
복건(福建)	53,124.7	1,790.4	51,556.7	2,302.9	-3.0	28.6
강서(江西)	14.0	0.6	-	-	-	-
산둥(山東)	729,857.2	30,601.5	757,567.8	43,682.7	3.8	42.7
하남(河南)	69,989.4	2,296.7	87,318.6	4,579.1	24.8	99.4
호북(湖北)	193.6	13.0	191.8	19.0	-0.9	46.0
호남(湖南)	408.0	15.3	350.0	17.9	-14.2	16.5
광둥(廣東)	125,485.1	5,028.7	28,109.8	1,741.1	-77.6	-65.4
광서(廣西)	75,001.1	1,590.6	62,795.6	1,467.6	-16.3	-7.7
해남(海南)	10.0	0.4	27.0	3.3	170.0	747.8
중경(重慶)	-	-	24.0	1.0	-	-
사천(四川)	29.8	2.5	55.1	16.4	85.2	559.4
운남(雲南)	14,800.5	300.9	19,657.7	551.3	32.8	83.2
서장(西藏)	2,079.2	90.2	1,957.6	95.9	-5.8	6.3
섬서(陝西)	2,472.1	116.3	1,306.6	85.5	-47.1	-26.5
감숙(甘肅)	6.0	0.4	5.0	0.9	-16.7	128.2
청해(青海)	6.0	0.2	-	-	-	-
신강(新疆)	1,164.0	71.5	40,417.7	2,046.6	3,372.3	2,761.3
합 계	1,227,066.1	48,706.8	1,259,031.1	69,929.4	2.6	43.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품목별 마늘 수출 현황

- 신선한 마늘 : 수출량 1,133,515.2톤(2.5%↑), 수출액 54,316.0만 달러(35.2%↑), 단가 (31.8%↑).
- 초 절인 마늘 : 수출량 6,193.2톤(5.1%↑), 수출액 358.7만 달러 (19.2%↑), 단가 0.1만 달러(13.4%↑).
- 마른 마늘 : 수출량 105,605.0톤(7.2%↑), 수출액 14,332.3만 달러(93.1%↑), 단가 0.1만 달러(80.1%↑).
- 냉동 마늘 : 수출량 542.2톤(86.7%↓), 수출액 32.1만 달러 (82.6%↑), 단가 0.1만 달러(31.2%↑).
- 염수 마늘 : 수출량 13,175.6톤(0.5%↓), 수출액 890.1만 달러 (45.6%↑), 단가 0.1만 달러(46.4%↑).

2005년 품목별 마늘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품 목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단 가	수 량	금 액	단 가
초 절인 마늘	6,193.2	358.7	0.1	5.1	19.2	13.4
마른 마늘	105,605.0	14,332.3	0.1	7.2	93.1	80.1
냉동 마늘	542.2	32.1	0.1	-86.7	-82.6	31.2
염수 마늘	13,175.6	890.1	0.1	-0.5	45.6	46.4
합 계	1,259,031.2	69,929.2		2.6	43.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벌꿀

- 2005년 중국 벌꿀 수출량은 88,499.2톤으로 전년대비 8.8% 증가, 수출액은 8,762.9만 달러로 전년대비 1.6% 하락.

○ 대륙별 벌꿀 수출 현황

- 수출량: 아시아 48,887.9톤(1.3%↓), 북미 31,380.2톤(6.1%↑), 유럽 6,982.3톤(1,127.1%↑), 아프리카 828.3톤(7.9%↓), 대양주 359.4톤(39.7%↓), 남미 61.0톤(62.8%↓).
- 수출액: 아시아 5,220.8만 달러(1.8%↓), 북미 2,684.7만 달러(20.2%↓), 유럽 727.3만 달러(1,171.2%↑), 아프리카 91.9만 달러(10.8%↑), 대양주 32.5만 달러(48.2%↓), 남미 5.6만 달러(65.0%↓).

2005년 국가(지역)별 중국 벌꿀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국가(지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아시아	49,518.5	5,318.7	48,887.9	5,220.8	-1.3	-1.8
북 미	29,578.9	3,363.1	31,380.2	2,684.7	6.1	-20.2
대양주	595.6	62.8	359.4	32.5	-39.7	-48.2
남 미	164.1	16.1	61.0	5.6	-62.8	-65.0
유 럽	569.0	57.2	6,982.3	727.3	1,127.1	1,171.2
아프리카	898.9	82.9	828.3	91.9	-7.9	10.8
합 계	81,325.0	8,900.8	88,499.1	8,762.8	8.8	-1.6
ASEAN*	6,689.2	707.6	3,034.5	351.6	-54.6	-50.3
EU 25개 국가*	415.3	43.7	6,645.5	686.7	1,500.2	1,470.9
EU 15개 국가*	131.7	18.0	6,503.9	670.6	4,839.9	3,627.3
중 동*	1,004.0	113.1	1,490.1	202.0	48.4	78.7
CIS*	94.0	8.2	0.2	0.1	-99.8	-98.9
한 국*	840.3	83.4	2,101.0	187.8	150.0	125.1

비고 : *항목은 전문 통계항목으로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무역방식별 벌꿀 수출 현황

- 일반무역방식 : 수출량 87,259.1톤(9.0%↑), 수출액 8,609.8만 달러(1.4%↓)

- 가공무역방식: 수출량 2,243.9톤(14.1%↑), 수출액 143.1만 달러(7.6%↑).
- ※ 그 중, 원료 수입가공방식의 수출량 1,000.2톤(11.5%↑), 수출액 129.8만 달러(9.9%↑), 위탁가공방식의 수출량 132.7톤(38.7%↑), 수출액 13.3만 달러(10.8%↓),
- 변경지역 소액무역방식: 수출량 9.0톤(55.0%↓), 수출액 1.2만 달러(13.8%↓).

2005년 무역방식별 벌꿀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무역방식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일반무역	80,081.4	8,733.7	87,259.1	8,609.8	9.0	-1.4
가공무역	992.6	133.0	1,132.9	143.1	14.1	7.6
- 원료 수입가공무역	897.0	118.1	1,000.2	129.8	11.5	9.9
- 위탁가공무역	95.6	14.9	132.7	13.3	38.7	-10.8
변경지역 소액무역	20.0	1.4	9.0	1.2	-55.0	-13.8
기타 무역	230.9	32.7	98.3	8.7	-57.4	-73.4
- 보세창고 항구이전 화물	27.5	4.7	21.7	2.6	-20.9	-45.6
- 보세창고 수출입	203.4	28.0	76.6	6.1	-62.4	-78.1
합 계	81,324.9	8,900.8	88,499.3	8,762.8	8.8	-1.6

자료출처: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기업성격별 벌꿀 수출 현황

- 국유기업: 수출량 19,801.7톤(32.0%↓), 수출액 2,193.6만 달러(33.4%↓).
- 외자투자기업: 수출량 10,259.3톤(23.8%↑), 수출액 1,119.9만 달러(23.4%↑).
- ※ 그 중, 중외 합작기업의 수출량 1.0톤(99.5%↑), 수출액 0.2만 달러(99.3%↓), 중외 합자기업의 수출량 9,143.0톤(37.6%↑), 수출액 962.9만 달러(38.3%↑), 외국 독자기업의 수출량

1,115.3톤(22.2%↓), 수출액 156.8만 달러(14.0%↓).

- 공영기업: 수출량 19,243.9톤(11.9%↓), 수출액 1,921.2만 달러(14.1%↓).
- 사영기업: 수출량 39,194.3톤(77.6%↑), 수출액 3,528.2만 달러(43.4%↑).

2005년 기업성격별 벌꿀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기업성격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국유기업	29,128.0	3,295.9	19,801.7	2,193.6	-32.0	-33.4
외자투자기업	8,285.8	907.5	10,259.3	1,119.9	23.8	23.4
- 중외 합작기업	208.4	28.7	1.0	0.2	-99.5	-99.3
- 중외 합자기업	6,643.4	696.4	9,143.0	962.9	37.6	38.3
- 외국 독자기업	1,433.9	182.4	1,115.3	156.8	-22.2	-14.0
공영기업	21,845.3	2,236.7	19,243.9	1,921.2	-11.9	-14.1
사영기업	22,065.8	2,460.7	39,194.3	3,528.2	77.6	43.4
합 계	81,324.9	8,900.8	88,499.2	8,762.9	8.8	-1.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지역별 벌꿀 수출현황:

- 벌꿀 수출량 순위(1-5위) : 호북(湖北)성 21,401.5톤(16.9%↑), 안휘(安徽)성 14,591.8톤(36.5%↑), 사천(四川)성 12,523.8톤(79.0%↑), 강소(江蘇)성 10,272.7톤(11.5%↓), 하남(河南)성 7,247.3톤(37.1%↓).
- 벌꿀 수출액 순위(1-5위) : 호북(湖北)성 2,158.9만 달러(20.1%↑), 안휘(安徽)성 1,350.5만 달러(25.2%↑), 사천(四川)성 1,063.5만 달러(43.9%↑), 강소(江蘇)성 917.5만 달러(33.6%↓), 하남(河南)성 773.6만 달러(39.2%↓).

2005년 지역별 중국 벌꿀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지 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북경(北京)	4,279.2	436.2	2,219.2	204.8	-48.1	-53.1
천진(天津)	144.1	13.8	1,675.1	164.0	1,062.6	1,091.5
하북(河北)	105.7	8.3	290.2	26.7	174.7	221.9
내몽고(內蒙古)	138.0	10.6	46.1	5.9	-66.6	-44.5
요녕(遼寧)	2,715.0	295.3	3,052.5	339.7	12.4	15.1
길림(吉林)	576.4	96.4	530.2	86.9	-8.0	-9.8
길림(吉林)	576.4	96.4	530.2	86.9	-8.0	-9.8
흑룡강(黑龍江)	290.9	44.9	658.2	90.4	126.3	101.4
상해(上海)	422.0	64.0	1,246.8	134.9	195.5	111.0
강소(江蘇)	11,601.0	1,381.2	10,272.7	917.5	-11.5	-33.6
절강(浙江)	6,412.7	761.0	3,791.1	389.6	-40.9	-48.8
안휘(安徽)	10,686.5	1,121.4	14,591.8	1,350.5	36.5	20.4
복건(福建)	21.0	2.7	113.1	14.4	438.7	429.0
강서(江西)	275.5	34.7	284.9	33.8	3.4	-2.6
산둥(山東)	4,557.0	561.1	5,003.0	633.6	9.8	12.9
하남(河南)	11,522.1	1,273.2	7,247.3	773.6	-37.1	-39.2
호북(湖北)	18,308.7	1,797.7	21,401.5	2,158.9	16.9	20.1
호남(湖南)	649.6	58.8	1,622.0	126.0	149.7	114.3
광둥(廣東)	391.0	51.2	386.0	57.5	-1.3	12.3
광서(廣西)	16.5	1.5	16.5	1.5	0.0	1.2
사천(四川)	6,994.8	738.9	12,523.8	1,063.5	79.0	43.9
섬서(陝西)	1,216.2	147.6	1,527.4	189.2	25.6	28.2
청해(青海)	1.1	0.4	-	-	-	-
합 계	81,325.0	8,900.9	88,499.4	8,762.9	8.8	-1.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닭고기 및 제품

○ 005년 중국 닭고기 및 제품 수출량은 331,402.5톤으로 전년대비 37.7% 증가, 수출액은 80,125.5만 달러로 전년대비 37.6% 증가.

○ 대륙별 닭고기 및 제품 수출 현황

- 수출량: 아시아 294,253.5톤(33.8%↑), 유럽 22,808.6톤(96.3%↑), 아프리카 7,203.3톤(29.8%↑), 북미 4,150.6톤(246.6%↑), 남미 1,930.3톤(103.1%↑), 대양주 1,056.2톤(23.2%↓).
- 수출액: 아시아 73,645.6만 달러(33.5%↑), 유럽 2,677.1만 달러(97.8%↑), 북미 2,607.8만 달러(238.9%↑), 아프리카 855.2만 달러(22.7%↑), 남미 215.8만 달러(94.3%↑), 대양주 124.0만 달러(26.3%↓).

2005년 국가(지역)별 중국 닭고기 및 제품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국가(지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아시아	219,990.9	55,148.9	294,253.5	73,645.6	33.8	33.5
북 미	1,197.4	769.5	4,150.6	2,607.8	246.6	238.9
대양주	1,375.7	168.3	1,056.2	124.0	-23.2	-26.3
남 미	950.6	111.1	1,930.3	215.8	103.1	94.3
유 럽	11,621.0	1,353.2	22,808.6	2,677.1	96.3	97.8
아프리카	5,551.0	696.8	7,203.3	855.2	29.8	22.7
합 계	240,686.6	58,247.8	331,402.5	80,125.5	37.7	37.6
ASEAN*	2,111.0	393.5	2,143.3	455.6	1.5	15.8
EU 25개 국가*	1,535.1	177.7	1,424.0	172.8	-7.2	-2.8
EU 15개 국가*	1,339.4	153.7	506.0	59.7	-62.2	-61.2
중동*	10,867.8	1,433.2	7,177.5	870.2	-34.0	-39.3
CIS*	5,846.1	697.1	17,967.0	2,140.1	207.3	207.0
한 국*	1,995.1	703.6	8,668.3	2,559.3	334.5	263.8
북 한*	3,834.8	474.0	5,002.6	588.6	30.5	24.2

비고 : * 항목은 전문 통계항목으로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무역방식별 닭고기 및 제품 수출 현황

- 일반무역방식: 수출량 274,303.5톤(39.3%↑), 수출액 62,590.3만 달러(40.1%↑)
- 가공무역방식: 수출량 57,096.6톤(31.7%↑), 수출액 17,533.2만

달러(29.8%↑).

※ 그 중, 원료 수입가공방식의 수출량 57,096.6톤(31.7%↑), 수출액 17,533.7만 달러(29.8%↑).

2005년 무역방식별 닭고기 및 제품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무역방식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일반무역	196,873.8	44,674.7	274,303.5	62,590.3	39.3	40.1
가공무역	43,357.1	13,504.5	57,096.6	17,533.7	31.7	29.8
- 원료 수입가공무역	43,357.1	13,504.5	57,096.6	17,533.7	31.7	29.8
기타 무역	455.7	68.6	2.3	1.5	-99.5	-97.8
- 기타	0.0	0.0	0.0	0.0	190.0	-100.0
- 보세창고 항구이전 화물	455.7	68.6	0.0	0.0	-100.0	-100.0
합 계	240,686.6	58,247.8	331,402.4	80,125.5	37.7	37.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기업성격별 닭고기 및 제품 수출 현황

- 국유기업 : 수출량 106,665.5톤(50.5%↑), 수출액 23,878.4만 달러(51.9%↑).

- 외자투자기업 : 수출량 136,879.5톤(28.2%↑), 수출액 39,771.4만 달러(26.3%↑).

※ 그 중, 중외 합작기업의 수출량 452.7톤(40.1%↓), 수출액 76.4만 달러(51.0%↓), 중외 합자기업의 수출량 107,685.9톤(27.9%↑), 수출액 30,091.4만 달러(23.5%↑), 외국 독자기업의 수출량 28,740.8톤(31.7%↑), 수출액 9,603.5만 달러(37.9%↑).

- 공영기업 : 수출량 37,486.5톤(23.5%↑), 수출액 9,505.5만 달러(39.7%↑).

- 사영기업 : 수출량 50,371.0톤(54.2%↑), 수출액 6,970.2만 달러(64.1%↑).

2005년 기업성격별 닭고기 및 제품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기업성격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국유기업	70,884.3	15,720.0	106,665.5	23,878.4	50.5	51.9
외자투자기업	106,781.3	31,478.8	136,879.5	39,771.4	28.2	26.3
- 중외 합작기업	755.9	156.1	452.7	76.4	-40.1	-51.0
- 중외 합자기업	84,195.8	24,357.3	107,685.9	30,091.4	27.9	23.5
- 외국 독자기업	21,829	6,965.4	28,740.8	9,603.5	31.7	37.9
공영기업	30,351.2	6,802.3	37,846.5	9,505.5	23.5	39.7
사영기업	32,669.8	4,246.7	50,371.0	6,970.2	54.2	64.1
합 계	240,686.6	58,247.8	331,402.5	80,125.5	37.7	37.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지역별 닭고기 및 제품 수출현황 :

- 닭고기 및 제품 수출량 순위(1-5위) : 산둥(山東)성 147,312.0톤 (56.1%↑), 광둥(廣東)성 56,166.9톤(25.4%↑), 요녕(遼寧)성 31,284.2톤(50.0%↑), 북경(北京)시 30,328.4톤(21.2%↑), 길림(吉林)성 19,928.3톤(32.3%↑).
- 닭고기 및 제품 수출액 순위(1-5위) : 산둥(山東)성 36,368.5만 달러(51.8%↑), 북경(北京)시 8,719.1만 달러(17.1%↑), 광둥(廣東)성 8,301.0만 달러(47.9%↑), 요녕(遼寧)성 8,074.8만 달러 (30.7%↑), 길림(吉林)성 4,810.0만 달러(31.7%↑).

2005년 지역별 중국 닭고기 및 제품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지 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북경(北京)	25,019.4	7,447.5	30,328.4	8,719.1	21.2	17.1
천진(天津)	1,268.9	570.1	3,215.5	1,481.9	153.4	159.9
하북(河北)	8,873.5	2,592.7	13,392.5	3,912.7	50.9	50.9
내몽고(內蒙古)	72.0	9.1	372.4	68.0	417.2	643.7
요녕(遼寧)	20,861.6	6,178.1	31,284.2	8,074.8	50.0	30.7

길림(吉林)	15,060.5	3,652.9	19,928.3	4,810.0	32.3	31.7
흑룡강(黑龍江)	6,818.6	2,377.2	1,446.8	274.1	-78.8	-88.5
상해(上海)	8,991.1	2,265.4	6,835.8	1,952.0	-24.0	-13.8
강소(江蘇)	4,352.4	1,633.4	8,435.3	3,240.2	93.8	98.4
절강(浙江)	214.5	53.2	144.5	50.2	-32.6	-5.8
안휘(安徽)	2,787.3	352.4	2,398.7	300.2	-13.9	-14.8
복건(福建)	642.1	105.9	827.1	254.4	28.8	140.2
강서(江西)	-	-	1.0	0.1	-	-
산둥(山東)	94,377.6	23,954.7	147,312.0	36,368.5	56.1	51.8
하남(河南)	5,593.5	1,327.7	8,604.4	2,232.6	53.8	68.2
호북(湖北)	-	-	0.2	0.1	-	-
광둥(廣東)	44,782.3	5,610.7	56,166.9	8,301.0	25.4	47.9
중경(重慶)	133.2	18.5	145.1	19.7	8.9	6.8
사천(四川)	836.9	98.1	561.4	64.1	-32.9	-34.7
닝하(寧夏)	0.0	0.0	1.9	2.0	37,900.0	40,680.0
합 계	240,686.4	58,247.6	331,402.4	80,125.7	37.7	37.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품목별 닭고기 및 제품 수출 현황

- 냉동 닭 : 수출량 127,630.2톤(29.5%↑), 수출액 16,156.2만 달러(31.2%↑), 단가 0.1만 달러(1.3%↑).
- 닭고기 제품 : 수출량 203,772.2톤(43.3%↑), 수출액 63,969.3만 달러(39.3%↑), 단가 0.3만 달러(2.8%↓).

2005년 품목별 닭고기 및 제품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품 목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단 가	수 량	금 액	단 가
냉동 닭	127,630.2	16,156.2	0.1	29.5	31.2	1.3
닭고기 제품	203,772.2	63,969.3	0.3	43.3	39.3	-2.8
합 계	331,402.4	80,125.5		37.7	37.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돼지고기

○ 2005년 중국 돼지고기 수출량은 250,512.8톤으로 전년대비 14.0% 감소, 수출액은 40,612.만 달러로 전년대비 11.6% 하락.

○ 대륙별 돼지고기 수출 현황

- 수출량 : 아시아 178,352.0톤(8.5%↑), 유럽 72,016.3톤(25.0%↑), 아프리카 101.5톤(9.8%↑), 남미 38.0톤(78.8%↑), 대양주 5.0톤(73.7%↑).
- 수출액 : 아시아 29,634.0만 달러(6.7%↑), 유럽 10,953.8만 달러(22.6%↑), 아프리카 15.8만 달러(23.9%↑), 남미 7.5만 달러(67.6%↑), 대양주 0.9만 달러(66.4%↑).

2005년 국가(지역)별 중국 돼지고기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국가(지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아시아	194,919.1	31,762.2	178,352.0	29,634.0	-8.5	-6.7
대양주	19.0	2.6	5.0	0.9	-73.7	-66.4
남 미	179.0	23.2	38.0	7.5	-78.8	-67.6
유 럽	96,031.7	14,149.2	72,016.3	10,953.8	-25.0	-22.6
아프리카	112.5	20.8	101.5	15.8	-9.8	-23.9
합 계	291,261.3	45,958.0	250,512.0	40,612.0	-14.0	-11.6
ASEAN*	13,512.6	2,645.6	10,438.6	2,241.5	-22.7	-15.3
EU 25개 국가*	904.0	157.6	575.0	95.4	-5.6	-7.6
EU 15개 국가*	65.0	10.6	-	-	-	-
중동*	1,107.1	179.3	1,045.2	165.6	-5.6	-7.6
CIS*	94,457.9	13,918.0	75,276.6	11,363.3	-20.3	-18.4
한 국*	1,460.0	228.3	6,332.5	958.3	333.7	319.7
북 한*	87,025.9	13,498.4	61,609.3	9,556.4	-29.2	-29.2

비고 : * 항목은 전문 통계항목으로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무역방식별 돼지고기 수출 현황

- 일반무역방식 : 수출량 244,420.3톤(14.7%↓), 수출액 39,754.9만 달러(12.2%↓)
- 가공무역방식 : 수출량 39.7톤(27.9%↓), 수출액 12.6만 달러(19.7%↑).
- ※ 그 중, 원료 수입가공방식의 수출량 39.7톤(27.9%↓), 수출액 12.6만 달러(19.7%↓).
- 변경지역 소액무역방식 : 수출량 5,977.7톤(35.3%↑), 수출액 832.9만 달러(35.1%↑).

2005년 무역방식별 돼지고기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무역방식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일반무역	286,537.9	45,280.2	244,420.3	39,754.9	-14.7	-12.2
가공무역	55.1	15.7	39.7	12.6	-27.9	-19.7
- 원료 수입가공무역	55.1	15.7	39.7	12.6	-27.9	-19.7
변경지역 소액무역	4,418.3	616.4	5,977.7	832.9	35.3	35.1
기타 무역	250.0	45.6	75.0	11.6	-70.0	-74.7
- 보세창고 항구이전 화물	250.0	45.6	75.0	11.6	-70.0	-74.7
합 계	291,261.3	45,957.9	250,512.7	40,612.0	-14.0	-11.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기업성격별 돼지고기 수출 현황

- 국유기업 : 수출량 57,577.0톤(33.3%↓), 수출액 9,421.3만 달러(30.7%↓).
- 외자투자기업 : 수출량 19,288.6톤(22.0%↓), 수출액 3,632.2만 달러(13.0%↓).
- ※ 그 중, 중외 합자기업의 수출량 8,663.2톤(5.9%↑), 수출액 1,877.1만 달러(22.3%↑), 외국 독작기업의 수출량 8,663.2톤

(35.8%↓), 수출액 1,755.1만 달러(33.5%↓).

- 공영기업 : 수출량 28,982.0톤(54.9%↑), 수출액 4,322.1만 달러(51.6%↑).
- 사영기업 : 수출량 144,665.2톤(10.5%↓), 수출액 23,236.4만 달러(8.3%↓).

2005년 기업성격별 돼지고기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기업성격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국유기업	86,279.3	13,589.9	57,577.0	9,421.3	-33.3	-30.7
외자투자기업	24,723.4	4,172.7	19,288.6	3,632.2	-22.0	-13.0
- 중외 합자기업	8,182.6	1,535.2	8,663.2	1,877.1	5.9	22.3
- 외국 독자기업	16,540.8	2,637.5	10,625.5	1,755.1	-35.8	-33.5
공영기업	18,707.2	2,850.9	28,982.0	4,322.1	54.9	51.6
사영기업	161,551.3	25,344.5	144,665.2	23,236.4	-10.5	-8.3
합 계	291,261.2	45,958.0	250,512.8	40,612.0	-14.0	-11.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지역별 돼지고기 수출현황:

- 돼지고기 수출량 순위(1-5위): 사천(四川)성 64,210.7톤(16.2%↓), 흑룡강(黑龍江)성 51,662.1톤(13.7%↑), 하남(河南)성 34,713.8톤(24.7%↓), 산둥(山東)성 30,848.6톤(53.2%↓), 호남(湖南)성 29,750.4톤(62.7%↑).
- 돼지고기 수출액 순위(1-5위): 사천(四川)성 10,023.9만 달러(17.4%↓), 흑룡강(黑龍江)성 7,719.7만 달러(14.9%↑), 하남(河南)성 5,402.4만 달러(24.8%↓), 산둥(山東)성 5,031.7만 달러(51.6%↓), 호남(湖南)성 5,825.7만 달러(73.1%↑).

2005년 지역별 중국 돼지고기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지 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북경(北京)	3,971.5	604.4	1,362.5	233.6	-65.7	-61.3
하북(河北)	2,735.0	453.7	51.0	7.5	-98.1	-98.3
내몽고(內蒙古)	2,857.6	410.1	-	-	-	-
요녕(遼寧)	335.8	43.4	364.6	49.7	8.6	14.5
길림(吉林)	-	-	610.0	78.1	-	-
흑룡강(黑龍江)	45,431.7	6,716.3	51,662.1	7,719.7	13.7	14.9
상해(上海)	25.1	4.4	175.0	27.8	597.1	537.5
강소(江蘇)	2,666.8	400.5	243.5	46.0	-90.9	-88.5
절강(浙江)	2,383.3	513.0	4,727.3	1,024.0	98.3	99.6
안휘(安徽)	8,611.5	1,338.7	4,171.1	672.9	-51.6	-49.7
강서(江西)	34.5	6.2	-	-	-	-
산둥(山東)	65,901.2	10,404.9	30,848.6	5,031.7	-53.2	-51.6
하남(河南)	46,101.8	7,181.9	34,713.8	5,402.4	-24.7	-24.8
호북(湖北)	3.9	0.7	7.8	1.3	100.0	99.9
호남(湖南)	18,286.4	3,365.5	29,750.4	5,825.7	62.7	73.1
광둥(廣東)	7,676.9	1,234.1	9,550.6	1,757.5	24.4	42.4
광서(廣西)	2,933.5	437.0	2,275.0	329.5	-22.4	-24.6
중경(重慶)	4,665.6	708.0	11,131.2	1,734.9	138.6	145.0
사천(四川)	76,639.2	12,135.2	64,210.7	10,023.9	-16.2	-17.4
신강(新疆)	-	-	4,657.7	645.9		
합 계	291,261.3	45,958.0	250,512.9	40,612.1	-14.0	-11.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사과

○ 2005년 중국 사과 수출량은 824,049.8톤으로 전년대비 6.4% 증가, 수출액은 30,631.3만 달러로 전년대비 11.6% 증가, 단가는 전년대비 5% 증가.

○ 중국 사과 수출량이 1-5위인 국가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임, 그 중, 러시아에 대한 수출량은 중국 전체 사과 수출량의 15%를 차지하여 최대 수출국가임.

○ 대륙별 사과 수출 현황

- 수출량 : 아시아 650,933.6톤(12.9%↑), 유럽 164,378.1톤(13.1%↓), 아프리카 3,616.2톤(45.5%↑), 북미 3,191.7톤(25.3%↓), 남미 1,920.5톤(31.4%↑), 대양주 9.7톤(72.5↓).
- 수출액 : 아시아 23,684.6만 달러(21.2%↑), 유럽 6,397.8만 달러(12.7%↓), 아프리카 206.8만 달러(69.5%↑), 북미 261.6만 달러(33.0%↑), 남미 79.8만 달러(33.8%↑), 대양주 0.7만 달러(62.3%↓).

2005년 국가(지역)별 중국 사과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국가(지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아시아	576,679.1	19,543.7	650,933.6	23,684.6	12.9	21.2
북 미	4,272.1	390.4	3,191.7	261.6	-25.3	-33.0
대양주	35.2	1.9	9.7	0.7	-72.5	-62.3
남 미	1,461.5	59.7	1,920.5	79.8	31.4	33.8
유 럽	189,255.0	7,328.3	164,378.1	6,397.8	-13.1	-12.7
아프리카	2,485.9	122.0	3,616.2	206.8	45.5	69.5
합 계	774,188.8	27,446.0	824,049.8	30,631.3	6.4	11.6
ASEAN*	386,577.5	14,404.6	384,304.3	15,487.0	-0.6	7.5
EU 25개 국가*	75,095.5	4,234.0	37,679.1	2,293.4	-49.8	-45.8
EU 15개 국가*	74,593.7	4,205.0	37,373.8	2,273.2	-49.9	-45.9
중동*	30,510.0	1,554.3	30,513.7	1,666.0	0.0	7.2
CIS*	158,851.9	4,013.2	222,535.1	6,948.4	40.1	73.1

비고 : * 항목은 전문 통계항목으로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무역방식별 사과 수출 현황

- 일반무역방식 : 수출량 463,520.9톤(1.9%↑), 수출액 20,413.2만 달러(5.9%↑)
- 가공무역방식 : 수출량 6,951.9톤(48.3%↓), 수출액 415.7만 달러(54.7%↓).
- ※ 그 중, 원료 수입가공방식의 수출량 6,951.9톤(48.3%↑), 수출액 415.7만 달러(54.7%↓).
- 변경지역 소액무역방식: 수출량 353,436.0톤(16.0%↑), 수출액 9,798.7만 달러(36.0%↑).

2005년 무역방식별 사과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무역방식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일반무역	455,040.9	19,281.3	463,520.9	20,413.2	1.9	5.9
가공무역	13,447.4	918.0	6,951.9	415.7	-48.3	-54.7
- 원료 수입가공무역	13,447.4	918.0	6,951.9	415.7	-48.3	-54.7
변경지역 소액무역	304,564.8	7,206.6	353,436.0	9,798.7	16.0	36.0
물물교환무역	10.0	0.3	0.0	0.0	-100.0	-100.0
기타 무역	1,125.7	39.9	141.0	3.8	-87.5	-90.4
- 기타	889.8	32.2	53.7	0.8	-94.0	-97.4
- 보세창고 항구이전 화물	235.9	7.7	87.3	3.0	-63.0	-61.1
합 계	774,188.8	27,446.1	824,049.8	30,631.4	6.4	11.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기업성격별 사과 수출 현황

- 국유기업 : 수출량 118,286.3톤(23.4%↓), 수출액 4,099.5만 달러(11.0%↓).
- 외자투자기업 : 수출량 240,886.7톤(0.8%↓), 수출액 11,367.3만 달러(0.4%↑).
- ※ 그 중, 중외 합작기업의 수출량 3,507.6톤(17.2%↓), 수출액

172.9만 달러(0.1%↑), 중외 합자기업의 수출량 113,281.8톤(3.1%↓), 수출액 4,884.5만 달러(1.6%↓), 외국 독자기업의 수출량 124,097.3톤(2.0%↑), 수출액 6,309.9만 달러(2.1%↑).

- 공영기업 : 수출량 36,786.1톤(35.7%↓), 수출액 1,243.8만 달러(26.5%↓).
- 사영기업 : 수출량 428,090.7톤(33.9%↑), 수출액 13,920.7만 달러(41.6%↑).

2005년 기업성격별 사과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기업성격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국유기업	154,450.9	4,605.5	118,286.3	4,099.5	-23.4	-11.0
외자투자기업	242,823.5	11,318.5	240,886.7	11,367.3	-0.8	0.4
- 중외 합자기업	4,236.9	172.7	3,507.6	172.9	-17.2	0.1
- 중외 합자기업	116,918.6	4,965.7	113,281.8	4,884.5	-3.1	-1.6
공영기업	57,182.0	1,691.9	36,786.1	1,243.8	-35.7	-26.5
사영기업	319,732.5	9,830.1	428,090.7	13,920.7	33.9	41.6
합계	774,188.9	27,446.0	824,049.8	30,631.3	6.4	11.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지역별 사과 수출현황 :

- 사과 수출량 순위(1-5위) : 산둥(山東)성 360,919.2톤(3.7%↑), 신강(新疆)자치구 109,683.3톤(129.4%↑), 광서(廣西)자치구 89,211.0톤(1.0%↑), 흑룡강(黑龍江)성 74,620.9톤(15.1%↑), 내몽고(內蒙古)자치구 52,616.2톤(4.3%↑).
- 사과 수출액 순위(1-5위) : 산둥(山東)성 16,844.4만 달러(8.1%↑), 신강(新疆)자치구 3,461.9만 달러(232.2%↑), 광서(廣西)자치구 2,194.2만 달러(2.8%↑), 흑룡강(黑龍江)성 2,293.6만 달러(22.7%↑), 내몽고(內蒙古)자치구 1,205.5만 달러(39.3%↑).

2005년 지역별 중국 사과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지 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북경(北京)	1,378.6	67.8	364.7	13.3	-73.5	-80.4
천진(天津)	324.3	7.8	414.9	16.3	28.0	107.5
하북(河北)	5,553.3	272.7	2,327.5	95.0	-58.1	-65.2
산서(山西)	1,323.7	50.9	524.6	16.9	-60.4	-66.8
내몽고(內蒙古)	50,440.3	865.6	52,616.2	1,205.5	4.3	39.3
요녕(遼寧)	41,096.4	1,032.5	26,570.6	837.8	-35.3	-18.9
길림(吉林)	6,180.2	72.6	7,492.4	86.5	21.2	19.2
흑룡강(黑龍江)	64,837.0	1,870.0	74,620.9	2,293.6	15.1	22.7
상해(上海)	2,220.7	110.8	-	-	-	-
강소(江蘇)	497.5	13.6	2,287.0	51.7	359.7	278.9
절강(浙江)	223.7	11.0	2.5	0.1	-98.9	-99.3
안휘(安徽)	57.8	1.9	172.8	6.5	198.9	232.2
복건(福建)	2,709.3	53.8	1,356.2	36.3	-49.9	-32.5
산둥(山東)	348,179.7	15,582.2	360,919.2	16,844.4	3.7	8.1
하남(河南)	603.9	19.3	3,166.0	109.5	424.2	467.1
호남(湖南)	109.9	1.6	70.2	5.5	-36.1	244.4
광둥(廣東)	59,400.6	2,236.3	51,903.6	1,484.2	-12.6	-33.6
광서(廣西)	88,309.0	2,133.6	89,211.0	2,194.2	1.0	2.8
중경(重慶)	687.5	35.5	800.2	47.4	16.4	33.7
사천(四川)	40.0	1.1	40.1	1.6	0.4	50.1
운남(雲南)	25,986.2	615.4	10,602.1	243.8	-59.2	-60.4
섬서(陝西)	15,005.8	813.6	12,506.7	771.0	-16.7	-5.2
감숙(甘肅)	43.0	1.2	807.8	44.8	1,776.8	3,551.6
녕하(寧夏)	-	-	21.7	1.0	-	-
신강(新疆)	47,812.9	1,042.1	109,683.3	3,461.9	129.4	232.2
합 계	774,188.8	27,446.1	824,050.1	30,631.3	6.4	11.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사과주스

- 2005년 중국 사과주스 수출량은 648,507.3톤으로 전년대비 33.1% 증가, 수출액은 45,8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0.8% 증가, 단가는 전년대비 6% 증가.

- 중국 사과주스 수출량이 1-5위인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러시아임, 그 중, 미국에 대한 수출량은 중국 전체 사과주스 수출량의 35%를 차지하여 최대 수출국가임.

○ 대륙별 사과주스 수출 현황

- 수출량 : 유럽 262,283.9톤(132.9%↑), 북미 253,577.7톤(4.4%↓), 아시아 86,520.4톤(35.0%↑), 대양주 34,753.9톤(11.5%↓), 아프리카 10,619.5톤(157.5%↑), 남미 752.0톤(57.3%↓).
- 수출액 : 북미 18,591.4만 달러(3.6%↑), 유럽 17,112.0만 달러(154.3%↑), 아시아 6,935.3만 달러(40.7%↑), 대양주 2,417.6만 달러(4.8%↓), 아프리카 713.3만 달러(168.2%↑), 남미 50.3만 달러(56.7%↓).

2005년 국가(지역)별 중국 사과주스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국가(지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아시아	64,069.7	4,930.3	86,520.4	6,935.3	35.0	40.7
북 미	265,298.2	17,953.0	253,577.7	18,591.4	-4.4	3.6
대양주	39,273.4	2,539.0	34,753.9	2,417.6	-11.5	-4.8
남 미	1,761.4	116.2	752.0	50.3	-57.3	-56.7
유 럽	112,612.4	6,730.1	262,283.9	17,112.0	132.9	154.3
아프리카	4,123.6	266.0	10,619.5	713.3	157.5	168.2
합 계	487,138.7	32,534.6	648,507.4	45,819.9	33.1	40.8
ASEAN*	2,307.6	155.6	2,876.1	202.4	24.6	30.1
EU 25개 국가*	70,842.5	4,241.8	195,398.6	12,392.5	175.8	199.4
EU 15개 국가*	69,784.2	4,177.0	190,585.4	12,392.5	173.1	196.7
중동*	5,165.6	315.7	10,529.0	706.0	103.8	123.6
CIS*	40,415.7	2,407.8	65,651.3	4,331.8	62.4	79.9

비고 : * 항목은 전문 통계항목으로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무역방식별 사과주스 수출 현황

- 일반무역방식 : 수출량 187,917.2톤(49.7%↑), 수출액 19,657.4만 달러(56.4%↑)
- 가공무역방식 : 수출량 359,739.4톤(24.0%↑), 수출액 25,573.3만 달러(32.7%↑).
- ※ 그 중, 원료 수입가공방식의 수출량 359,739.4톤(24.0%↑), 수출액 25,573.3만 달러(32.7%↑).
- 변경지역 소액무역방식 : 수출량 278.3톤, 수출액 22.4만 달러.

2005년 무역방식별 사과주스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무역방식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일반무역	187,917.2	12,569.4	281,324.6	19,657.4	49.7	56.4
가공무역	290,088.5	19,271.5	359,739.4	25,573.3	24.0	32.7
- 원료 수입가공무역	290,088.5	19,271.5	359,739.4	25,573.3	24.0	32.7
변경지역 소액무역	0.0	0.0	278.3	22.4	0.0	0.0
기타 무역	9,133.1	693.6	7,164.9	567.0	-21.6	-18.3
- 보세창고 항구이전 화물	9,129.6	693.2	7,150.2	565.9	-21.7	-18.4
- 보세창고 수출입	3.6	0.4	14.7	1.1	310.9	173.5
합 계	487,138.8	32,534.5	648,507.2	45,820.1	33.1	40.8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기업성격별 사과주스 수출 현황

- 국유기업 : 수출량 230,062.5톤(78.5%↑), 수출액 15,560.2만 달러(87.0%↑).
- 외자투자기업 : 수출량 254,446.9톤(22.0%↑), 수출액 18,801.7만 달러(35.3%↑).
- ※ 그 중, 중외 합작기업의 수출량 2,832.3톤(11.2%↑), 수출액 202.3만 달러(21.5%↑), 중외 합자기업의 수출량 194,745.4톤(23.4%↑), 수출액 14,351.2만 달러(39.0%↑), 외국 독자기업

의 수출량 56,869.1톤(18.0%↑), 수출액 4,248.3만 달러 (24.7%↑).

- 공영기업 : 수출량 1,063.7톤(69.3%↓), 수출액 71.0만 달러 (69.0%↓).
- 사영기업 : 수출량 162,934.2톤(11.4%↑), 수출액 11,387.1만 달러(12.9%↑).

2005년 기업성격별 사과주스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기업성격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국유기업	128,863.6	8,322.5	230,062.5	15,560.2	78.5	87.0
외자투자기업	208,582.9	13,893.8	254,446.9	18,801.7	22.0	35.3
- 중외 합작기업	2,547.0	166.5	2,832.3	202.3	11.2	21.5
- 중외 합자기업	157,840.8	10,321.1	194,745.4	14,351.2	23.4	39.0
- 외국 독자기업	48,195.1	3,406.2	56,869.1	4,248.3	18.0	24.7
공영기업	3,459.9	228.9	1,063.7	71.0	-69.3	-69.0
사영기업	146,232.4	10,089.3	162,934.2	11,387.1	11.4	12.9
합 계	487,138.8	32,534.5	648,507.3	45,820.0	33.1	40.8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지역별 사과주스 수출현황:

- 사과주스 수출량 순위(1-5위) : 섬서(陝西)성 266,708.9톤(57.6%↑), 산둥(山東)성 165,645.4톤(6.4%↓), 북경(北京)시 59,911.4톤(109.6%↑), 감숙(甘肅)성 49,985.5톤(60.5%↑), 하남(河南)성 49,113.5톤(16.9%↑).
- 사과주스 수출액 순위(1-5위) : 섬서(陝西)성 18,384.6만 달러 (61.0%↑), 산둥(山東)성 12,552.3만 달러(4.9%↑), 북경(北京)시 4,161.0만 달러(125.4%↑), 감숙(甘肅)성 3,511.2만 달러 (61.5%↑), 하남(河南)성 3,267.0만 달러(23.4%↑).

2005년 지역별 중국 사과주스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지 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북경(北京)	28,583.4	1,846.1	59,911.4	4,161.0	109.6	125.4
천진(天津)	-	-	63.7	3.6	-	-
하북(河北)	2,702.7	178.2	1,251.8	83.8	-53.7	-52.9
산서(山西)	536.8	35.9	57.8	5.3	-89.2	-85.1
요녕(遼寧)	18,916.8	1,282.3	20,412.4	1,504.9	7.9	17.4
흑룡강(黑龍江)	16.5	1.6	888.8	77.5	5,286.8	4,618.0
상해(上海)	20.7	2.3	48.1	7.5	132.7	219.8
상해(上海)	20.7	2.3	48.1	7.5	132.7	219.8
강소(江蘇)	564.8	36.5	4,746.2	324.8	740.4	790.2
절강(浙江)	-	-	71.1	7.5	-	-
안휘(安徽)	928.8	58.7	10,530.6	687.5	1,033.8	1,071.2
산둥(山東)	176,959.4	11,968.5	165,645.4	12,552.3	-6.4	4.9
하남(河南)	42,011.3	2,647.3	49,113.5	3,267.0	16.9	23.4
광둥(廣東)	15,400.2	866.1	16,390.9	1,058.8	6.4	22.3
해남(海南)	-	-	19.8	1.8	-	-
섬서(陝西)	169,180.6	11,418.4	266,708.9	18,384.6	57.6	61.0
감숙(甘肅)	31,144.6	2,173.7	49,985.5	3,511.2	60.5	61.5
신강(新疆)	172.2	18.9	2,661.4	181.0	1,445.5	858.8
합 계	487,138.8	32,534.5	648,507.3	45,820.1	33.1	40.8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소시지

○ 2005년 중국 소시지 수출량은 63,094.4톤으로 전년대비 1.4% 증가, 수출액은 50,815.6만 달러로 전년대비 0.8% 증가,

○ 중국의 주요 소시지 수출시장은 독일, 미국, 폴란드, 일본임. 그 중, 독일에 대한 수출액은 1.41억 달러로 전년대비 128.2% 증가.

○ 대륙별 소시지 수출 현황

- 수출량 : 유럽 34,242.5톤(15.1%↑), 북미 20,070.5톤(1.7%↑),

아시아 4,644.0톤(29.2%↑), 아프리카 4,116.8톤(31.7%↓), 남미 20.5톤(86.8%↓).

- 수출액 : 유럽 30,593.8만 달러(40.0%↑), 북미 8,647.9만 달러(2.4%↓), 아시아 7,853.7만 달러(39.0%↓), 아프리카 3,709.4만 달러(45.1%↓), 남미 10.6만 달러(75.1%↑).

2005년 국가(지역)별 중국 소시지 수출현황

(단위: 톤, 만 달러)

국가(지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아시아	6,562.2	12,883.2	4,644.0	7,853.7	-29.2	-39.0
북 미	19,728.7	8,863.6	20,070.5	8,647.9	1.7	-2.4
대양주	7.8	3.4	-	-	-	-
남 미	155.4	42.8	20.5	10.6	-86.8	-75.1
유 럽	29,742.0	21,845.8	34,242.5	30,593.8	15.1	40.0
아프리카	6,031.9	6,762.5	4,116.8	3,709.4	-31.7	-45.1
합 계	62,228.0	50,401.3	63,094.3	50,815.4	1.4	0.8
ASEAN*	1,410.9	923.4	1,373.6	908.1	-2.6	-1.7
EU 25개 국가*	27,379.6	20,022.4	32,741.8	29,006.2	19.6	44.9
EU 15개 국가*	15,568.5	10,042.1	24,680.8	21,707.6	58.5	116.2
중동*	5,008.2	7,577.2	1,483.9	2,518.9	-70.4	-66.8
CIS*	1,573.5	856.4	468.3	348.6	-70.2	-59.3

비고 : * 항목은 전문 통계항목으로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무역방식별 소시지 수출 현황

- 일반무역방식 : 수출량 35,384.3톤(3.7%↓), 수출액 41,345.0만 달러(0.4%↓)

- 가공무역방식 : 수출량 27,659.7톤(8.7%↑), 수출액 9,446.6만 달러(6.2%↑).

※ 그 중, 원료 수입가공방식의 수출량 2,056.4톤(5.2%↓), 수출액 1,947.6만 달러(1.8%↑),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량 25,603.3톤(10.0%↑), 수출액 7,499.1만 달러(7.4%↑).

2005년 무역방식별 소시지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기업성격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일반무역	36,758.1	41,503.4	35,384.3	41,384.3	-3.7	-0.4
가공무역	25,453.4	8,894.6	27,659.7	9,446.6	8.7	6.2
- 원료 수입가공무역	2,169.8	1,912.7	2,056.4	1,947.6	-5.2	1.8
- 위탁가공무역	23,283.6	6,981.9	25,603.3	7,449.1	10.0	7.4
변경지역 소액무역	16.4	3.3	0.0	0.0	-100.0	-100.0
기타무역	0.0	0.0	50.4	23.8	0.0	0.0
- 보세창고 수출입	0.0	0.0	50.4	23.8	0.0	0.0
합 계	62,227.9	50,401.3	63,094.4	50,815.4	1.4	0.8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기업성격별 소시지 수출 현황

- 국유기업 : 수출량 10,115.2톤(27.2%↓), 수출액 10,789.5만 달러(26.5%↓).
- 외자투자기업 : 수출량 38,005.1톤(7.2%↑), 수출액 25,031.1만 달러(0.5%↑).
- ※ 그 중, 중외 합작기업의 수출량 7,012.8톤(27.7%↓), 수출액 1,910.6만 달러(53.9%↓), 중외 합자기업의 수출량 25,062.0톤(28.4%↑), 수출액 20,557.2만 달러(12.8%↑), 외국 독자기업의 수출량 5,930.3톤(5.0%↓), 수출액 2,563.3만 달러(1.4%↑).
- 공영기업 : 수출량 2,939.8톤(13.3%↓), 수출액 3,271.0만 달러(2.7%↓).
- 사영기업 : 수출량 12,034.4톤(26.7%↑), 수출액 11,723.9만 달러(57.1%↑).

2005년 기업성격별 소시지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기업성격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국유기업	13,886.7	14,680.1	10,115.2	10,789.5	-27.2	-26.5
외자투자기업	35,451.8	24,896.4	38,005.1	25,031.1	7.2	0.5
- 중외 합작기업	9,700.2	4,146.7	7,012.8	1,910.6	-27.7	-53.9
- 중외 합자기업	19,512.2	18,222.5	25,062.0	20,557.2	28.4	12.8
- 외국 독자기업	6,239.5	2,527.1	5,930.3	2,563.3	-5.0	1.4
공영기업	3,389.6	3,363.4	2,939.8	3,271.0	-13.3	-2.7
사영기업	9,499.9	7,461.5	12,034.4	11,723.9	26.7	57.1
합 계	62,228.0	50,401.4	63,094.5	50,815.5	1.4	0.8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지역별 소시지 수출현황 :

- 소시지 수출량 순위(1-5위) : 섬서(陝西)성 266,708.9톤(57.6% ↑), 산둥(山東)성 165,645.4톤(6.4% ↓), 북경(北京)시 59,911.4톤(109.6% ↑), 감숙(甘肅)성 49,985.5톤(60.5% ↑), 하남(河南)성 49,113.5톤(16.9% ↑).
- 소시지 수출액 순위(1-5위): 섬서(陝西)성 18,384.6만 달러(61.0% ↑), 산둥(山東)성 12,552.3만 달러(4.9% ↑), 북경(北京)시 4,161.0만 달러(125.4% ↑), 감숙(甘肅)성 3,511.2만 달러(61.5% ↑), 하남(河南)성 3,267.0만 달러(23.4% ↑).

2005년 지역별 중국 소시지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지 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북경(北京)	525.3	1,630.8	729.3	1,623.4	38.8	-0.5
천진(天津)	1,596.2	2,941.4	823.4	1,346.1	-48.4	-54.2
하북(河北)	4,692.3	7,115.4	4,459.8	6,979.4	-5.0	-1.9
내몽고(內蒙古)	141.5	410.4	128.8	278.0	-9.0	-32.3
요녕(遼寧)	220.7	62.1	336.8	73.4	52.6	18.2
흑룡강(黑龍江)	9.0	2.1	-	-	-	-

상해(上海)	16,847.4	8,734.4	18,044.2	10,040.8	7.1	15.0
강소(江蘇)	16,753.1	8,535.9	18,245.2	9,392.1	8.9	10.0
절강(浙江)	6,454.6	7,578.7	5,634.3	7,348.9	-12.7	-3.0
안휘(安徽)	724.9	514.0	516.9	413.4	-28.7	-19.6
강서(江西)	232.6	273.9	158.3	234.0	-32.0	-14.6
산둥(山東)	4,252.7	3,336.6	4,137.7	3,067.2	-2.7	-8.1
하남(河南)	970.8	1,668.1	844.4	1,467.4	-13.0	-12.0
호북(湖北)	142.5	99.1	209.5	144.6	47.0	45.9
호남(湖南)	2,476.3	1,236.6	2,100.8	1,389.1	-15.2	12.3
광둥(廣東)	147.3	27.9	227.3	72.7	54.4	160.1
중경(重慶)	2,223.2	1,333.0	2,797.0	2,181.2	25.9	63.6
사천(四川)	2,917.1	1,939.7	2,882.5	2,420.9	-1.2	24.8
운남(雲南)	21.3	9.4	25.5	14.8	19.6	57.3
감숙(甘肅)	210.4	708.8	269.7	876.1	28.1	23.6
청해(青海)	69.1	239.7	115.6	396.0	67.4	65.2
닝하(寧夏)	28.5	81.9	9.1	24.8	-68.2	-69.7
신강(新疆)	570.9	1,921.3	397.6	1,031.2	-30.4	-46.3
합 계	62,227.7	50,401.2	63,093.7	50,815.5	1.4	0.8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품목별 소시지 수출 현황

- 돼지고기 소시지 : 수출량 48,538.7톤(0.9%↑), 수출액 26,982.7만 달러(13.8%↑), 단가 0.6만 달러(12.9%↑).
- 면양고기 소시지 : 수출량 12,932.3톤(11.6%↑), 수출액 20,930.9만 달러(5.5%↑), 단가 1.6만 달러(15.4%↓).
- 산양고기 소시지 : 수출량 1,240.7톤(43.3%↓), 수출액 2,520.3만 달러(40.8%↑), 단가 2.0만 달러(4.5%↑).
- 기타 동물고기 소시지 : 수출량 382.7톤(14.8%↑), 수출액 381.6만 달러(30.0%↑), 단가 1.0만 달러(13.3%↑).

2005년 품목별 소시지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품 목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단 가	수 량	금 액	단 가
면양고기 소시지	12,932.3	20,930.9	1.6	11.6	-5.5	-15.4
기타 동물고기 소시지	382.7	381.6	1.0	14.8	30.0	13.3
산양고기 소시지	1,240.7	2,520.3	2.0	-43.3	-40.8	4.5
돼지고기 소시지	48,538.7	26,982.7	0.6	0.9	13.8	12.9
합 계	63,093.7	50,815.5		1.4	0.8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새우산품

○ 2005년 중국 새우산품 수출량은 94,142.6톤으로 전년대비 20.6% 하락, 수출액은 35,975.3만 달러로 전년대비 19.6% 하락.

○ 대륙별 새우산품 수출 현황

- 수출량 : 아시아 67,705.6톤(24.6%↓), 유럽 10,543.6톤(1,846.7%↑), 북미 9,998.7톤(56.6%↓), 대양주 3,011.8톤(8.5%↓), 남미 2,771.2톤(52.1%↑), 아프리카 112.2톤(11.4%↓).
- 수출액 : 아시아 23,801.3만 달러(21.5%↓), 북미 5,104.0만 달러(56.4%↓), 유럽 4,107.0만 달러(1,918.7%↑), 대양주 1,537.6만 달러(1.2%↓), 남미 1,385.7만 달러(57.2%↓), 아프리카 39.7만 달러(12.1%↑).

2005년 국가(지역)별 중국 새우산품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국가(지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아시아	89,775.2	30,333.7	67,705.6	23,801.3	-24.6	-21.5
북 미	23,019.0	11,711.2	9,998.7	5,104.0	-56.6	-56.4
대양주	3,292.2	1,556.3	3,011.8	1,537.6	-8.5	-1.2
남 미	1,821.5	881.4	2,771.2	1,385.7	52.1	57.2
유 럽	541.6	203.5	10,543.0	4,107.0	1,846.7	1,918.7
아프리카	126.6	45.1	112.2	39.7	-11.4	-12.1
합 계	118,576.1	44,731.2	94,142.5	35,975.3	-20.6	-19.6
ASEAN*	18,271.0	7,779.0	3,458.3	1,690.2	-81.1	-78.3
EU 25개 국가*	530.0	201.3	10,526.9	4,101.8	1,886.3	1,938.0
EU 15개 국가*	530.0	201.3	10,526.9	4,101.8	1,886.3	1,938.0
중동*	243.4	84.7	717.4	262.0	194.7	209.4
CIS*	11.6	2.2	8.7	1.8	-25.4	-17.4
한국*	25,817.6	3,844.8	21,037.9	3,466.9	-18.5	-9.8

비고 : * 항목은 전문 통계항목으로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무역방식별 새우산품 수출 현황

- 일반무역방식 : 수출량 78,662.1톤(24.6%↑), 수출액 28,941.3만 달러(24.4%↑)
- 가공무역방식 : 수출량 7,259.3톤(8.9%↓), 수출액 5,129.5만 달러(2.0%↑).
- ※ 그 중, 원료 수입가공방식의 수출량 1,790.5톤(39.7%↓), 수출액 1,609.5만 달러(26.6%↓),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량 5,468.8톤(9.5%↑), 수출액 3,520.1만 달러(24.0%↑).
- 변경지역 소액무역방식 : 수출량 3.5톤, 수출액 0.4만 달러.

2005년 무역방식별 새우산품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무역방식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일반무역	104,257.6	38,302.7	78,662.1	28,941.3	-24.6	-24.4
가공무역	7,966.6	5,030.6	7,259.3	5,129.5	-8.9	2.0
- 원료 수입가공무역	2,970.3	2,191.5	1,790.5	1,609.5	-39.7	-26.6
- 위탁가공무역	4,996.3	2,839.2	5,468.8	3,520.1	9.5	24.0
변경지역 소액무역	0.0	0.0	3.5	0.4	0.0	0.0
기타 무역	6,351.9	1,397.9	8,217.7	1,904.0	29.4	36.2
- 기타	5,094.5	1,258.6	6,203.9	1,720.7	21.8	36.7
- 보세창고 항구이전 화물	1,244.2	138.3	1,929.2	173.6	55.1	25.5
- 보세창고 수출입	13.2	1.0	84.6	9.7	539.2	908.5
합 계	118,576.1	44,731.2	94,142.5	35,975.3	-20.6	-19.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기업성격별 새우산품 수출 현황

- 국유기업 : 수출량 16,196.9톤(26.9%↓), 수출액 4,853.9만 달러(14.5%↓).
- 외자투자기업 : 수출량 39,302.1톤(17.5%↓), 수출액 17,764.4만 달러(21.2%↓).
- ※ 그 중, 중외 합작기업의 수출량 1,162.9톤(18.2%↑), 수출액 637.7만 달러(31.5%↑), 중외 합자기업의 수출량 25,542.8톤(22.8%↑), 수출액 11,061.8만 달러(30.4%↑), 외국 독자기업의 수출량 12,596.4톤(7.2%↑), 수출액 6,065.0만 달러(1.8%↑).
- 공영기업 : 수출량 6,045.8톤(13.5%↑), 수출액 2,223.9만 달러(4.4%↑).
- 사영기업 : 수출량 32,597.8톤(25.0%↓), 수출액 11,133.1만 달러(22.5%↓).

2005년 기업성격별 새우산품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기업성격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국유기업	22,150.1	5,673.9	16,196.9	4,853.9	-26.9	-14.5
외자투자기업	47,660.9	22,554.0	39,302.1	17,764.4	-17.5	-21.2
- 중외 합작기업	983.8	484.9	1,162.9	637.7	18.2	31.5
- 중외 합자기업	33,106.7	15,894.9	25,542.8	11,061.8	-22.8	-30.4
- 외국 독자기업	13,570.4	6,174.2	12,596.4	6,065.0	-7.2	-1.8
공영기업	5,326.9	2,129.1	6,045.8	2,223.9	13.5	4.4
사영기업	43,438.1	14,374.2	32,597.8	11,133.1	-25.0	-22.5
합 계	118,576.0	44,731.2	94,142.6	35,975.3	-20.6	-19.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지역별 새우산품 수출현황:

- 새우산품 수출량 순위(1-5위): 광둥(廣東)성 36,838.5톤(23.8% ↓), 절강(浙江)성 32,384.1톤(14.3% ↓), 산둥(山東)성 8,066.3톤(2.8% ↑), 요녕(遼寧)성 3,397.1톤(58.3% ↓), 복건(福建)성 3,018.4톤(6.4% ↓).
- 새우산품 수출액 순위(1-5위): 광둥(廣東)성 15,079.4만 달러(23.3% ↓), 절강(浙江)성 9,583.1만 달러(19.9% ↓), 산둥(山東)성 3,900.2만 달러(10.7% ↑), 요녕(遼寧)성 1,858.6만 달러(44.3% ↓), 해남(海南)성 1,745.1만 달러(9.1% ↓).

2005년 지역별 중국 새우산품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지 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북경(北京)	330.5	350.4	621.3	688.1	88.0	96.4
천진(天津)	101.4	59.4	65.1	39.1	-35.8	-34.3
하북(河北)	3,518.1	258.4	1,603.3	180.3	-54.4	-30.2
요녕(遼寧)	8,150.1	3,338.8	3,397.1	1,858.6	-58.3	-44.3
길림(吉林)	42.0	21.8	-	-	-	-
흑룡강(黑龍江)	0.0	0.0	3.5	0.4	29,416.7	35,783.3

상해(上海)	2,148.5	869.8	2,506.0	740.3	16.6	-14.9
강소(江蘇)	1,087.7	357.5	599.3	174.4	-44.9	-51.2
절강(浙江)	37,807.6	11,965.0	32,384.1	9,583.1	-14.3	-19.9
안휘(安徽)	131.6	50.1	95.1	38.1	-27.7	-23.9
복건(福建)	3,225.7	1,103.8	3,018.4	761.1	-6.4	-31.0
강서(江西)	-	-	4.7	0.4	-	-
산둥(山東)	7,850.4	3,523.0	8,066.3	3,900.2	2.8	10.7
하남(河南)	268.3	73.3	173.2	34.8	-35.5	-52.6
호북(湖北)	988.7	242.4	359.9	84.4	-63.6	-65.2
호남(湖南)	8.6	3.7	0.0	0.0	-99.9	-100.0
광둥(廣東)	48,352.8	19,670.6	36,838.5	15,079.4	-23.8	-23.3
광서(廣西)	1,011.6	873.6	1,265.1	985.4	25.1	12.8
광서(廣西)	1,011.6	873.6	1,265.1	985.4	25.1	12.8
해남(海南)	3,320.7	1,918.9	2,804.1	1,745.1	-15.6	-9.1
운남(雲南)	231.7	50.8	337.4	82.0	45.6	61.4
닝하(寧夏)	-	-	0.0	0.0	-	-
합 계	118,576.0	44,731.3	94,142.4	35,975.2	-20.6	-19.6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말린 뱀장어

○ 2005년 중국 말린 뱀장어 수출량은 43,439.2톤으로 전년대비 30.3% 하락, 수출액은 57,682.8만 달러로 전년대비 20.7% 하락.

○ 대륙별 말린 뱀장어 수출 현황

- 수출량 : 아시아 40,258.3톤(31.6%↓), 북미 1,447.3톤(15.0%↓), 유럽 617.0톤(567.1%↓), 대양주 116.8톤(48.6%↑).
- 수출액 : 아시아 55,248.만 달러(22.0%↓), 북미 1,741.3만 달러(6.6%↑), 유럽 551.7만 달러(525.9%↑), 대양주 141.6만 달러(32.1%↓).

2005년 국가(지역)별 중국 말린 뱀장어 수출현황

(단위: 톤, 만 달러)

국가(지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아시아	58,837.3	70,830.4	40,258.3	55,248.1	-31.6	-22.0
북 미	1,703.4	1,633.0	1,447.3	1,741.3	-15.0	6.6
대양주	226.9	208.5	116.8	141.6	-48.6	-32.1
유 럽	92.5	88.1	617.0	551.7	567.1	525.9
합 계	60,860.1	72,760.0	42,439.4	57,682.7	-30.3	-20.7
ASEAN*	362.2	357.2	275.9	278.5	-23.8	-22.0
EU 25개 국가*	26.7	14.1	311.8	249.7	1,066.4	1,669.7
EU 15개 국가*	26.7	14.1	9.4	12.1	-65.0	-14.0
중동*	1.1	1.2	1.4	1.1	37.3	-9.0
CIS*	65.8	74.0	306.5	303.0	366.1	39.2
한국*	1,243.5	1,226.3	557.5	664.9	-55.2	-45.8

비고 : * 항목은 전문 통계항목으로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무역방식별 말린 뱀장어 수출 현황

- 일반무역방식: 수출량 19,884.9톤(23.7%↓), 수출액 26,941.7만 달러(15.4%↓)

- 가공무역방식: 수출량 22,482.2톤(35.2%↑), 수출액 30,708.7만 달러(24.9%↑).

※ 그 중, 원료 수입가공방식의 수출량 22,376.4톤(35.3%↓), 수출액 30,653.0만 달러(24.9%↓),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량 105.8톤(6.8%↓), 수출액 55.7만 달러(19.7%↓).

2005년 무역방식별 말린 뱀장어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무역방식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일반무역	26,069.8	31,830.9	19,884.9	26,941.7	-23.7	-15.4
가공무역	34,679.5	40,887.7	22,482.2	30,708.7	-35.2	-24.9
- 원료 수입가공무역	34,566.0	40,818.3	22,376.4	30,653.0	-35.3	-24.9
- 위탁가공무역	113.5	69.4	105.8	55.7	-6.8	-19.7
기타 무역	110.8	41.4	72.2	32.4	-34.8	-21.9

- 기타	44.0	4.4	40.0	9.0	-9.1	105.3
- 보세창고 항구이전 화물	66.8	37.1	32.2	23.4	-51.8	-36.8
합 계	60,860.1	72,760.0	42,439.3	57,682.8	-30.3	-20.7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기업성격별 말린 뱀장어 수출 현황

- 국유기업 : 수출량 17,271.7톤(34.6%↓), 수출액 24,569.9만 달러(21.7%↓).
- 외자투자기업 : 수출량 19,743.8톤(34.1%↓), 수출액 26,828.3만 달러(25.4%↓).
- ※ 그 중, 중외 합작기업의 수출량 3,541.4톤(8.2%↓), 수출액 5,041.0만 달러(5.2%↑), 중외 합자기업의 수출량 10,037.9톤(45.2%↓), 수출액 13,745.6만 달러(38.4%↓), 외국 독자기업의 수출량 6,164.5톤(20.9%↓), 수출액 8,041.6만 달러(9.3%↓).
- 공영기업 : 수출량 166.4톤(774.6%↑), 수출액 256.8만 달러(1,154.8%↑).
- 사영기업 : 수출량 5,234.1톤(17.4%↑), 수출액 6,020.1만 달러(12.2%↑).

2005년 기업성격별 말린 뱀장어 수출 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기업성격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국유기업	26,413.2	31,391.6	17,271.7	24,569.9	-34.6	-21.7
외자투자기업	29,969.0	35,982.1	19,743.8	26,828.3	-34.1	-25.4
- 중외 합작기업	3,859.7	4,790.2	3,541.4	5,041.0	-8.2	5.2
- 중외 합자기업	18,314.2	22,323.2	10,037.9	13,745.6	-45.2	-38.4
- 외국 독자기업	7,795.2	8,868.6	6,164.5	8,041.6	-20.9	-9.3
공영기업	19.0	20.5	166.4	256.8	774.6	1,154.8
사영기업	4,458.9	5,365.9	5,234.1	6,020.1	17.4	12.2
개인사업자	-	-	23.2	7.7	-	-
합 계	60,860.1	72,760.1	42,439.2	57,682.8	-30.3	-20.7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지역별 말린 뱀장어 수출현황:

- 말린 뱀장어 수출량 순위(1-5위): 광둥(廣東)성 36,838.5톤(23.8% ↓), 절강(浙江)성 32,384.1톤(14.3% ↓), 산둥(山東)성 8,066.3톤(2.8% ↑), 요녕(遼寧)성 3,397.1톤(58.3% ↓), 복건(福建)성 3,018.4톤(6.4% ↓).
- 말린 뱀장어 수출액 순위(1-5위): 광둥(廣東)성 15,079.4만 달러(23.3% ↓), 절강(浙江)성 9,583.1만 달러(19.9% ↓), 산둥(山東)성 3,900.2만 달러(10.7% ↑), 요녕(遼寧)성 1,858.6만 달러(44.3% ↓), 해남(海南)성 1,745.1만 달러(9.1% ↓).

2005년 지역별 중국 말린 뱀장어 수출현황

(단위: 톤, 만 달러)

지 역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북경(北京)	181.4	173.8	91.7	110.8	-49.4	-36.2
요녕(遼寧)	-	-	25.0	12.7	-	-
상해(上海)	554.7	522.4	134.5	161.3	-75.8	-69.1
절강(浙江)	2,933.1	3,645.3	4,450.8	5,484.4	51.7	50.5
복건(福建)	34,431.2	41,609.9	21,714.1	30,576.7	-36.9	-26.5
강서(江西)	4,329.7	6,212.2	3,274.3	5,087.1	-24.4	-18.1
산둥(山東)	5,508.3	6,264.7	3,073.9	3,582.7	-44.2	-42.8
호북(湖北)	-	-	5.3	2.2	-	-
광둥(廣東)	12,921.7	14,331.6	9,669.6	12,665.0	-25.2	-11.6
합 계	60,860.1	72,759.9	42,439.2	57,682.9	-30.3	-20.7

자료출처: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나.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2005년)

1) 수출입 동향

☐ 수출입 개황

○ 2005년 중국 수산물 수출입은 계속 성장하였지만 성장세는 약화되었음.

- 2005년 중국 수산물 수출입 물량은 622.9만 톤으로 전년대비 15.4% 증가, 수출입액은 2004년보다 17.6% 증가한 120.1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입액(558.3억 달러)의 21.7%를 차지.
- 수출 : 수출량 257.0만 톤(6.2%↑)으로 수출량 증가폭은 2004년보다 6.5퍼센트 하락, 수출액 78.9억 달러(13.2%↑)로 수출액 증가폭은 2004년보다 13.8퍼센트 하락.
- 수입 : 수입량 365.9만 톤(22.4%↑)으로 수입량 증가폭은 2004년보다 5.8퍼센트 하락, 수입액 41.2억 달러(27.2%↑)로 수입액 증가폭은 2004년보다 3.4퍼센트 하락.
- 무역흑자 : 37.7억 달러로 2004년(37.4억 달러)보다 1.1% 증가.
- 수출단가 : 수산물 2,476달러/톤(7.8%↑). 그 중, 냉동어 조각 2,735달러/톤(10.3%↑).
- ※ 원료 냉동어 수입단가 1,392달러/톤(19.9%↑).

2000 ~ 2005년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 만, 톤, 억 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흑자
	절대치		증감(%)		절대치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2000	155.9	38.3	-	-	251.9	18.5	-	-	19.8
2001	197.5	41.8	26.7	9.1	231.4	18.7	-8.1	1.1	23.1
2002	210.8	46.9	6.7	12.2	249.1	22.7	7.6	21.4	24.2
2003	213.8	54.9	1.4	17.1	233.2	24.8	-6.4	9.3	30.1
2004	242.0	69.7	12.7	27.0	298.9	32.4	28.2	30.6	37.3
2005	257.0	78.9	6.2	13.2	365.9	41.2	22.4	27.2	37.7

자료출처 : 중국양식망(www.agri.gov.cn)

- 2005년 중국 수산물 수출액은 78.9억 억 달러로 농산물 수출액(271.8억 달러)에서 가장 많은 비중(29.0%)을 차지.

□ 무역방식

- 중국 자체로 생산한 수산물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64%를 차지, 원료 수입가공무역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36%를 차지.

※ 그 중, 자체 생산한 수산물의 수출량 165.7만 톤(0.1%↓), 수출액 50.5억 달러(5.4%↑), 원료수입 가공무역의 수출량 91.3만 톤(20%↑), 수출액 28.4억 달러(30%↑).

2005년 무역방식별 수산물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무역방식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자체 생산수출	165.9	47.9	165.7	50.5	-0.1	5.4
원료수입 가공무역	76.1	21.8	91.3	28.4	20.0	30.0
합 계	242.0	69.7	257.0	78.9	6.2	13.2

자료출처 : 중국양식망(www.agri.gov.cn)

□ 수출품목

- 가공방식 : 초급 냉동 수산물의 수출액은 59%를 차지, 수산물 가공제품의 수출액은 41%를 차지.

- 자체 생산수출방식의 주요 원료는 참새우, 뱀장어, 틸라피아(tilapia), 조기, 조개류 등 양식품목이며, 원료수입 가공무역방식의 주요 수출품목은 대구조각, 고등어조각과 오징어산품임.

- 뱀장어 : 수출량 약 10-11만 톤으로 국제시장의 75-83%를 차지, 일본에 대한 수출량은 4.9만톤, 수출액은 6.6억 달러로 일본시장에서 85% 이상 차지. 주요 수출지역은 광둥(廣東), 복건(福建), 강소(江蘇), 절강(浙江) 등 연해지역이며, 강서(江西), 귀주(貴州) 등 내륙지

역에서도 뱀장어를 양식하기 시작.

2005년 중국 뱀장어 및 그 제품의 대일본 수출현황

구 분	수출량(만 톤)	수출량 비중(%)	수출액(억 달러)	수출액 비중(%)
뱀장어구이	3.6	73.5	5.0	75.8
산 뱀장어	1.3	26.5	1.6	24.2
합 계	4.9	100.0	6.6	100.0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새우류 및 가공품: 중국 새우류 및 그 가공품의 무역액은 세계 수산물 무역액의 20%를 차지. 중국 새우 수출은 뚜렷한 가격우위가 있음.
- 조개류 : 중국 조개류 생산량은 세계 1위, 생산원가가 비교적 낮으며, 가격이 저렴하여 뚜렷한 수출가격 우위가 있지만 오염이 엄중하여 제품 품질문제가 존재함.
- 게류 : 현재 해수 게류의 양식규모가 비교적 작으며 국내시장도 비교적 커 수출규모를 형성하지 못하였음. 하천 게류는 중국 특유 품목으로 주요 소비자군은 화교이며 수출시장은 동남아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하천 게류의 주요 수출지역은 복건(福建)성임.
- 해수 양식어류: 중국 해수 양식어류에서 많은 품목은 수출할 수 있어 비교적 강한 시장경쟁력이 있음.

2005년 주요 수산물 품목의 수출액, 증감폭 및 구조

(단위 : 만 달러/%)

품 목	수출액(만 달러)	증감(%)	수출액에서의 비중(%)
활어	35,774.0	10.3	4.5
신선어, 냉어	17,266.0	-21.7	2.2
냉동어	241,712.4	26.6	30.6
신선어, 냉동어 조각	7,342.3	6.3	0.9
말린 물고기, 절인 물고기	20,680.4	10.9	2.6
갑각류 동물	50,752.4	-26.1	6.4

갑각류 동물	50,752.4	-26.1	6.4
연체동물	61,492.8	-7.3	7.8
제작 또는 보존 물고기	133,124.0	12.0	16.9
제작 또는 보존 갑각류 동물	184,569.9	31.6	23.4
합 계	75.3		95.4

자료출처 : 중국세관(www.customs.gov.cn)

□ 수출시장

- 수출시장의 구조는 큰 변화가 없음. 일본, 한국,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여전히 주요 수출시장으로 중국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79.2%를 차지하여 비중은 2004년(79.1%)과 비슷함.

2005년 국가(지역)별 중국 수산물 수출현황

(단위 : 만 달러)

구 분	2004년			2005년		
	수출액	증감(%)	비중(%)	수출액	증감(%)	비중(%)
전체 수출액	69.7	27.0	100.0	78.9	13.2	100.0
그 중 : 일본	28.5	29.6	40.9	28.3	-0.7	35.9
미국	9.6	-4.4	13.8	12.5	46.9	17.9
한국	9.9	29.1	14.2	9.4	-5.1	11.9
EU	7.1	31.5	10.2	10.7	50.7	13.6
위 4개국 합계	55.1	-	79.1	62.5	-	79.2

자료출처 : 중국세관(www.customs.gov.cn)

□ 수출지역

- 수산물 수출액 1-5위 지역은 산둥(山東), 광둥(廣東), 요녕(遼寧), 절강(浙江), 복건(福建) 등 5개 연해 지역으로 중국 수산물 수출액의 90%를 차지.

※ 그 중, 산둥(山東)성의 주요 수출품목은 원료수입 가공무역방식의 어류조각과 조개류로 수출액의 비중은 35%를 차지.

※ 광둥(廣東)성의 주요 수출품목은 참새우, 틸라피아(tilapia) 등 양식 수산물로서 수출액은 계속 2위를 차지.

※ 강서(江西)성, 호북(湖北)성과 길림(吉林)성의 수산물 수출액은 내륙지역에서 1-3위를 차지.

□ 수입현황

- 2005년 중국 수산물 수입량은 365.9만 톤이며, 그 중, 원료수입 가공 무역방식의 원료 143만 톤과 어분 158만 톤을 제외하면 실제로 수입한 식용 수산물은 65만 톤(원양 어로 수산물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2004년보다 약 10만 톤 증가.

□ 수출입 가격

- 평균 수출가격은 3,071달러/톤으로 2004년보다 6.7% 향상.
 - ※ 그 중, 활어, 생선, 냉동어, 조개류, 해조류 등 수출가격 인상폭은 10~30%이며, 새우, 게류 제품의 수출가격은 안정된 상태에서 약간 하락되었으며 절여 말린 제품의 수출가격은 2004년보다 10% 하락.
- 평균 수입가격은 1,126달러/톤으로 2004년보다 3.8% 향상.
 - ※ 그 중, 어분의 수입가격은 기본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원료수입 가공 무역방식의 원료의 수입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2% 향상, 식용 수산물의 수입가격은 전년대비 7% 향상.

2) 주요 특징

□ 반덤핑의 도전에 대응, 가공능력이 향상.

○ 2005년 초에 미국은 중국의 초급 냉동 새우산품에 대한 고액 반덤핑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여 중국 냉동 새우의 수출이 하락.

※ 2005년 냉동 새우산품의 수출량: 3.9만 톤(26%↑). 수출액 2.1억 달러(23%↑)

○ 무역장벽의 영향을 받아 일부 기업은 제품구조의 조절, 가공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빵 새우, 삶은 새우, 맛 조림 새우의 생산능력이 대폭 향상. 새우 가공으로 인하여 어류, 해조류, 조개류 제품의 가공업의 발전을 촉진.

※ 2005년 가공 수산물의 수출 비중은 43%로 2004년보다 약 6퍼센트 향상.

□ 김은 무역장벽을 뚫고 일본으로 처음 수출.

○ 2005년 중국의 김 수출량 2,800여 톤, 수출액 2,370만 달러.

○ 강소(江蘇)성, 절강(浙江)성, 산둥(山東)성 등 지역의 김 양식업과 가공업의 발전을 촉진.

□ 유럽연합(EU)은 중국 수산물의 세 번째 수출시장으로 됨.

○ 2002년 초, 유럽연합(EU)은 chloromycetin(클로로마이세틴)사건으로 중국 동물성 식품의 통관을 금지. 2005년 정부와 기업은 유럽연합(EU)의 표준을 엄격하게 실행.

○ 2005년 유럽연합(EU)에 대한 중국 수산물 수출액은 10.7억 달러로 역사 최고 기록을 달성. 그 중, 중국 자체 수산물(담수 왕새우, 참새우, 냉동어 등)의 수출량 10.6만 톤(45%↑), 수출액 3.6억 달러(86%↑).

○ 2005년 유럽연합(EU)은 한국을 초과하여 중국 수산물의 세 번째 수출 시장으로 부상.

□ 특색 수산물의 수출 규모 형성.

○ 뱀장어, 참새우, 조개류, 틸라피아(tilapia), 조기, 하천 게 등 6개 경쟁력이 있는 양식품목의 수출은 여전히 주요 부분을 차지.

※ 2005년 수출량은 69만 톤으로 중국 전체 수산물 수출량의 26.8%를 차지, 수출액은 30.5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38.6%를 차지, 중국 자체 어업자원 수출액의 60%를 차지.

○ 각 지역의 특색 수산물 수출을 적극적으로 촉진, 특색 제품산업을 가속화.

※ 대련(大連)시의 미역 수출량 2.4만 톤, 미역 수출액 4,300만 달러로 중국 미역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

※ 강소(江蘇)성의 담수 왕새우, 김, 진주의 수출액은 중국 수산물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

※ 산둥(山東)성의 활어는 주로 한국에 수출, 광둥(廣東)성의 활어는 주로 홍콩에 수출.

※ 절강(浙江)성은 자체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어로 신선한 새우를 대량으로 유럽연합(EU)국가에 수출.

※ 내륙지역은 주로 반점 붕 메기 등 각종 어류, 담수 왕새우를 수출.

□ 지역 경쟁력을 발휘하여 가공무역은 성장세를 유지.

○ 약 10년간의 노력을 거쳐 산둥(山東)성과 요녕(遼寧)성은 세계 최대 물

고기조각의 가공기지로 부상.

※ 산둥(山東)성: 수산물 원료수입 가공무역과 위탁가공무역의 수출량 60만 톤(17%↑), 수출액 19억 달러(31%↑).

※ 요녕(遼寧)성: 수산물 원료수입 가공무역과 위탁가공무역의 수출량 23만 톤(36.0%↑), 수출액 6.3억 달러(43.0%↑).

□ 정부의 각종 지원조치.

○ 수산물의 수출은 수출형 어업의 발전원칙으로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

○ 2005년 중국 농업부는 수출형 수산물의 양식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 수산물 가공단지와 가공 시범 기업을 확정.

○ 정부는 중국 국제어업박람회를 지원, 약 100개 기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세계 어업전시회에 참가.

○ 광둥(廣東)성은 "중대한 과학기술로 발전", "한 마리 물고기 공정", "수출 시범 기지의 건설" 등 프로젝트로 해마다 1,000여만 위안을 수산물 수출가공업에 지원.

○ 요녕(遼寧)성은 어업 발전계획에 의하여 중점으로 어업의 대외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계획.

○ 호북(湖北)성은 성(省)급 수산물 수출 프로모션회의를 개최하여 수출형 담수 왕새우와 늪 새우의 양식을 보급.

3) 수출상 문제점

☐ 약물 잔류문제

- 약물 잔류문제는 중국 수산물 수출을 제한하는 첫 번째 문제이며 주요 원인임.

☐ 낮은 국제화 수준

- 2005년 국제 수산물 무역액은 약 800억 달러 좌우이지만 중국은 9.9%에 불과.

☐ 수출시장 집중

- 2005년 중국 수산물은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었지만 일본, 미국, 한국 유럽연합 등 4개 국가와 지역이 79.2%를 차지.

☐ 수출품목 단일

- 수출구조가 합리하지 않으며 제품 다양화 개발이 부족. 주요 수출품목은 뱀장어, 참새우, 저가 냉동어와 신선어.

☐ 계절성 생산과 국제시장의 수요의 모순.

- 수산물의 계절성 생산으로 국제시장의 수요와 공급 조절 난이함.

□ 업종 조직화 수준이 낮음.

○ 관련 업계의 조직화 미흡으로 악성 경쟁이 해결되지 않았음.

다. 한·중 농산물 교역동향(2005년)

1) 농산물 수출입 현황

□ 수출현황

○ 2005년, 중국에 대한 한국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포함하지 않음)의 수출량은 16.9만 톤으로 2004년보다 7.4% 증가, 수출액은 1.85억 달러로 2004년보다 22.2% 증가.

2005년 한국 농·림·수산물의 대중국 수출현황

(단위 :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농산물	157.4	151.0	169.0	184.5	7.4	22.2
축산물	2.3	3.7	6.1	6.2	168.7	68.0
임산물	69.9	59.0	26.3	40.5	-62.4	-31.3
수산물	68.3	124.6	65.7	108.6	-3.9	-12.8
합 계	297.9	338.2	267.0	339.8	-10.4	0.5

비고 : 한국과 중국측 통계는 차이가 있음.

자료 : 유통공사 KATI

월별 한국 농·림·수산물의 대중국 수출현황

(단위: kg, UDS)

월 별	2004년(누계)		2005년(누계)		증감(%)	
	수량(kg)	금액(UDS)	수량(kg)	금액(UDS)	수 량	금 액
01월	18,005,285	17,962,144	16,730,240	30,828,356	-7.1	71.6
1~2월	38,594,849	37,494,238	32,361,132	48,414,644	-16.2	29.1
1~3월	66,134,138	58,515,564	58,907,272	77,218,629	-10.9	32.0

1~4월	93,209,156	85,846,890	83,754,734	109,792,556	-10.1	27.9
1~5월	113,515,705	109,054,528	101,971,296	131,973,532	-10.2	21.0
1~6월	143,979,443	143,223,439	121,497,845	156,354,897	-15.6	9.2
1~7월	167,717,367	171,987,222	142,128,210	181,697,437	-15.3	5.6
1~8월	186,885,576	193,582,609	161,587,872	207,133,240	-13.5	7.0
1~9월	214,062,900	228,605,804	190,283,172	241,702,107	-11.1	5.7
1~10월	242,957,358	266,053,181	216,420,679	274,593,980	-10.9	3.2
1~11월	268,273,231	302,189,705	240,456,519	302,981,852	-10.4	0.3
1~12월	297,933,108	338,230,965	267,037,001	339,773,733	-10.4	0.5

비고 : 한국과 중국측 통계는 차이가 있음.

자료 : 유통공사 KATI

- 품목별 한국 농산물 수출현황 : 중국에 대한 한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 품목은 과자류, 당류, 화훼류, 면류임.

2005년 품목별 한국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현황

(단위 : kg, UDS)

구 분	2004년		2005년		증감(%)	
	수량(kg)	금액(USD)	수량(kg)	금액(USD)	수 량	금 액
곡류	5,422,348	2,078,374	5,753,216	2,135,053	6.1	2.7
서류	14,739	360,200	8,801	317,069	-40.3	-12.0
두류	675,420	106,908	74,280	19,641	-89.0	-81.6
전분	140,217	70,693	2,232,192	689,205	1,492.0	874.9
채유종실	17,960	7,477	75,450	47,429	320.1	534.3
과실류	3,078,463	2,421,940	4,450,984	3,906,392	44.6	61.3
기타 곡식류	7,318	237,613	11,318	312,617	54.7	31.6
채소류	2,049,085	5,891,024	3,128,405	8,145,687	52.7	38.3
화훼류	1,867,257	8,017,755	4,031,141	16,033,377	115.9	100.0
버섯류	18,640	15,992	64,413	48,315	245.6	202.1
기타 산식물	58,068	103,159	133,928	534,357	130.6	418.0
식물성 유지	779,745	1,226,354	622,763	1,275,014	-20.1	4.0
유지 가공품	2,751,699	2,949,421	2,718,654	2,778,656	-1.2	-5.8
농산물 납류	10,281	24,645	8,299	31,051	-19.3	26.0
식물성 액즙	169,282	727,288	204,651	1,054,978	20.9	45.1

박류	72,000	37,417	348,373	137,386	383.9	267.2
사료	4,576,115	3,513,991	2,130,010	1,903,274	-53.5	-45.8
기타식물성물질	791,404	828,187	835,780	879,943	5.6	6.2
기타 농부산물	29,325	16,460	2,284	1,730	-92.2	-89.5
빵류제조용	11,443	66,772	11,597	22,744	1.3	-65.9
효모류	114,914	510,313	180,182	807,995	56.8	58.3
소오스류	2,698,210	10,507,415	3,124,288	11,223,605	15.8	6.8
향신료	500	3,657	4,845	18,788	869.0	413.8
지방성 물질	35,383	88,094	7,594	23,077	-78.5	-73.8
기타식물성재료	0	0	0	0	-	-
커피류	1,998,270	11,642,422	2,329,194	14,903,856	16.6	28.0
코코아류	222,320	2,076,232	198,868	741,437	-10.5	-64.3
차류	35,013	146,539	23,633	193,107	-32.5	31.8
연초류	525,540	10,244,642	427,338	6,822,675	-18.7	-33.4
인삼류	46,996	5,011,113	48,346	4,751,208	2.9	-5.2
한약재	121,939	145,800	214,484	419,887	75.9	188.0
주류	4,307,516	6,621,404	4,696,693	6,658,160	9.0	0.6
당류	116,540,216	30,216,312	120,673,952	37,109,557	3.5	22.8
음료	1,150,892	1,415,853	1,963,458	2,694,467	70.6	90.3
과자류	4,569,197	25,095,450	5,870,014	40,965,599	28.5	63.2
면류	1,987,568	16,844,575	1,915,428	15,187,623	-3.6	-9.8
기타조제농산물	505,409	1,730,775	455,149	1,690,661	-9.9	-2.3
합 계	157,400,691	151,002,266	168,980,003	184,485,621	7.4	22.2

비고 : 한국과 중국측 통계는 차이가 있음.

자료 : 유통공사 KATI

□ 수입현황

- 2005년, 한국의 중국 농산물 수입량은 90.6만 톤으로 2004년보다 78.0% 증가, 수입액은 옥수수 등 곡류와 김치, 소스류, 주류 등으로 인하여 2004년보다 30.3% 급증한 31.6억 달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한국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가로 되었음.

2005년 중국 농·림·수산물의 한국 수입현황

(단위 :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04년		2005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농산물	3,824.6	1,125.2	7,815.5	1,757.0	104.3	56.2
축산물	23.4	38.3	39.9	71.2	70.5	85.9
임산물	745.0	347.7	695.9	388.3	-6.6	11.7
수산물	497.7	910.5	509.8	938.5	2.4	3.1
합 계	5,090.6	2,421.6	9,061.2	3,155.0	78.0	30.3

비고 : 한국과 중국측 통계는 차이가 있음.

자료 : 유통공사 KATI

2005년 지역별 중국 말린 뱀장어 수출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월 별	2004년(누계)		2005년(누계)		증감(%)	
	수량(kg)	금액(USD)	수량(kg)	금액(USD)	수 량	금 액
01월	1,126,789,381	297,559,390	722,755,555	282,038,503	-35.9	-5.2
1~2월	1,568,211,377	461,148,564	1,261,950,552	484,670,251	-19.5	5.1
1~3월	1,927,501,532	650,700,826	2,121,756,519	759,034,970	10.1	16.6
1~4월	2,261,009,583	828,129,808	2,871,507,441	1,026,311,098	27.0	23.9
1~5월	2,673,074,567	1,025,469,980	3,831,211,972	1,319,744,054	43.3	28.7
1~6월	3,051,120,517	1,214,565,212	4,785,845,432	1,608,113,097	56.9	32.4
1~7월	3,317,185,150	1,381,055,508	5,566,734,738	1,855,158,804	67.8	34.3
1~8월	3,585,028,499	1,537,590,017	6,272,079,825	2,105,251,220	75.0	36.9
1~9월	3,841,218,446	1,708,022,398	7,009,307,329	2,348,203,906	82.5	37.5
1~10월	4,142,466,868	1,919,599,951	7,591,988,610	2,573,587,765	83.3	34.1
1~11월	4,509,738,164	2,149,375,596	8,179,880,116	2,841,288,533	81.4	32.2
1~12월	5,090,632,565	2,421,615,481	9,061,157,020	3,154,985,594	78.0	30.3

비고 : 한국과 중국측 통계는 차이가 있음.

자료 : 유통공사 KATI

- 품목별 중국 농산물의 수입현황: 한국이 수입한 주요 중국 농산물 품목은 곡류, 채소류, 채유종실, 박류, 소오스류 등.

2005년 품목별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입현황

(단위 : kg, USD)

구 분	2004년		2005년		증감(%)	
	수량(kg)	금액(USD)	수량(kg)	금액(USD)	수 량	금 액
곡류	2,177,716,179	346,187,154	5,983,326,508	870,744,356	174.8	151.5
서류	2,284,004	1,216,951	3,680,492	1,909,325	61.1	56.9
두류	126,432,705	44,128,928	147,775,734	51,038,295	16.9	15.7
전분	53,930,180	17,993,985	51,502,915	16,711,000	-4.5	-7.1
채유종실	92,535,782	65,868,058	93,773,703	70,712,652	1.3	7.4
과실류	61,526,490	43,518,165	68,282,495	50,391,379	11.0	15.8
기타 곡식류	4,600,711	8,694,438	5,949,351	10,492,029	29.3	20.7
채소류	472,417,814	238,529,598	490,294,130	251,332,328	3.8	5.4
화훼류	949,621	1,819,684	1,122,869	3,187,692	18.2	75.2
버섯류	13,440,913	7,808,541	16,674,817	8,973,625	24.1	14.9
기타 산식물	8,007,508	6,370,789	7,972,956	7,378,806	-0.4	15.8
식물성 유지	7,832,883	12,024,919	17,289,029	18,844,846	120.7	56.7
유지 가공품	317,641	353,595	2,616,257	2,903,812	723.7	721.2
농산물 납류	13	6,155	1,206	8,182	9,176.9	32.9
식물성 액즙	612,339	7,238,165	679,298	9,008,178	10.9	24.5
박류	304,453,643	59,428,430	372,278,800	60,701,898	22.3	2.1
사료	211,105,727	38,587,063	206,478,082	40,129,844	-2.2	4.0
기타식물성물질	7,967,516	3,004,880	8,703,299	3,260,183	9.2	8.5
기타 농부산물	4,738,188	4,152,218	7,321,603	7,040,139	54.5	69.6
빵류제조용	186,129	209,513	516,018	838,026	177.2	300.0
효모류	693,497	1,056,496	1,224,441	1,608,962	76.6	52.3
소오스류	48,882,282	47,000,180	57,864,216	50,706,470	18.4	7.9
향신료	35,256	28,090	21,793	28,206	-38.2	0.4
지방성 물질	0	0	40,000	29,000	-	-
기타식물성재료	11,435,714	1,854,298	6,972,258	1,285,836	-39.0	-30.7
커피류	1,049,928	1,031,547	1,020,892	1,993,255	-2.8	93.2
코코아류	2,340,384	5,738,685	4,155,247	10,066,492	77.5	75.4
차류	367,614	716,079	592,075	2,645,510	61.1	269.4
연초류	10,408,685	16,134,701	9,894,037	16,655,081	-4.9	3.2
인삼류	169,668	4,084,802	243,690	4,728,616	43.6	15.8
한약재	30,915,749	33,206,708	30,809,431	35,152,103	-0.3	5.9
주류	16,840,628	7,747,394	44,361,195	23,256,122	163.4	200.2
당류	44,409,423	12,734,351	56,487,899	16,840,348	27.2	32.2
음료	3,664,662	2,851,938	4,058,304	2,824,640	10.7	-1.0
과자류	27,281,204	35,110,238	32,343,838	47,904,322	18.6	36.4
면류	52,626,145	32,320,809	56,190,702	36,818,243	6.8	13.9
기타조제농산물	22,422,466	16,429,878	22,982,973	18,849,281	2.5	14.7
합 계	3,824,599,295	1,125,187,425	7,815,502,555	1,756,999,085	104.3	56.2

비고: 한국과 중국측 통계는 차이가 있음.

자료 : 유통공사 KATI

2005년 품목별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입현황

(단위 : 톤, 만 달러)

구 분	2004년		2005년		증감(%)		순 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액C	
쌀	93,046.3	3,216.9	91,567.0	3,156.2	-0.7	19.6	3
콩씨꺼기	24,401.1	765.4	23,882.2	526.5	-2.1	-31.2	2
닭고기제품	1,938.9	697.2	8,642.6	2,556.0	345.7	266.6	3
끓인 죽순	608.4	47.0	982.5	77.0	61.5	64.0	3
새우	25,817.6	3,844.8	21,037.9	3,466.9	-18.5	-9.8	3
옥수수	1,318,339.5	17,192.8	5,897,295.3	74,947.7	347.3	335.9	1
한약재	28,578.4	2,914.6	29,899.6	3,394.0	4.6	16.5	3

비고 : 순위는 품목별 순위임. 한국과 중국측 통계는 차이가 있음.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2) 수산물 수출입현황

☐ 수출현황

○ 한국 수산물이 중국에 대한 수출량 6.6만 톤(3.9%↓), 수출액 1,1억 달러(12.8%↓).

※ 수출량 1-3위인 품목 : 어류 2,869.1톤(9.2%↑), 연체동물 2,515.8톤(18.9%↓), 해조류 735.5톤(1.4%↓).

※ 수출액 1-3위인 품목 : 어류 4,634.8만 달러(18.7%↑), 연체동물 4,261.1만 달러(21.3%↑), 수산부산물 984만 달러(58.6%↑).

※ 품목별 수출액의 비중 순위 : 어류 42.7%, 연체동물 39.2%.

※ 품목별 수출량의 비중 순위 : 어류 43.7%, 연체동물 38.3%.

2005년 품목별 한국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현황

(단위 : kg, USD)

구 분	2004년		2005년		증감(%)	
	수량(kg)	금액(USD)	수량(kg)	금액(USD)	수 량	금 액
어류	26,276,569	39,049,677	28,690,807	46,348,379	9.2	18.7
갑각류	589,954	2,588,742	321,720	1,196,178	-45.5	-53.8
연체동물	31,013,990	54,146,357	25,158,004	42,610,868	-18.9	-21.3
수생동물	5,248	112,850	33,255	408,285	533.7	261.8
환형동물	0	0	0	0	-	-
해조류	7,458,377	3,950,571	7,354,526	6,351,777	-1.4	60.8
수산부산물	1,914,766	23,778,773	831,429	9,849,549	-56.6	-58.6
한천	1,060	5,420	0	0	-100	-100
기타 수산 부산물	2,380	11,050	14,184	53,077	496.0	380.3
비식용 수산물	810,575	458,469	2,459,790	1,212,837	203.5	164.5
기타 수산물	264,883	475,570	803,733	578,015	203.4	21.5
합 계	68,337,802	124,577,479	65,668,448	108,608,965	-3.9	-12.8

비고 : 한국과 중국측 통계는 차이가 있음.

자료 : 유통공사 KATI

□ 수입현황

○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 수산물 수입량 5.1만 톤(2.4%↑), 수입액 9.4억 달러(3.1%↑).

※ 수출량 1-3위인 품목 : 어류 33,229.7톤(2.9%↑), 연체동물 9,692.1톤(3.6%↑), 갑각류 5,367.6톤(11.6%↓).

※ 수출액 1-3위인 품목: 어류 56,198.2만 달러(0.2%↓), 연체동물 16,877.1만 달러(12.7%↑), 갑각류 14,714.5만 달러(6.7%↓).

※ 품목별 수출액의 비중 순위: 어류 59.9%, 연체동물 18.0%, 갑각류 15.7%.

※ 품목별 수출량의 비중 순위: 어류 65.2%, 연체동물 19.0%, 갑각류 10.5%.

2005년 품목별 중국 수산물의 한국 수입현황

(단위 : kg, USD)

구 분	2004년		2005년		증감(%)	
	수량(kg)	금액(USD)	수량(kg)	금액(USD)	수 량	금 액
어류	323,064,644	563,071,373	332,297,325	561,982,428	2.9	-0.2
갑각류	60,690,578	157,637,954	53,675,594	147,145,438	-11.6	-6.7
연체동물	93,556,509	149,816,002	96,920,806	168,770,912	3.6	12.7
수생동물	2,446,699	2,946,974	2,799,492	4,200,688	14.4	42.5
환형동물	161,267	1,534,775	156,335	1,438,427	-3.1	-6.3
해조류	6,090,497	4,190,733	5,277,599	4,247,850	-13.3	1.4
수산부산물	3,000,198	27,850,708	4,053,302	44,797,931	35.1	60.9
한천	6,750	55,602	29,700	260,140	340.0	367.9
기타 수산부산물	47,500	106,314	61,868	134,958	30.2	26.9
비식용 수산물	1,361,288	2,325,109	1,636,083	3,337,083	20.2	43.5
기타 수산물	7,283,761	964,480	12,929,052	2,171,503	77.5	125.1
합계	497,709,691	910,500,024	509,837,156	938,487,358	2.4	3.1

비고 : 한국과 중국측 통계는 차이가 있음.

자료 : 유통공사 KATI

2. 관세·통관제도

가. 화물 수출입 관리제도

1) 화물 수출입 관리원칙

□ 화물 수출입의 기본적인 평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대외 무역 기본 정책임.

※ 중점 수입제품: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물자, 선진 기술, 설비, 핵심 부품 및 국내 부족한 중요한 원재료

□ 중국시장을 세계 각 국가와 지역에 개방함.

□ 중국은 주로 법률 방법, 경제 방법을 채택하며, 필요한 행정 방법을 보조적으로 채택하여 수출입 무역을 관리하며, 환율, 세율, 관세 등은 수출입을 조절하는 주요한 경제수단임.

※ 중국은 무역방식과 방법의 다양화원칙을 채택.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무역법”은 중국 화물 수출입 관리의 기본적인 제도를 확정하였음.

※ “대외 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31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를 발표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음.

□ 상무부는 “대외 무역법”과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 수출입무역을 주관함.

2) 화물 수입 관리제도

※ 중국이 화물 수입에 대한 관리는 수입 금지, 수입 제한과 자동 수입을 포함.

☐ 수입 금지의 화물범위

-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주는 화물
- 인체 생명 또는 건강에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을 금지하는 화물
-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화물
-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금지하여야 할 화물

※ 수입을 금지하는 화물 리스트는 국무원 상무부에서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절 및 발표함.

☐ 수입 제한의 화물범위

-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화물
- 국내 특정 산업을 건설 또는 가속화하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화물
- 어떠한 형식의 농업, 목축업, 어업제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화물
- 국가의 국제 금융지위와 국제 수지평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화물
-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화물

※ 수입을 제한하는 화물 리스트는 국무원 상무부에서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절 및 발표함. 수입을 제한하는 화물 리스트는 최소 정식 시행일의 21일 전에 발표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도 시행일 전에 발표해야 함.

※ 국가에서 수량 제한이 있다고 규정한 수입화물에 대해 할당 관리를 실행하며, 기타 수입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해 허가증 관리를 실행함.

☐ 자유롭게 수입하는 화물은 제한을 받지 않음.

※ 화물 수입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수요에 의하여 상무부는 일부 자유롭게 수입하는 화물에 대해 자동 수입 허가증 관리를 실행함.

3) 화물 수출 관리제도

※ 중국이 화물 수출에 대한 관리는 수출 금지, 수출 제한과 자동 수출을 포함.

☐ 수출 금지의 화물범위

-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주는 화물
- 인체 생명 또는 건강에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을 금지하는 화물
-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화물
-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을 금지하여야 할 화물

※ 수출을 금지하는 화물 리스트는 국무원 상무부에서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절 및 발표함.

□ 수출 제한의 화물범위

-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화물
-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거의 소모한 국내자원을 유효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화물
- 수출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시장규모가 제한되었을 경우
-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 ※ 수출을 제한하는 화물 리스트는 국무원 상무부에서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절 및 발표함. 수출을 제한하는 화물 리스트는 최소 정식 시행일의 21일 전에 발표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도 시행일 전에 발표해야 함.
 - ※ 국가에서 수량 제한이 있다고 규정한 수출화물에 대해 할당 관리를 실행하며, 기타 수출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해 허가증 관리를 실행함.

□ 자유롭게 수출하는 화물은 제한을 받지 않음.

나. 세관 관리제도

1) 세관 관리체제

- ※ 중국은 1949년 10월 25일에 세관총서(海關總署)를 설립한 후 세관총서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며 직속 세관과 소속 세관이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수직식 지도체제를 구축하였다.
- ※ 중국 세관의 조직구조: 세관총서, 41개 직속 세관, 313개 소속 세관

※ 중국 세관의 주요 임무 : 수출입 화물의 감독관리, 관세 징수, 밀수 수사, 세관 통계 편제

□ 세관총서

○ 세관총서는 세관 감독관리와 행정법률 집행부서로서 국무원의 직속 기관이며 국무원의 지도를 받는다. 현재 광둥분서, 천진과 상해의 특파원 사무소를 설립하였다,

○ 세관총서의 내부구조 : 15개 부서, 6개 북경주재 직속 사업기관, 4개 사회단체, 1개 파견기관과 3개 국외기관

○ 주요 임무 : 전국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국가 관련 법규, 정책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을 지도 및 조직하며, 서비스 직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중국 현대화 건설을 촉진 및 보장.

□ 직속 세관과 소속 세관

○ 직속 세관 : 세관총서의 지도를 받으며 일정한 구역 범위 내의 세관업무를 책임지는 세관이며, 현재 41개 직속 세관(북경, 천진, 석가장, 태원, 후허호트, 만주리, 대련, 심양, 장춘, 하얼빈, 상해, 남경, 항주, Ning파, 합비, 복주, 하문, 남창, 청도, 정주, 무한, 장사, 광주, 심천, 공북, 산둥, 황포, 강문, 잠강, 남녕, 해구, 중경, 성도, 귀양, 곤명, 라사, 서안, 란주, 서녕, 은천, 우루무치)이 있다.

○ 소속 세관 : 직속 세관의 지도를 받으며 구체적인 세관업무를 처리하는 세관이며 현재 313개 소속 세관이 있다.

□ 밀수범죄 수색 공안기관

- 세관에 밀수범죄를 수색하는 공안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직 밀수행위 수색경찰을 배치하여 관할구역의 밀수범죄에 대한 수색, 구속, 체포, 예심을 책임진다.

2) 세관 법률체계

※ 주요 세관 법률·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납세가격 심사결정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조례” 등.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 “세관법”은 세관이 출입국 운송수단, 화물, 물품을 감독관리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법률·법규로서 세관이 감독관리를 진행하는 법률근거이다.
- 1987년 1월 22일, 제6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 1987년 7월 1일, 발표 실행며, 2000년 7월 8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수정.
- “세관법”은 9장, 102조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조직 법률제도, 감독관리 법률제도, 관세 법률제도, 통계 법률제도, 법률 책임 제도가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 1985년 1월 8일, 국무원 제5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 1987년과 1992년, 국무원에서 수정, 2003년 11월 23일, 국무원에서 새로운 “관세조례”를 발표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 “관세조례”는 6장, 27조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수출입 화물 관세 세율의 설정과 적용, 수출입 화물의 납세가격 확정, 수출입 화물 관세의 징수 및 입국 물품의 수입세 징수 등 내용을 규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물품 수입세 세율표”는 관세의 세목, 세칙 번호와 세율을 규정하였으며 “관세조례”의 구성부분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조례

- 1995년 7월 5일, 국무원에서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조례”를 발표, 1995년 10우리 1일, 정식 실행, 2003년 11월 26일, 국무원 제30차 상무회의에서 새로운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조례”를 통과하여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
- 세관의 구체적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수하인, 송하인이 수출입 화물의 지적재산권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 권리 침해의 혐의가 있는 화물을 압수, 화물의 권리 침해상황과 수하인과 송하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권리 침해화물을 몰수, 권리 침해화물을 처리, 권리 침해 화물의 수하인과 송하인에 대한 처벌 등.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조례

○ 1997년 1월 3일, 국무원에서 발표 및 시행.

○ “세관 조사조례”는 세관 조사의 범위, 대상, 기한을 규정, 피조사인과 세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조사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 세관 조사기한 : 수출입 화물 통행 허가일로부터 3년 내 또는 보세 화물의 입국일로부터 출항 후의 연내 또는 수입 화물(감면)의 세관 감독관리 기한 내.

○ 세관 조사절차 : 조사 준비, 조사 통지, 조사 실시, 보고서 제출, 결론 발표, 조사 처리.

3) 세관 통관제도

□ 세관 감독관리제도

○ 세관 감독관리 범위

- 감독관리 지역범위 : (1) 세관을 설립한 항구, 정거장, 공항, 국경 대로, 국제우체국 교환국, (2) 세관 감독관리 업무가 있는 장소, (3) 세관을 설립하지 않았지만 국가의 비준을 받은 출입국 장소.
- 감독관리 대상범위: 교통수단, 화물과 물품.

○ 세관 감독관리 절차

- 일반무역 수출입 화물 : 통관 신고(서류 신고, 등록 신고, 서류 심사)-화물 검사확인-관세 징수-통행 허가.

- 가공무역 수출입 화물 : 등록 심사-서류 신고-화물 검사확인-최종
종결.

☐ 통관신청 등록·등기제도

○ 통관신청 개념

통관신청은 운송수단의 책임자,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 출입국 물품의 소유자가 세관에 출입국 수속을 밟는 과정이다.

○ 통관신청기관

통관신청기관은 세관의 심사를 받아 등록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세관에 운송수단, 화물, 물품의 출입국 수속을 밟을 수 있는 기관을 가리킨다.

○ 통관신청제도

통관신청제도는 세간이 통관신청인의 자격 심사, 비준과 통관신청의 행위에 대한 유효한 관리를 진행하는 업무제도이다.

다. 세관 관세제도

1) 관세 개황

☐ 관세 역할

- 국가 주권과 경제 이익을 보호, 재정수입 내원 중의 하나,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역할, 경제에 대한 조절역할

□ 관세 분류

- 징수대상에 따른 분류 : 정규 관세(수입관세, 수출관세와 국경 경과관세)와 특별세(반덤핑세와 반보조세)
- 관세 징수표준에 따른 분류 : 종가세, 종량세, 복합관세, 슬라이딩관세(滑準稅, sliding scale duty)
- 화물 국가별 차별화원칙에 따른 분류 : 최혜국 관세, 협정 관세, 특혜 관세와 일반 관세
-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재정 관세와 보호 관세

□ 관세 정책과 관세 감면

○ 관세 세율 인하 :

- 1992년 말~1999년 초, 수입 관세의 평균 세율은 42.5%에서 16.8%로 하락.
- 2002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WTO가입 시의 관세 감면 승낙을 이행하기 시작하여 평균 관세는 15.3%에서 12%로 하락, 2008년에 평균 관세는 10%로 하락.
※ 농산물(수산물을 포함하지 않음) 15.8%, 수산물 14.3%.

- 수입세칙 세율의 항목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가.(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특혜 세율, 일반 세율)
 - 2002년 1월 1일부터 700가지 원산지가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인 수입제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더 혜택적인 “방콕협정” 세율

을 적용.

- 2004년 1월 1일부터 “방콕협정”에 의하여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아, 라오스 등 5개 국가인 902개 세목 수입 상품에 대해 “방콕협정”세율을 적용.
- 원산지가 방글라데시아인 20개 세목의 수입 상품에 대해 특혜 세율을 적용.
- “중국-파키스탄 혜택 무역계획”에 의하여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수입 상품에도 “방콕협정”세율을 적용.
- 2004년, 원산지가 동남아연합 9개 국가(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부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인 일부 상품에 대해 “중국-ASEAN 자유무역구 ‘조기 수확’세율”을 적용.
- 2005년 7월 20일부터 원산지가 부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인 일부 상품에 대해 중국-ASEAN 자유무역구 협정 세율을 적용.

2) 세관 세칙

□ 2006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수출입 세칙”의 세목, 세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조절.

○ 수입 관세의 조절

- WTO가입 시 승낙한 관세 감면의무에 의한 수입 관세의 조절

※ “수입 세칙”에서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등 143개 세목의 최혜국 세율을 인하, 나머지 세목의 최혜국 세율은 불변. 조절 후의 2006년도 평균 관세는 9.9%.

- ※ 13개 비전(非全)세목 정보기술제품에 대해 계속 세관 검증관리를 실행.
- ※ 두유, 종려유, 유채유의 관세 쿼터를 취소하고 9%의 단일 수입 관세를 적용, 밀 등 8종류 45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계속 관세 쿼터 관리를 시행하며 관세 쿼터 세율은 불변. 쿼터 외 일정한 수량의 목화를 수입할 경우, 5%~40% 슬라이딩관세(滑準稅, sliding scale duty)를 적용, 그 중, 가공무역이 진행 중인 매뉴얼이 2006년에 내수수속을 밟았을 경우, 상기 세율을 적용.
- ※ 적외선 또는 헬륨(helium) 네온(neon) 레이저 필름 등 35개 세목의 종량세 또는 복합 관세의 세율을 조절, 나머지 20개 비종량세 세목에 대해 기존 세율을 적용.
- 그린란드(Greenland) 넵치류(Holibut) 등 264종류 수입 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적용.
- 중국이 관련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 혜택협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국가 또는 지역에 협정 세율을 적용.
 - ※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아와 라오스 등 5개 국가인 일부 상품에 대해“아태무역협정”의 협정 세율을 적용.
 - ※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일부 상품에 대해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구 “조기 수확”협정 세율을 적용.
 - ※ 원산지가 부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과 베트남인 일부 상품에 대해 중국-ASEAN 자유무역구“조기 수확”협정 세율을 적용.
 - ※ 원산지가 부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인 일부 상품에 대해 계속 200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 중국-ASEAN 자유무역구 협정 세율을 적용하지만 협정 세율이 최혜국 세율보다 높은 경우, 최혜국 세율을 적용.
 - ※ 원산지가 중국 홍콩이며 또한 원산지 표준 심사비준을 마친 일부

상품에 대해“ 0”세율을 적용.

※ 원산지가 중국 마카오이며 또한 원산지 표준 심사비준을 마친 일부 상품에 대해“ 0”세율을 적용.

- 중국이 관련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 혜택협정 및 국무원의 관련 결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특혜 세율을 적용.

※ 원산지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아인 일부 상품에 대해 특혜 세율을 적용.

※ 원산지가 수단 등 26개 아프리카 가장 발달하지 않은 국가인 일부 상품에 대해 특혜 세율을 적용.

- 일반 세율은 불변.

○ 수출 관세의 조절

- 수입 세칙의 세목에 따라 수출 세칙 세목을 조절하며 세율은 불변.

- 뱀장어 치어 등 일부 수출 상품에 대해 잠정 세율을 적용, 그 중, 일반 무역과 변경지역 소액무역수출의 요소(31021000)에 대해 계절성 잠정 세율로 징수(06년 1월 1일~9월 30일 세율은 30%, 10월 1일~12월 31일 세율은 15%), 일반 무역, 가공 무역과 변경지역 소액 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중량으로 계산하는 알루미늄 함량이 99.95% 이하인 비합금 알루미늄에 대해 5% 세율로 과세.

○ 세칙 세목의 조절

※ 세칙의 일부 세목에 대해 조절을 하며 조절 후의 세칙 세목은 7,605개로 2005년보다 55개 증가.

□ 세율의 적용

○ 중국 수입 세율 :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특혜 세율과 일반 세율 등 4

개 항목

- 최혜국 세율 : 원산지가 중국과 공동으로 최혜국 대우 조항을 적용하는 WTO 회원국가 또는 지역인 수입 화물, 또는 원산지가 중국과 상호 최혜국 대우 조항을 포함한 쌍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인 수입 화물에 적용.
- 협정 세율 : 원산지가 중국이 참가한 관세 혜택조건을 포함한 지역성 무역협정 국가 또는 지역인 수입 화물에 적용.
- 특혜 세율 : 원산지가 중국과 특수 혜택 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인 수입 화물에 적용.
- 일반 세율: 원산지가 상기 국가 또는 지역 외의 국가와 지역인 수입 화물에 적용.

- 중국 수입 세율 : 수출 세율 항목은 하나이며, 수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칙 중의 대부분 세목에 대해 수출 세율을 정하지 않았으며 수출 세율을 정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 수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품목별 주요 농산물(수산물) 관세율(2006년)

H.S코드	품목명	수입세율(%)			증치세 세율 (%)	수출 환세율 (%)	계량단위	감독 관리 조건
		최혜국	中巴	일반				
제3류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및기타수생무척추 동물							
03.01	활어							
0301.1000	· 관상어	17.5		80	13	5	마리/kg	
	· 기타활어							
	·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 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앙코링쿠스크리소가스터)							
0301.9110	· 치어	0		0	13	5	kg	AB
0301.9190	· 기타	10.5	8	40	13	5	kg	AB
	· 뱀장어(앵귌라종)							
0301.9210	· 치어	0		0	13		kg	

0301.9290	…기타	10	6.7	40	13	5	kg	
	…잉어							
0301.9310	…치어	0		0	13	5	kg	
0301.9390	…기타	10.5	8	40	13	5	kg	
	…기타							
	…치어							
0301.9911	…농어의것	0		0	13	5	kg	AB
0301.9912	…철갑상어의것	0		0	13	5	kg	ABFE
0301.9919	…기타	0		0	13	5	kg	
	…기타							
0301.9991	· …잉어(틸라피아)	10.5		40	13	5	kg	AB
0301.9992	· …복어	10.5	8	40	13		kg	AB
0301.9999.90	· …기타활어	10.5		40	13	5	kg	AB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및기타어육을제외한다.)							
	· 연어, 단, 간장과어란을제외한다.							
0302.1100	·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레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앙코링쿠스크리소가스터)	12		40	13	5	kg	
	·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 ·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앙코링쿠스케타 · 앙코링쿠스 차비차 · 앙코링쿠스 키수츠 ·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및다뉴브연어(후코후코)							
0302.1210	…대서양연어(살모살라)	10		40	13	5	kg	
0302.1220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 ·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앙코링쿠스케타 · 앙코링쿠스 차비차 · 앙코링쿠스 키수츠 ·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및 다뉴브 연어(후코후코)	10		40	13	5	kg	
0302.1900	· 기타	12	8	40	13	5	kg	
	· 넘치류(플루로넥티대, 바디대, 사이노글로 시대, 솔레이대, 스크프탈미대 및 시타리대) 단, 간장과어란을제외한다.							
0302.2100	· 넘치(레인하드티우스히포글러소이데스,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스테노레피스)	12	9	40	13	5	kg	
0302.2200	· 가자미(플루로넥테스플라테사)	12	9	40	13	5	kg	
0302.2300	· 서대(솔레이종)	12	9	40	13	5	kg	
0302.2900	· 기타	12	6	40	13	5	kg	
0302.3100	· 날개다랑어 또는 긴 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알라롱가)	12	9	40	13	5	kg	
0302.3200	· 황다랑어(터너스알바카레스)	12	9	40	13	5	kg	
0302.3300	· 가다랑어또는줄무늬버니토우	12	8	40	13	5	kg	
0302.3400	·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12		40	13	5	kg	
0302.3500	· 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	12		40	13	5	kg	
0302.3600	· 남방참다랑어(터너스맥코이)	12		40	13	5	kg	
0302.3900	· 기타	12	8	40	13	5	kg	

0302.4000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 · 클루페아팔라시) 단, 간장과어란을제외한다.	12	8	40	13	5	kg	
0302.5000	· 대구(가두스모르화 · 가두시오각 · 가두스미크로세팔루스) 단, 간장과어란을제외한다.	12	8	40	13	5	kg	
	· 기타어류, 다만, 간장과어란을제외한다.							
0302.6100	· 청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 · 사르디노프스중),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중), 브리스링포논스프렛(스프라투스스프라투스)	12	8	40	13	5	kg	
0302.6200	· 해덕(멜라노그라무스애그레피누스)	12	8	40	13	5	kg	
0302.6300	· 점정대구(폴라치우스비렌스)	12	8	40	13	5	kg	
0302.6400	· 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 · 스킴버오스트랄라시쿠스 · 스킴버자포니쿠스)	12	8	40	13	5	kg	
0302.6500	· 곱상어및기타상어	12	9	40	13	5	kg	
0302.6600	· 뱀장어(앵겔라중)	12	8	40	13	5	kg	
	· 기타							
0302.6910	· 갈치	12	8	40	13	5	kg	
0302.6920	· 민어	12	8	40	13	5	kg	
0302.6930	· 병어	12	8	40	13	5	kg	
0302.6940	· 잉어(틸라피아)	12		40	13	5	kg	
0302.6950	· 복어	12	8	40	13	5	kg	
0302.6960	· 황새치	12	8	40	13	5	kg	
0302.6990	· 기타	12	8	40	13	5	kg	
0302.7000	· 간장및어란	12		50	13	5	kg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어육을제외)							
0303.1100	· 태평양연어(양코링쿠스 넬카 ·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양코링쿠스 케타 · 양코링쿠스 차비차 · 양코링쿠스 키수츠 · 양코링쿠스 마소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 다만, 간장과어란을제외한다.							
0303.1100	· 냉동소크아이 연어(홍연어)(양코링쿠스 넬카)	10	6.7	40	13	5	kg	AB
0303.1100	· 기타	10	6.7	40	13	5	kg	AB
	· 기타연어, 단, 간장과어란을제외한다.							
0303.2100	· 송어(살모트루타 · 양코링쿠스미키스 · 양코링쿠스 클라키 ·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양코링쿠스 길래 ·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양코링쿠스크리소가스티)	12		40	13	5	kg	AB
	· 대서양연어(살모살라)와 다뉴브연어(후코후코)							
0303.2210	· 대서양연어(살모살라)	10		40	13	5	kg	AB
0303.222	· 다뉴브연어(후코후코)	10		40	13	5	kg	AB
0303.2900	· 기타	10		40	13	5	kg	AB
	· 넙치, 단, 간장과어란을제외한다.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 히포글러소이데스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 히포글러서스스테노레피스)							

	·넙치(레인하드티우스·히포글러소이데스·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스테노레피스)							
0303.3110	·…그리인랜드넙치	10	6.7	40	13	5	kg	AB
0303.3190	·…기타	10	6.7	40	13	5	kg	AB
0303.32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플라테사)	12	8	40	13	5	kg	AB
0303.3300	·서대(솔레아종)	12	8	40	13	5	kg	AB
0303.3300	·기타	10	8	40	13	5	kg	AB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와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유티너스<카추위누스>펠라미스) 다만, 간장과어란을제외한다.							
0303.4100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알라롱가)	12	9	40	13	5	kg	AB
0303.4200	·황다랑어(터너스알바카레스)	12	9	40	13	5	kg	AB
0303.4300	·가다랑어또는줄무늬버니토우	12	9	40	13	5	kg	AB
0303.4400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12		40	13	5	kg	AB
0303.4500	·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	12		40	13	5	kg	AB
0303.46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맥코이)	12		40	13	5	kg	AB
0303.4900	·기타	12	9	40	13	5	kg	AB
0303.5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다만, 간장과어란을제외한다.	10	6.7	40	13	5	kg	AB
0303.6000	·대구(가두스모르화·가두스오각·가두스마크로세팔루스) 다만, 간장과어란을제외한다.	10	6.7	40	13	5	kg	AB
0303.6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오각·가두스마크로세팔루스) 다만, 간장과어란을제외한다.	10	6.7	40	13	5	kg	AB
	·기타어류, 다만, 간장과어란을제외한다.							
0303.7100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팅또는스프랫(스프라투스스프라투스)	12	8	40	13	5	kg	AB
0303.72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애그레피누스)	12	8	40	13	5	kg	AB
0303.73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비렌스)	12	8	40	13	5	kg	AB
0303.7400	·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자포니쿠스)	10	6.7	40	13	5	kg	AB
0303.7500	·곰상어와기타상어	12	9	40	13	5	kg	
0303.7600	·뱀장어(앵겔라종)	12	8	40	13	5	kg	
0303.7700	·농어(디젠티라추스라브라스·디젠티라추스폰크타투스)	12	8	40	13	5	kg	AB
0303.7800	·민대구(메루키우스종·유프파키스종)	12		40	13	5	kg	AB
0303.7910	·…갈치	10	5	40	13	5	kg	AB
0303.7920	·…민어	10	5	40	13	5	kg	AB
0303.7930	·…병어	10	5	40	13	5	kg	AB
0303.7940	·…잉어(틸라피아)	10	5	40	13	5	kg	AB
0303.7950	·…황새치	10	5	40	13	5	kg	AB
0303.7950	·기타	10	5	40	13	5	kg	
0303.8000	·간장및어란	10	9	50	13	5	kg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한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4.1000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2	9	70	13	5	kg	
	· 냉동 피레트							
0304.2010	··잉어(틸라피아)	10		70	13	5	kg	AB
0304.2090	··기타	10		70	13	5	kg	
0304.9000	· 기타	10		70	13	5	kg	
03.05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와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5.1000	·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10		80	13	5,13	kg	AB
0305.2000	· 어류의 간장과 어란(건조·훈제·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10		80	13	5,13	kg	
0305.2000	· 어류의 간장과 어란(건조·훈제·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10		80	13	5,13	kg	
0305.3000	· 어류의 피레트, 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10	7.8	80	13	5,13	kg	
0305.4100	· 태평양 연어(양코링쿠스 넬카·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양코링쿠스 케타·양코링쿠스 차비차·양코링쿠스 키수츠·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후코)	14		80	13	5	kg	
0305.420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16		80	13	5	kg	AB
0305.4900	· 기타	14		80	13	5	kg	AB
	· 건조한 어류,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0305.51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16		80	13	5	kg	AB
	··기타							
0305.5910	··해마	2		20	13	5	kg	FEAB
0305.5920	··상어 지느러미	15		80	13	5	kg	
0305.5990	··기타	16		80	13	5	kg	
	· 염장한 어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염수장한 어류							
0305.610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16	11.1	80	13	5	kg	AB
0305.62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16	12	80	13	5	kg	AB
0305.6300	··멸치(엔그로리스종)	16	12	80	13	5	kg	AB
	··기타							
0305.6910	··갈치	16		80	13	5	kg	AB

0305.6920	…민어	16		80	13	5	kg	AB
0305.6930	…병어	16		80	13	5	kg	AB
0305.6940	…잉어(틸라피아)	16		80	13	5	kg	AB
0305.6940	…기타	16		80	13	5	kg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고,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냉동한 것							
0306.1100	…담새우류(팔리누루스종·피누리루스종·자수스종) ·…바다가재(호마루스종)	10		70	13	5	kg	AB
0306.1200	…바다가재(호마루스종)	10	7.2	70	13	5	kg	AB
	…새우와 보리새우							
	…새우							
0306.1311	· …탈각한 것	8	4	70	13	5	kg	AB
	…보리새우							
0306.1321	· …탈각한 것	8	4	70	13	5	kg	AB
0306.1329	· …기타	5	2.5	70	13	5	kg	AB
	…게							
0306.1410	…꽃게	10		70	13	5	kg	AB
	·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담수가재							
0306.1911	· …탈각한 것	16		70	13	5	kg	aAB
0306.1919	· …기타	16		70	13	5	kg	aAB
0306.1990	…기타	16		70	13	5	kg	AB
	· 냉동하지 아니한 것							
	· …담새우류(팔리누루스종·파누리루스종·자수스종)							
0306.2110	…종묘	0		0	13	5	kg	AB
0306.2190	…기타	15		7	13	5	kg	
	· …바다가재(호마루스종)							
0306.2210	…종묘	0		0	13	5	kg	AB
0306.2290	…기타	15		7	13	5	kg	
	· …새우와 보리새우							
0306.2310	…종묘	0		0	13	5	kg	AB
	…기타							
0306.2391	· …신선, 냉장한 보리새우	15		7	13	5	kg	
0306.2399	· …기타	12		7	13	5	kg	
	…게							
0306.2410	…종묘	0		0	13	5	kg	AB
	…기타							

0306.2491	·…담수게	14		70	13	5	kg	
0306.2492	·…꽃게	14		70	13	5	kg	
0306.2493	·…기타	14		70	13	5	kg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 용에적합한것에만한다.)]							
0306.2910	·…종묘	0		0	13	5	kg	AB
0306.2990	·…기타	14		7	13	5,13	kg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 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 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 외하며, 산것과신선·냉장·냉동·건조·염 장또는염수장한것및갑각류외의수생무척 추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만한다.)에만한다.]							
	· 굴							
0307.1010	·…종묘	0		0	13	5	kg	AB
0307.1090	·…기타	14		70	13	5	kg	AB
	· 가리비과의 조개(팩텐·클라미스 또는 프 라코팩텐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조개 를포함한다.)							
	· 산것과신선, 냉장한것							
0307.2110	·…종묘	0		0	13	5	kg	
0307.2190	·…기타	14		70	13	5	kg	
0307.2900	·…기타	14		80	13	5	kg	
	· 홍합(미틸루스종·페르나종)							
	· 산것과신선, 냉장한것							
0307.3110	·…종묘	0		0	13	5	kg	AB
0307.3190	·…기타	14		70	13	5	kg	AB
0307.3900	·…기타	14	9.8	80	13	5	kg	AB
	·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로시아마 크로소마·세피올라종)와오징어(옴마스트 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종·세 피오투디스종)							
	· 산것과신선, 냉장한것							
0307.4110	·…종묘	0		0	13	5	kg	AB
0307.4190	·…기타	12		70	13	5	kg	AB
0307.4900	·…기타	12	10	80	13	5	kg	AB
	· 문어(옥토푸스종)							
0307.5110	· 산것과신선, 냉장한것	17		70	13	5	kg	
0307.5900	·…기타	12		80	13	5	kg	AB
	· 달팽이(바다달팽이를제외한다.)							
0307.6010	·…종묘	0		0	13	5	kg	
0307.6090	·…기타	14		70	13	5	kg	
0307.9191	·…전복	14		80	13	5	kg	
0307.9192	·…갯지렁이	14		70	13	5	kg	

0307.9193	· …대합조개	14		70	13	5	kg	AB
0307.9199	· …기타	14		70	13	5	kg	
	· …기타							
0307.9910	…전복	10		80	13	5	kg	AB
0307.9920	…해삼	10		80	13	5	kg	
0307.9930	…대합조개	10		70	13	5	kg	
0307.9990	· …기타	10		70	13	5,13	kg	
제4류	낙농품 · 조란 · 천연꿀및다른류에분류되지 아니한식용의동물성생산물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401.100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이하의 것	15		40	17	5,13	kg	AB
0401.2000	· 지방분이전중량의 100분의1을초과 100분의6이하의것	15		40	17	5,13	kg	AB
0401.300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15		40	17	5,13	kg	AB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것에한한다.)							
0402.1000	· 분상 · 입상 또는 기타 고체 상태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10	7	40	17	13	kg	AB
	· 분상 · 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의 것으로서지방분이전중량의 100분의 1.5를초과하는것							
0402.210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10	7	40	17	13	kg	AB
0402.2900	· …기타	10		90	17	13	kg	AB
	· …기타							
0402.910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10		90	17	5,13	kg	AB
0402.9900	· …기타	10		90	17	5,13	kg	AB
04.03	버터밀크 · 응고유와 응고크림 · 요구르트 · 케피어와기타의발효또는산성화된밀크와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기타감미료를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일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여부를불문한다.)							
0403.1000	· 요구르트	10		90	17	13	kg	AB
0403.9000	· 기타	20		90	17	13	kg	AB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4.100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30	17	13	kg	AB
0404.9000	· 기타	20		90	17	13	kg	AB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스프레드							
0405.1000	· 버터	10		90	17	13	kg	AB
0405.2000	· 데어리스프레드	10	8.1	90	17	13	kg	AB
0405.3000	· 기타	10		90	17	13	kg	AB
04.06	치즈와 커드							
0406.1000	·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12		90	17	13	kg	AB
0406.2000	·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12		90	17	13	kg	AB
0406.3000	·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	12		90	17	13	kg	AB
0406.4000	· 블루바인치즈	15		90	17	13	kg	AB
0406.9000	· 기타 치즈	12		90	17	13	kg	AB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 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0407.0010	…부화조란	0		0	13	5	개/kg	
	…기타 껍질이 붙은 신선한 조란							
0407.0021	· …계란	20		80	13	5	개/kg	AB
0407.0022	· …오리알	20		80	13	5	개/kg	AB
0407.0023	· …거위알	20		80	13	5	개/kg	AB
0407.0029	· …기타	20		80	13	5	개/kg	
	…기타							
0407.0091	· …절인조란	20		90	13	5	개/kg	AB
0407.0092	· …송화단	20		90	13	5	개/kg	AB
0407.0099	· …기타	20		90	13	5,13	개/kg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난황							
0408.1100	· · 건조한것	20		90	13	5,13	kg	AB
0408.1900	· · 기타	20		90	13	5	kg	AB
	· 기타							
0408.9100	· · 건조한것	20		90	13	5	kg	AB
0408.9900	· · 기타	20		90	13	5,13	kg	AB
04.09	천연벌꿀							
0409.0000	· 천연벌꿀	15		80	13	5	kg	aAB
04.10	따로분류되지아니한식용의동물성생산물							
0410.0010	· · · 살랑갠등우리	25		80	17	5	kg	AB
	· · · 꿀벌제품							
0410.0041	· · · · 선선훈로알제리	15		70	17	5	kg	aAB
0410.0042	· · · · 선선훈로알제리분	15		70	17	5	kg	aAB
0410.0043	· · · 밀랍분	20		70	17	5	kg	AB
0410.0049	· · · 기타	20		70	17	5	kg	AB
0410.0090	· · · 기타	20		70	17	5	kg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 · 뿌리 와 이와 유사한물품및절화와장식용의잎							
06.01	인경 · 괴경 · 괴근 · 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 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 1212호의뿌리를제외한다.)							
	· 인경 · 괴경 · 괴근 · 구경및근경으로서휴면상태의것							
0601.1010	· · · 암술머리크로커스구경	4	2	14	13	5	개/kg	AB
	· · · 기타							
0601.1091	· · · · 종자용	0		0	13	5	개/kg	
0601.1099	· · · · 기타	5	2.5	40	13	5	개/kg	
0601.2000	· 인경 · 괴경 · 괴근 · 구경및근경으로서경엽이성장하고있는것또는꽃이붙어있는것과치커리및치커리뿌리	15	7.5	80	13	5	개/kg	
06.02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 · 뿌리 와 이와 유사한물품및절화와장식용의잎							
0602.1000	· 뿌리가없는삽수와접수	0		0	13	5	포기/kg	
0602.2010	· · · 종묘	0		0	13		포기/kg	AB
0602.2090	· · · 기타	10	5	80	13	5	포기/kg	AB
	·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불문한다.)							
0602.3090	· · · 기타	0		0	13	5	포기/kg	AB
0602.3090	· 장미(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80	13	5	포기/kg	AB
	· · · 기타							

0602.4010	…종묘	0		0	13	5	포기/kg	AB
0602.4090	…기타	10		80	13	5	포기/kg	AB
	· 기타							
0602.9010	…버섯의종균	0		0	13	5	kg	AB
	…기타							
0602.9091	· …종묘	0		0	13		포기/kg	
0602.9092	· …난초	10		80	13	5	포기/kg	AFEB
0602.9093	· …국화	10		80	13	5	포기/kg	AB
0602.9094	· …백합	10		80	13	5	포기/kg	
0602.9095	· …카네이션	10		80	13	5	포기/kg	AB
0602.9099	· …기타	10	5	80	13	5	포기/kg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603.1000	· 신선한것	10	5	100	13	5	kg	
0603.9000	· 기타	23	11.5	100	17	5	kg	
06.04	식물의잎·가지및기타의부분(꽃과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기타의 가공을한것으로서꽃다발용또는장식용에 적합한것에한한다.)							
0604.1000	· 이끼와지의	23		100	13	5	kg	AB
	· 기타							
0604.9100	· 신선한것	10		100	13	5	kg	
0604.9900	…기타	10		100	17	5	kg	ABFE
제7류	식용의채소·뿌리및괴경							
07.01	신선또는냉장한감자							
0701.1000	· 종자용	13		70	13	5	kg	AB
0701.9000	· 기타	13	9	70	13	5	kg	
07.02	신선또는냉장한토마토							
0702.0000	신선또는냉장한토마토	13		70	13	5	kg	
0702.0000.10	신선토마토	13		70	13	5	kg	AB
0702.0000.90	냉장한토마토	13		70	13	5	kg	AB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양파와쪽파							
0703.1010	…양파	13	6.5	70	13	5	kg	
0703.1010.10	· …신선양파	13		70	13	5	kg	AB
0703.1010.90	· …냉장한양파	13		70	13	5	kg	AB
0703.1020	…쪽파	13	6.5	70	13	5	kg	
0703.1020.10	· …신선쪽파	13		70	13	5	kg	AB

0703.1020.90	· …냉장한쪽파	13		70	13	5	kg	AB
	· 마늘							
0703.2010	…통마늘	13	5	70	13	5	kg	
0703.2010.10	· …신선통마늘	13		70	13	5	kg	ABa
0703.2010.90	· …냉장한통마늘	13		70	13	5	kg	ABa
0703.2020	…마늘대밋마늘종대(풋마늘)	13	5	70	13	5	kg	
0703.2020.10	· …신선마늘대밋마늘종대(풋마늘)	13		70	13	5	kg	AB
0703.2020.90	· …냉장한 마늘대 밋 마늘 종대(풋마늘)	13		70	13	5	kg	AB
0703.2090	…기타	13	5	70	13	5	kg	
0703.2090.10	· …신선마늘소인경	13		70	13	5	kg	ABa
0703.2090.20	· …냉장한마늘소인경	13		70	13	5	kg	ABa
0703.2090.91	· …신선기타마늘	13		70	13	5	kg	ABa
0703.2090.99	· …냉장한기타마늘	13		70	13	5	kg	ABa
	· 리크와기타파속의채소							
0703.9010	…리크	13		70	13	5	kg	
0703.9010.10	…신선리크	13		70	13	5	kg	AB
0703.9010.90	· …냉장한리크	13		70	13	5	kg	AB
0703.9020	…대파	13		70	13	5	kg	
0703.9020.10	…신선대파	13		70	13	5	kg	AB
0703.9020.90	· …냉장한대파	13		70	13	5	kg	AB
0703.9090	· 기타파속채소	13		70	13	5	kg	
0703.9090.10	· 신선기타파속채소	13		70	13	5	kg	AB
0703.9090.90	· 냉장한기타파속채소	13		70	13	5	kg	AB
07.04	신선, 냉장양배추, 꽃양배추, 구경양배추 · 꽃양배추 · 구경양배추 · 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배추속(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0704.1000	· 꽃양배추및결구된브로콜리	10		70	13	5	kg	
0704.2000	· 방울다다기양배추	13		70	13	5	kg	
0704.9000	· 기타	13		70	13	5	kg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속)(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상추							
0705.1100	…결구상추	10	5	70	13	5	kg	
0705.1100.10	…신선한결구상추	10		70	13	5	kg	AB
0705.1100.90	…냉장한결구상추	10		70	13	5	kg	AB
0705.1900	…기타상추	10	5	70	13	5	kg	
0705.1900.10	…신선한기타상추	10		70	13	5	kg	AB
0705.1900.90	…냉장한기타상추	10		70	13	5	kg	AB
	· 치커리							
0705.2100	· 위트루우프꽃상추	13	5	70	13	5	kg	
0705.2100.10	…신선한위트루우프꽃상추	13		70	13	5	kg	AB
0705.2100.90	…냉장한위트루우프꽃상추	13		70	13	5	kg	AB
0705.2900	…기타	13	5	70	13	5	kg	

0705.2900.10	…신선한기타꽃상추	13		70	13	5	kg	AB
0705.2900.90	…냉장한기타꽃상추	13		70	13	5	kg	AB
07.06	신선 또는 냉장한 당근, 순무, 셀러드용 당근·순무·셀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세레리아크·무기타이와 유사한 식용 의뿌리 (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0706.1000	· 당근및순무	13		70	13	5	kg	
0706.1000.10	…신선한당근및순무	13		70	13	5	kg	AB
0706.1000.90	…냉장한당근및순무	13		70	13	5	kg	AB
0706.9000	· 기타	13		70	13	5	kg	
07.07	오이류 (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0707.0000	· 신선또는냉장한오이및작은오이	13	6.5	70	13	5	kg	
0707.0000.10	…신선오이및작은오이	13		70	13	5	kg	AB
0707.0000.90	…냉장한오이및작은오이	13		70	13	5	kg	AB
07.08	채두류 (꼬투리유무를불문하며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0708.1000	· 완두	13	5	70	13	5	kg	
0708.1000.10	…신선한완두 (꼬투리유무를불문한다.)	13		70	13	5	kg	AB
0708.1000.90	…냉장한완두 (꼬투리유무를불문한다.)	13		70	13	5	kg	AB
0708.2000	· 콩 (비그나종류카섭 바	13	5	70	13	5	kg	
0708.2000.10	…신선한콩 (꼬투리유무를불문한다.)	13		70	13	5	kg	AB
0708.2000.90	…냉장한콩 (꼬투리유무를불문한다.)	13		70	13	5	kg	AB
0708.9000	· 기타투류채소	13	5	70	13	5	kg	
0708.2000.10	…신선한투류채소 (꼬투리유무를불문한다.)	13		70	13	5	kg	AB
0708.2000.90	…냉장한투류채소 (꼬투리유무를불문한다.)	13		70	13	5	kg	AB
07.09	신선또는냉장의기타채소							
0709.1000	· 구상의양영경귀	13	5	70	13	5	kg	
0709.1000.10	…신선한구상의양영경귀	13		70	13	5	kg	AB
0709.1000.90	…냉장한구상의양영경귀	13		70	13	5	kg	AB
0709.2000	· 아스파라거스	13	5	70	13	5	kg	
0709.2000.10	…신선한아스파라거스	13		70	13	5	kg	AB
0709.2000.90	…냉장한아스파라거스	13		70	13	5	kg	AB
0709.3000	· 가지	13	5	70	13	5	kg	
0709.3000.10	…신선한가지	13		70	13	5	kg	AB
0709.3000.90	…냉장한가지	13		70	13	5	kg	AB
0709.4000	· 셀러리 (셀러리악은제외)	10	5	70	13	5	kg	
0709.4000.10	…신선한셀러리 (셀러리악은제외)	10		70	13	5	kg	AB
0709.4000.90	…냉장한셀러리 (셀러리악은제외)	10		70	13	5	kg	AB
	· 버섯과송로							
0709.5100	…아가리쿠스속의버섯	13	5	90	13	5	kg	
0709.5100.10	…신선한아가리쿠스속의버섯	13		90	13	5	kg	AB
0709.5100.90	…냉장한아가리쿠스속의버섯	13		90	13	5	kg	AB
0709.5200	…송로	13	5	90	13	5	kg	

0709.5200.10	…신선한송로	13		90	13	5	kg	AB
0709.5200.90	…냉장한송로	13		90	13	5	kg	AB
	…기타							
0709.5910	…송이	13	5	90	13	5	kg	ABa
0709.5920	…표고버섯	13	5	90	13	5	kg	
0709.5920.10	· …신선한표고버섯	13		90	13	5	kg	AB
0709.5920.90	· …냉장한표고버섯	13		90	13	5	kg	AB
0709.5930	…바늘버섯	13	5	90	13	5	kg	
0709.5930.10	· …신선한바늘버섯	13		90	13	5	kg	AB
0709.5930.90	· …냉장한바늘버섯	13		90	13	5	kg	AB
0709.5940	…양귀비줄기버섯	13	5	90	13	5	kg	
0709.5940.10	· …신선한양귀비줄기버섯	13		90	13	5	kg	AB
0709.5940.90	· …냉장한양귀비줄기버섯	13		90	13	5	kg	AB
0709.5950	…균류버섯	13	5	90	13	5	kg	
0709.5950.10	· …신선한균류버섯	13		90	13	5	kg	AB
0709.5950.90	· …냉장한균류버섯	13		90	13	5	kg	AB
0709.5990	…기타	13	5	90	13	5	kg	
0709.5990.10	· …신선한기타버섯	13		90	13	5	kg	AB
0709.5990.90	· …냉장한기타버섯	13		90	13	5	kg	AB
0709.6000	· 고추류(캡사이틴속또는피멘타속의열매)	13	5	70	13	5	kg	
0709.6000.10	· …신선한고추류	13		70	13	5	kg	AB
0709.6000.90	· …냉장한고추류	13		70	13	5	kg	AB
0709.7000	· 시금치류	13	5	70	13	5	kg	
0709.7000.10	· …신선한시금치류	13		70	13	5	kg	AB
0709.7000.90	· …냉장한시금치류	13		70	13	5	kg	AB
	· 기타							
0709.9010	…죽순	13	5	70	13	5	kg	
0709.9010.10	· …신선또는냉장한산죽순	13		70	13	5	kg	ABE
0709.9010.90	· …냉장한죽순	13		70	13	5	kg	AB
0709.9090	…기타	13	5	70	13	5	kg	
0709.9090.10	· …신선또는냉장한순채	13		70	13	5	kg	ABE
0709.9090.90	· …신선또는냉장한기타채소	13		70	13	5	kg	AB
07.10	냉동채소(조리여부를불문한다.)							
0710.1000	· 감자	13		70	13	5	kg	AB
	· 채두류(포투리유무를불문한다.)							
0710.2100	· 완두(파섹세티범)	13		70	13	5	kg	AB
	·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0710.2210	…팻	13		70	13	5	kg	AB
0710.2290	…기타	13		70	13	5	kg	AB
0710.2900	…기타	13		70	13	5	kg	AB
0710.3000	· 시금치류	13		70	13	5	kg	AB
0710.4000	· 사탕옥수수	10		70	13	5	kg	AB
	· 기타채소							
0710.8010	…송이	13		70	13	5	kg	ABE
0710.8020	…마늘줄기, 마늘종묘	13		70	13	5	kg	AB
0710.8030	…통마늘	13		70	13	5	kg	AB

0710.8090	…기타	13		70	13	5	kg	
0710.9000	…채소류의혼합물	10		70	13	5	kg	AB
07.11	일시저장채소(직접식용부적합한것)							
0711.2000	· 올리브	13	5	70	13	5	kg	AB
0711.3000	· 케이퍼	13	5	70	13	5	kg	AB
0711.4000	· 오이류	13	5	70	13	5	kg	AB
	· 버섯과송로							
	· 아가리쿠스속의버섯							
	…염수장한것							
0711.5112	· …주름버섯의일종(식용)	13	5	90	13	5	kg	AB
0711.5119	· …기타	13	5	90	13	5	kg	AB
0711.5190	…기타	13	5	90	13	5	kg	AB
	· 기타							
	…염수장한것							
0711.5911	· …송이	13	5	90	13	5	kg	EAB
0711.5919	· …기타	13	5	90	13	5	kg	
0711.5990	…기타	13	5	90	13	5	kg	
	· 기타채소, 채소류의혼합물							
	…염수장한것							
0711.9031	· …죽순	13	5	70	13	5	kg	
0711.9034	· …마늘	13	5	70	13	5	kg	
0711.9039	· …기타	13	5	70	13	5	kg	AB
0711.9039	· 기타	13	5	90	13	5	kg	AB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것또는분상의것에한하며, 더이상조제한것을제외한다.)							
0712.2000	· 양파	13		80	13	5	kg	AB
	· 버섯,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젤리균류(트레멜라종) 및송로							
0712.3100	· 아가리쿠스속의버섯	13	9	80	13	5	kg	AB
0712.3200	·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13		100	13	5	kg	AB
0712.3300	· 젤리균류(트레멜라종)	13		90	13	5	kg	AB
	· 기타							
0712.3910	…표고버섯	13	9	100	13	5	kg	AB
0712.3920	…바늘버섯	13	9	100	13	5	kg	AB
0712.3930	…양귀비줄기버섯	13	9	100	13	5	kg	AB
0712.3940	…Fair-rin버섯	13	9	100	13	5	kg	AB
0712.3950	…bolete	13	9	100	13	5	kg	AB
0712.3950	…기타	13	9	100	13	5	kg	
0712.9010	…죽순	13		80	13	5	kg	
0712.9020	…고비	13		80	13	5	kg	AB
0712.9030	…원추리	13		80	13	5	kg	AB
0712.9040	…고사리	13		80	13	5	kg	AB
0712.9050	…마늘	13		80	17	5,13	kg	
0712.9060	…고추류(피멘타속의열매)	13		80	13,17	5,13	kg	AB

0712.9070	…기타	13		80	13		kg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것인지또는조갯것인지의여부를 불문한다.)							
	· 완두(파셜새티범)							
0713.1010	…종자	0		0	13	5	kg	AB
0713.1090	…기타	5		20	13	5	kg	AB
	· 이집트콩(가반조스)							
0713.2010	…종자	0		0	13	5	kg	AB
0713.2090	…기타	7		20	13	5	kg	AB
	· 콩(비그나종류카섭 봐							
	· 녹두(비그나 멍고(L) 헤파 또는 비그나 라 디에이타(L) 월크젝중)							
0713.3110	…종자	0		0	13	5	kg	AB
0713.3190	…기타	3	1.5	11	13	5	kg	AB
	· 팔							
	· 종자							
0713.3211	· …팔(rice bean)	0		0	13	5	kg	aAB
0713.3219	· …팔(rice bean)	0		0	13	5	kg	aAB
0713.3290	…기타	3		14	13	5	kg	aAB
	· 강남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 (파세리스 불가리스)							
0713.3310	…종자	0		0	13	5	kg	AB
0713.3390	…기타	7.5		20	13	5	kg	AB
0713.3900	…기타	7	3.5	20	13	5	kg	AB
	· 렌즈콩							
0713.4010	…종자	0		0	13	5	kg	AB
0713.4090	…기타	7		20	13	5	kg	AB
	·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메저) 및 말먹이용의잠두(비시아파바변종, 에퀴나와비시아 파바변종, 미나)							
0713.5010	…종자	0		0	13	5	kg	AB
0713.5090	…기타	7		20	13	5	kg	AB
	· 기타							
0713.9010	…종자	0		0	13	5	kg	AB
0713.9090	…기타	7		20	13	5	kg	AB
07.14	매니옥·침뿌리·샬렘·국아·고구마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교야자의수							
	· 매니옥(카사바)							
0714.1010	…신선한 것	10		30	13	5	kg	AB
0714.1020	…건조한 것	5		30	13	5	kg	AB
0714.1030	…냉장 또는 냉동한 것	10		30	13	5	kg	AB

	· 고구마							
	…신선한것							
0714.2011	· …종자	0		50	13	5	kg	AB
0714.2019	· …기타	13	6.5	50	13	5	kg	AB
0714.2020	…건조한것	13	6.5	50	13	5	kg	AB
0714.2030	…냉장또는냉동한것	13	6.5	80	13	5	kg	AB
	· 기타							
0714.9010	…water chestnut	13	6.5	80	13	5	kg	
	…연							
0714.9021	· …종자	0		0	13	5	kg	AB
0714.9029	· …기타	13	6.5	50	13	5	kg	
0714.9090	…기타	13	6.5	50	13	5	kg	
제8류	식용의과실및견과류와감귤류또는멜론의 껍질							
08.01	코코넛 · 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 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 문한다.)							
	· 코코넛							
0801.1100	…건조한것	12	6	80	13	5	kg	AB
	…기타							
0801.1910	…종자	0		0	13	5	kg	AB
0801.1990	…기타	12	6	80	13	5	kg	
	· 브라질넛							
0801.2100	…탈각하지아니한것	10		80	13	5	kg	
0801.220	…탈각한것	10		80	13	5	kg	
	· 캐슈넛							
0801.3100	…탈각하지아니한것	20		70	13	5	kg	
0801.3200	…탈각한것	10		70	13	5	kg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 며, 탈각또는탈피의여부불문한다.)							
	· 아몬드							
0802.1100	…탈각하지아니한것	24		70	13	5	kg	
0802.1200	…탈각한것	10		70	13	5	kg	
	· 헤즐넛또는필버트(코리루스종)							
0802.2100	…탈각하지아니한것	25		70	13	5	kg	
0802.2200	…탈각한것	10		70	13	5	kg	
	· 호도							
0802.3100	…탈각하지아니한것	25		70	13	5	kg	
0802.3200	…탈각한것	20		70	13	5	kg	
	· 밤							
0802.4010	…밤(chinese chestnuts)	25		70	13	5	kg	
0802.4090	…기타	25		70	13	5	kg	
0802.5000	· 피스타치오	10		70	13	5	kg	

	· 기타							
0802.9010	…빈랑나무	10	5	30	13	5	kg	
0802.9020	…은행나무	25		70	13	5	kg	
0802.9030	…pine-nuts, shelled	25		70	13	5	kg	
	…하와이견과							
0802.9041	· …종자	0		70	13	5	kg	
0802.9049	· …기타	24		70	13	5	kg	
0802.9090	…기타	24		70	13	5	kg	
08.03	바나나(플랜틴을포함하며, 신선또는건조한 것에만한다.)							
0803.0000	바나나(플랜틴을포함하며, 신선또는건조한 것에만한다.)	10	6.9	40	13	5	kg	
08.04	대추야자 · 무화과 · 파인애플 · 애버카도우 · 과아버 · 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만한다.)							
0804.1000	· 대추야자	15	5	40	13	5	kg	
0804.2000	· 무화과	30	10	70	13	5	kg	
0804.3000	· 파인애플	12	5	80	13	5	kg	
0804.4000	· 애버카도우	25	10	80	13	5	kg	
	· 과아버 · 망고및망고스틴							
0804.5010	…과아버	15	5	80	13	5	kg	
0804.5020	…망고	15	5	80	13	5	kg	
0804.5030	…망고스틴	15	5	80	13	5	kg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 다.)							
0805.1000	· 오렌지	11	5	100	13	5	kg	
	·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하 다.) · 클레멘타인 · 월킹밋이와유사한감 귤류잡종							
0805.2010	…맨더린	12	5	100	13	5	kg	
0805.2020	…활엽맨더린	12	5	100	13	5	kg	
0805.2090	…기타	12	5	100	13	5	kg	
0805.4000	· 그레이프프루트	12	5	100	13	5	kg	
0805.5000	· 레몬(시트리스리몬 · 시트리스 리머눔)과 라임(시트리스오란티폴리아 · 시트리스라 티폴리아)	11	5	100	13	5	kg	
0805.9000	· 기타	30	10	100	13	5	kg	
08.06	포도(신선또는건조한것에만한다.)							
0806.1000	· 신선한것	13		80	13	5	kg	AB
0806.1000	· 건조한것	10		80	13	5	kg	AB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 선한것에만한다.)							

	· 멜론(수박을포함한다.)							
0807.1100	· 수박	25	12.5	70	13	5	kg	AB
	· 기타							
0807.1910	· ...하미과(hami melons)	12	6	70	13	5	kg	AB
0807.1920	· ...캔틸루프및마스크멜론	12	6	70	13	5	kg	AB
0807.1990	· ...기타	12	6	70	13	5	kg	AB
0807.2000	· 포포우(파파야)	25		70	13	5	kg	AB
08.08	사과 · 배및마르멜로(신선한것에만한다.)							
0808.1000	· 사과	10		100	13	5	kg	AB
	· 배및마르멜로							
	· 배							
0808.2012	· ...鴨梨(ya pears) 및hsueh pears	12	10	100	13	5	kg	AB
0808.2013	· ...xiang pears	12	10	100	13	5	kg	AB
0808.2019	· ...기타	10		100	13	5	kg	AB
0808.2020	· ...마르멜로(Quinces)	16		100	13	5	kg	AB
08.09	살구 · 버찌 · 복숭아(네펀린을 포함한다.) · 자두및슬로우(신선한것에만한다.)							
0809.1000	· 살구	25		70	13	5	kg	AB
0809.2000	· 버찌	10		70	13	5	kg	AB
0809.3000	· 복숭아(네펀린을포함한다.)	10		70	13	5	kg	AB
0809.4000	· 자두및슬로우	10		70	13	5	kg	AB
08.10	기타신선한과일							
0810.1000	· 딸기	19.8		80	13	5	kg	AB
0810.2000	·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 로간베리	25		80	13	5	kg	AB
0810.3000	· 흑색 · 백색또는적색의커런트와구즈베리	25		80	13	5	kg	AB
0810.4000	· 크랜베리 · 빌베리와기타박시니엄종의과실	30		80	13	5	kg	AB
0810.5000	· 키위프루트	20	16.5	80	13	5	kg	AB
0810.6000	· 두리언	20		80	13	5	kg	AB
	· 기타							
0810.9010	· ...여지	30	20	80	13	5	kg	AB
0810.9030	· ...용안(longan).	12		80	13	5	kg	AB
0810.9040	· ...람부탄(rambutan)	20		80	13	5	kg	AB
0810.9050	· ...번려지	20		80	13	5	kg	AB
0810.9060	· ...오렴자	20		80	13	5	kg	AB
0810.9070	· ...Lotus-Fog fruit	20	16.4	80	13	5	kg	AB
0810.9080	· ...dragon fruit	20	16.4	80	13	5	kg	AB
0810.9090	· ...기타	20	16.4	80	13	5	kg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811.1000	· 딸기	30		80	13	5	kg	AB

0811.2000	·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 로잔베리와 흑색 · 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 및 구즈베리	30		80	13	5	kg	AB
	· 기타							
0811.9010	…밤 (탈각하지 아니한 것)	30		80	13	5	kg	AB
0811.9090	…기타	30		80	13	5	kg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황 가스 · 염수 · 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2.1000	· 버찌	30		80	13	5	kg	AB
0812.9000	· 기타	28.6		80	13	5	kg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1000	· 살구	25		70	13	5	kg	AB
0813.2000	· 프룬	25		70	13	5	kg	AB
0813.3000	· 사과	25		70	13	5	kg	AB
	· 기타 견과류							
0813.4010	…용안 및 용안	20		70	13	5	kg	AB
0813.4020	…감	25		70	13	5	kg	AB
0813.4030	…대추	25		70	13	5	kg	AB
0813.4040	…여지	25		70	13	5	kg	AB
0813.4090	…기타	25		70	13	5	kg	
0813.5000	·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18		70	13	5	kg	AB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 · 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0814.0000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 · 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25		70	13	5	kg	AB
제9류	커피 · 차 · 마태 및 향신료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볶지 아니한 것							
0901.11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8		50	17	5	kg	AB
0901.12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8		50	17	5	kg	AB
	· 볶은 것							
0901.21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15		80	17	5	kg	AB
0901.22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15		80	17	5	kg	AB
	· 기타							

0901.9010	…커피의각과피	10		30	17	5	kg	AB
0901.9020	…커피를함유한커피대용물	30		80	17	5	kg	AB
09.02	차류(가향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 (내용량이 3킬로그램이하로포장된것)							
0902.1010	…화차	15	7.5	100	13	5,13	kg	AB
0902.1090	…기타	15	7.5	100	13	5,13	kg	AB
	· 기타녹차(발효하지아니한것)							
0902.2010	…화차	15	7.5	100	13	5,13	kg	AB
0902.2090	…기타	15	7.5	100	13	5,13	kg	AB
	·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량이 3킬로그램이하로포장된것)							
0902.3010	…오롱차	15	7.5	100	13	5,13	kg	AB
0902.3020	…보이차	15	7.5	100	13	5,13	kg	AB
0902.3090	…기타	15	7.5	100	13	5,13	kg	AB
	· 기타홍차(발효차)와기타부분발효차							
0902.4010	…오롱차	15	7.5	100	13	5,13	kg	AB
0902.4020	…보이차	15	7.5	100	13	5,13	kg	AB
0902.4090	…기타	15	7.5	100	13	5,13	kg	AB
09.03	마테차							
0903.0000	마테차	10		100	13	13	kg	AB
09.04	후추(파이퍼속의것) 및고추류(건조, 파쇄또는분쇄한캐프시컴속또는피멘타속의열매)							
	· 후추							
0904.1100	…파쇄또는분쇄하지아니한것	20		70	13	5	kg	
0904.1200	…파쇄또는분쇄한것	20	10	70	13	5	kg	
	· 후추							
0904.2010	…고추(파쇄또는분쇄하지아니한것)	20	10	70	13	5	kg	
0904.2020	…고추가루(파쇄또는분쇄한것)	20	10	70	13	13	kg	
09.05	바닐라두							
0905.0000	비닐라두	15		50	13	5	kg	AB
09.06	계피와계피나무의꽃							
0906.1000	· 파쇄또는분쇄하지아니한것	5		50	13	5	kg	AB
0906.2000	· 파쇄또는분쇄한것	15		50	13	5	kg	QAB
09.07	정향(과실 · 꽃및화경에한한다.)							
0907.000	정향(과실 · 꽃및화경에한한다.)	3		14	13	5	kg	QAB
09.08	육두구 · 메이스및소두구							
0908.1000	· 육두구	8		30	13	5	kg	QABE

0908.2000	· 메이스	8		30	13	5	kg	AEB
0908.3000	· 소두구	3		14	13	5,13	kg	QABE
09.09	아니스 · 대회향 · 회향 · 코리앤더 · 커민또는 캐러웨이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 아니스 또는 대회향의 씨							
0909.1010	…아니스의 열매	20		90	13	5,13	kg	QAB
0909.1090	…기타	15		50	13	5,13	kg	AB
0909.2000	· 코리앤더의 씨	15		50	13	5,13	kg	AB
0909.3000	· 커민의 씨	15	7.5	50	13	5,13	kg	AB
0909.4000	· 캐러웨이 씨	15		50	13	5,13	kg	AB
0909.5000	· 회향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15		50	13	5,13	kg	QAB
09.10	생강 · 샤프란 · 심황(강황) · 타임 · 월계수의 잎 · 카레 및 기타 향신료							
0910.1000	· 생강	15	7.5	50	13	5,13	kg	AB
0910.2000	· 샤프란	2		14	13	5,13	kg	QAB
0910.3000	· 심황(강황)	15	7.5	50	13	5,13	kg	QAB
0910.4000	· 타임, 월계수의 잎	15		50	13	5,13	kg	AB
0910.5000	· 카레	15		50	17	13	kg	AB
	· 기타 향신료							
0910.9100	…혼합물(제9류주1“나”해규정한 것)	15	7.5	50	17	13	kg	AB
0910.9900	…기타	15		50	17	5,13	kg	AB
제10류	곡물							
10.01	밀과 메슬린							
1001.1000	· 듀럼 종의 밀	*65		*180	13	13	kg	
	· 기타							
1001.9010	…종자	*65		*180	13	13	kg	
1001.9090	…기타	*65		*180	13	13	kg	
10.02	호밀							
1002.0010	…종자	0		0	13	5	kg	AB
1002.0090	…기타	3		8	13	5	kg	AB
10.03	보리							
1003.0010	…종자	0		160	13	5	kg	AB
1003.0090	…기타	3	0	160	13	5	kg	AB
10.04	귀리							
1004.0010	…종자	0		0	13	5	kg	AB
1004.0090	…기타	2		8	13	5	kg	AB
10.05	옥수수							
1005.1000	· 종자	*20		*180	13	13	kg	
1005.9000	· 기타	*65		*180	13	13	kg	

10.06	쌀(벼를포함한다.)							
	· 벼							
	…종자							
1006.1011	· …멥쌀	*65	*180	13	13	kg		
1006.1019	· …기타	*65	*180	13	13	kg		
	…기타							
1006.1091	· …멥쌀	*65	*180	13	13	kg		
1006.1099	· …기타	*65	*180	13	13	kg		
	· 현미							
1006.2010	…멥쌀	*65	*180	13	13	kg		
1006.2090	…기타	*65	*180	13	13	kg		
1006.4090	…기타	*65	*180	13	13	kg		
10.07	수수							
1007.0010	…종자	0	0	13	5	kg	AB	
1007.0090	…기타	2	8	13	5	kg	AB	
10.08	메밀 · 조또는카나리시드및기타의곡물							
1008.1000	· 메밀	2	8	13	5	kg	AB	
1008.2000	· 조	2	8	13	5	kg	AB	
1008.3000	· 카나리시드	2	8	13	5	kg	AB	
	· 기타의곡물							
1008.9010	…종자	0	0	13	5	kg	AB	
1008.9090	…기타	3	8	13	5	kg	AB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글루텐							
11.01	밀가루또는메슬린가루							
1101.0000	밀가루또는메슬린가루	*65	*130	13	13	kg		
11.02	곡분(밀가루또는메슬린가루를제외한다.)							
1102.1000	· 호밀가루	5	14	13	5	kg	AB	
1102.2000	· 옥수수가루	*40	*130	13	13	kg		
	· 쌀가루							
1102.3010	…멥쌀	*40	*130	13	13	kg		
1102.3090	…기타	*40	*130	13	13	kg		
1102.9000	· 기타	5	14	13	5	kg	AB	
11.03	곡물의분쇄물 · 조분및펠리트							
	· 분쇄물및조분							
1103.1100	…밀의것	*65	*130	13	13	kg		
1103.1300	…옥수수의것	*65	*130	13	13	kg		
	…기타							
1103.1910	…귀리의것	5	14	13	5	kg	AB	
	…쌀의것							

1103.1921	· …팥쌀의것	*10		*70	13	13	kg	
1103.1929	· …기타	*10		*70	13	13	kg	
1103.1990	…기타	5		14	13	5	kg	AB
	· 팥리트							
1103.2010	…밀의것	*65		*180	13	13	kg	
1103.2090	…기타	20		50	13	5	kg	AB
11.04	기타가공한곡물[예:껍질을벗긴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 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 호의쌀을제외한다.)]과곡물의배아로서원 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것							
	· 압착또는플레이크상의것							
1104.1200	…귀리의것	20		50	17	5	kg	AB
	…기타							
1104.1910	…보리의것	20		50	17	5	kg	AB
1104.1990	…기타	20		50	17	5	kg	AB
	· 기타 가공곡물(예:껍질을 벗긴것진주상의 것 · 얇은조각으로한것또는거칠게빻은것)							
1104.2200	…귀리의것	20		50	17	5	kg	AB
1104.2300	…옥수수등의것	*65		*180	13	13	kg	
	…기타							
1104.2910	…보리의것	65		114	13	5	kg	AB
1104.2990	…기타	20		50	13	5	kg	AB
1104.3000	· 물의배아(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 상의것또는분쇄한것)	20		50	17	5	kg	AB
11.05	감자의분 · 조분 · 분말 · 플레이크 · 입맞팥리트							
1105.1000	· 분 · 조분과분말	15		50	17	13	kg	AB
1105.2000	· 플레이크 · 입맞팥리트	15		50	17	13	kg	AB
1106.1000	· 건조한채두류의것(제0713호의것)	10		30	17	13	kg	AB
1106.2000	· 사고 · 뿌리또는괴경의것(제0714호의것)	20		50	17	13	kg	AB
1106.3000	· 제8류물품의것	20	10	80	17	5,13	kg	AB
1107.1000	· 볶은것	10		50	17	13	kg	AB
1107.2000	· 볶지아니한것	10		50	17	13	kg	AB
11.08	전분과이눌린							
1108.1100	…밀의것	20		50	17	13	kg	AB
1108.1200	…옥수수등의것	20		50	17	13	kg	AB

1108.1300	· · 감자의것	15		50	17	13	kg	AB
1108.1400	· · 매니옥(카사바)의것	10		50	17	13	kg	AB
1108.1900	· · 기타의것	20		50	17	13	kg	AB
1108.2000	· 이눌린	20		50	17	13	kg	AB
11.09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09.0000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		80	17	13	kg	AB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 각종의 종자와 과일,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1.0010	· · · 종자	0		180	13	5	kg	AB
	· · · 기타							
1201.0091	· · · 황대두	3	0	180	13	5	kg	AB
1201.0092	· · · 흑대두	3	0	180	13	5	kg	AB
1201.0093	· · · Green soya beans	3	0	180	13	5	kg	AB
1201.0099	· · · 기타	3	0	180	13	5	kg	AB
12.02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탈각하지 아니한 것							
1202.1010	· · · 종자	0		0	13	5	kg	AB
1202.1090	· · · 기타	15		70	13	5	kg	AB
1202.2000	· 탈각한 것(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13	5	kg	AB
12.03	Gopra(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3.000	Gopra(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	7.5	30	13	5	kg	AB
12.04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4.000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		70	13	5	kg	AB
12.05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저에루쿠산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1205.1010	· · · 종자	0		80	13		kg	AB
1205.1090	· · · 기타	9	0	80	13	5	kg	AB
	· 기타							
1205.9010	· · · 종자	0		80	13		kg	AB
1205.9090	· · · 기타	9	0	80	13	5	kg	AB

12.06	해바라기씨(파쇄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1206.0010	…종자	0		0	13	5	kg	AB
1206.0090	…기타	15		70	13	5	kg	AB
12.07	기타채유용에적합한종자와과실(파쇄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팜넛과핵							
1207.1010	…종자	0		0	13	5	kg	AB
1207.1090	…기타	10		70	13	5	kg	AB
	· 면실							
1207.2010	…종자	0		0	13	5	kg	AB
1207.2090	…기타	15		70	13	5	kg	AB
	· 피마자씨							
1207.3010	…종자	0		0	13	5	kg	AB
1207.3090	…기타	15		70	13	5	kg	AB
	· 참깨							
1207.4010	…종자	0		0	13	5	kg	AB
1207.4090	…기타	10	9	70	13	5	kg	AB
	· 겨자씨							
1207.5010	…종자	0		0	13	5	kg	AB
1207.5090	…기타	15		70	13	5	kg	AB
	· 홍화씨							
1207.6010	…종자	0		0	13	5	kg	AB
1207.6090	…기타	20		70	13	5	kg	AB
	· 기타							
1207.9100	…양귀비씨	20		70	13	5	kg	AB
	…기타							
1207.9910	…종자	0		0	13	5	kg	AB
	…기타							
1207.9991	· …시어넛(캐리트넛)	20		70	13	5	kg	AB
1207.9999	· …기타	10		70	13	5	kg	AB
12.08	채유용에적합한종자와과실의분과조분(겨자의분과조분을제외한다.)							
1208.1000	· 대두분	9		70	17	5	kg	AB
1208.9000	· 기타	15		80	17	5	kg	AB
12.09	파종용의종자 · 과실및포자							
1209.1000	· 사탕무종자	0		0	13	5	kg	AB
	· 사료용식물의종자							
1209.2100	· …루산(알팔파) 종자	0		0	13		kg	AB
1209.2200	· …클로버(트리폴리엄속) 종자	0		0	13		kg	AB
1209.2300	· …페스큐종자	0		0	13		kg	AB
1209.2400	· …센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 종자	0		0	13		kg	AB
1209.2500	· …라이그래스 종자(로오리엄 멀티플로럼 램 · 로오리엄페레네)	0		0	13		kg	AB

1209.2600	…티모디그래스종자	0		0	13		kg	AB
	…기타							
1209.2910	…사탕무우 종자(기타 사탕무 종자를 제외한다.)	0		0	13	5	kg	AB
1209.2990	…기타	0		0	13		kg	AB
1209.3000	· 화초용초본식물의종자	0		0	13		kg	
	· 기타							
1209.9100	…채소종자	0		0	13		kg	AB
	…기타							
1209.9910	…수박종자	0		0	13		kg	AB
1209.9920	…멜론종자(수박종자를제외한다.)	0		0	13		kg	AB
1209.9990	…기타	0		0	13		kg	
12.10	호프(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 분말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루플린							
1210.1000	· 호프(분쇄한 것, 분상또는펠리트 상의 것을제외한다.)	20		50	17	13	kg	AB
1210.2000	·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펠리트 상의 것에한한다.)와루플린	10		50	17	13	kg	AB
12.11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 (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한것인지의여부불문한다.)							
	· 감초							
1211.1010	…신강의장과감초	6		30	13	5	kg	AQB4xy
1211.1090	…기타	6		30	13	5	kg	AQB4xy
	· 감초							
1211.2010	…서양삼	7.5		70	13	5	kg	AQBFE
1211.2020	…야생삼(서양삼을제외한다.)	20	16.4	90	13	5	kg	ABaFE
	…기타							
1211.2091	· …신선한것	20		50	13	5	kg	ABa
1211.2099	· …기타	20		50	13	5	kg	ABQa
1211.3000	· 코카인	9		50	13	5	kg	
1211.4000	· 양귀비줄기	9		50	13	5	kg	
	· 기타							
	…주로의료용에적합한식물및그부분의것							
1211.9011	· …당귀	6	3	20	13	5	kg	AQB
1211.9012	· …삼칠초	6	3	20	13	5	kg	AQB
1211.9013	· …당삼	6	3	20	13	5	kg	AQB
1211.9014	· …황련	6	3	20	13	5	kg	AQB
1211.9015	· …국화	6	3	20	13	5	kg	AQB
1211.9016	· …동충하초	6	3	20	13	5,13	kg	AQBE
1211.9017	· …패모	6	3	20	13	5	kg	AQB
1211.9018	· …천궁	6	3	20	13	5	kg	AQB

1211.9019	· …반하	6	3	20	13	5	kg	AQB
1211.9021	· …Radix paeoniae lactiflorae	6	3	20	13	5	kg	AQB
1211.9022	· …천마	6	3	20	13	5	kg	AQBFE
1211.9023	· …Radix astragali	6	3	20	13	5	kg	AQB
1211.9024	· …대황	6	3	20	13	5	kg	AQB
1211.9025	· …백출	6	3	20	13	5	kg	AQB
1211.9026	· …지황	6	3	20	13	5	kg	AQB
1211.9027	· …flos sophorae	6	3	20	13	5	kg	AQB
1211.9028	· …두충나무	6	3	20	13	5	kg	AQB
1211.9029	· …복령	6	3	20	13	5	kg	AQB
1211.9031	· …구기	6	3	20	13	5	kg	AQB
1211.9032	· …bantaroi seeds	6	3	20	13	5	kg	AQB
1211.9033	· …침향	3	1.5	20	13	5	kg	AQFE
1211.9034	· …Adenophora axilliflora	6	3	20	13	5	kg	AQB
1211.9035	· …sweet wormwood herb	6		20	13	5	kg	AQB
1211.9039	· …기타	6	3	20	13	5	kg	
1211.9050	…주요향의 용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의 것	8	4	50	13	5	kg	
	…기타							
1211.9091	· …테리스뿌리와 재중국	3	1.5	11	13	5	kg	AB
1211.9099	· …기타	9	4.5	11	13	5	kg	
12.12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인티부스새티범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212.1000	·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를 포함한다.)	20	10	70	13	5	kg	
	· 해초류와 기타 조류							
1212.2010	…다시마	20	10	70	13	5	kg	
1212.2020	…Black moss	20	10	70	13	5	kg	
	…미역							
1212.2031	· …건조한 것	15	7.5	70	13	5,13	kg	AB
1212.2032	· …신선한 것	15	7.5	70	13	5	kg	AB
1212.2039	· …기타	15	7.5	70	13	5,13	kg	AB
	…김(해태)							
1212.2041	· …건조한 것	15	7.5	70	13	5,13	kg	AB
1212.2042	· …신선한 것	15	7.5	70	13	5	kg	AB
1212.2049	· …기타	15	7.5	70	13	5,13	kg	AB
1212.2050	…마미조	15	7.5	70	13	5	kg	
	· 살구·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또는 자두의 핵							
	…살구핵							
1212.3011	· …쓴살구핵	20		80	13	5	kg	QAB
1212.3012	· …단살구핵	20		80	13	5	kg	AB

	…살구핵							
1212.3011	· …쓴살구핵	20		80	13	5	kg	QAB
1212.3012	· …단살구핵	20		80	13	5	kg	AB
1212.3090	…기타	20		80	13	5	kg	AB
	· 기타							
1212.9100	…사탕무우	20		70	13	5	kg	AB
	…기타							
	…종자							
1212.9953	· …사탕수수	0		0	13	5	kg	
1212.9959	· …기타	0		0	13	5	kg	
	…기타							
1212.9991	· …검은수박씨	20		80	13	5	kg	AB
1212.9992	· …빨간수박씨	20		80	13	5	kg	AB
1212.9993	· …흰수박씨	20		80	13	5	kg	AB
1212.9994	· …연꽃씨	20		80	13	5	kg	AB
1212.9995	· …사탕수수	20		70	13	5	kg	
1212.9999	· …기타	30		70	13	5	kg	
12.13	곡물의짚과껍질 (조제하지아니한것에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1213.0010	…조제하지않은벼짚의짚	12		35	13	5	kg	AB
1213.0090	…기타	12		35	13	5	kg	AB
12.14	스워드·맹골드·사료용의근채류·건초·루우산(알팔파)·클로버·샌포인·케일·루핀·베치밋이와유사한사료용식물(펠리트상으로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1214.1000	· 루우산(알팔파)의조분과펠리트	5		35	13		kg	AB
1214.9000	· 기타	9		35	13		kg	AB
제13류	락·검·수지및기타의식물성엑즙과엑스							
13.01	락과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올레오레진 (예:발삼)							
1301.1000	· 락	15		40	13	5	kg	AB
1301.2000	· 아라비아검	15	5	40	13	5	kg	AB
	· 기타							
1301.9010	…Gum tranacanth	15	5	40	13	5	kg	AB

1301.9020	…유향, 몰약및dragon's blood	3	0	17	13	5	kg	AB
1301.9030	…아워	3	0	17	13	5	kg	AB
1301.9040	…송진	15	5	45	13	5	kg	
1301.9090	…기타	15	5	45	13	5	kg	
13.02	식물성의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불문한다.)							
	· 식물성의수액과엑스							
1302.1100	…아편	0		0	0	13	kg	AWB9
1302.1200	…감초의것	6		20	17	13	kg	4xABy
1302.1300	…호프의것	10		80	17	13	kg	AB
1302.1400	…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의것	3		11	17	13	kg	AB
	…기타							
1302.1910	…생철	20		90	17	5	kg	AB
1302.1920	…Nimbrin	3		11	17	5	kg	AB
1302.1990	…기타	20	15	80	17	13	kg	
1302.2000	· 펙틴질 · 펙티닝산염및펙틴산염	20		80	17	13	kg	AB
	· 식물성원료에서얻은점질물및디크너(변성가공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1302.3100	…한천	10		80	17	13	kg	AB
1302.3200	…로우커스트두 · 로우커스트두의씨 또는 구아의씨로부터얻은점질물및디크너(변성가공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15	5	80	17	13	kg	AB
1302.3900	…기타	15		80	17	13	kg	
제15류	동 · 식물성유지및이들의분해생산물, 조제 식용지와동 · 식물성의납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제1503호의것을제외한다.)							
1501.0000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제1503호의것을제외한다.)	10		35	17	13	kg	AB
1501.0000	돈지(라드를포함한다)와가금지(제0209호 또는제1503호의것을제외한다.)	10		35	17	13	kg	AB
15.02	소 · 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을제외한다.)							
1502.0010	…정제하지않은소 · 면양또는산양의지방	8	0	70	17	5	kg	AB
1502.0090	…기타	8	0	70	17	13	kg	AB

15.03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텔로우유로서 유화·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1503.0000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텔로우유로서 유화·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10		30	17	13	kg	AB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4.1000	·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12		30	17	13	kg	AB
1504.2000	·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를 제외한다.)	12		50	17	13	kg	AB
1504.3000	·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14.4		50	17	13	kg	
15.05	올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1505.0000	· 올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20		70	17	13	kg	AB
15.06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6.0000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2		70	17	13	kg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7.1000	· 조유(검질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		*190	13	11	kg	7AB
1507.9000	· 기타	9		*190	13	11	kg	7AB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8.1000	· 조유	10		100	13	11	kg	AB
1508.9000	· 기타	10		100	13	11	kg	AB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9.1000	· 조유	10		30	13	13	kg	AB
1509.9000	· 기타	10		30	17	13	kg	AB

15.1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 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10.00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 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0		30	17	13	kg	AB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1.1000	· 조유	9		*60	13	11	kg	7AB
	· 기타							
1511.9010	··Palm liquid oil(응해점 19? ~ 13?)	9		*60	13	11	kg	7AB
1511.9020	··Palm hard-fat(응해점 44? ~ 56?)	8		60	13	11	kg	AB
1511.9090	··기타	9		60	17	13	kg	7AB
15.12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1000	··조유	9		160	13		kg	AB
1512.1900	··기타	9		160	17		kg	AB
	· 면실유와 그 분획물							
1512.2900	··기타	10		70	17	11	kg	AB
15.13	야자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3.1100	··조유	9	4.5	40	13	13	kg	AB
1513.1900	··기타	9	4.5	40	13	13	kg	AB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							
1513.2900	··기타	9		40	17	11	kg	AB
15.14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4.1100	··조유	9		*170	13	11	kg	7AB

1514.1900	·기타	9		*170	13	11,13	kg	7AB
	·기타							
	·조유							
1514.9110	·유채유(레이프유또는콜자유)	9		*170	13	11	kg	7AB
1514.9190	·겨자유	9		*170	13	13	kg	7AB
1514.9900	·기타	9		*170	17	11,13	kg	7AB
15.15	기타 비취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을제외한다.)							
	·아마인유와그분획물							
1515.1100	·조유	15		30	13	13	kg	AB
1515.1900	·기타	15		30	17	13	kg	AB
	·옥수수유와그분획물							
1515.2100	·조유	10		160	13	13	kg	AB
1515.2900	·기타	10		160	17	13	kg	AB
1515.3000	·피마자유와그분획물	10		70	17	13	kg	AB
1515.4000	·동유와그분획물	20		70	17	13	kg	AB
1515.5000	·참기름과그분획물	12		20	13	11	kg	AB
	·기타							
1515.9010	·호호버유와그분획물	20		70	17	13	kg	AB
1515.9020	·Nim and its extract	20		70	17	13	kg	AB
1515.9090	·기타	20		70	17	13	kg	AB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부분적으로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것, 리에스테르화한것 또는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가공한것을제외한다.)							
1516.1000	·동물성유지와그분획물	5		70	17	11	kg	AB
1516.2000	·식물성유지와그분획물	25		70	17	11	kg	AB
15.17	마가린및이류의동 · 식물성유지또는유지 분획물로만든식용의혼합물또는조제품(제 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제외한다.)							
1517.1000	·마가린(액상마가린을제외한다)	30		80	17	13	kg	AB
1517.9000	·기타	25		70	13	11	kg	AB
15.18	동물성또는식물성유지와그분획물(끓이거나 산화 · 탈수 · 황화 · 취입 · 진공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식용에적합하지아니한동물성 또는 식물성유지또는이류의다른유지의분획물의 혼합물또는조제품							

1518.0000	동물성또는식물성유지와그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호의 해당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10		70	17	11	kg	AB
15.2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페액							
1520.000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페액	20		50	17	11	kg	AB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기타							
1521.9090	…기타	20		80	17	13	kg	
15.22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 식료품							
1601.0010	…천연외피로 포장한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5		90	17	13	kg	
	…기타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601.0030	…소시지를 기제로 한 조제 식료품	15		90	17	13	kg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1602.1000	· 균질화한 조제품	15		90	17	13	kg	
1602.2000	· 동물 간장의 것	15		90	17	13	kg	AB
	· 가공류의 것(제0105호의 것에 한한다.)							
1602.3100	· 칠면조의 것	15		90	17	13	kg	AB
	· 닭의 것							
1602.3210	· 밀폐 용기에 넣은 것	15		90	17	13	kg	AB
	· 기타							
1602.3291	· …닭 가슴고기	15		90	17	13	kg	AB
1602.3292	· …닭 다리고기	15		90	17	13	kg	AB
	· 기타							

1602.3910	…밀폐용기에넣은것	15		90	17	13	kg	AB
	…기타							
1602.3991	· …오리의것	15		90	17	13	kg	AB
1602.3999	· …기타	15		90	17	13	kg	AB
	· 돼지의것							
1602.4100	…넓적다리살과그절단육	15		90	17	13	kg	
1602.4200	…어깨살과그절단육	15		90	17	13	kg	
1602.4910	…밀폐용기에넣은것	15		90	17	13	kg	
1602.4990	…기타	15		90	17	13	kg	
	· 소의것							
1602.5010	…밀폐용기에넣은것	12		90	17	13	kg	
1602.5090	…기타	12		90	17	13	kg	
	· 기타(동물의피조제품을포함한다.)							
1602.9010	…밀폐용기에넣은것	15		90	17	13	kg	
1602.9090	…기타	15		90	17	13	kg	
16.03	육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엑스와즙							
1603.0000	육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엑스와즙	23		90	17	13	kg	
16.04	조제또는저장처리한어류및캐비아와어란으로조제한캐비아대용물							
	· 어류(원상또는조각으로한것에한하며, 잘게다진것은제외한다.)							
	…연어							
1604.1110	…대서양연어(살모살라)	12		90	17	13	kg	AB
1604.1190	…기타	12		90	17	13	kg	
1604.1200	…청어	12		90	17	13	kg	AB
1604.1300	…정어리 · 사르디넬라 · 브리스팅또는스프랫	5		90	17	13	kg	AB
1604.1400	…다랑어 · 가다랑어및버니토우(사르다종)	5		90	17	13	kg	AB
1604.1500	…고등어	12		90	17	13	kg	AB
1604.1600	…멸치	12		90	17	13	kg	AB
	…기타							
1604.1910	…담수멸치	12	9.9	90	17	13	kg	
1604.1920	…아프리카붕어(틸라피아)	12		90	17	13	kg	AB
1604.1990	…기타	12	9.9	90	17	13	kg	
	· 기타조제또는저장처리한어류							
	…밀폐용기에넣은것							
1604.2011	· …상어지느러미	12	9.9	90	17	13	kg	
1604.2019	· …기타	12	9.9	90	17	13	kg	
	…기타							
1604.2091	· …상어지느러미	12	9.9	90	17	13	kg	
1604.2099	· …기타	12	9.9	90	17	13	kg	

1604.3000	· 캐비아와캐비아대용물	12		90	17	13	kg	ABFE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수생무척추동물							
1605.1000	· 게	5		90	17	13	kg	AB
1605.2000	· 새우와보리새우	5		90	17	13	kg	AB
1605.3000	· 바다가재	5		90	17	13	kg	AB
	· 기타갑각류							
	...담수가재							
1605.4011	· ...껍질을벗기고말린새우	5		90	17	13	kg	aAB
1605.4019	· ...기타	5		90	17	13	kg	aAB
1605.4090	...기타	5		90	17	13	kg	AB
	· 기타							
1605.9010	...해파리	15		90	13,17	5,13	kg	AB
1605.9020	...조개	5	3.9	90	13,17	5,13	kg	AB
1605.9090	...기타	5	3.9	90	17	13	kg	
제17류	당류와설탕과자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자당(고체상태인것에한한다.)							
	·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것에한한다.)							
1701.1100	· ·사탕수수당	*50		*125	17	13	kg	
1701.1200	· ·사탕무당	*50		*125	17	13	kg	
	· 기타							
1701.9100	· ·향미또는착색제가첨가된것	*50		*125	17	13	kg	
	· ·기타							
1701.9910	...과립상설탕	*50		*125	17	13	kg	
1701.9920	...최상품백설탕	*50		*125	17	13	kg	
1701.9990	...기타	*50		*125	17	13	kg	
17.02	기타의당류(화학적으로순수한유당·맥아당·포도당및과당을포함하며, 고체상태인것에한한다.)·당시럽(향료나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것에한한다.)·인조꿀(천연꿀을혼합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및캐러멜당							
	· 유당과유당시럽							
1702.1100	· ·유당과유당시럽	10		80	17	13	kg	AB
1702.1900	· ·기타	10		80	17	13	kg	AB
1702.2000	· 단풍당과단풍당시럽	30		80	17	13	kg	A
1702.3000	· 포도당과포도당시럽(과당을함유하지아니하거나건조상태에서과당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0미만인것에한한다.)	30		80	17	13	kg	BA
1702.4000	· 포도당과포도당시럽(건조상태에서과당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20이상이고 100분의 50미만인것에한한다.). 다만, 전화당을제외한다.	30		80	17	13	kg	BA

1702.5000	· 화학적으로순수한과당	30		80	17	13	kg	A
1702.9000	· 기타[전화당 및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혼합물(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인 것에 한한다.)을포함한다.]	30		80	17	13	kg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한다.)							
1703.1000	· 사탕수수에서생긴당밀	8		50	17	13	kg	AP
1703.9000	· 기타	8		50	17	13	kg	AP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것을제외한다.)							
1704.1000	· 추잉껌(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	9.5	50	17	13	kg	AB
1704.9000	· 기타	10	8.2	50	17	13	kg	AB
제18류	코코아와그조제품							
18.01	코코아두(원상또는파쇄한것으로서볶은것을포함한다.)							
1801.0000	코코아두(원상또는파쇄한것으로서볶은것을포함한다.)	8		30	17	5,13	kg	AB
18.02	코코아분말(설탕기타감미료를첨가한것에한한다)							
1802.0000	코코아분말(설탕기타감미료를첨가한것에한한다)	10		30	17	5	kg	AB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03.1000	· 탈지하지아니한것	10		30	17	13	kg	AB
1803.2000	· 전부탈지또는일부탈지한것	10		30	17	13	kg	AB
18.04	코코아버터(지또는유)							
1804.0000	코코아버터(지또는유)	22		70	17	13	kg	
18.05	코코아분말(설탕기타감미료를첨가한것을 제외한다.)							
1805.0000	코코아분말(설탕기타감미료를첨가한것을 제외한다.)	15		40	17	13	kg	AB

18.06	초코렛과코코아를함유한기타조제식료품							
1806.1000	· 코코아분말(설탕기타감미료를첨가한것에한한다.)	10		50	17	13	kg	AB
1806.2000	· 기타조제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슬랩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상·페이스트상·분말상·입상 또는 기타 벌크상의 것에 한한다.)	10	7.7	50	17	13	kg	AB
	· 기타(블록상·슬랩상 또는 바상의 것에 한한다.)							
1806.3100	·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8	6.4	50	17	13	kg	AB
1806.3300	·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우지 아니한 것	10	7.7	50	17	13	kg	AB
1806.9000	· 기타	8	6.4	50	17	13	kg	AB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 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 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901.1000	·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15		40	17	13	kg	AB
1901.2000	·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 반죽	25		80	17	5,13	kg	AB
1901.9000	· 기타	10		80	17	13	kg	AB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사그네·그노치·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속을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2.1100	· 조란을 넣은 것	15		80	17	5	kg	AB
1902.1900	· 기타	15		80	17	5	kg	AB
1902.2000	·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 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		80	17	5,13	kg	AB
	· 기타의 파스타							

1902.3010	…Rice vermicelli, cooked	15		80	17	5,13	kg	AB
1902.3020	…녹말로만든당면	15		80	17	13	kg	AB
1902.3030	…죽석면	15	13.1	80	17	13	kg	AB
1902.3090	…기타	15	13.1	80	17	5,13	kg	AB
1902.4000	· 쿠우스쿠우스	25		80	17	5,13	kg	AB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난알상·진주상·무거리상 기타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1903.0000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난알상·진주상·무거리상 기타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15		80	17	13	kg	AB
19.04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 식품(곡물 또는 곡물 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 과 난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계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4.1000	· 곡물 또는 곡물 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 식품	25		80	17	13	kg	AB
1904.2000	·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 식품 ·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품	30		80	17	13	kg	AB
1904.3000	· 불커소맥	30		80	17	13	kg	AB
1904.9000	· 기타	30		80	17	13	kg	AB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 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905.1000	· 귀리빵	20		80	17	13	kg	A
1905.2000	· 진저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스위트비스킷 및 와플과 웨이퍼	20		80	17	13	kg	A
1905.3100	· 스위트비스킷	15	12.4	80	17	13	kg	AB
1905.3200	· 와플과 웨이퍼	15	12.4	80	17	13	kg	AB
1905.4000	· 러스크·토우스트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20		80	17	13	kg	AB
1905.9000	· 기타	20	17.1	80	17	13	kg	AB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1000	· 오이류	25		70	13,17	5,13	kg	AB
	· 기타							
2001.9000	··마늘	25		70	13,17	5,13	kg	
2001.9090	··기타	25		70	17	5	kg	
20.02	조제또는저장처리한토마토(식초또는초산으로처리한것을제외한다.)							
	· 전체또는조각상의토마토							
2002.1010	··밀폐용기에넣은것	19		80	17	13	kg	AB
2002.1090	··기타	25		70	17	5,13	kg	AB
	· 기타							
2002.9010	··토마토편리스트(밀폐용기에넣은것)	20		80	17	13	kg	AB
2002.9090	··기타	18		70	17	5,13	kg	AB
20.03	조제또는저장처리한버섯과송로(식초또는초산으로처리한것을제외한다.)							
	· 아가리쿠스속의버섯							
	··밀폐용기에넣은것							
2003.1011	· ...작은백버섯	25		90	17	13	kg	AB
2003.1019	· ...기타	25		90	17	13	kg	AB
2003.2000	· 송로	25		90	17	5,13	kg	AB
	· 기타							
2003.9010	··밀폐용기에넣은것	25		90	17	13	kg	AB
20.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처리한것을제외하며, 냉동한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물품을제외한다.)							
2004.1000	· 감자	13		70	17	5,13	kg	AB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처리한것을제외하며, 냉동하지아니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물품을 제외한다.)							
2005.1000	· 균질화한채소	25		70	17	13	kg	AB
2005.4000	· 완두(파섹새티범)	15		70	17	5,13	kg	AB
	·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달걀콩							
2005.5190	··기타	25		70	17	5,13	kg	AB
	··기타							
2005.5910	··밀폐용기에넣은것	25		80	17	13	kg	AB
	··아스파라거스							

2005.6010	…밀폐용기에넣은것	25		80	17	13	kg	AB
2005.6090	…기타	25		70	17	5,13	kg	AB
2005.7000	· 올리브	10		70	17	5,13	kg	AB
2005.8000	· 스위트콘(자메이스변종, 카라타)	10		80	17	5,13	kg	AB
	· 기타채소(채소의혼합물을포함한다.)							
2005.9010	…Water chestnut(밀폐용기에넣은것)	25		80	17	13	kg	AB
2005.9020	…누에콩(밀폐용기에넣은것)	25		80	17	13	kg	AB
	…죽순							
2005.9031	· …끓인죽순(체적이8리트밋그이상)	25		80	17	13	kg	
2005.9039	· …기타	25		80	17	13	kg	
2005.9040	…梭菜(사천성특산의2년생초본식물)	25		70	17	5,13	kg	AB
2005.9050	…절인고사리	25		70	17	5,13	kg	AB
2005.9060	…절인양파	25		70	17	5,13	kg	AB
	…기타							
2005.9091	· …밀폐용기에넣은것	25		70	17	13	kg	AB
2005.9092	· …적두페이스트	25		70	17	13	kg	AB
2005.9099	· …기타	25		70	13,17	5,13	kg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설탕에절인것)							
2006.0010	…꿀에쥬대추	30		90	17	13	kg	AB
2006.0020	…감람	30		90	17	13	kg	AB
2006.0090	…기타	30		90	17	13	kg	
20.07	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2007.1000	· 균질화한조제품	30		80	17	13	kg	AB
	· 기타							
2007.9100	…감귤류의과실	30		80	17	13	kg	AB
	…기타							
2007.9910	…밀폐용기에넣은것	5		80	17	13	kg	AB
2007.9990	…기타	5		80	17	13	kg	AB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것에한한다.)							
	· 견과류·낙화생기타의씨류(서로혼합된 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낙화생							
2008.1110	…땅콩(밀폐용기에넣은것)	30		90	17	13	kg	AB
2008.1120	…볶은땅콩	30		80	17	13	kg	AB
2008.1130	…땅콩버터	30		90	17	13	kg	AB

2008.1190	…기타	30		80	17	5,13	kg	AB
	…기타(혼합물을포함한다.)							
2008.1910	…호두의속알맹이(밀폐용기에넣은것)	20	10	90	17	13	kg	AB
2008.1920	…기타과일의핵(밀폐용기에넣은것)	13	6.5	90	17	13	kg	AB
	…기타							
2008.1991	· …밤의핵	10	5	80	13,17	5,13	kg	AB
2008.1992	· …참깨	10	5	80	13,17	5,13	kg	AB
2008.1999	· …기타	10	5	80	13,17	5,13	kg	
	· 파인에플							
2008.2010	…밀폐용기에넣은것	15		90	17	13	kg	AB
2008.2090	…기타	15		80	13,17	5,13	kg	AB
	· 감귤류과실							
2008.3010	…밀폐용기에넣은것	20		90	17	13	kg	AB
2008.3090	…기타	20		80	1,17	5,13	kg	AB
	· 배							
2008.4010	…밀폐용기에넣은것	20		90	17	13	kg	AB
2008.4090	…기타	20		80	13,17	5,13	kg	AB
2008.5000	· 살구	20		90	17	5,13	kg	AB
2008.6000	· 앵두	20		90	17	5,13	kg	AB
	· 복숭아(넥터린을포함한다)							
2008.7010	…밀폐용기에넣은것	10		90	17	13	kg	AB
2008.7090	…기타	20		80	13,17	5,13	kg	AB
2008.8000	· 딸기	15		90	13,17	5,13	kg	AB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나 제2008.19호의 혼합물을제외한다.)							
2008.9100	…팜하트	5		80	13,17	5,13	kg	AB
2008.9200	…혼합물	10		80	13,17	5,13	kg	AB
	…기타							
2008.9910	…여지(넥터린을포함한다)	20		90	17	13	kg	AB
2008.9920	…용안(넥터린을포함한다)	15		80	17	13	kg	AB
2008.9990	…기타	15		90	13,17		kg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포함한다.)와채소주스(설탕기타감미료를첨가한것을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한한다.)							
	· 오렌지주스							
2009.1100	…냉동한것	7.5		90	17	13	kg	AB
2009.1200	…냉동하지않은 것으로서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않는것	30		90	17	13	kg	AB
2009.1900	…기타	30		90	17	13	kg	AB
	· 그레이프프루트주스							
2009.2100	…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않는것	15		90	17	13	kg	AB
2009.2900	…기타	15		90	17	13	kg	AB

	· 기타단일의감귤류의주스							
	··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않는것							
2009.3110	··레몬주스	18	16.8	90	17	13	kg	AB
2009.3190	··기타	18	16.8	90	17	13	kg	AB
	··기타							
2009.3910	··레몬주스	18	16.8	90	17	13	kg	AB
2009.3990	··기타	18	16.8	90	17	13	kg	AB
	· 파인애플주스							
2009.4100	··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않는것	10		90	17	13	kg	AB
2009.4900	··기타	10		90	17	13	kg	AB
2009.5000	· 토마토주스	30		80	17	13	kg	AB
	· 포도주스(포도즙을포함한다.)							
2009.6100	··브릭스값이 30을 초과하지않는것	20		90	17	13	kg	AB
2009.6900	··기타	20		90	17	13	kg	AB
	· 사과주스							
2009.7100	··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않는것	20		90	17	13	kg	aAB
2009.7900	··기타	20		90	17	13	kg	aAB
	· 기타단일의과실또는채소의주스							
	··과실주스							
2009.8011	· ...야자과즙	10	9	90	17	13	kg	AB
2009.8012	· ...망고주스	20	17.4	90	17	13	kg	AB
2009.8013	· ...시계열(passionfruit)주스	20	17.4	90	17	13	kg	AB
2009.8014	· ...과바주스	20	17.4	90	17	13	kg	AB
2009.8019	· ...기타	20	10	90	17	13	kg	AB
2009.8020	··채소주스	20	10	80	17	13	kg	AB
	· 혼합주스							
2009.9010	··과일주스	20	17.4	90	17	13	kg	AB
2009.9090	··기타	20		80	17	13	kg	AB
제21류	각종의조제식료품							
21.01	커피 · 차 또는 마태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기제로한조제품, 커피 · 차 · 마태를기제로한조제품, 볶은치커리와기타의볶은커피대용물및이들의엑스 · 에센스와농축물							
	· 커피와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한조제품또는커피를기제로한조제품							
2101.1100	··엑스 · 에센스와농축물	17		130	17	13	kg	AB
2101.1200	··엑스 ·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또는커피를기제로한조제품	30		130	17	13	kg	AB
2101.2000	· 차또는마태의엑스 · 에센스와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기제로한조제품	32	16	130	17	13	kg	AB

2101.3000	· 볶은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엑스·에센스와농축물	30		130	17	13	kg	AB
21.02	효모(활성또는불활성의것에한한다.),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1000	· 활성효모	25		80	17	13	kg	AB
2102.2000	· 불활성효모와기타죽은단세포미생물	25		70	17	13	kg	AB
2102.3000	· 조제한베이킹파우더	25		70	17	13	kg	AB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겨자의 분·조분과조제품							
2101.1000	· 간장	28		90	17	13	kg	AB
2101.2000	· 토마토케찹과기타토마토의소스	15		90	17	13	kg	AB
2103.3000	· 겨자의분·조분과조제한겨자	15		70	17	13	kg	AB
	· 기타							
2103.9010	…화학조미료(미원)	21	18.2	130	17	13	kg	AB
2103.9020	…방향족술(전체체적의44.2%~49.2% 알콜, 전체중량의1.5%~6% 향료, 각종배합원료 및 전체 중량의 4%~10% 설탕을 포함한다.)	21		90	17	13	kg	AB
2103.9090	…기타	21	18.4	90	17	13	kg	AB
21.04	수프·브로드와수프·브로드용조제품및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							
2104.1000	· 수프·브로드와수프·브로드용조제품	15		90	17	13	kg	AB
2104.2000	· 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	32		90	17	13	kg	AB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19		90	17	13	kg	AB
21.06	따로분류되지아니한조제식료품							
2106.1000	· 단백질농축물과텍스처화한단백질계물질	10		90	17	13	kg	AB
	· 기타							
2106.9010	…탄산음료제조용농축물(음료베이스)	35		100	17	13	kg	AB
2106.9020	…음료제조용복합알콜제품	20		180	17	13	kg	AB
2106.9030	…로알제리제제	3		80	17	13	kg	
	…기타							
2106.9091	· …조미김(해태)	20	18.4	90	17	13	kg	AB
2106.9099	· …기타	20	18.4	90	17	13	kg	
제22류	음료·알콜및식초							
22.01	물(천연또는인조의광수와탄산수를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것에한한다)과얼음및눈							
	· 광수와탄산수							

2201.1010	…광수	20		90	17	13	리트/kg	AB
2201.1020	…탄산수	20		90	17	13	리트/kg	AB
	· 기타							
2201.9010	…천연수	10		30	17		리트/톤	AB
2201.9090	…기타	10		30	17		리트/kg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일주스 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							
2202.1000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20		100	17	13	리트/kg	AB
2202.9000	· 기타	35	29.5	100	17	13	리트/kg	
22.03	맥주							
2203.0000	맥주	**		**	17	13	리트/kg	AB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콜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 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2204.1000	· 발포성 포도주	14		180	17	13	리트/kg	AB
	·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알콜 첨가에 의하여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한다.)							
2204.2100	· 2리트 및 이하 용기에 담은 것	14		180	17	13	리트/kg	AB
2204.2900	· 기타	20		180	17	13	리트/kg	
2204.3000	· 기타 포도즙	30		90	17	13	리트/kg	A
22.05	베르무트와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 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2205.1000	· 2리트 및 이하 용기에 담은 것	65		180	17	13	리트/kg	7AB
2205.9000	· 기타	65		180	17	13	리트/kg	7AB
22.06	기타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 따 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 주와 비알콜성 음료와의 혼합물							
2206.0000	기타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 따 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 주와 비알콜성 음료와의 혼합물	49.1		180	17	13	리트/kg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 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 을 불문한다.)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한다.)	40	10	100	17	13	리트/kg	7ABG

2207.2000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것에만한다.)	30	10	100	17	13	리트/kg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것에만한다.), 증류주 · 리큐르기타주정음료							
2208.2000	·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증류수	10		180	17	13	리트/kg	7AB
2208.3000	· 위스키류	10		180	17	13	리트/kg	7AB
2208.4000	· 럼및태파아	10		180	17	13	리트/kg	7AB
2208.5000	· 진및제네바	10		180	17	13	리트/kg	7AB
2208.6000	· 보드카	10	8.8	180	17	13	리트/kg	7AB
2208.7000	· 리큐르류및코디얼	10	8.8	180	17	13	리트/kg	7AB
	· 기타							
2208.9010	· 용설란술(Tequila)	10	8.8	180	17	13	리트/kg	7ABFE
2208.9010	· 기타	10	8.8	180	17	13	리트/kg	
22.09	식초및초산으로만든식초대용물							
2209.0000	식초및초산으로만든식초대용물	20		70	17	13	리트/kg	AB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3.01	육 · 설육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분 · 조분 및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아니한것에만한다.)와수지박							
	· 육또는설육의분 · 조분 · 펠리트및수지박							
	· ...골분과육분							
2301.1011	· ...소와양성분을포함한것	2		11	13	13	kg	AB
2301.1019	· ...기타	2		11	13	13	kg	AB
2301.1020	· ...수지박	5		50	13		kg	AB
2301.1090	· ...기타	5		30	13		kg	AB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분 · 조분및펠리트							
2301.2010	· ...사료용어분	2	0	11	13		kg	AB
2301.209	· ...기타	5	0	30	13		kg	AB
23.02	밀기울 ·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불문하며, 곡물또는 채두류의선별 · 제분기타의처리과정에서생기는것에만한다.)							
2302.1000	· 옥수수외것	5		30	13		kg	AB
2302.2000	· 쌀외것	5		30	13		kg	AB
2302.3000	· 밀외것	3		30	13		kg	AB
2302.4000	· 기타곡물의것	5		30	13		kg	AB
2302.5000	· 두류식물의것	5		30	13		kg	AB

23.03	전분박과이와유사한박류, 비트펄프, 버게스 및 기타 설탕제조시에생기는웨이스트및양조또는증류시에생기는박과웨이스트(펠리트상의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2303.1000	· 전분박과이와유사한박류	5		30	13		kg	AB
2303.2000	· 비트펄프 · 버게스 기타 설탕제조시에생기는웨이스트	5		30	13	5,11	kg	AB
2303.3000	· 양조또는증류시에생기는박과웨이스트	3		30	13		kg	AB
23.04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2304.0010	…기름찌꺼기	5	0	30	13	11	kg	AB
2304.0090	…기타	5	0	30	13	11	kg	AB
23.05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2305.0000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5		30	13		kg	AB
23.06	오일-케이크및기타고형의유박(분쇄한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것을제외한 식물성유지의추출시에생기는것에한한다.)							
2306.1000	· 면실의것	5		30	13		kg	AB
2306.2000	· 아마인의것	5		30	13		kg	AB
2306.3000	· 해바라기씨의것	5		30	13		kg	AB
	· 유채(레이프또는콜자)씨의것							
2306.4100	· 저에루크산유채(레이프또는콜자)씨의것	5		30	13		kg	AB
2306.4900	· 기타	5		30	13		kg	AB
2306.5000	· 야자또는코프라의것	5	2.5	30	13		kg	AB
2306.6000	· 팜넛또는핵의것	5		30	13		kg	AB
2306.7000	· 옥수수배(胚)의것	5		30	13		kg	AB
2306.9000	· 기타	5		30	13		kg	AB
23.07	포도주박과생주석							
2307.0000	포도주박과생주석	5		30	13		kg	
23.08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 식물성 웨이스트 · 식물성박류및부산물(펠리트상의것인지의여부를불문하며, 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2308.00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 식물성 웨이스트 · 식물성박류및부산물(펠리트상의것인지의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사료용조제품	5		35	13	0,5,13	kg	AB

23.09	사료용조제품							
	· 개또는고양이용사료(소매용으로한것에 한한다.)							
2309.1010	…밀폐용기에넣은것	15		90	13	11	kg	AB
2309.1090	…기타	15		90	13	11	kg	AB
	· 기타							
2309.9010	…사료첨가제	5	2.5	14	13,17	11,13	kg	AB
2309.9090	…기타	6.5	3.3	14	13	11	kg	AB
제24류	담배와제조한담배대용물							
24.01	잎담배및담배부산물							
	· 잎담배(주맥을제거하지아니한것)							
2401.1010	…—煙(불에죄어말린담뱃잎)	10	9.4	70	13,17	5,13	kg	7AB
2401.1090	…기타	10		70	17	13	kg	7AB
	· 잎담배(주맥을일부또는전부제거한것)							
2401.2010	…—煙(불에죄어말린담뱃잎)	10		70	13,17	5,13	kg	7AB
2401.2090	…기타	10		70	17	13	kg	7AB
2401.3000	· 담배부산물	10		70	13,17	13,5	kg	AB7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권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것에한한다.)							
2402.1000	· 시가·셔루트·시가릴로(담배를함유한 것 에한한다)	25		180	17		천대/kg	7B
2402.2000	· 권련(담배를함유한것에한한다.)	25		180	17		천대/kg	7AB
2402.9000	· 기타	25		180	17		천대/kg	
24.03	기타제조담배, 제조한담배대용물, 균질화또 는재구성한담배및담배엑스와에센스							
2403.1000	· 기타제조담배, 제조한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재구성한담배및담배엑스와에센스	57	50	180	17	13	kg	7AB
	· 기타							
2403.9100	…균질화또는재구성한담배	57		180	17	13	kg	
2403.9900	…기타	57		180	17	13	kg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및석고·석회와시멘트							
25.01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소 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순염화나 트륨(수용액여부및고결방지제또는유동제 의첨가여부를불문한다) 및해수							
	…염							
2501.0011	· …식염	0	0	0	17	13	kg	AB
2501.0019	· …기타	0	0	0	17	13	kg	AB

※ 비고

1. 수출입 허가증

I : 수입허가품목

E : 수출허가품목

2. 검사, 검역 유형

A : 검사, 검역품목으로 중국 각지역상품검역기관의 검사 또는 검역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B : 검사, 검역품목으로 중국 각지역상품검역기관의 검사 또는 검역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음

F : 멸종위기동·식물수출입허가증

3. 수입 쿼터

G : 쿼터품목(일반제품)으로 상무부 配額許可證事務局 또는 상무부 特派員 辦事處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4. 수입증명 혹은 입찰

S : 상무부가 지정한 자유수입품목으로 상무부 산하 각 지방 대외경제무역 합작청(위원회)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수입 가능

5. 수출허가증

x : 수출허가증(화확무기, 독극물제조, 입찰)

y : 수출허가증(모든 감독관리 방식)

라. 원산지규칙

1) 입법현황

- ☐ 1986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에 관한 임시 규정”(세관총서)

- 1992년 3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화물 원산지규칙”(국무원)
- 1992년 4월 1일, “수출화물 원산지규칙의 시행방법”, “수입성분을 포함한 수출화물 원산지표준 주요 제조, 가공 프로세스 리스트”(대외경제 무역부)
- 1995년 11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화물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시행)”(대외경제무역부)
- 2004년 9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조례”(국무원, 2005.1.1부터 시행)
 - ※“원산지조례”는 27조로 입법취지, 적용범위, 원산지 확정원칙,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심사, 조례위반의 법률책임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2) 적용범위

- “원산지조례”는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반보조, 보장조치, 원산지 표시 관리, 국별 수량 제한, 관세쿼터 등의 비우대성의 무역조치 및 정부구매, 무역통계 등의 활동 시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 확정에 적용.
- “원산지조례”는 우대성의 무역조치 실시 할 때에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 확정에 적용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제정.

3) 원산지 표준

- 완전하게 1개 국가(지역)에서 취득한 화물의 원산지는 해당 국가(지역)

이며, 2개 이상의 국가(지역)가 생산에 참여한 화물의 원산지는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완성한 국가(지역)임.

□ 완전하게 1개 국가(지역)에서 취득한 화물

- (1) 해당 국가(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산 동물
- (2) 해당 국가(지역)의 야외에서 포획, 어로, 수집한 동물
- (3) 해당 국가(지역)의 산 동물에서 획득한 가공하지 않은 물품
- (4) 해당 국가(지역)에서 수확한 식물과 식물제품
- (5) 해당 국가(지역)에서 채굴한 광물
- (6) 해당 국가(지역)에서 취득한 상기 제(1)항~제(5)항 범위 외의 기타 천연으로 생성된 물품
- (7) 해당 국가(지역)에서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할 수 밖에 없거나 회수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폐기물
- (8) 해당 국가(지역)에서 수집한 재생 또는 수리할 수 없는 물품, 또는 그 물품에서 회수한 부품 또는 원료
- (9)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깃발을 걸은 선박이 그 영해 외의 해역에서 취득한 해양 어로물과 기타의 물품
- (10)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깃발을 걸은 가공선박에서 상기 제(9)항에 열거된 물품을 가공하여 취득한 제품
- (11) 해당 국가 영해 외의 전문채굴권이 있는 해상 또는 해상저토에서 취득한 물품
- (12) 해당 국가(지역)에서 완전히 상기 제(1)~제(11)항에 열거된 물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4) 수입화물의 원산지 확정절차

- 수입화물의 수하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통관 수속 시, 반드시 “원산지조례”에서 규정한 원산지 확정

표준에 따라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여실하게 신고해야 함. 동일한 화물의 원산지가 서로 다를 경우, 원산지를 각각 신고해야 함.

- 수입화물이 수입되기 전,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수입화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타의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에 수입화물의 원산지 사전확정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공.

세관은 반드시 원산지 사전확정의 서면 신청 및 전부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0일 내에 “원산지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정을 해야 하며 또한 대외로 공포해야 함.

- 세관은 신고를 접수한 후에 반드시 “원산지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확정해야 함.

- 이미 원산지 사전확정을 받은 화물이 사전확정일로부터 3년 내에 실제로 수입할 경우, 세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수입화물이 사전확정을 받은 화물과 서로 일치하며 또한 “원산지조례”에서 규정한 원산지 확정표준이 변화되지 않았을 경우, 세관은 그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다시 확정하지 않음.

- 세관의 심사를 통해 실제 수입화물과 사전확정에서 확정된 화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원산지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다시 확정해야 함.

- ※ 세관은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심사 확정할 경우, 수입화물의 수하인에게 수입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심사 확인해야 함. 필요시, 그 수입화물의 수출국가(지역) 관련 기구에 수입화물의 원산지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세관은 대외무역 경영업체가 제출한 서면 신청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사전에 원

산지 행정판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대외로 공포함.

5) 조례위반의 법률책임

□ “원산지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신고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함.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출입 화물의 품명, 세칙번호, 수량, 규격, 가격, 무역방식, 원산지, 출발지, 목적지, 최종 목적지 또는 기타 신고할 항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하며,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함.

- 세관의 통계 정확성에 영향을 줄 경우, 경고 또는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 세관의 감독관리 질서에 영향을 줄 경우, 경고 또는 1,000위안 이상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 국가의 허가증 관리에 영향을 줄 경우, 화물 가치의 5% 이상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
- 국가의 세수 징수에 영향을 줄 경우, 탈세액의 3%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 국가의 외화, 수출환세 관리에 영향을 줄 경우, 신고가격의 1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수입화물의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조례”에서确定的 원산지가 불일치할 경우, 세관에서 시정을 명함.

마. 수출입 통관절차

1) 일반무역방식의 화물통관

- ※ 일반무역은 중국 국내에 수출입 경영권이 있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무역을 가리킴. 세관의 감독관리방식 코드는“ 0110 ”임.
- ※ 일반무역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 통관 신고(서류 신고, 등록 신고, 서류 심사)-화물 검사확인-관세 징수-통행 허가.

☐ 수출입 통관 신고

- ※ 수출입 통관 신고는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 출입국 수속을 밝는 과정을 가리킴.

○ 신고절차

- ※ 수출입 통관 신고절차는 신고 준비, 수출입 화물 통관 신고서 작성, 통관 신고서 사전 입력, 세관의 신고 접수, 증빙서류의 심사 등 5개 절차로 나뉨.

○ 신고자격

- ※ 세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등록한 전문 통관기업, 통관 대행기업 및 자체 통관기업 및 그 통관인원은 신고자격이 있음.

○ 신고기한

- 수입화물의 신고기한 : 수입화물의 수하인은 반드시 운송수단이 입국을 신고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세관에 신고해야 함.
- ※ 수입화물의 수하인이 규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세관에 신고할 경우, 세관은 신고 지체비용을 징수하며, 운송수단이 입국한 날로부

터 3개월 초과하여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매각 처리를 함.

※ 지체비용의 기준 : 1일 지체금은 수입화물의 CIF가격의 0.5%(10위안 미만의 화물은 면제함.)

- 수출화물의 신고기한: 수출화물의 송하인은 반드시 화물이 세관 감독 관구역에 도착한 후 선적 출국의 24시간 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함.

○ 신고 장소

- 수입화물은 화물 수입지의 세관에 신고하며, 수출화물은 화물 수출지의 세관에서 신고함.

※ 수출입자의 세관수속 편리를 위하여 수출입자가 신청하고 세관에서 심사 동의하면 수입자는 세관이 있는 운송 지정지에서, 수출자는 세관이 있는 운송 발송지에서 신고수속을 밟을 수 있음.

○ 신고서류

※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은 반드시 사전에 각종 통관 신고서류를 준비하여 수출입 화물 통관 신고서와 같이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신고서류는 상업 증빙서류, 화물운송 증빙서류, 화물 수출입 증명, 보충 증빙서류로 분류됨.

- 수출입 화물 통관 신고서류 : 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 출입국 시, 세관에 수출입 화물의 검사확인, 관세 징수, 통관 등 세관 수속 처리를 신청하는 법정 서류임.
- 상업 증빙서류 : 주로 상업 송장(invoice)을 가리키며 상업 송장은 품질, 수량, 가격, 포장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며 세관이 납세가격을 심사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임.
- 화물운송 증빙서류 : 포장명세서 1부(단일 품종이며 포장이 일치한 완제품(piece) 화품과 산적 화물은 면제할 수 있음.) 선하증권(B/L) 또는 선적지시서 1부(해운 수출 또는 수입), 화물 운송장 1부(항공수

송), 소포서류 1부(우편 운송), 화물 인수증빙 1부(육상운송).

- 특수 증빙서류 :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서 규정하여 수출입 통제를 실행하는 증명을 가리키며, 할당 허가증, 수입 증명서류, 관세 감면 또는 검사 면제 증명, 상품 검사, 동·식물 검역, 약품 검험 등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류가 있음.

※ 그 중, 수출입 화물 허가증은 통관 신고수속을 밟는 중요한 서류로서 반드시 통관 신고서류와 같이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 허가증을 면제할 경우, 반드시 대응되는 비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충 증빙서류 : 통관 신고수속을 밟을 때에 제출해야 할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증빙서류를 가리킴. 주로 무역 계약서, 화물 원산지 증명, 영업허가증, 장부서류 등을 포함함.

□ 화물 검사확인

※“세관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 화물은 송·수하인 이 신청하고 세관 총서에서 검사를 면제를 특별 허가한 외에 반드시 세관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함.

○ 검사확인절차

- 세관의 검사확인은 세관의 검사인원이 현장, 창고에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확인을 가리킴. 즉, 세관이 통관 신고를 접수한 후 수출입 화물에 대한 실제 검사확인하며, 화물의 물리적 성질 또는 화학적 성질 및 화물의 수량, 규격 등인 통관 신고서류와 일치한 가를 확정함.
- 세관의 검사확인절차는 하물 조장장소의 검사확인, 화물 포장 및 상표의 검사확인, 화물수량 체크, 화물지정 검사확인, 포장 해체 또는 개봉, 화물 내용의 검사확인, 화물 샘플링 등 절차를 포함.

○ 검사확인 장소

- 수출입 화물의 검사확인 장소는 세관 감독관리구역 내와 세관 감독관리구역 외로 나눔.

※ 세관 관할구역 내의 장소는 항구 부두, 정류장, 공항, 우체국 또는 세관의 기타 감독관리장소가 있음.

※ 세관 감독관리구역 외의 검사확인은 세트 설비, 정밀 계기, 귀중한 물자, 급히 필요한 물자와 “door to door” 운송의 컨테이너 화물 등에 대해 세관의 규정구역에서 검사확인이 어려울 경우,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이 신청하고 세관이 비준을 하여 세관은 인원을 파견하여 감독관리구역 외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검사확인을 가리킴.

신청업체는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왕복교통,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1인당 일당은 인민폐 50위안 (1일 업무시간은 8시간).

○ 검사확인방식: 일반 검사확인방식과 중점 검사확인방식이 있음.

○ 화물파손의 배상

- “세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이 수출입 화물, 물품을 검사확인 시 화물, 물품을 파손하였을 경우, 반드시 실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함.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 검사확인을 받는 화물, 물품의 파손에 관한 배상방법”은 배상책임, 배상원칙, 배상대상, 배상방식과 배상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수출입 관세 징수

※ “세관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 화물은 세관에서 관세를 징수하며, 관세는 수입관세와 수출관세로 나눔.

※ 수입화물의 수하인, 수출화물의 송하인은 관세의 납세 의무자임.

○ 납세가격의 확정

- 국제에서 통상적인 세금 계산표준은 종가세, 종량세, 복합관세, 슬라이딩관세(滑準稅, sliding scale duty)와 선택세 등이 있음. 중국 세관은 현재 주로 종가세를 실행하며, 종가세 세금 계산표준으로 계산한 수출입관세는 세칙에서 세율을 제정하였으며 납세가격의 백분비(%)로 표시함.
- “납세가격”은 수출입 화물의 납세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가격을 가리키며, 수출입 화물의 납세가격은 세관이 그 화물의 거래가격의 기초에서 심사확정하며,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납세가격은 세관에서 법에 의하여 평가함.

○ 납세액의 계산

- 수출입 화물의 납세가격을 확정된 후, 납세액을 계산하며, 세관은 강제성 관세 징수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제때에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한 기한 내에 세관에 납부하여야 함.
- 납세액 계산절차: (1) 통관신고 증빙서류 심사, (2) 정확한 분류 및 세율 확정, (3) 납세가격 심사확정, (4) 납세액 계산, (5) 납세 청구서 발급, (6) 납세 의무자가 관세를 납부.

○ 관세 납부

- 관세 납부방식: 기본적인 납세방식, 관세 후불방식, 정기적 총괄 납부방식 등 3가지가 있음.
- 관세 납부기한: 세관이 간세 징수의 결정을 내린 후의 15일 내(즉, 세관이 납세 청구서 발급일로부터 15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관세 체납금을 납부해야 함.
※ 체납금의 기준 : 1일 체납액의 1%

- 간세의 강제 징수 : 납세 의무자가 관세 납부기한이 3개월이 넘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강제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 납세쟁의 재심의

- 납세 의무자가 세관이确定的 수출입 화물의 관세 징수, 관세 감면, 관세 추가납부 또는 환급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세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음.
- 납세 재심의 절차: 납세자의 재심의 신청-기존 징세 세관의 재심의-세관총서의 재심의-법원 소송.

□ 통행 허가

- “세관법”의 규저에 의하여 세관에서 특별 비준한 외에 수출입 화물은 송·수하인 이 세관에 통관신고, 검사확인 접수, 관세 납부 또는 담보 제공 후에 세관에서 화물운송서류에 사인 및 날인한 후에 통관을 시킴.

-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은 “세관 통관허가 인장”을 근거로 수출입 화물의 반출 또는 선적수속을 밟음.

○ 수출입 화물의 담보

- “세관법”은 세관사무 담보제도를 규정하였으며,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은 세관의 출항수속을 밟기 전에 이행항 법률적 의무에 대응되는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세관은 그 화물의 통관을 허락함.
- 담보방식 : 보증금 납부, 보증서류 제출
- ※ 담보기한: 일반적으로 20일을 초과하지 않음.

2) 가공무역방식의 화물통관

□ 원료수입 가공방식

※ 통관절차: 계약서 등록-수입원료의 통관신고-수출제품의 통관신고-계약서 종결

○ 계약서 등록

- 경영업체는 관련 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가공생산기업 소재지의 주관 세관에서 계약서 등록수속을 밟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함.
- 세관은 경영업체가 제공한 계약서 등록 증빙서류를 심사한 후 가공기업의 공장과 창고를 검사함.
- 주관 세관에서 “은행 보증금대장 연락서류”를 사인 및 발급하며 경영업체는 이 증빙서류를 소지하여 주관 세관 소재지의 중국은행에서 은행 보증금대장 설립수속을 밟음.
- 중국은행은 대장을 설립한 후 “은행보증금대장 등록통지서”를 사인 발급함.
- 주관 세관은 은행 보증금대장 소속을 밟은 계약서에 대해 계약서 등록 증빙서류 및 공장과 창고의 검사결과에 의하여 서로 다른 관세를 확정하며 “등록 메뉴얼”에 세관의 등록의견을 사인하며 또한 세관 인장을 날인하여 경영업체에 발급함.
- 경영업체는 이 “등록 메뉴얼”을 소지하여 화물의 수출입과 계약서의 최종 종결수속을 밟음.

○ 수입원료의 통관신고

- 경영업체 또는 그 대리인은 “등록 메뉴얼” 및 기타 통관 신고 증빙서류를 소지하며, 원료수입 가공 전용 수입화물의 통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입국지역의 세관에 신고함.

- 입국지역의 세관에서 심사한 후, 규정에 의하여 세관의 감독관리 수속비를 받고 수입화물을 검사 및 통관시키며 또한 “등록 매뉴얼” 및 수입화물의 통관 신고서에 세관 인장을 날인한 후 경영업체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 향후 계약서 종결의 증빙서류 근거로 함.

○ 수출제품의 통관신고

- 경영업체 또는 그 대리인은 “등록 매뉴얼” 및 기타 통관 신고 증빙서류를 소지하며, 원료수입 가공 전용 수출화물의 통관 신고서를 작성하며 또한 “등록 매뉴얼”에 관련 수출제품 내용을 기입한 후 출국지역의 세관에 신고함.
- 출국지역의 세관에서 심사한 후, 관련 수출화물을 검사 및 통관시키며, 또한 “등록 매뉴얼” 및 수출화물의 통관 신고서에 세관 인장을 날인한 후 경영업체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 향후 계약서 종결의 증빙서류 근거로 함.

○ 계약서 종결

- 원료수입 가공계약서를 실행한 후 1개월 내에 경영업체는 관련 증빙서류를 소지하여 주관 세관에서 계약서 종결수속을 밟음.
※ 종결할 증빙서류: “등록 매뉴얼”, 원료수입 가공 전용 수출입 통관 신고서, 종결할 신청서 또는 수입원료 사용 일람표를 포함.
- 세관은 경영업체가 제공한 종결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결과, 계약 이행이 정상적일 경우, 세관은 등록한 원료수입 가공계약서를 종결시키며 “종결 통지서”를 발급함. 동시에 은행 보증금대장을 개설한 계약서에 대해 “은행 보증금대장 종결 연락서류”를 사인 및 발급함.
- 경영업체는 이 증빙서류를 소지하여 은행에서 보증금대장의 종결수속을 밟음.

□ 위탁가공조립방식

※ 통관절차 : 계약서 등록-수입원료의 통관신고-수출제품의 통관신고-계약서 종결

○ 계약서 등록

- 경영업체는 위탁가공조립 계약서를 체결이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상무부)의 비준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가공기업 소재지의 주관 세관에서 계약서 등록수속을 밟으며 “가공조립과 중소형 보상무역의 수출입 화물 등록 매뉴얼”을 작성함.
- 세관은 경영업체가 제공한 계약서 등록 증빙서류를 심사한 후 가공기업의 공장과 창고를 검사함.
- “가공무역의 수입원료 은행 보증금대장제도”에 의하여 주관 세관은 “은행 보증금대장 연락서류”를 사인 및 발급하며 경영업체는 이 증빙서류를 소지하여 주관 세관 소재지의 중국은행에서 은행 보증금대장 설립수속을 밟음.
- 중국은행은 은행 보증금대장 수속을 처리하여 “은행보증금대장 등록 통지서”를 사인 발급한 후 주관 세관에서 “가공조립과 중소형 보상무역의 수출입 화물 등록 매뉴얼”을 발급함.
- 경영업체는 이 “등록 매뉴얼”을 소지하여 화물의 수출입과 계약서의 최종 종결수속을 밟음.

○ 수입원료의 통관신고

- 경영업체 또는 그 대리인은 “가공조립과 중소형 보상무역의 수출입 화물 등록 매뉴얼” 및 기타 증빙서류를 소지하며, 또한 위탁가공 전용 수입화물의 통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입국지역의 세관에 신고함.
- 입국지역의 세관에서 심사한 후, 규정에 의하여 세관의 감독관리 수속비를 받고 수입화물을 검사 및 통관시키며 “가공조립과 중소형 보

상무역의 수출입 화물 등록 매뉴얼” 및 수입화물의 통관 신고서에 세관 인장을 날인한 후 경영업체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 향후 계약서 종결의 증빙서류 근거로 함.

○ 수출제품의 통관신고

- 경영업체 또는 그 대리인은 “가공조립과 중소형 보상무역의 수출입 화물 등록 매뉴얼” 및 기타 증빙서류를 소지하며, 위탁가공 전용 수출 화물의 통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함.
- 출국지역의 세관에서 심사한 후, 관련 수출화물을 검사 및 통관시키며, 또한 “가공조립과 중소형 보상무역의 수출입 화물 등록 매뉴얼” 및 수출화물의 통관 신고서에 세관 인장을 날인한 후 경영업체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 향후 계약서 종결의 증빙서류 근거로 함.

○ 계약서 종결

- 위탁가공 계약서가 만기된 후 또는 마지막 완제품 수출 후의 1개월 내에 경영업체는 관련 증빙서류를 소지하여 주관 세관에서 계약서 종결수속을 밟음.
 - ※ 종결할 증빙서류 : “가공조립과 중소형 보상무역의 수출입 화물 등록 매뉴얼”, 위탁가공 전용 수출입 통관 신고서, 종결할 신청서 또는 수입원료 사용 일람표를 포함.
- 세관은 종결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결과, 규정에 부합되는 계약서를 종결시키며 “종결 통지서”를 발급함. 동시에 은행 보증금대장을 개설한 계약서에 대해 “은행 보증금대장 종결 연락서류”를 사인 및 발급하며 경영업체는 이 증빙서류를 소지하여 은행에서 보증금대장의 종결수속을 밟음.

바. 관세 평가제도

※ 중국의 수출입 화물의 납세가격은 2006년 3월 28일에 세관총서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납세가격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

1) 납세가격 평가방법

□ 수입화물의 납세가격

○ 평가방법

- 수입화물의 납세가격은 세관이 그 화물의 거래가격의 기초에서 심사 확정하며 또한 그 화물이 중국 수입지점까지 운송되어 하역되기 전까지의 운송비용, 보험료를 포함. 화물 거래가격은 중국 국내에서 그 화물을 판매할 때에 구매자가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으로 직접 지불금액과 간접 지불금액을 포함.

※ 수입화물의 실제 거래가격을 상기 방법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거래가격을 확정

- (1) 동 화물이 동시에 또는 대략 동시에 중국 국내에 판매한 동일 화물의 거래가격
- (2) 동 화물이 동시에 또는 대략 동시에 중국 국내에 판매한 유사한 화물의 거래 가격
- (3) 동 화물이 수입하는 동시 또는 대략 동시에 그 수입화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입화물이 제1급 판매채널에서 특수한 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판매한 최대 판매량의 단가(★같은 등급 또는 같은 종류 유사한 화물이 중국 국내 1급 판매채널에서 판매 시의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 비용 및 수수료, ★수입화물이 중국 국내 수입지점까지 운송되어 하역 후의 운송비용, 보험료, ★

수입관세 및 중국 국내 세수를 공제한 후의 가격)

(4) 아래 각 항목으로 계산한 가격(★동 화물의 생산에 사용된 원료비용과 가공비용, 중국 국내에서 같은 등급 또는 같은 종류 유사한 화물을 판매할 때의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 비용, 동 화물이 중국 국내 수입지점까지 운송되어 하역하기 전까지의 운송비용, 보험료)

(5)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 납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비용

- 구매자가 부담하는 화물 구매 수수료 외의 수수료와 거래비용
- 구매자가 부담하는 납세가격을 심사확정 시 동 화물과 일체로 간주하는 용기의 비용
-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비용과 포장 노무비용
- 동 화물의 생산과 중국 국내에서 판매와 관련될 경우, (1) 구매자는 무료 또는 원가보다 낮은 방식으로 제공하며 또한 적당한 비례로 부담한 원료, 도구, 금형, 소재재료 및 유사한 화물의 금액 및 국외에서 개발 설계 등 관련 서비스비용, (2) 동 화물이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구매자가 반드시 지불하는 동 화물과 관련되는 특별허가권의 사용료, (3)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자로부터 얻은 동 화물을 수입 후 재판매, 처리 또는 사용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 납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비용

- 공장, 기계, 설비 등 화물을 수입한 후 건설, 설치, 조립, 수리와 기술 서비스를 진행한 비용
- 수입화물이 중국 국내 수입지점에 운송되어 하역 후의 운송비용 및 보험료
- 수입관세 및 중국 국내 세수

□ 수출화물의 납세가격

○ 평가방법

- 수출화물의 납세가격은 세관이 그 화물의 거래가격의 기초에서 심사 확정하며 또한 그 화물이 중국 수출지점까지 운송되어 선적되기 전까지의 운송비용, 보험료를 포함. 화물 거래가격은 중국 국내에서 그 화물을 수출할 때에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직접 수취 또는 간접 수취한 금액을 포함.

※ 수입화물의 실제 거래가격을 상기 방법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거래가격을 확정

- (1) 동시에 또는 대략 동시에 동일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 수출하는 동일 화물의 거래가격
- (2) 동시에 또는 대략 동시에 동일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 수출하는 유사 화물의 거래가격
- (3) 아래 각 항목으로 계산한 가격(중국 국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 화물의 생산에 사용된 원료비용과 가공비용, 중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용, 보험료)
- (4)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2) 관세의 계산

□ 수입관세

○ 수입관세 계산식

- 종가 계산방식: 수입 관세액 = 납세가격 × 관세율
- 종량 계산방식: 수입 관세액 = 화물수량 × 단위당 관세액

※ 수입관세는 인민폐로 징수하며 수입화물이 외화로 거래가격이 계산되어 거래하였을 경우, 세관은 납세 청구서 발급일자에 국가에

서 발표한 외환매매 중간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 인민폐 외환 환율에 포함되지 않은 외화는 국가외환관리부서에서 규정한 환율에 따라 환산.

※ 납세가격은 위안 단위까지 계산하며, 과세는 전(分) 단위까지 계산함.

※ 건당 화물의 관세가 인민폐 10위안 이하일 경우 세금을 면제함.

□ 수출관세

○ 수출관세 계산식

- 증가 계산방식: 수출 관세액 = 납세가격 × 관세율

- 종량 계산방식: 수출 관세액 = 화물수량 × 단위당 관세액

※ 수출화물이 FOB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직접 상기 계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수출화물이 기타 무역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화물 가치를 FOB 가격으로 환산하여 관세액을 계산함.

□ 세관이 징수하는 수입과정에서의 세금

○ 수입화물은 관세를 납부한 후 중국 국내에서 유통되면 국내세금을 부과하며, 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입화물의 국내세금은 세관에서 화물의 통과 시 부과함.

※ 현재 세관이 징수하는 수입과정에서의 국내세금은 주로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포함.

※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 또는 세관에 통관 신고수속을 책임지는 업체 또는 개인은 수입화물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의 납세 의무자임.

- 소비세 계산식

※ 증가에 의한 수입과정에서의 소비세 계산식: 납세액 = {(납세가격

+ 실제 징수 관세액)/(1-소비세율)}×소비세율

※ 종량에 의한 수입과정에서의 소비세 계산식 : 납세액 = 화물수량 ×
단위당 소비세액

- 증치세(부가가치세) 계산식 : 납세액 = (납세가격 + 실제 징수 관세액
+ 실제 징수 소비세액) × 부가가치세율

사. 관세의 추가징수(追徵), 추가납세(補徵), 환급(退還) 및 감면(減免)

1) 관세 추가징수와 추가납세

□ 관세 추가징수

○ 납세자가 세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세를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에 관세를 추가 징수함.

○ 추가징수 기한: 화물 통관 또는 관세 납부일 다음 날로부터 3년 내

□ 관세 추가납부

○ 납세자가 세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세관에서 누락 징수하였을 경우에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함.

○ 추가납부 기한: 화물 통관 또는 관세 납부일 다음 날로부터 1년 내

- 관세의 추가징수와 추가납부는 서면형식(세금 보충징수 통지서, 海關補徵告知書)로 결정하며, 납세 의무자가 받은 후에 15일 내에 세관에서 수속을 밟아야 함.

- 관세의 추가징수와 추가납부는 시간적 제한이 있으며, 규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세관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됨.

2) 관세 환급

※ 납세 의무자가 간세를 납부한 후, 세관에서 잘못 징수 또는 초과 징수한 관세를 환급하는 행위임. 재수출 환세(Drawback)와 추가징수의 관세 환급(Repayment of Overcharged Duties) 등을 포함함.

☐ 재수출 환세(Drawback)

관세를 납부한 수입화물에 대하여 중국 국내에서 가공, 제조 또는 수리한 후 다시 수출할 경우, 세관에서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

☐ 추가징수의 관세 환급(Repayment of Overcharged Duties)

납세 의무자가 납세한 후, 세관 또는 납세자가 납부할 과세가 실제 징수한 세액보다 적은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세관에서 관세를 환급함.

☐ 환급절차

○ 납세업체(또는 납세자)는 관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며 기존 납세증빙서류 및 기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가 기존 징세 세관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사인하며 환급 이유와 환급 금액을 표기함.

○ 환급수속을 밟을 경우, 세관의 원인으로 환급하는 외에 납세업체는 세관에 50위안 수수료를 납부함.

☐ 환급대상

- (1) 세관의 착오로 초과 납부한 경우
- (2) 세관이 검사를 면제한 수입화물이 세금을 완납한 후 부족한 사실이 발견되어 세관의 심사허가를 받은 경우
- (3) 수출관세를 완납한 화물이 선적 수출되지 못했을 때 수출 취하(退關) 신고하여 세관이 허가한 경우
- (4) 감면 가능한 수출입 화물에 대해 관세를 납부한 경우

☐ 환급기한 : 납세 의무자가 납세한 날로부터 1년 내

3) 관세의 감면

※ 중국 관세 감면은 법정 감면, 특정 감면, 임시 감면 등 3가지가 있음.

☐ 법정 감면 : “세관법”, “관세조례”의 규정에 의한 관세 감면

○ 법정 감면의 대상

- (1)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물과 화물샘플
- (2) 국제조직, 외국정부에서 무상으로 기증하는 물자
- (3) 세관 통관 전에 파손 또는 손실된 물자
- (4) 관세가 인민폐 10 위안 이하인 화물, 및 1회 납세액이 50위안 미만인 수입 우편소포
- (5) 법률에서 관세 감면을 규정한 기타 화물
- (6)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관세 감면을 규정한 화물

☐ 특정 감면 : 국가 규정에 의하여 특정 지역,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용도의 수출입 화물에 대해 시행하는 관세 감면

- 특정 지역에 대한 관세 감면
 - (1) 경제특구의 수출입 화물
 - (2) 대외 개방지역의 수출입 화물
 - (3) 첨단기술개발구의 수출입 화물

- 특정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 (1) 외자투자기업
 - (2) 가공조립, 보상무역방식으로 외자기업이 수입하는 설비
 - (3) 출입국 면세점의 면세 물품 등.

- 특정 용도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 감면
 - ※ 과학교육, 사회복지사업의 발전과 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관련 물자

□ 임시 감면 : 법정 감면, 특정 감면의 규정범위 외의 임시적인 관세 감면.

- 임시 감면의 대상
 - (1) 재난 구조를 위하여 수입한 전용 물자
 - (2) 중외 합작의 과학연구 프로젝트에서 외국측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과학연구 전용 차량, 계기, 설비와 화학시제
 - (3) 老, 少, 邊, 窮 지역에서 수입한 필요한 생산자료 또는 특수한 생활 용품의 수입가격이 너무 높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아. 관세법 위반 시 제재조치

※ 2004년 9월 19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세칙”의 의하면, 세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제도를 위반하였으나 밀수행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세관 감독관리 규정

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함.

1) 국가에서 금지한 화물을 수출입하였을 경우

※ 제재조치: 반송할 것을 명령하며,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2) 국가에서 제한하는 화물을 수출입 시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이 허가증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 제재조치: 수출입 화물을 통과시키지 않으며 화물가치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3) 자동 수출입 허가관리의 화물을 수출입할 때에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이 자동허가증명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 제재조치: 수출입 화물을 통과시키지 않음.

4) 수출입 화물의 품명, 세칙번호, 수량, 규격, 가격, 무역방식, 원산지, 출하지, 도착지, 최종 목적지 또는 기타 신고해야 할 항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제재조치 : 다음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벌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

(1) 세관통계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경고 또는 1,000위안 이상-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2) 세관의 감독관리 질서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경고 또는 1,000 위안 이상-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3) 국가의 허가증 관리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화물가치의 5%이상-30%이하의 벌금을 부과.

(4) 국가의 세금징수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탈세액의 30%이상-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5) 국가의 외화, 수출관세 환급 관리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신고가

격의 10% 이상-50%이하의 벌금을 부과.

- 5)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이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 대행업체에 위탁한 통관사항을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아 “세관 행정처벌 실시세칙”의 제15조에 규정한 관련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제재조치: “세관 행정처벌 실시세칙”의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인을 처벌함.

- 6) 통관 대행업체, 통관 대행인원이 위탁인이 제공한 상황의 진실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세관 행정처벌 실시세칙”의 제15조에 규정한 관련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제재조치: (1) 통관 대행업체에 대하여 화물가치의 10%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6개월 내에 통관업무 또는 관련 업무를 대행하지 못하게 하며, (2) 상황이 심각할 경우 등기등록 증명서류를 철회하고 통관업무 대행 자격을 취소함.

- 7)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세관의 허가 없이 스스로 세관 감독관리의 화물을 해체, 인출, 교부, 발송, 교환, 개조, 담보, 저당, 유치, 양도, 표기변경, 타인에게 넘겨 사용하게 하였거나 기타 처분을 하였을 경우
- ☐ 세관의 허가 없이 세관 감독관리의 화물을 세관 감독관리구역 외에 저장하였을 경우
- ☐ 세관 감독관리의 화물에 대한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위탁판매, 전시 등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관련 화물의 분실, 수량의 부족이나 기록이 진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 ☐ 보세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위탁판매, 전시 등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 교부, 이월, 확인삭제 등 수속을 밟지 않았거나 관련 계약 해제, 연장, 변경, 양도 시 관련 규정에 따

라 세관에 수속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 ☐ 세관에 가공무역 완성품의 단위 재료 소모량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 규정한 기간 내에 통과, 중계운송, 통행 화물을 경외로 운송하지 않고 스스로 경내에 남겨두었을 경우
- ☐ 규정한 기간 내에 잠시 수출입 화물을 다시 경외로 운송하거나 다시 경내로 운송하지 않고 스스로 경내 또는 경외에 남겨두었을 경우
- ☐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로 인해 세관에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행할 수 없게 하였거나 중단시켰을 경우

※ 제재조치 : (1) 상기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화물가치의 5% 이상-30%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 (2)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은 허가증을 제공해야 하나 당사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허가증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화물가치의 30%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며 탈세하였을 경우, 탈세액의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8)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세관의 허가 없이 스스로 세관에서 통과시키지 않은 수출국물품을 해체, 교부, 우편송부, 이전 또는 기타 형식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 ☐ 개인이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한 개인용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 개인이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나 여전히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출입국을 제한하는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입국 시 은닉, 위장 등 방식으로 세관의 감독관리를 회피하지 않았으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개인이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입국 시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 세관의 등록을 거쳐 임시 면세의 출입국 물품으로 허가받은 경우, 관

련 규정에 따라 다시 경외 또는 경내로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 ☐ 세관의 허가 없이 국경 통과인원이 그가 휴대한 물품을 경내에 남겨 두었을 경우

※ 제재조치 : 상기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처분을 주며 물품가치의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외에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

- 9) 국가에서 출입국을 금지하는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송부 방식으로 출입국 시 은닉, 위장 등 형식으로 세관의 감독관리를 회피하지 않았으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제재조치: 몰수하거나 명령을 내려 반송하게 하거나 세관의 감독관리 하에 소각하거나 기술처리.

- 10)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운송수단이 세관을 설치한 지점을 경과하지 않고 출·입국하였을 경우
- ☐ 세관의 허가 없이 세관 감독관리구역 내에 정박한 출입국 운송수단을 스스로 이탈시켰을 경우

- ☐ 출입국 운송수단을 세관을 설치한 지점으로부터 다른 한 세관을 설치한 지점으로 이동 시, 세관 수속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세관의 허가 없이 중도에서 경외 또는 경내의 세관 미설치 지점으로 이동시켰을 경우

- ☐ 출입국 운송수단이 세관을 설치한 지점에 도착하였거나 또는 이동 시,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여 검사 받지 않았거나 제공한 증빙서류가 진실하지 않을 경우

※ 제재조치 : (1) 상기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처분을 주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외에 (2)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

11)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세관의 허가 없이 출입국 운송수단이 스스로 수출입 화물, 물품을 하역하였거나 출입국 관광객을 오르고 내리게 하였을 경우
- ☐ 세관의 동의를 없이 수출입 운송수단이 스스로 경내 여객운송을 경영하거나 출입국 운송 외의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 ☐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 수속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에서 출입국 운송수단이 스스로 경내 운송업무를 경영할 경우
- ☐ 규정한 기간 내에 세관에 선적목록 등 전자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았거나 전송한 전자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거나 규정한 기간 내에 전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 세관의 감독관리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 ☐ 입국 운송수단이 입경 후 세관에 신고하기 전에, 출국 운송수단이 세관 수속절차를 밟은 후 출경 전에 교통 주관부문 또는 세관에서 지정한 코스에 따라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 ☐ 세관 감독관리의 화물을 실은 선박, 자동차가 세관에서 지정한 코스에 따라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 ☐ 출입국 선박 및 항공기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세관을 설치하지 않은 지점에 정박, 착륙하거나 화물, 물품을 경내에 하역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근의 세관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 ☐ 특수 사정이 없이 출입국 선박, 기차, 항공기의 도착시간, 정박 지점 또는 변경된 시간, 지점을 사전에 세관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 ☐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진행하는 출입국 운송수단, 화물, 물품에 대한 검사 및 조사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 제재조치 : (1) 상기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처분을 주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외에 (2)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

12)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세관의 봉인을 스스로 개봉하거나 훼손시켰을 경우

- 세관에서 작성 및 발표한 감독관리 증명서류를 분실하여 세관 감독 관리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로 인해 세관에서 출입국 운 송수단, 물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행할 수 없게 하였거나 중단시켰 을 경우
- ※ 제재조치: 상기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처분 및 3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13) 세관 증명서류를 위조, 변조, 매매하였을 경우

- ※ 제재조치 : (1) 5만 위안 이상-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2)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3)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14)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 ※ 제재조치 : (1)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몰수하는 외에 화물가 치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2)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15) 세관에 지적재산권 관련 상황을 신고해야 하나 수출입 화물의 송·수 하인 및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지적재산권 관련 상황을 사실대 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 관련 증명서 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 ※ 제재조치: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16) 통관 대행업체, 통관 대행인원 및 세관의 허가를 거쳐 세관 감독관리 의 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판매, 전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업 체가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세금을 체불하였거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2) 통관 대행업체가 타인에게 수출입 화물통관 납세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의를 양도하였을 경우
- (3) 세관 감독관리의 화물을 손실 또는 분실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 (4) 관련 업무 또는 업종에 잠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기타 불법행위.

※ 제재조치 : 명령을 내려 시정하도록 하는 외에 경고처분을 주고 6개월 이내에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 17) 통관 대행업체, 통관 대행인원 및 세관의 허가를 거쳐 세관 감독관리의 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판매, 전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가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1년 내에 3회 이상 세관에 의해 임시 업무를 중단한 경우
- (2) 세관에 의해 관련 업무 또는 관련 업종을 임시 정지한 후, 관련 업무를 회복하여 1년 내에 다시 “세관 행정처벌 실시세칙”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 기타 등록 증명서류를 철회해야 하거나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기타 위법행위

※ 제재조치 : 세관은 등록 증명서류를 철회하고 통관업무 대행 자격을 취소.

- 18) 통관 대행업체, 통관 대행인원이 불법으로 통관업무를 대행하거나 세관에서 허가한 업무종사 범위를 벗어나 수출입 통관수속을 대행하였을 경우

※ 제재조치 : (1)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외에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임시 6개월 이내에 통관업무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2) 상황이 심각할 경우, 등록등기 증명서

류를 철회하고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소.

- 19)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통관 대행업체, 통관 대행인원이 세관 관련 요원에게 뇌물을 주었을 경우

※ 제재조치 : (1) 등록 증명서류를 철회하고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소하는 외에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2)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통관대행 업체로 다시 등록하지 못하며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20) 세관에 수출입 통관대행 등록을 하지 않고 통관업무 대행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관업무를 대행할 경우

※ 제재조치 : 즉시 단속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 21) 허위 서류를 제공하여 세관에 통관 대행업체로 등록하였거나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 제재조치 : 등록 증명서류를 철회하고 통관업무 대행 자격을 취소하는 외에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 22)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세관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재조치 : (1) 해당 법인이나 조직에 처분을 주는 외에 주관인원 및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처분을 주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2)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

자. 납세분쟁 처리방법

※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관법”은 납세 의무자가 세관이 확정된 수출입 화물의 관세 징수, 관세 감면, 관세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세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음.

※ 납세 재심의 기본 절차 : 납세자의 재심의 신청-기존 징세 세관의 재심의-세관총서의 재심의-법원 소송.

- 납세자의 재심의 신청: 납세 의무자는 세관과 납세 쟁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세를 납부한 후 세관에서 세금 납부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존 징세 세관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해야 함.
- 세관은 반드시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리며 “납세 쟁의 재심의 결정서(納稅爭議復衣決定書)”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함.
- 납세자가 기존 징세 세관의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관총서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총서는 납세자의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30일 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또한 결정서를 기존 징세 세관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함.
- 납세자가 세관총서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의 결정서를 접수한 후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음.
 - ※ 세관총서가 지방 세관의 결정을 유지하는 안건에 대하여 반드시 기존 징수 세관의 소재지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하며 지방 세관은 법정에 출석하여 응소하여야 함.
 - ※ 세관총서가 지방 세관의 결정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반드시 세관총서의 소재지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하며 세관총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응소하여야 함.

차. 지적재산권의 세관 보호제도

1) 개황

☐ 입법 동향

- 1995년 7월 5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조례”를 발표하여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
- 2000년 7월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수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하여 수정한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03년 11월 26일, 국무원은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조례”를 통과하여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

☐ 중국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범위

- 중국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범위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에 의하여 확정함.
 - 반드시 수출입 화물과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이어야 함.
 - 반드시 중국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명확하게 보호를 규정한 지적재산권이어야 함.
 - 보호대상은 상표 전용권, 특허권과 저작권에 제한함.

☐ 중국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특징

- 수입과 수출과정에서 동일하게 보호함.

○ 상표와 저작권에 대해 보호를 실시하는 동시에 특허를 세관 보호범위에 포함시킴.

○ 세관이 압수한 권리 침해 화물을 일률로 몰수하며, 화물을 반환하여 입국 또는 출국하지 못하게 함.

2)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관의 보호절차

□ 보호절차

○ 지적재산권의 등록

- 지적재산권의 세관보호 등록 신청인: 지적재산권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 소유자가 중국 국내에 영업장소 또는 사무기구가 없을 경우, 중국 국내 대리인에 위탁해야 함.

- 지적재산권 등록의 유효기한: 세관총세에서 등록을 비준한 날로부터 7년

※ 등록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등록의 유효기한은 7년

- 등록절차

(1) 신청인의 세관보호 등록을 신청하며 등록 신청서를 제출

(2) 세관총서에서 전체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지적재산권에 대해 심사를 진행

(3) 세관총서에서 전체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적재산권 소유자에 통지하며, 등록을 비준할 경우 소유자에게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등록증서”를 발급.

○ 권리 침해협약이 있는 화물을 압수

- 항구 세관이 수출입 화물이 권리 침해 협약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경

우, 주동적으로 또는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음.

- 제출할 신청서류 : 세관 보호조치 신청서, 소유자가 사인한 위탁서 원본, 권리 침해 협의가 있는 화물의 실물, 그림 및 기타 증거, 소유자의 “등록증서”와 신분 증명, 소유자가 세관에 제출한 권리 침해협이가 있는 화물에 대한 압수 청구

※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세관에 권리 침해협이가 있는 화물을 압수할 것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수입화물의 CIF 가격 또는 수출화물의 FOB 가격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제출해야 함.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조례” 제14조의 규정)

○ 세관의 조사

- 세관은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리 침해협이가 있는 화물에 대한 압수를 결정할 경우, 반드시 세관 압수증빙서를 화물 수하인 또는 송하인에게 발급하며 또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 신청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반드시 세관 압수증빙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세관에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함.

- 세관이 수출입 화물이 세관에 등록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협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세관은 압수할 권한이 있음.
-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 수출입 화물이 신청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입화물의 CIF 가격 또는 수출화물의 FOB 가격의 2배 보증금을 납부한 후 세관에 관련 화물의 통관을 청구할 수 있음.
-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조례”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침해협이가 있는 화물을 압수할 경우, 반드시 압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압수당한 권리 침해협이가 있는 화물 및 관련 상황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함.

- 세관이 압수당한 권리 침해협약이 있는 화물 및 관련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할 경우,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반드시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야 함.

○ 세관의 행정처벌

- 권리 침해가 확정된 화물에 대하여 세관은 몰수하며 권리를 침해한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에 대해 세관은 법에 의하여 처벌함.
- 지적재산권 소유인과 수하인 또는 송하인 사이의 민사 분쟁은 당사자가 법에 의하여 사법, 중재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해결하며 세관에서 접수처리하지 않음.

□ 세관의 보호모델

○ 주동적인 보호모델(“세관 보호조례”제16조와 제20조의 규정)

○ 피동적인 보호모델(“세관 보호조례” 제12조, 13조와 제24조 1항의 규정)

3. 수출입 검사제도

가. 검험·검역 관리체제

1) 법정체제

중국 수출입 상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법”에 의하여 확정하며 3개 체제로 구분함.

-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 중국 수출입 상품의 검험업무를 주관
-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각 지역에 설립한 출입국 상품 검험·검역부서 : 각 관할지역의 출입국 상품의 검험·검역을 주관
-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인가를 받은 검험기관 : 대외 무역관계인 또는 외국 검험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출입 상품의 검험감정을 처리할 수 있음.

2) 검험기관

-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약칭 : 國家質檢總局)은 전국 품질, 계량, 출입국 상품 검험, 출입국 위생검역, 수출입 동·식물 검역과 인증 인가, 표준화 등 업무를 주관하며 또한 행정적으로 법률을 집행하는 국무원 직속 기관임.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국가에서 권한을 부여한 법에 의하여 각

지역(성, 자치구, 직할시)에 출입국 검험·검역국을 설립하여 수직식 관리체제를 실행함.

□ 각 지역 출입국 검험·검역기관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각 지역에 35개 직속 출입국 검험·검역국, 585개 출입국 상품 검험·검역분국(약칭 : 檢驗檢疫機構)을 설립하여 관할구역의 출입국 위생검역, 동·식물 검역과 수출입 상품 검험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임.

□ 국가수출입식품안전국

- 2001년, 수출입 식품과 화장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출입 식품안전국을 설립하여 수출입 식품, 화장품 안전의 관리업무를 책임짐.

○ 주요 직능

- 수출입 식품과 화장품의 안전, 품질 감독과 검험·검역의 규정, 제도 및 수출입 식품과 화장품의 검험·검역 목록을 연구 제정
- 수출입 식품과 화장품의 검험·검역과 감독관리를 조직 및 실시
- 국내외 관련 식품 안전과 위생 품질 정보를 수집하며, 관련 식품 위생 리스크 분석평가와 긴급 예방조치를 조직 및 실시
- 중대한 수출입 식품의 위생 품질사고를 조사, 식품 내원성 오염소스에 대한 처리업무를 관리.

□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약칭 : 國家認監委)

- 2001년, 중국 인증인가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와 감독관리를 강화

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감독관리국)를 설립하였으며 國家質檢總局에서 관리하는 사업기관임.

- 國家認監委는 국무원에서 권한을 부여한 행정관리부서로서 인증인가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 및 협조하는 주관부서임.

□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약칭 : 國家標準委)

- 2001년 10월 11일에 설립된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화관리국)은 國家質檢總局에서 관리하는 사업기관임.

- 國家標準委는 국무원에서 권한을 부여한 행정관리부서로서 표준화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 및 협조하는 주관부서임.

3) 법률체제

※ (1)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법” 및 그 실시조례, (2)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3)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4)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은 중국 수출입 식품 검험·검역의 준거 법률·법규임.

※ 國家質檢總局은 상기 법률·법규에 의하여 식품 검험·검역 관련 법률, 법규, 표준, 규범, 총국 명령, 조기경보 통보 등을 제정 및 발표함.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법” 및 그 실시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법” 및 그 수정안(약칭 : 商檢法修正案)

- 기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법”(약칭 : 商檢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약칭 : 動植物檢疫法)과 모두 섭외 경제 법률에 속함.
- 2000년 11월~2001년 10월, 國家質檢總局은 국무원을 대표하여 “商檢法”의 수정에 대한 조사연구, 전문가 논증과 준비를 진행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음.
- 2002년 4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법 수정안”(약칭 : 商檢法修正案)은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2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법 실시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법 실시조례”(약칭: 商檢法實施條例)는 1992년 10월 7일에 국무원에서 비준하여 10월 23일부터 시행. 2005년 8월 10일, 국무원에서 수정을 하여 새로운 실시조례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
- “商檢法實施條例”는 6장 63조로 구성되며 총칙, 수입 상품 검험, 수출 상품 검험, 감독관리, 법률책임과 부칙으로 포함.

※ 수출입 식품 검험과 관련된 규정

- (1) “수출입 상품 종류표”에 포함된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험
- (2) 수출입 식품에 대한 위생검험
- (3) 부식 변질하기 쉬운 수출입 식품 및 냉동제품을 선적 운송하는 선실(船艙), 컨테이너 등 운송수단의 청결, 위생, 냉장, 밀봉 등에 대한 검험
- (4) 국가가 수출 식품 및 수출 식품의 생산기업(가공공장, 도살장, 냉장창고, 창고를 포함)에 대해 위생 등록제도를 실시. 위생 등록제도를 실시하는 수출 식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상품검험 기관에 위생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 상품검험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에 수출 식품을 생산, 가공, 저장할 수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약칭 : 動植物檢疫法)은 1991년 10월 30일에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
- “動植物檢疫法”은 항구의 검험·검역 법규에 속하며 그 입법 목적은 동물 전염병, 기생충병과 식물 위험성 병원, 해충, 잡초 및 기타 유해생물의 전염을 방지.
- “動植物檢疫法”은 8장 50조 구성.

※ 수출입 식품 검험·검역과 관련된 규정

- (1) 입국, 축국, 국경 경과의 동·식물, 동·식물 제품과 기타 검역물 및 그 하역 용기, 포장물, 밀바탕재료 및 동·식물 전염병 발생지에서 온 운송수단 등에 대해 법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하며, 동·식물 전염병이 유행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동·식물제품의 입국을 금지함.
- (2) 수입 동물, 동물제품, 식물 종자 등에 대해 입국 검역 허가제를 실시하며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또는 대외 무역계약 또는 협의를 체결하기 전에 검역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화물이 항구에 도착한 후 반드시 즉시 해당 지역의 상품 검험·검역기관(檢驗檢疫機構)에 검사를 신고해야 함.
- (3) 출국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에 대해 검험·검역기관은 그 생산, 가공, 보관과정에 대해 검역 감독관리를 실행함. 출국하기 전에 신청인은 항구 검험·검역기관에 검사를 신고해야 함. 검역에 합격될 경우 출국을 허락하며, 검역에 불합격될 경우 출국을 허락하지 않음.
- (4) 동·식물제품을 운송하여 국경을 경과할 경우, 반드시 입국 시 항구 검험·검역기관에 검사를 신고하여야 함. 검역에 합격될

경우 국경 경과를 허락하며, 국가에서 발표한 “휴대, 우송방식
으로 국경 경과를 금지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
역물 리스트”에 속할 경우, 처분을 하거나 국경 경과를 허락하
지 않음.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약칭 : 動植物檢
疫法條例)은 1996년 12월 2일 국무원에서 발표하였으며 1997년 1
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

-“動植物檢疫法條例”는 10장 68조로 구성.

※ 수출입 식품 검험·검역과 관련된 규정

(1) 수출입 동·식물 및 기타 검역물에 대한 검역 심사, 출입국 검
역과 감독

(2) 출국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에 대한 생산, 가공, 보관업
체에 대한 등록을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법”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법”(약칭 : 國境衛生檢疫法)은 1987
년 5월 1일부터 시행. “商檢法”과 “動植物檢疫法”과 모두 항구 검
험·검역 법규에 속함.

-“國境衛生檢疫法”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전염병 검역, 모니터링과 위
생 감독을 규정하였으며, 입국 및 출국의 인원, 교통수단, 운송설비
및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수화물, 화물, 우편소포 등 물품에
대해 위생 검역을 진행함.

-“國境衛生檢疫法”의 입법목적은 전염병이 국외로부터의 전입(傳入) 또는
국내로부터의 전출(傳出)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 위생 검역을 실시함.

- “國境衛生檢疫法”은 6장 28조로 구성되며 국가에서 규정한 위생법 표준에 의하여 국경 항구의 위생상황과 국경 항구에 머무르는 출입국 교통수단의 위생상황에 대해 위생 감독을 실행함.

※ 위생 감독의 내용

- (1) 관련 인원에 대해 설치동물, 질병 매개물 곤충의 예방 및 제거를 감독 및 지도
- (2) 식품, 음료수 및 저장, 공급, 운송시설을 검사와 검험
- (3) 식품, 음료수 공급에 종사하는 인원의 건강상황을 감독하며 그 건강 증명서를 검사함.
- (4) 쓰레기, 폐기물, 오수, 똥오줌, 바닥짐의 위생 위해처리 상황을 감독 및 검사.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법 실시세칙”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법 실시세칙”(약칭: 國境衛生檢疫法實施細則)은 위생 검역업무의 전체 내용을 포함.
- “國境衛生檢疫法實施細則”은 12장 114조로 구성됨.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 입법 동향

- 1979년,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 관리조례”를 발표
- 1982년,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식품위생법(시행)”을 통과하였으며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
- 1995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약칭: 食品衛生法)을 발표.
- “食品衛生法”은 식품 위생의 내용, 표준, 관리, 감독과 실시에 관한 법률임.

○“食品衛生法”의 내용

- “食品衛生法”은 9장 57조로 구성되며 주요 임무는 국가에서 위생 감독제도를 실행하는 것임.
- 위생 감독의 내용은 식품 위생에 대한 감독, 검사, 검험, 위생 평가를 진행하며 위법행위에 대해 통제조치를 채택하며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을 포함.

□ 수출입 식품 검험·검역과 관련된 기타 법률·법규

○ 강제성 표준과 업종 기술규범

- ※ 업종 기술규범은 위생표준을 위주로 하며 주로 사람, 짐승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식품 중의 농약, 짐승 약, 곰팡이, 독소, 첨가제와 위생물의 함량을 제한하는 표준으로 식품 생산기업, 경영기업, 수출입 무역회사, 검험·검역기관은 반드시 지켜야 함.

○ 행정 법규 또는 명령

- ※ 농업부, 위생부, 세관총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등 행정 부서에서 발표한 각종 공고, 통보 또는 금지령으로 전염병 전입(傳入) 또는 전출(傳出)을 방지하며 소비자와 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함.

○ 정부부서에서 제정한 각종 수출입 식품 관리제도

- ※ 중국은 수출입 식품에 대한 수출입 식품 라벨 관리, 수출 식품 생산 기업에 대한 위생 등록관리 등 관련 법규와 규범을 제정.

○“식품기업 통용 위생규범”

- ※“식품기업 통용 위생규범”은 각종 식품공장의 위생규범을 제정하는데 근거를 제공하였음. 주요 내용은 (1) 원재료 구매, 운송, 저장의

위생, (2) 공장 설계 및 시설의 위생, (3) 공장의 위생관리, (4) 생산과정의 위생, (5) 위생과 품질의 검험, (6) 완제품 저장과 운송의 위생, (7) 개인 위생 및 건강의 요구 등 내용을 포함.

나. 검험·검역 범위, 형식 및 방법

1) 검험·검역 범위

※ 수출입 식품은 수출입 식품, 식품 첨가제, 식품 용기, 식품 포장용기, 식품 포장재료와 식품용 공구 및 설비 등 “수출입 상품 검험 종류표”(약칭 : HS목록)에 포함된 상품은 검험·검역부서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험·검역과 식품 위생감독 검험을 진행함.

2) 검험·검역 형식

※ 수출입 식품은 법정 검험·검역 상품으로서 주로 자체 검험을 위주로 하며 기타 수출입 상품의 공동 검험, 위탁 검험과 인가 검험형식을 참조할 수 있음.

☐ 자체 검험

○ 자체 검험은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이 자체 기술력(검사설비와 검사인원을 포함)을 이용하여 자체로 샘플 추출, 샘플 제작과 전체 항목의 검험을 진행하는 방식임.

- 위생, 환경보호 등 사회 공익의 상품 및 대외무역계약이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의 증서로 가격을 계산 및 결산할 것을 요구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자체 검험을 채택함.

□ 공동 검험

- 공동 검험은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의 조직에 의하여 출입국 검험·검역기관과 수출 생산기업, 수입 화물 인수부서 또는 관련 업체가 규정한 표준과 방법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출입 상품의 샘플 추출과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임.
- 공동 검험은 수출입 상품 검험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임.

□ 위탁 검험

- 위탁 검험은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이 수출입 상품 검험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검험 자격이 있는 국내외 기타 검험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또한 그 검험결과에 의하여 통관 또는 상품검사증명을 발급함.
-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이 어떤 상품 또는 검험항목에 대해 검사설비 또는 검사방법이 결핍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의 인증을 받은 생산, 과학연구, 교육기관(업체)의 시험실 또는 인증을 받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국외 검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인가 검험

- 인가 검험은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이 일부 수출생산기업 또는 수입 화물 인수기관의 검험기관 또는 검험인원에 대해 인가하며 그 검험결과에

대한 샘플 조사를 한 기초에서 인가를 받은 검험기관 또는 검험인원의 검험결과에 의하여 통관 또는 상품검사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임.

3) 검험·검역 방법

- ※ 수출입 식품의 검험·검역방법은 1) 각종 방법으로 식품의 영양, 화학성분과 특성 등 각종 품질특징 및 안전, 위생요구와 조건 등을 검사하는 방법, 2) 각종 방법으로 저장운송, 하역과정에서의 상황 및 포장, 운송수단의 적재, 위생조건 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음.
- ※ 첫 번째 방법은 대부분 샘플 추출 및 실험실에서 진행하며, 두 번째 방법은 대부분 현장에서 진행하고 일부 실험실의 검험으로 진행함.
- ※ 수출입 식품의 검험·검역 방법은 감각기관 검험방법, 물리화학 분석, 위생학 검사 등이 있으며, 주요 분석방법은 중량 분석법, 적정 분석법, 색층 분석법, 분광 광도 분석법, 미생물법 등이 있음.

□ 감각기관 검험방법

- 감각기관 검험방법은 검험·검역인원이 본인의 감각기관(눈, 귀, 코, 혀, 손)의 시각, 미각, 후각, 촉각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식품의 형태, 색깔, 맛, 냄새, 경도에 대해 위생 평가를 하는 과정임.
- 기본적인 감별방법 : 시각 감별법, 후각 감별법, 미각 감별법, 촉각 감별법

□ 중량 분석법

- 중량 분석법은 검사할 성분을 일정한 방법으로 샘플에서 분리한 다음에 검사할 조(組)의 중량 또는 샘플에서 기타 성분의 중량에 의하여 검사할 조가 샘플에서의 함량을 계산함.

○ 종류: 기화(氣化)법, 추출법, 침전법 등

□ 적정 분석법

○ 적정 분석법은 일종 이미 정확한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표준 용액)을 샘플 용액에 떨어뜨려 검사할 물질과 충분히 반응을 일으키며(즉, 표준 용액의 당량수와 검사할 물질의 당량수가 같음), 표준 용액의 농도와 소모한 체적에 의하여 검사할 물질의 함량을 계산함.

○ 종류 : 산·알칼리 적정법, 산화환원 적정법, 침전 적정법, 화합 적정법

□ 크로마토그래프법

○ 색층 분석법은 식품 위생검험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리화학 분리분석법임. 그 원리는 혼합물에서 각 성분의 물리화학 성질의 차이를 이용하여 각 성분이 서로 다른 2개 상(相)(고체 상(相)과 유동 상(相))에 분포되게 하여 각 성분이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여 분리하게 함.

○ 종류 : 색층 분석법, 종이 층 분석법, 얇은 층 분석법,

□ 계기 분석법

○ 계기 분석법은 검사할 식품을 구성하는 성분 및 그 물리 특성의 기초에서 검사와 감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물리 분석법이라 함.

○ 계기 분석법은 주로 미량, 초미량 성분의 검사에 사용되며 속도가 빠르고 효율과 민감도가 아주 높은 선진적 분석 검험·검역방법임.

- 종류 : 광학 분석법(분광 광도 분석법, 원자 흡수법 등), 전기화학 분석법(전위법 등), 크로마토그래프법(가스 크로마토그래프법, 액상 크로마토그래프법 등)과 기타 분석법(질량 스펙트럼법 등)

☐ 생물학 검험법

- 종류 : 미생물학 검험방법(현미경 관찰법, 번식법, 순종 분석법, 형태 관찰법), 생물학 검험법(조직학 분석법, 생리시험법)

☐ 유해·유독물질 검험법

- 유해·유독물질 검험법은 식품 중 유해·유독물질(농약, 짐승 약, 유독 중금속, 유독 화합물 등 잔류량)에 대해 검사하며 유전자 변형제품에 대해 검험하는 방법임.
- 일반적으로 가스 또는 액상 크로마토그래프법, PCR검사기술 등을 채택함.

다. 검험·검역 절차 및 제도

- ※ 중국 출입국 검험·검역의 내용은 수출입 상품 검험, 수출입 동·식물 검역 및 국경 위생 감독제도를 포함.

1) 수출입 식품의 검험·검역

☐ 수출입 식품의 검사 신고 총칙

- 수입 식품의 검사 신고 총칙

※ 식품 수출입업체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중국의 식품 위생표준과 위생요구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요구에 의하여 각종 식품의 수입 검사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함.

- 사전포장 식품 : 사전포장의 식품이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지정한 검험·검역기관에 식품 라벨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외에 검사샘플을 제공하여야 함. 심사 결과 요구에 부합되면 國家質檢總局은 “수입 식품 라벨 심사비준증서”를 발급함. 수입 식품의 검사 신고인이 검사 신고 수속을 밟을 때에 반드시 “수입 식품 라벨 심사비준증서” 또는 “라벨 심사비준 접수처리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검험·검역기관에서 검시신고를 접수처리하지 않음.
- 동·식물제품 : 동·식물제품을 수입하는 업체 또는 개인이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현지 검험·검역기관에 자문하거나 검험·검역 비준증서를 받아야 동·식물제품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의 법정 검역 요구를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함.
- 보건식품 : 보건식품의 수입업체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이생부로부터 “보건식품 수입 비준증서”를 받아야 하며 수입 시 항구 검험·검역기관은 이 비준증서에 의하여 화물에 대한 검험·검역을 진행하며 합격되어야 수입할 수 있음.
- 처음으로 수입하는 신 자원 식품 : 사전에 반드시 검험·검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검험·검역기관에서 심사검험을 한 후 위생부의 비준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신고 시 샘플과 수출국(지역)에서 발급한 위생 평가자료를 제공해야 함.
- 식품 첨가제의 신제품 : 심사비준 절차는 신자원 식품과 유사함. 수입하기 전에 검험·검역기관의 심사검험을 받은 후 위생부의 비준을 받음. 신고 시 샘플과 수출국(지역)에서 발급한 위생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외에 국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조직에서 발급한 비준증서, 평가서류, 사용범위 및 사용량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수출 식품의 검사 신고 총칙

- 모든 식품(각종 식용, 음용 제품과 원료 및 전통적 습관에 의하여 약물을 첨가한 식품을 포함)은 수출입 식품위생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또한 검험을 거쳐야 수출할 수 있음.
- 중국 국내에서 수출 식품의 가공, 짐승 도살 및 저장기업은 반드시 먼저 소재지 위생행정부서에서 발급하는 위생허가증을 취득한 다음 검험·검역기관에 등록, 등기를 해야 수출할 수 있음. 검험·검역기관의 심사 결과 합격될 경우, 각각 등록증서 또는 등기증을 발급함.

□ 수출입 식품의 검험·검역 절차

※ 수출입 식품의 검험·검역 절차는 기타 수출입 상품의 검험·검역 절차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검사 신고 접수처리, 샘플링 또는 샘플 추출, 검험·검역, 위생 위해처리, 요금 계산(수취), 허가증 발급 및 통관 등 절차를 포함.

(1) 수출입 식품의 검사 신고

※ 2000년 1월 1일부터, 검험·검역기관은 “검사 신고→통관신고”의 검사제도를 실행하였음. 즉, 검험·검역 범위 내(법정 검험)의 화물에 대하여 세관은 통관 신고지역의 출입국검험·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수입 화물 통관증서”와 “수출 화물 통관증서”에 의하여 통관을 시킴.

※ “수입 화물 통관증서”와 “수출 화물 통관증서”는 수출입 상품의 기본 상황 외에 검험·검역기관은 “상기 화물은 검사 신고를 하였음으로 세관에서 통관을 시키기를 바랍.”을 표기함.

※ 출입국 검험·검역의 검사 신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입국 검험·검역 검사 신고 규정”, “출입국 검험·검역 대리 검사 신고 관리규정”과 “출입국 검험·검역 검사 신고인원 관리규정”을 발표

하였음.

○ 검사 신고업체와 범위 및 형식

- 검사 신고업체

- ※ 수출입 경영권이 있는 국내기업
- ※ 수입 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
- ※ 수출 화물 생산기업 또는 그 대리인
- ※ 중외 합자, 중외 합작 또는 외자 독자기업
- ※ 국외기업, 상사 대표처 등
- ※ 기타 대외 무역 관계인

- 검사 신고 범위

- ※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에서 검험·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 상품”(약칭 : 새로운 HS목록)에서 수출입과 관련되는 식품: 수출입 식품 위생 감독검험에 속하는 R류 상품 총 1,158개와 수출 식품 위생 감독검험에 속하는 S류 상품 총 915개
- ※ 부식 변질하기 쉬운 수출입 식품 및 냉동제품을 선적 운송하는 선실(船艙), 컨테이너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험
- ※ “상품목록” 외의 수출 식품 및 수입 식품, 식품 첨가제, 식품 용기, 포장재료와 식품용 공구 및 설비에 대한 위생 검험.

- 검사 신고형식: 창구 검사 신고와 전자(원격) 검사 신고

○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

- 수출 식품의 검사 신고 시(원본을 제출, 또는 복사본을 제출하는 동시에 원본은 검험·검역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함.)
 - ※ 대외 무역 계약서, 판매 확인서 또는 주문서, 신용장(L/C)(신용장 외 방식으로 외화 결제할 경우, 반드시 검사 신고서에 외화 결제방식을 표기해야 함, 예를 들면, T/T, D/D, M/T방식 등), 송장(invoice) 및 포장명세서, 공장 검사보고서 또는 합격증
 - ※ 수출 식품 외부 포장(박스상자, 나무상자, 마대, 비닐마대 등),

검사 신고 시 “수출 화물 운송포장용기 성능 시험결과서” 원본도 제출해야 함.

※ 수출식품은 반드시 “수출입 식품 라벨 심사비준증서”가 없는 기업에 대하여 수출 식품의 검사 신고를 접수하지 않음.

- 수입 식품의 검사 신고 시

※ 수입 식품은 반드시 사전에 심사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유효한 검역 심사비준이 있어야 검사 신고를 할 수 있음. 수입 검사 신고 시에 반드시 관련 심사비준증서 또는 비준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수입 식품이 검사 신고 시, 반드시 대외 무역 계약서, 국외 송장(invoice), 화물 운송장 또는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사전 포장 식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수출입 식품 라벨 심사비준증서”를 제출해야 함.

※ 수입한 식품, 식품 첨가제, 식품 용기, 포장재료와 식품용 공구 및 설비는 반드시 수출국(지역)에서 사용하는 농약, 첨가제, 훈증제(熏蒸劑) 등 관련 자료와 검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수입 식품의 증서 교환

※ 수입 식품 경영기업(수입 식품의 도매업체와 소매업체)이 수입 식품을 도소매할 때 반드시 현지 검험·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수입 식품 위생증서를 취득해야 함.

※ 수입 식품이 항구 검험에 합격되어 위생증서를 취득한 후 내륙에 다시 운송하여 판매할 경우, 수입 식품 경영기업은 반드시 항구 검험·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수입 식품 위생증서의 원본 또는 부본을 소지하여 현지 검험·검역기관에서 위생증서를 바꾸어야 함.

○ 검사 신고 기한, 장소

- 수입 식품이 도착한 후 수하인은 반드시 하역 항구 또는 도착 정

류장의 검험·검역기관에 등록하여 규정한 검험장소, 기한 내에 계약서,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 선하증권(B/L)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소지하여 검험·검역기관에 검사 신고를 하며 검험·검역기관은 검험·검역을 실시 또는 조직함. 검험·검역에 합격되지 못하면 판매, 사용을 하지 못함.

- 수입 식품의 경영업체 또는 그 대리인이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지정한 검험·검역기관에 식품 라벨 심사비준 신청을 제출하여야 함. 수입 식품의 검사 신고인원이 검사 신고 수속을 밟을 때 반드시 “수입 식품 라벨 심사비준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검사 신고를 접수하지 않음. 검험·검역기관은 수입 식품 라벨 검험결과에 의하여 식품의 합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수출 식품은 늦어서 통관 신고 또는 선적 전 10일 내에 검사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검험·검역주기가 비교적 길 경우 반드시 대응되는 검험·검역시간을 남겨 두어야 함. 검사 신고인원이 검험·검역증빙서류에 특별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검사 신고서류에 표기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동시에 수입하며 또한 여러 지역에 공급되는 대중 식품에 대하여 화물 접수부서 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입국 항구의 검험·검역기관에 검험·검역을 청구하여야 함.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항구에서 전체 식품에 대한 검험·검역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 지역에서의 검험·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 검사 신고 요구사항

- 검사 신고인원은 반드시 규정에 의하여 검사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계약서, 송장(invoice), 선하증권(B/L)에 의하여 동일한 검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검사 신고인원이 검험·검역증서의 내용에 특별 요구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검사 신고서에 밝혀야 함.
- 검사 신고 시 반드시 규정에 의하여 검험·검역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검사 신고인원은 반드시 사전에 샘플링 검험·검역, 감정시간을 약정하여야 하며 또한 샘플링과 검험·검역 감정 등의 진행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야함.
- 검사 신고인원이 특별 원인으로 인하여 검사 신고를 철회할 경우, 서면으로 원인을 설명한 후 철회수속을 밟을 수 있음.
- 수입 화물이 대외 손해배상 청구로 입증할 경우,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의 유효기한 전 최소 20일 내에 화물 도착 항구 또는 화물 도착지의 검험·검역기관에 검사 신고를 하여야 함.

○ 처벌사항

- ※ 검사 신고업체와 검사 신고인원이 검험·검역인원의 증서, 인장을 위조, 매매, 변경, 도용할 경우, 관련 법률·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함.

(2) 수출입 식품의 샘플 수집 및 제작

○ 샘플링 또는 샘플 추출

- 기본요구사항
 - ※ 수입 식품을 운송하는 선박, 차량, 비행기가 항구(정류장)에 도착한 후, 검험·검역인원은 화주(貨主) 또는 대리인의 검사 신고서에 의하여 하역하기 전에 현장에서 샘플을 수집함.
- 샘플 추출의 근거
 - ※ 수출입 계약서에 샘플 추출방법을 규정하였을 경우, 계약서에 서 규정한 표준 또는 방법에 의하여 샘플을 추출함.
 - ※ 계약서에 샘플 추출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수출입 화물은 관련 표준에 의하여 샘플을 추출함.
 - ※ 추출함 샘플은 반드시 대표성, 정확성, 과학성이 있어야 함.
 - ※ 수집을 마친 샘플은 반드시 제때에 밀봉하여 검사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 샘플 수집 수량(각종 대중 식품의 샘플 단위중량은 일반적으로 2킬로그램임)
 - ※ 식량 : 2만 톤 이하(상, 중, 하 3층 샘플링 진행, 매개 층에 1개 혼합 샘플을 수집), 2만 톤 이상(4층 샘플링 진행, 매개 층에 1개 혼합 샘플을 수집)
 - ※ 설탕 : 2만 톤 이하(상, 중, 하 3층 샘플링 진행, 매개 층에 1개 혼합 샘플을 수집), 2만 톤 이상(4층 샘플링 진행, 매개 층에 1개 혼합 샘플을 수집)
 - ※ 유제품 : 생산날짜 및 생산 비준번호에 따라 샘플링을 함. 샘플 수량의 2%로 샘플링하며 매개 샘플은 동일한 비준번호 화물의 3개 포장에서 혼합 샘플을 수집함. 식용유는 상, 중, 하에서 각각 1개 샘플을 수집함.
 - ※ 소량 수입 식품 : 1% 비례로 샘플링을 하며, 품종별 샘플 수집 수량은 3개 이상, 매개 샘플 중량은 0.5킬로그램 이상.
 - ※ 소포장 식품(통조림, 음료 등) : 2~3개 포장을 검사용 샘플로 할 수 있음.

○ 샘플 제작

- 샘플 제작의 기본방법 : 흔들름(병포장 주류 및 음료), 뒤섞음(잼(jam), 벌꿀 등), 연마(마른 단백질, 골분과 식량), 고르게 섞음(어분, 분유), 찢어서 섞음(과일, 채소, 어류, 육류와 가금류)
- 샘플 제작의 목적은 샘플 제작의 균일화를 보증하기 위한 것임.
- 샘플 제작 장소 : 검험·검역기관 실험실 또는 사회에서 인가한 실험실(조건이 없을 경우)

○ 샘플 관리

- 샘플 및 제작한 샘플은 검험·검역을 마친 후 병포장 또는 파라핀 밀봉 또는 비닐봉지도 다시 밀봉하여야 함.
- 샘플 보존기한을 초과하면 소각처리를 하여야 함.

(3) 수출입 식품의 검험·검역

○ 현장 검험·검역

- 수입 식품

※ 현장 검험·검역의 내용: 식품이 농약, 화학비료 및 기타 화학 물질과의 혼합 여부, 식품의 오염, 부식, 이물질, 곰팡이 변질, 이상한 맛, 벌레 및 기타 감각 상의 이상 현상 여부, 냉동식품의 해동 여부, 포장의 완정서 여부, 위생 요구 만족 여부 등

※ 주요 절차

★ 수입 식품을 운송하는 선박, 차량, 비행기가 항구(정류장)에 도착한 후, 검험·검역인원은 화주(貨主) 또는 대리인의 검사 신고서에 의하여 하역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식품 및 운송, 하역 등 수단 및 부두에 대해 위생 감독을 실시함.

★ 검험·검역인원은 선박(차량, 비행기)에 올라가 화물의 종류와 수량, 이번 선적 전의 선박, 화차, 객실의 청소, 소독상황, 선적 항구 및 발송날짜가 항구 전이 화물 여부, 운송과정에서 해사 등 사고 존재 여부, 냉장 운송 식품의 냉장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며, 화물 운송자로부터 관련 화물의 증빙서류(훈증, 선박 검사증서, 화물 배치도 등)를 검사 또는 요구함.

★ 운송자 또는 화주와 같이 선실에 가거나 개봉하여 식품이 농약, 화학비료 및 기타 화학물질과의 혼합 여부, 식품의 오염, 부식, 이물질, 곰팡이 변질, 이상한 맛, 벌레 및 기타 감각 상의 이상 현상 여부, 냉동식품의 해동 여부, 포장의 완정서 여부, 위생 요구 만족 여부 등을 검사하며, 소량 포장 식품에 대해 상표 라벨을 검사하여 생산날짜, 보존기한, 품종, 수량이 검사 신고서와 일치한 가를 검사함. 상기 화물의 위생상황에 의하여 검험·검역 통행증을 발급함.

★ 검험·검역인원은 하역 전 및 전반 하역과정에서 부두, 정류장, 창고, 장소와 운송수단에 대한 위생 감독을 진행함.

- 수출 식품

※ 감독관리의 주요 내용

- ★ 인원을 파견하여 등록기업의 품질체제의 운영상황을 검사
- ★ 가공 프로세스의 위생 규범 실행상황을 검사
- ★ 핵심 가공 프로세스의 위생 품질 기록을 검사 및 검증
- ★ 완제품에 대해 샘플링을 진행하여 그 안전 위생상황 등을 파악.

※ 주요 절차

- ★ 식품이 수출되기 전에 관련 무역회사 또는 생산공장은 공장 검사 결과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소지하여 검험·검역기관에 검사 신고를 함.
- ★ 검험·검역기관은 무역 계약서, 국가 표준 또는 수입국의 요구에 의하여 수출 식품에 대한 감각기관 품질항목의 검험, 물리화학항목의 검험, 안전 위생항목의 검험 침 내부와 외부 포장물의 검험을 진행.
- ★ 검험에 합격될 경우, 검험·검역기관은 검험증서 또는 통행서류를 발급하여 수출 식품이 통관하게 함.

○ 실험실 검험·검역

- 샘플 접수인원은 샘플에 대해 자세하게 검증함. 제출한 샘플과 검사 신고서의 샘플 번호, 명칭, 수량 등이 일치할 경우, 검사 신고서에 사인함.
- 실험실 검험인원은 검사 신고에서 요구한 검험·검역 항목에 의하여 국가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제때에 정확하게 검험을 진행함. 국가에서 통일적인 검험방법이 없는 수입 식품은 관련된 검험방법을 참조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실험실은 샘플을 접수한 후 제대에 검험을 진행. 일반적으로 6일

(마지막 샘플 제출시간으로 계산) 내에 검험결과를 제출해야 함. 검험결과는 반드시 검험인원, 교정인원과 실험실 책임자가 각자 사인을 한 후에 검험 보고서를 현장 검험·검역인원에게 넘겨줄 수 있음.

- 실험실 검험인원이 검험을 진행할 때에 검험방법, 검사 데이터, 공식 및 계산결과 등을 상세하게 실험실 검험·검역 기록서에 기록하여야 함. 실험실 검험이 끝난 후에 제때에 검험 보고서를 검험 기술서와 같이 현장 검험·검역인원에게 넘겨줌.

○ 검험·검역 결과처리

- 수입 식품

※ 수입 식품이 검험을 마친 후, 현장 검험·검역인원이 위생 감독과 실험실의 검험결과에 의하여 수입 식품 위생 허가증을 발급. 식품 위생 표준과 위생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검험결과 및 위해정도에 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검험·검역인원이 반품, 소각, 기타 용도로 사용 또는 가공 처리 후 식용 등 처리의견을 제출하며 부서 책임자가 심사비준한 후 國家質檢總局的 권한을 받은 기관에서 사인하여 발급.

※ 각 항목의 검험·검역 결과는 선박, 박스 또는 비준번호를 단위로 계산함.

※ 수입 식품의 검험·검역은 마지막 샘플을 수집한 후 7일 내에 식품 위생 허가증을 화주, 대리인 또는 검사 신고인원에게 발급.

※ 검험·검역 증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화주(또는 검사 신고인원)에게 검험·검역비용 납부 통지서를 발급하며, 비용을 받으면 화주에게 정식 영수증을 줌.

※ 수입 식품이 먼저 하역한 부분을 항구에서 다른 곳으로 운송하였으며 또한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화물 유통지역의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함. 중국 위생표준을 초과하거나 계약의 규정 외의 유독·유해 물질을 발견하

였거나 위험성 유해 생물을 휴대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즉시 國家質檢總局과 국가 식품안전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항구의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검험·검역 증서를 발급한 후 계약서, 검사 신고서, 검험·검역 기록, 샘플 제출서, 실험실 검험·검역 기록, 증서 부분 및 기타 관련 증명서류 등을 보관.

- 수출 식품

※ 검험·검역 결과 관련 법률·법규 또는 계약서, 신용장(L/C)및 수입국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수출 식품에 대해 식품 품질증서, 수의(獸醫) 위생증서 또는 품질 증서를 발급.

※ 검험·검역 결과 관련 법률·법규 또는 계약서, 신용장(L/C)및 수입국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수출 식품에 대해 다시 정리하여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수량, 규격 등이 합격되지 못하는 수출 식품에 대해 다시 정리하여 검사를 받게 함.

(4) 수출입 식품의 허가증 발급 및 통행 허가

※ 허가증 발급 및 통행 허가는 검역검험기관이 수출입 식품에 대한 검험·검역업무의 마지막 순서로서 주로 허가증 내용 및 증빙서류 심사, 허가증 제작, 대조검사, 허가증 발급, 통행 허가 등을 포함.

※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국제 공약이 반드시 검험·검역기관의 검험·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수출 식품이 합격될 경우, “수출 화물 통관증”을 사인 및 발급하여 세관이 화물 심사 통과와 근거로 함. 동시에 외국에서 관련 검험·검역 증서를 발급할 것으로 요구할 경우, 검험·검역기관은 대외 무역 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검험·검역에 합격되면 대응되는 검험·검역 증서를 발급하며 합격되지 않을 경우 “수출 화물 불합격 통지서”를 발급.

※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국제 공약이 반드시 검험·검역기

관의 검험·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수입 식품은 검험·검역 기관에서 검사 신고를 접수한 후 먼저 “수입 화물 통관증”을 사인 및 발급하여 세관이 화물을 통과하게 함. 그 다음 검험·검역기관의 검험·검역에 합격될 경우, “수입 화물 검험·검역상황 통지서”를 발급. 타 지역에서 검험·검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항구 검험·검역기관에서 타 지역 검험·검역 수속을 밟아야 함.

(5) 수출입 식품의 검험·검역 요금

○ 요금 표준의 근거

※ 수출입 식품 검험·검역의 요금 관리 및 요금 표준 : 주로 “수입 식품 위생검험 요금 방법 및 요금 표준” 및 “수출입 상품 검험·검역 요금 방법 및 요금 표준”과 “수출입 동·식물 검역 요금 관리방법 및 요금 표준”에서 식품과 관련되는 요금 규정과 표준임.

※ 그 외, 식품 실험실 검사항목과 관련될 경우, 직접 현지 출입국 검험·검역국에 문의 또는 검색할 수 있음.

○ 요금의 기본표준

※ 수출입 식품의 검험·검역 요금은 화물 총금액의 기초에서 비율로 계산 및 징수하거나 중량, 수량, 검험·검역 또는 감정항목의 기초에서 정액으로 계산 및 징수함.

※ 요금을 계산할 때에 서로 다른 신청 유형, 화물 유형, 검험·검역 내용, 검험·검역 항목에 따라 서로 다른 비율과 정액을 적용함.

※ 그 다음, 검험·검역 및 감정 결과, 검험거역 방식, 화물 성격, 검험·검역 및 감정비(검험 내용의 연관성), 무역방식 및 허가증 발급요구에 의하여 규정을 참조하여 최종 요금을 계산함.

○ 요금의 수취방식

※ 선수금방식 또는 월말 정산방식을 채택함.

□ 商檢法 위반 시 제재조치

- (1) 검험을 받아야 하는 수입 상품을 검사 신고를 하지 않고 함부로 판매 또는 사용할 경우, 또는 검험을 받아야 하는 수출 상품을 검사 신고하지 않고 함부로 수출할 경우

※ 제재조치: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화물가치의 5% 이상, 20%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형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함.

- (2) 함부로 수출입 상품의 검험, 감정업무를 진행할 경우

※ 제재조치: 불법 경영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 벌금을 부과.

- (3) 가짜 상품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불합격 수출입 상품을 합격된 수출입 상품으로 사칭할 경우

※ 제재조치: 수입 또는 수출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화물가치의 50% 이상 3배 이하 벌금을 부과. 범죄를 형성하였을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함.

- (4) 상품검사증서, 인장, 표시, 밀봉 표시, 품질 인증 마크를 위조, 변형 제조, 매매 또는 도용할 경우

※ 제재조치: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화물가치 이하의 벌금을 부과.

2) 수출입 동·식물 검역

□ 법률체제

- 현재 동·식물 검역과 관련되는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동물 방역법” 및 관련 법규(“중화인민공화국 수입 동물 1류,

2류 전염병, 기생충병 목록”; “중화인민공화국 휴대, 우편방식의 입국을 금지한 동물, 동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과 “중화인민공화국 식물검역 수입금지 품목목록” 등)

○ “進出境動植物檢疫法”은 중국 동·식물 검역의 중요한 법률로서 동·식물 검역의 목적, 임무, 제도, 업무범위, 업무방식 및 동·식물검사기관의 설치와 법률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

○ “進出境動植物檢疫法”과 “動物檢疫法”은 동물 전염병, 기생충병을 예방 및 없애어 목축업 생산과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음. “進出境動植物檢疫法”은 주로 수출입 동물 검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動物檢疫法”은 중국 국내 동물 검역과 검역방면의 내용을 포함.

□ 관리체제

※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수출입 동·식물 검역업무를 주관

※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국(약칭 : 國家動植物檢疫局)은 중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국내 외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 정보를 수집하며, 국제 수출입 동·식물검역의 합작과 교류를 책임.

※ 國家動植物檢疫局은 대외 개방의 항구와 수출입 동·식물 검역업무가 집중된 지역에 설립된 항구 동·식물 검역기관에서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과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 동·식물의 검역을 실시함.

□ 동·식물 검역범위

○ 입국, 출국, 국경 경과의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적재한 적재 용기, 포장물, 바 탕재료

○ 동·식물 전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온 운송수단

○ 입국 분해한 폐기 선박

○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제조약에서 규정하였거나 무역 계약의 약정에 의하여 반드시 수출입 동·식물 검역을 실행해야 하는 기타 화물, 물품

- 동물 : 사육, 야생의 산 동물(가축, 가금, 짐승, 뱀, 거북이, 물고기, 새우, 게, 조개, 누에, 벌꿀 등)

- 동물제품 : 동물을 가공하지 않았거나 가공하였지만 여전히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품(모피, 털류, 육류, 내장, 유지, 동물 수산물, 유제품, 가금알류, 혈액, 정액, 태반, 뼈, 발굽, 뿔 등)

- 식물 : 재배 식물, 야생 식물 및 그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 등)

- 식물제품 : 식물을 가공하지 않았거나 가공하였지만 여전히 병해충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품(곡물, 두류, 면화, 마류, 담뱃잎, 씨, 마른 과일, 채소, 과일, 생약재, 목재, 사료 등)

- 기타 검역물: 동물의 세균백신, 혈청, 진단액, 동·식물성 폐기물 등

□ 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

○ 동·식물 병원체(균종, 독종 등 포함), 해충 및 기타 유해 생물

○ 동·식물 전염병 유행 국가와 지역의 관련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 동물 시체

○ 토양

※ 상기 구체적인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에 대해서 농업부는 1992년 6월 8일에 “중화인민공화국 휴대, 우편방식의 입국을 금지한 동물, 동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과 1997년 7월 29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식물검역 수입금지 품목목록”을 발표하였음

<중국 휴대, 우편방식의 입국을 금지한 동물, 동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

구 분	명 칭
동 물	닭, 오리, 거위, 금계, 부엉이, 비둘기, 메추리, 조류, 토끼, 쥐, 기니피그, 다람쥐, 개구리, 뱀, 거북이, 자라, 도매뱀, 악어, 지렁이, 달팽이, 어류, 새우, 게, 원숭이, 천산갑, 시라소니, 벌꿀, 누에 등
동물제품	정액, 태반, 수정란, 잠란, 생육류, 소시지, 햄, 절임육, 훈육, 계란, 수생동물제품, 신선 우유, 유락, 크림, 버터, 유정분, 모피류, 강모류, 발굽각류, 혈액, 혈분, 유지류, 장기류 등
기타 검역물	종균, 종충, 세포, 혈청, 동물 표본, 동물 시체, 동물 폐기물 및 병원체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휴대, 우편방식으로 입국하는 동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은 국가동·식물검험기관의 특별 허가를 받았으며 또한 수출국 또는 지역의 정부기관에서 검역증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이 목록의 제한을 받지 않음.

<중국 식물검역 수입금지 품목목록>

수입금지 품목	수입금지 원인 (위험성 병해충 전염방지)	금지 국가 및 지역
옥수수 (Zea mays) 종자	옥수수 세균성 枯萎병균 Erwinia stewartii (E.F.Smith) Dye	아시아: 베트남, 태국 유럽: 독립국가연합, 폴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미주: 캐나다, 미국, 멕시코
대두 (Glycine max) 종자	대두 전염병균 Phytophthora megasperma(D.) f. sp. glycinea K.& E.	아시아: 일본 유럽: 영국, 프랑스, 독립국가연합, 독일 미주: 캐나다, 미국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감자 (Solanum tuberosum) 球莖 및 기타 번식용	馬鈴薯黃矮病毒 Potato yellow dwarf virus 馬鈴薯掃頂病毒 Potato mop-top virus 馬鈴薯金線 Giobodera pallida(wollen.) skarbilovich 馬鈴薯白線 Giobodera pallida(stone) Muivry & Stone 馬鈴薯癌腫病菌 Synchytyicum(Schilb.) Percival	아시아: 일본, 인도, 파키스탄, 레바논, 네팔, 이스라엘, 미얀마 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독립국가연합,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 핀란드,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프리카: 튀니지, 알제리, 남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짐바브웨 미주: 캐나다, 미국, 멕시코, 파나마, 베네수엘라,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榆屬苗, 插條 (Ulmus spp.)	榆枯萎病菌 Ceratocystis ulmi(Buisman) Moreall	아시아: 인도, 이란, 터키 유럽: 각국 미주: 캐나다
松屬苗, 接穗 (Pinus spp.)	松材線 Bursaphelenchus xylophilus(Steiner & Buhner) Nckle 松材線 Hemiberlesia pitysohila Takagi	아시아: 북한, 일본, 홍콩, 마카오 유럽: 프랑스 미주: 미국, 캐나다
고무芽, 苗, 씨 (Hevea spp.)	고무 남미 葉疫病菌 Microcyclus ulei(P.Henn) Von.Arx	미주: 멕시코, 중남미 각국
담배 (Nicotiana spp.) 담배잎 번식재료	煙霜梅毒病 Peronospora hyoscyami de Bary f. sp. tabacia(Adam) Skalicky	아시아: 미얀마, 이란, 예멘,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유럽: 각국 아프리카: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미주: 캐나다,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 살바도르, 쿠바, 도미니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대양주: 각국

과일 및 가지, 고추, 토마토	地中海파리 Ceratitis capitata(Wiedemann)	아시아: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파키스탄, 이스라엘, 키프로스, 터키 유럽: 헝가리,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몰타,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그리스 아프리카: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말리, 기니, 시에라리온, 리비아, 가나, 베닌, 니제르, 나이제리아, 토나, 카메룬, 수단, 이디오피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루안다, 부룬디, 자이르, 앙골라,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레위니옹, 짐바브웨,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미주: 미국(하와이 포함),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자메이카, 베네수엘라,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대양주: 호주
소맥(상품)	小麥矮腥黑?病菌 TILLETIA CONTROVERSA KUEHN 小麥印度腥黑 病菌 TILLETIA INDICA MITRA	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네팔, 이란, 이라크,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독립국가연합,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알바니아, 유고,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아프리카: 리비아, 알제리 미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미국(와싱턴, 마이애미, 몬테나, 콜로라도, 아이다호, 유타주) 및 TILLETIA INDICA MITRA발생 지역
식물 병원체 (종균, 종독, 해충, 유해 생물체 및 기 타 유전자 변환 생물재료)	<중국수출입동식품검역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	모든 국가 또는 지역
토양	상동	모든 국가 또는 지역

※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이 규정한 수입금지 물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송하거나 소각처리를 함.

※ 과학 연구 등 특수한 원인으로 인하여 상기 표에 포함된 수입금지의 물품을 도입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 국가 동·식물검역국의 비준을 받아야 함.

□ 수입 동·식물 검역의 심사비준제도

○ 개념

※ 중국의 수입 동·식물 검역 심사비준제도는 국가 관련 주관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식물 검역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 생물 리크스 분석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내로 수입하려는 관련 동·식물, 동·식물제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그 입국을 비준하는 과정임.

○ 검역 목적

※ 동·식물 검역의 심사비준제도는 중국의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의 생산 안전을 보호하며, 유해성 생물이 수입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과 같이 중국에 유입되는 리크스를 줄임.

○ 검역 근거

- 법률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식물 검역조례”
- 중국과 수출국이 체결한 쌍변 검역협정서(협정서, 비망록, 검역 의정서를 포함)
- 수출국 또는 지역의 동·식물 전염병 상황

○ 심사비준 범위

國家質檢總局 동·식물검역감독관리사는 해마다 3만 회 이상 수입 동·식물 검역 심사비준을 접수처리하며 주로 4개 종류(동물 검역의 심사비준, 식물 검역의 심사비준, 특별허가의 심사비준, 국경 경과 검역의 심사비준)로 분류됨.

※ 수입금지 물품의 검역 심사비준은 국가동·식물검역국 또는 권한을 받은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책임.

※ 수입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의 검역 심사비준은 식물검역조례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책임.

※ 무역, 과학기술 합작, 교환, 증정, 원조 등 방식으로 동·식물, 동·

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수입할 경우, 검역 심사비준 수속은 반드시 무역 계약서 또는 협의서를 체결하기 전에 밟아야 함.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 우편으로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를 입국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 검역 심사비준 수속을 밟아야 함.

※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전에 신청할 수 없을 경우, 휴대인 또는 우송인은 반드시 항구에서 검역 심사비준 수속을 다시 받아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의 동의를 거치며 또한 검역이 합격된 후에 입국할 수 있음.

□ 수출입 동물의 검역

(1) 수입 동물

○ 검사 신고

-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동물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항구 검험·검역기관에 검사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물 입국검역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검사 신고서를 작성.

○ 현장 검역

- 수입 동물, 동물 유전물질이 수입 항구에 도착 시 동물 검역인원은 반드시 탑승하여 현장 검역을 진행해야 함.
- 현장 검역의 주요 업무 : (1) 수입 동물 검역 또는 수의(獸醫)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동물 검역증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사, (2)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를 진행, (3) 운송수단과 동물 오염장소에 대한 방역 소독처리를 진행.
- 현장 검역에 합격될 경우, 항구 검험·검역기관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하며, 수입 동물, 동물 유전물질을 항구 검험·검역기관에서 지정

한 장소로 이동하여 전반적인 격리 검역을 진행.

○ 격리 검역

- 수입 동물은 반드시 입국 항구에서 격리 검역을 하여야 함.
- 말, 소, 양, 돼지 등 종축 또는 사양 동물은 반드시 국가검험·검역기관이 북경(北京), 천진(天津), 상해(上海), 광주(廣州)에 설립한 수입 동물 격리장소에서 격리 검역을 해야 하며, 기타 수입 동물은 국가검험·검역기관에서 비준한 수입 동물 임시 격리장소에서 격리 검역을 하여야 함.
- 격리 검역기간에 항구 검험·검역기관에서 수입 동물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지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검험·검역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인원을 파견하여 사양 관리를 하여야 함.
- 대(大), 중(中) 동물의 격리기간은 45일, 작은 동물의 격리기간은 30일.(※ 격리 검역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검험·검역기관에서 비준해야 함.)

○ 검역 통행과 처리

- 검역 통행 :
 - ※ 검역 통행과 검역 처리를 마친 후, 항구 검험·검역기관에서 검역에 합격된 동물, 동물 유전물질에 대해 “동물 검역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하여 입국을 허용함.
- 검역 처리
 - ※ 농업부에서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동물의 1류, 2류 전염병 및 기생충병 목록” 중의 1류 병을 검사하였을 경우, 전체 동물 또는 동물 유전물질의 입국을 금지하며 반송하거나 소각 처리를 함.
 - ※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동물의 1류, 2류 전염병 및 기생충병 목록” 중의 2류 병의 양성 동물을 검사하였을 경우, 입국을 금지하며 반송하거나 소각 처리를 하며 같은 무리의 기타 동물은 입국을 허락

하며 또한 격리 관찰을 진행함. 양성 동물 유전물질은 입국을 금지하며 반송하거나 소각 처리를 함.

※ 검역 결과 검역 목록 외의 전염병, 기생충병을 발견하였지만 국무원 농업부에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반송하거나 소각 처리를 함.

(2) 수출 동물

○ 검사 신고

-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동물, 동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항구 검험·검역기관에 검사 신고를 하여야 함.
 - 수출 동물에 대해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동물 출국 60일 전에 출국 항구 검험·검역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항구에서 격리 검역 1주일 전에 검사 신고를 함.
 - 수출 동물제품에 대해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검역의 수요에 의하여 항구 검험·검역기관에 앞당겨 검사 신고를 할 수 있음. 서로 다른 동물제품의 검사 신고시간은 다소 다름.
 - 검사 신고 시,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무역 계약서 또는 관련 협의서, 신용장 및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관련 증빙서류가 부족하거나 동물, 동물제품이 전염병 발생구역에서 왔거나, 원산지의 전염병 발생상황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출 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의 수의(獸醫) 위생조건이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항구 검험·검역기관에서 검사 신고를 접수하지 않음.

○ 검역

- 항구 검험·검역기관이 검사 신고를 접수한 후 격리 검역이 필요한 동물에 대하여 반드시 격리장소를 확인하며 동물 검역인원을 파견하여

수출 동물에 대해 임상 검사, 실험실 검험을 진행해야 함.

- 수출 동물제품의 생산, 가공과정에 대해 검역 감독을 진행하며 또한 필요한 실험실 검험을 진행함.
- 필요에 의하여 수출 동물, 동물제품의 생산지에 대해 전염병 발생상황을 조사하여 수출 동물의 건강상황, 수출 동물제품의 생산, 가공 등 수의(獸醫) 위생조건이 수입국의 요구를 만족시키는가를 확인.
- 수출 동물, 동물제품은 반드시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동물 검역 및 동물 위생 협정서, 의정서, 협의서 및 관련 검역 요구에 따라 검역을 실시함.
- 수출 동물, 동물제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은 반드시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함. 육류 내장류, 조란류, 유제품, 동물수산물을 적재한 동물공구, 컨테이너는 반드시 양호한 냉동, 냉장기능이 있어야 하며 항구 검험·검역기관 또는 그 위탁한 검역인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비준 또는 인가한 약물로 소독함.

○ 증서 발급

- 검험 결과 수입국 수의(獸醫) 주관부서 및 중국 검험·검역기관의 관련 규정과 요구에 부합될 경우, 항구 검험·검역기관에서 관련 증서를 발급함.
- 증서는 동물, 동물제품의 운송수단을 소독한 후 운송하기 전에 국가 검험·검역총국에서 발급함.

○ 출국

- 검역에 합격된 수출 동물, 동물제품은 반드시 항구 검험·검역기관 또는 권한을 받은 인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적재, 운송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규정된 기한 내에 출국하여야 함.
-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항구 검험·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수출증서 또는 세관에서 인가한 증빙서류를 소지하여 세관에 통관 신고를 함.

- 수출 동물이 검역에 합격되지 않았거나 수출 동물제품이 검역에 합격되지 않았으며 또한 유효한 방법으로 위해제거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출국을 허락하지 않음.

○ 검역 처리

- 수출 동물, 동물제품이 출국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출국 항구 검험·검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함.
- 기존 운송수단으로 적재, 운송하여 출국할 경우, 출국 항구 검험·검역기관에서 증빙서류를 검사하여 통행시키며, 운송수단을 변경하였을 경우, 증빙서류를 바꾸어야 통행시킴.
- 유효한 검역증서, 증명이 없거나 화물증명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항구 검험·검역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검역 진행, 검역 처리를 함.

□ 수출입 식물의 검역

(1) 수입 식물

○ 수입 조건

- 식물
 - ※ 수입 식물은 국가에서 규정한 식물 위해성 병, 해충, 잡초가 없어야 함.
 - ※ 수입 식물은 관련 협정서, 무역 계약서에 규정한 검사할 병해충이 없어야 함. 이러한 병해충은 중국에서 발견하지 않았거나 분포가 넓지 않음 것임.
 - ※ 종자, 종묘 또는 기타 번식재료를 수입할 경우, 사전에 도입계획을 제출하여 관련 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 반드시 수출국 정부의 식물 검역부서에서 발급한 “식물 검역증서”

와 원산지증명을 제공해야 함.

※ 천연 토양이 없어야 함.

- 식물제품

※ 수입 식물제품은 국가에서 발표한 식물 위해성 병, 해충, 잡초가 없어야 함.

※ 수입 식물제품은 반드시 관련 협정서, 협의비망록 또는 무역 계약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수입 식물제품은 반드시 수출국 또는 지역 정부에서 발급한 “식물 검역증서”가 있어야 함.

※ 천연 토양이 없어야 함.

○ 검사 신고

-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 신고인원 증서”를 소지하여 수입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 또는 항구에 도착할 때에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소지하여 항구 검험·검역기관에 검사 신고를 함.

※ 식물 검역 심사비준증서

※ 수출국 정부의 식물 검역증서

※ 원산지 증명

※ 무역 계약서 또는 협의서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송장(invoice)

※ 선하증권(B/L)

- 수입 종묘의 이식업체와 수입업체가 다를 경우, 쌍방이 체결한 위탁서도 첨부하여야 주요 검역책임의 업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

○ 검역

- 현장 검역

※ 수입 식물, 식물제품의 현장 검역은 일반적으로 하역 전 및 하역

시 진행함.

- ※ 주요 현장 검역 내용 : (1) 식물, 식물제품(화물, 포장물 및 운송 수단이 병, 해충, 잡초, 토양이 있는가를 검사하며 규정에 의하여 샘플링을 진행), (2) 물성 포장, 바닥재료(병, 해충, 잡초씨, 토양이 있는가를 검사하며 샘플링을 진행), (3) 기타 검역물(포장 완전성 및 병해충 오염 여부를 검사)
- ※ 검역 결과 병해충을 발견하며 또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화물, 운송수단과 하역현장에 대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함.
- ※ 현장 검역은 수입 화물의 종류 및 하역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검역 방법을 채택함.

- 실험실 검험

- ※ 식물, 식물제품의 대표적인 샘플가 병, 해충, 잡초 씨 샘플자료에 대해 생물학 특성에 따라 1개 방법 또는 몇 개 방법으로 검사와 감정을 진행함.(선택 검사, 해부 검사, 투시 검사, 염색 검사, 비중 검사, 세척 검사, 깔때기(funnel) 분리 검사, 현미경 검사, 물 흡수종이 양식 검사, 절편 검사, 분리 양식 검사, bourgeon 검사, 분자 생물학 검사 등)

○ 식물 종묘의 격리 검역

- ※ 종묘를 수입할 경우, 입국 항구의 검역을 거쳐 “수입 식물 종묘의 격리 검역 관리방법(시행)”에 의하여 격리 검역을 할 필요가 있는 종묘에 대해 국가급 격리장소, 전문 연구기관 격리장소 또는 검험·검역기관에서 확정된 격리장소에서 격리 검역을 진행

○ 검역 처리와 증서 발급 및 통행 허가

- 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검험·검역기관에서 수입 화물 검험·검역 증명을 발급하거나 선하증권(B/L), 통관 신고서에 검험·검역 통행인장을 날인하여 화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급하여 통관 신고, 화물 접수,

발송수속을 밟게 함.

- 현장 검역 또는 실험실 검역 결과 전염병 발생상황을 발견하였거나 화물이 계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거나 협의서 중의 검역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에서 “검험·검역 처리 통지서”를 발급하며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함.

※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에 속할 경우, 반환 또는 소각 처리를 함.

- ① “중화인민공화국 식물검역 수입금지 품목목록” 중의 식물제품을 수입할 때에 사전에 특별 심사비준을 밟지 않았을 경우
- ② 수입 식물제품의 검역 결과 1류, 1류 병해충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유효 처리방법이 없을 경우
- ③ 수입 식물제품의 검역 결과 병해충을 발견하였으며 그 위해가 엄중하여 사용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

※ 수입 식물제품의 검역 결과 식물 위해성 병해충을 발견하였지만 유효한 위해 제거 처리방법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 위해 제거처리가 합격될 경우, 입국을 허락함.

※ 수입 식물제품이 제한적 조치를 통하여 방역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항구를 지정, 부두로 전이, 용도 변경, 사용범위, 사용시간, 사용장소를 제한, 가공장소, 가공방식, 가공조건을 제한)

○ 원산지 검역

※ 국가출입국검험·검역총국은 수요에 의하여 수출국 관련 부서의 동의를 받거나 수출국 관련 부서의 요청을 받아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 고찰을 진행하여 사전 검사 또는 포장 감독을 할 수 있음.

(2) 수출 식물

○ 대상 범위

- 무역성 수출 식물, 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상품)
- 전시, 원조, 교환, 증정 등 비무역성 수출 식물, 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비상품)
- 수입국(또는 지역)에서 식물 검역을 요구하는 수출 식물제품
- 상기 수출 식물, 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의 적재 용기, 포장물 및 바닥재료

○ 검사 신고

- 수출 식물의 검사 신고는 반드시 식물, 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이 수출되기 전에 그 생산업체, 저장업체 소재지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에 검사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무역 계약서 또는 신용장,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생산기업의 검험 보고서 또는 현지 검역 부서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검역

- 검역 심사기준

- ※ 검역인원은 검사 신고서를 심사하며 무역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사하여 현장 검역시간, 장소, 인원과 방법을 확정함.
- ※ 국외 수하인 신용장에서 검험·검역요구가 쌍변 식물 검역 협정서 또는 수입국(또는 지역)의 검역 규정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에서 접수 여부를 확정하거나 수정 의견을 제출하여 화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림.

- 현장 검역

- ※ 검역인원은 약정한 시간, 장소에 따라 수출 식물에 대해 현장 검역을 진행하여 화물과 증서의 일치성 여부를 검사하며 규정에 따라

대표적인 샘플을 실험실 검역용으로 제공함.

※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개봉과 포장 회복, 샘플링 및 위해 제거처리 등 업무를 협조함. 출입국 검험·검역기관 소재지를 떠나 검역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무료로 교통수단과 숙박을 제공함.

※ 수출 식물(종자, 묘목 및 기타 번식재료)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는 외에 필요 시 식물 재배장소에서 전염병 발생상황을 조사함.

※ 생산·가공 조건의 요구가 엄격하거나 포장이 특수한 수출 식물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저장장소의 감독관리를 하는 외에 필요에 의하여 수출 식물의 생산, 가공현장에 대해 검사 검역을 진행함.

※ 샘플 수량이 비교적 클 경우, 실험실 검역을 마친 후, 화주는 업체 증명과 “샘플 증빙서류”를 소지하여 샘플을 받음. 규정한 시간 내에 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포기로 처리함.

- 실험실 검역

※ 검험·검역에 의하여 식물 유해성 생물 검사와 감정을 해야 하며 위생, 품질 검사를 해야 할 경우, 실험실 검험·검역을 진행해야 함.

○ 검역 처리

- 검역 결과 수출 검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에서 “검역 처리 통지서”를 발급하여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각각 가공 정리, 위해 제거처리를 할 것을 통지하며, 재검사에 합격되어야 수출할 수 있음. 검역에 합되지 않으며 또한 유효한 방법으로 위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수출을 허락하지 않음.

- 검역처리를 요구하는 수출 식물에 대해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은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역 처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 훈증팀의 처리를 감독함.

- 훈증 살충, 살균 등 검역처리를 할 때에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의 감독관리를 받으면서 진행해야 하며 검사 결과 검역 위해 제거표준에

도달할 경우, 수출을 허락함.

○ 증서 발급 및 통행 허가

- 검험·검역에 합격되거나 위해 제거에 합격되는 수출 식물에 대해 수출을 허락함.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은 관련 요구에 의하여 검역증서와 통관서류를 발급함.

□ 수출입 수산물의 검역

○ 법률체제

- 1996년 4월 12일 기존 국가수출입상품검험국에서 “수출 수산물 검험 관리규정”을 발표하였음.
- 2002년 11월 6일, 國家質檢總局는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 관리 방법”을 발표하여 2002년 12월 10일부터 정식 시행하였음.

○ 주관부서

- 國家質檢總局은 중국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과 감독관리를 책임
- 國家質檢總局이 각 지역에 설립한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에서 관할지역의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과 감독관리를 책임

○ 수입 수산물의 검역

- 검사 신고

※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화물이 입국하기 전 또는 입국할 때에 입국 항구 검험·검역기관에 검사 신고를 하여야 함. 만약 무역 계약에 대외 손해배상의 증거 제출에 관한 조항이 있을 경우, 손해 배상기간 전 20일 내에 화물 도착 항구 또는 화물 도착지의 검험·검역기관에 검사 신고를 하여야 함.

※ 검사 신고 시 제출 서류: 입국 동·식물 검역허가증, 수출국 또는

지역 정부에서 발급한 검험·검역증서 원본, 원산지 증서, 무역 계약서, 신용장, 선하증권(B/L), 송장(invoice)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기업 등록을 실시하는 수입 식품목록”에 포함된 수산물은 검사 신고 시 반드시 등록번호도 제출해야 함.

- 서류 심사

※ 검험·검역기관은 화주 또는 그 대리인에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에 대해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 요구에 부합될 경우, 정식으로 검사 신고를 접수처리하며 또한 “수입 협·식물 검역 허가증”에서 심사 비준한 수량에 대해 확인함.

※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일 경우, 반환 또는 소각 처리를 함.

- (1) 법에 의하여 검역 심사비준소속을 통하여 “수입 검험·식물 검역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수입 동·식물 검역 허가증”이 무효일 경우
- (2) 수출국 또는 지역 정부에서 발급한 검험·검역증서가 없거나 검험·검역증서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 (3) “기업 등록을 실시하는 수입 식품목록”에 포함된 수산물에 대하여 그 생산기업이 등록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 현장 검역

※ 검험·검역기관은 아래와 같은 요구에 따라 수입 수산물에 대해 현장 검험·검역을 실행하며 또한 규정에 따라 샘플링 또는 샘플 추출을 하여 실험실 검사에 사용함.

- (1) 단일 허가증을 심사하며 화물을 검사
- (2) 포장에 “수입 수산물 포장의 기본 요구”에 부합 여부를 검사
- (3) 식물 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소금에 절리거나 건조시킨 수입 수산물의 식물 검역을 실시

※ 수입 수산물의 현장 검역결과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일 경우, 반환 또는 소각 처리를 함.

(1) 화물과 증명서류가 부합되지 않거나 화물이 검험·검역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2) 부패 변질 또는 유독·유해물질의 오염을 쉽게 받을 경우

(3) 포장에 “수입 수산물 포장의 기본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 실험실 검사

※ 국가에서 발표한 연도 잔류물 모니터링계획에 포함된 수입 수산물은 검험·검역기관이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실험실 검사를 진행하는 외에 연도 잔류물 모니터링 계획의 요구에 의하여 실험실 검사를 진행함.

※ 검험·검역기관은 반드시 규정에 의하여 샘플에 대해 감각기관, 물리화학, 미생물 실험실 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 증서 발급

※ 실험실 검험·검역 결과 합격될 경우, “수입 화물 검험·검역 증명”을 발급하며,

※ 실험실 검험·검역 결과 합격되지 않을 경우, “수입 화물 검험·검역 처리 통지서”를 발급하며 무공해 처리 또는 반환, 소각을 감독관리함.

※ 화주가 대외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수출입 항구 검험·검역기관에 관련 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수출 수산물의 검역

- 검사 신고

※ 수산물이 수출되기 전에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지의 검험·검역기관에 검사 신청을 함.

- 현장 검역

※ 현장 검험 방식 : 감각기관 검사와 샘플링, 미생물 검사와 샘플링

※ 현장 검험 항목 : 감각기관 검사, 포장 검사, 실험실 검사

- 증서 발급

※ 검험·검역 결과 합격될 경우, 검험·검역기관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하며, 수입국 또는 지역이 검험·검역증서에 명확한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요구에 따라 관련 검험·검역증서를 발급함.

※ 검험·검역 결과 합격되지 않을 경우, 검험·검역기관에서 불합격 통지서를 발급.

※ 화주가 대외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수출입 항구 검험·검역기관에 관련 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수출 수산물 검험·검역의 유효기간

※ 냉동(신선한 것) 수산물 : 2일

※ 말려 냉동(단순 냉동) 수산물 : 4개월

※ 기타 수산물 : 6개월

□ 進出境動植物檢疫法實施條例 위반 시 제재조치

(1)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일 경우

- 검사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법에 의하여 검역 심사비준 수속을 밟지 않았거나 검역 심사비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 검사 신고를 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실제와 다를 경우

※ 제재조치 : 상기 상황 중의 하나일 경우, 5,000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두 번째 위법행위가 이미 검역증서를 취득하였을 경우 취소 처리함.

(2)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일 경우

- 항구 동·식물 검역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함부로 수입, 국경 경과의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운송수단에서 하역하거나 운반할 경우

- 함부로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지정한 격리장소에서 격리 검험을 하는 동·식물을 이동하거나 처리할 경우
- 함부로 국경 경과의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포장을 뜯거나 동·식물 검역의 밀봉 표시를 뜯거나, 훼손할 경우
- 함부로 국경 경과의 동물 시체, 배설물, 바닥재료 또는 기타 폐기물을 버리거나, 규정에 따라 운반수단에서의 하수, 동·식물성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 제재조치 : 상기 상황 중의 하나일 경우, 3,000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

- (3)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기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생산, 가공, 보관하는 업체의 출입국 물품이 검역에 합격되지 않을 경우

※ 제재조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반송, 소각 또는 위해 제거처리를 하는 외에 엄중할 경우,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등록등기를 취소함.

- (4) 아래 행위 중의 하나일 경우

-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을 발생시킨 경우
- 동·식물 검역증서, 인장, 표시, 밀봉 표식을 위조, 변조한 경우

※ 제재조치: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 범죄를 형성하지 않았거나 범죄성격이 현저히 미약하여 법에 의하여 형벌처벌이 불필요할 경우,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서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 (5) 수출입 동·식물 검역의 훈증, 소독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나 인원이 규정에 의하여 훈증이나 소독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제재조치: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서 그 위법상황에 따라 업무자격을 취소.

3) 국경 위생감독

☐ 주관부서

※ 중국 국제 항로 개통한 항구, 공항 및 육지 변경과 국경 하천의 항구에 국경 위생 검역기관을 설립하여 전염병의 검역, 모니터링과 위생 감독을 진행. 국무원 위생 행정부관부서(위생부)에서 국경 위생 검역을 주관함.

☐ 법률체제

○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위생부)

○ 1989년 3월 6일부터 시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실시세칙”(위생부)

☐ 위생검역 대상

※ 입국, 출국 인원, 교통수단, 운송설비 및 검역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수화물, 화물, 우편소포 등 물품은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며, 국경 위생검역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입국 또는 출국할 수 있음.

☐ 검역

○ 검역장소

- 입국 교통수단과 인원은 반드시 가장 먼저 도달하는 국경 항구의 지정장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함.

- 출국 교통수단과 인원은 반드시 가장 마지막으로 출국하는 국경 항구에서 검역을 받아야 함.

○ 검역증서 발급

- ※ 국경 위생검역기관은 검역의사가 제공하는 검역결과에 의하여 검역 전염병을 감염하지 않았거나 위생처리를 실시한 교통수단에 대해 입국 검역증서 또는 출국 검역증서를 발급함.

□ 衛生檢疫法 위반 시 제재조치

(1) 아래 행위 중의 하나일 경우

- 검역을 도피하여 국경 위생검역기관에 진실한 상황을 속일 경우
- 입국 인원이 국경 위생검역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함부로 교통수단에서 오르내리거나 수화물, 화물, 우편소포 등 물품을 하역하며 충고를 듣지 않을 경우
- ※ 제재조치 : 상기 상황 중의 하나일 경우,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은 국고에 상납함.

(2)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 전염병을 전파하거나 검역 전염병 전파가 위험할 경우

- ※ 제재조치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함.

4. 식품 위생제도

가.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제도

1) 수출입 식품 검험·검역 관리(생략, 제3장을 참조)

2) 수출입 식품 라벨(label) 관리

☐ 법률체제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위생법” 제21조의 규정 : “정형 포장 식품과 식품 첨가제는 반드시 포장 표시 또는 제품 설명에 제품에 따라 규정에 따라 제품명칭, 원산지, 공장명칭, 생산날짜, 비준번호 또는 코드, 규격, 배합원료 또는 주요 성분, 품질 보증기한, 식용 또는 사용방법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 수출입 식품 라벨의 관리는 주로 “3개 표준과 1개 방법”을 참조함. 3개 표준은 “사전 포장 식품 라벨 통칙”, “사전 포장 특수 식용 식품 라벨 통칙” 및 “음료와 술 라벨 표준”이며 1개 방법은 “수출입 식품 라벨 관리방법”임.

○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출입 식품 라벨 관리방법”은 국가출입국검험·검역국(※ 2001년 4월 16일, 국가품질기술감독국과 합병하며 國家質檢總局을 설립)이 “商檢法” 및 그 실시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위생법(食品衛生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 식품의 라벨 관리를 강화하여 수출입 식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조치임.

※ 수출입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에 대한 심사비준, 검험관리에 적용됨.

※ 사전 포장 식품은 사전 정량 포장 또는 용기에 넣거나 주입하여 소비자에 직접 제공하는 식품을 가리킴.

☐ 관리체제

○ 2001년 4월 이후, 중국 수출입 식품의 라벨 관리는 國家質檢總局에서 식품 라벨의 심사, 비준, 증서 발급을 주관 및 책임짐. 國家質檢總局이 지정한 검험·검역기관은 식품 라벨의 초심 및 검험을 책임짐.

○ 國家質檢總局은 國家質檢總局 수출입 식품 라벨 등록 사무실에 지정하여 구체적인 식품 라벨의 최종 심사, 증서 제작, 번호 관리, 발표 등 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북경(北京), 상해(上海), 광둥(廣東) 출입국 검험·검역국, 중국검험유한공사(홍콩)에 지정하여 식품 라벨 심사비준의 초심업무를 처리하며 또한 초심 결과 및 관련 서류를 수출입 식품 라벨 등록 사무실에 제공함. 각 지역 검험·검역기관은 모두 식품 라벨 심사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 國家質檢總局은 북경(北京), 상해(上海), 광둥(廣東), 호북(湖北) 출입국 검험·검역국의 관련된 실험실을 수출입 식품 라벨 심사비준의 특수 항목 검험실험실로 지정함.

☐ 라벨 관리

○ 라벨 내용

- 강제성 국가표준인 “사전 포장 식품 라벨 통칙”(※ “식품 라벨 통용 표준”을 수정한 새로운 표준으로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 및 “제

품 표시 표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소비자에 공급하는 모든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식품 명칭, 배합원료 리스트, 순 함량과 말린 물질(澁幹物), 고형물(固形物), 함량,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 생산날짜 또는 포장날짜와 품질보증기간, 제품표준번호를 표기하여야 함.

- 특수 영양식품(유아 식품, 영양 식품 등)은 상기 내용을 표기하는 외에 반드시 “사전 포장 특수 식용 식품 라벨 통칙”(“특수 영양 식품 라벨”의 규정에 의하여 열량과 영양소의 함량, 저장조건, 식용방법을 표기하여야 함. 주류는 반드시 “음료와 술 라벨 표준”의 규정에 의하여 알코올 농도, 제품 유형(또는 당분 농도), 원액 농도(맥주와 과일주에 한함)를 표기하여야 함.

○ 식품 라벨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

- 라벨은 반드시 진실하여야 함. 생산기업은 반드시 식품의 기본 속성에 따라 식품 명칭을 표기하여야 함.
- 라벨은 반드시 과학성이 있어야 함. 식품 라벨에서의 언어, 문자, 도형, 부호는 반드시 정확하고 과학적이어야 함.
- 라벨은 반드시 규범화되어야 함. 식품 라벨의 한자는 반드시 합격되고 규범화된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범화하지 않은 약자체와 도태된 이체자(異體字)를 사용하지 못함.

※ 사전 포장 식품 라벨은 반드시 사전에 심사를 거쳐 “수출입 식품 라벨 심사비준증서”를 받아야 함.

□ 수출입 식품 라벨의 심사비준

○ 라벨 심사비준의 신청

- 수출입 식품의 경영업체 또는 그 대리인은 수출입 전에 반드시 지정한 검험·검역기관에 식품 라벨의 심사비준을 신청하여야 함.

- 신청업체 또는 개인은 “수입 식품 라벨 심사비준 신청표”를 각 지역 출입국 검험·검역국에서 수령받거나 國家質檢總局의 웹사이트 (www.aqsiq.gov.cn)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 수출입 식품 라벨 심사비준 신청의 접수기관은 반드시 10개 근무일 내에 일반 항목의 검험을 마쳐야 하며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식품 라벨 심사비준 신청서류 및 식품 샘플을 초심 자격이 있는 검험·검역기관에 송부함.
-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
 - (1) 수출입 식품 라벨 심사비준 신청서 1식 3부
 - (2) 식품 라벨의 설계 설명 침 사용 적합한 증명서류
 - (3) 식품 라벨에 표기한 내용의 설명서류
 - (4) 수입국(지역)이 식품 라벨에 대한 관련 규정
 - (5) 식품 라벨의 샘플 6세트(샘플 제공이 어려울 경우, 유효 사진을 제공)
 - (6) 수출 기업의 위생허가증(수출 제품에 사용)
 - (7) 기타 필요한 서류
- ※ 품종 및 공예(工藝)가 같고, 규격이 다른 수출입 식품은 합병하여 라벨 심사비준 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 라벨 심사비준의 초심

- 라벨 심사비준의 초심기관: 북경(北京), 상해(上海), 광둥(廣東) 출입국 검험·검역국, 중국검험유한공사(홍콩)
- 초심기관은 심사비준 신청의 접수기관에서 전달한 서면서류를 심사하며 특수 검험항목과 보충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 일반 검험항목을 확정하며 또한 테스트용 샘플을 國家質檢總局에서 지정한 관련 실험실에 보내어 검험을 진행함.
- 모든 검험을 마친 후, 전자 버전을 제작하여 초심 의견을 제출하며, 30개 근무일 내에 전자 버전, 심사비준 신청서와 심사비준 기록 및

검험 보고서 원본 등 서류를 國家質檢總局 수출입 식품 라벨 등록 사무실에 보냄.

○ 라벨 심사비준의 중심

- 國家質檢總局 수출입 식품 라벨 등록 사무실은 반드시 5개 근무일 내에 중심을 마치며 중심 결과 요구에 부합되는 식품 라벨은 國家質檢總局에서 “수출입 식품 라벨 심사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또한 통일적으로 대외에 공고함.

○ 라벨 검험

- 수출입 식품의 검사 신고인원이 검사 신고수속을 밟을 때에 반드시 “수출입 식품 라벨 심사비준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검험·검역기관에서 검사 신고를 접수처리하지 않음.
- 검험·검역기관은 수입 식품에 대해 검험을 할 때에 반드시 식품 라벨에 대해 검험을 진행하며 또한 식품 라벨의 검험결과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식품의 합격 여부를 평가함.
- 수출입 식품 라벨에 대한 검험내용
 - (1) 검사 신고를 한 식품 라벨이 심사비준을 받은 식품 라벨과의 일치성 여부
 - (2) 식품 라벨에 표기한 내용이 식품과의 일치성 여부
 - (3) 수출입 식품 라벨이 판매국에서 사용 가능성 여부

※ 수출입 식품 라벨이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거나 검험에 합격되지 않을 경우, 수입 식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수출 식품을 수출하지 못함.

3) 수출입 식품 리스크 사전경보 및 급속 대응관리

□ 출입국 검험·검역 리스크 사전경보 및 급속 대응 메커니즘

○ 관련 법규

- 2001년 9월 25일, 國家質檢總局은 국경 경과의 화물, 물품을 포함한 각종 형식의 출입국에 대한 검험·검역 리스크 사전경보 및 급속 대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출입국 검험·검역 리스크 사전경보 및 급속 반응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2001년 11월 15일부터 정식 시행.
- 2002년 3월 20일, 國家質檢總局은 “출입국 검험·검역 리스크 사전 경보 및 급속 반응 관리규정 실시세칙”을 제정 및 발표하였음.

○ 리스크 사전경보 및 급속 반응의 대상: 출입국 동·식물, 동·식물제품 과 기타 검역물이 휴대하는 인체 건강, 농업·임업·목축업·어업 생산과 생태환경에 해로운 병충해, 유해성 생물 및 유독·유해 물질

○ 응급조치

- 국외에 발생한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 또는 유독·유해 물질의 오염 사건이 중국에 전입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긴급 통제조치를 채택하며 동·식물, 동·식물제품 또는 기타 검역물의 입국 금지공고를 발표하며, 필요 시 국무원에 관련 항구의 봉쇄를 요구할 수 있음.
- 이미 입국한 상기 동·식물 및 그 제품에 대하여 즉시 추적 조사를 하여 모니터링과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상황에 따라 밀봉, 반환, 소각 또는 무해화 처리 등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 관련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미 파악한 정보에 대한 분석 기초에서 임시 긴급 통제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 수출입 식품 안전 리스크 경보의 통보

○ 수출입 식품 안전 리스크 경보의 통보는 국가식품안전국이 “출입국 검험·검역 리스크 사전경보 및 급속 반응 관리규정” 및 그 실시세칙에 의하여 수립한 수출입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유효한 방역조치임.

○ 주요 내용

- 국외 식품의 오염 또는 수출입 식품에서 검사한 유독·유해 물질 등 돌발적인 사건에 대하여 국외 유해 오염 식물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몇 개 수출입 식품 리스크 경보 통보를 발표하며 문제가 있는 식품을 항구에서 유효하게 차단시킴.
- 외국이 중국의 수출 식품에서 발견한 문제 및 수입 식품에 제출한 새로운 요구에 대하여 제때에 경보 통보를 발표하여 불합격 식품을 항구에서 차단시킴.

4) 수출입 식품 및 동·식물제품의 위생 등록

□ 수입 식품 및 동·식물제품의 위생 등록

○ 관련 법규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법 실시조례” 제17조: “국가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동·식물제품의 국외 생산, 가공, 저장기업에 대해 등록제도를 실시.”
- 병충해의 진입을 방지하며 수입 식품과 동·식물제품의 안전, 위생,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중국 검험·검역부서는 “수입 식품의 국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을 제정
-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식용성 동·식물제품을 포함)의 국외 생산, 가공, 저장기업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등록등기를 하여야 함.

○ 주관부서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은 수입 식품의 국외 생산기업 등록과 감독관리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기업 등록을 실시하는 수입 식품 목록”을 제정 및 발표함.

※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 등록을 실시하는 수입 식품 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의 국외 생산기업은 반드시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못한 국외 생산기업의 식품은 수입할 수 없음.

○ 등록 신청조건

- 등록을 신청한 국외 생산기업의 소재 국가(지역)의 수의(獸醫) 서비스체계, 식물 보호체계, 공공 위생 관리체계는 반드시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의 평가에 합격되어야 함.
- 등록을 신청한 국외 생산기업의 소재 국가(지역)는 전염병 발생지역이 아니어야 함.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이 사용한 동·식물 원료는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공급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함.
- 등록을 신청한 국외 생산기업은 반드시 소재 국가(지역)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또한 유효한 감독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 그 위생조건은 반드시 중국 법률·법규와 표준·규범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소재 국가(지역)의 동·식물 전염병 발생상황, 수의(獸醫) 위생, 공공 위생, 식물 보호와 농약, 짐승 약 잔류물 통제 등 방면의 법률, 법규, 소재 국가(지역) 주관부서의 설치와 인원상황 및 법률·법규 실행 등 방면의 서면 서류
- 등록을 신청한 국외 생산기업 명단

- 소재 국가(지역) 주관부서가 추천을 받은 기업의 검역, 공공 위생의 실제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
- 소재 국가(지역) 주관부서가 기업이 중국 법률, 법규의 요구에 부합된다는 약속
- 기업의 관련 서류(공장구역, 작업실, 냉장고의 평면도, 공예 흐름도 등)

○ 등록 절차

- 등록을 신청한 기업 소재 국가의 주관부서는 반드시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에 정식으로 서면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수출국(지역)이 제공한 상기 서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 요구에 부합될 경우, 평가심사팀을 추천을 받은 국외 생산기업에 파견하여 현장 평가심사를 진행함. 평가심사팀의 평가심사 내용은 수출국 방역체계, 약물 잔류물 통제체계, 공공 위생체계와 기업의 위생 감독관리체계임.
- 평가심사팀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에 평가심사 보고서를 제출하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의 비준을 받은 후에 조건에 부합되는 국외 생산기업을 대중국 수출의 국가와 기업 등록 명단에 포함시키며 동시에 기업 등록번호를 확정함.

□ 수출 식품 생산기업의 위생 등록제도

○ 관련 법규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법 실시조례” 제39조 : “국가는 수출입 식품 및 그 생산기업(가공공장, 도살장, 냉장창고, 창고를 포함)에 대해 위생 등록제도를 실시.”
- 2002년 4월 28일, 國家質檢總局은 새로운 “수출 식품 생산기업의 위

생 등록 관리규정'을 발표.

○ 주관부서

- 신청 접수 기관 : 각 직속 검험·검역국
- 심사비준 기관 : 각 직속 검험·검역국

○ 등록 신청조건

- 독립적인 법인 자격이 있어야 함.
- “수출 식품 생산기업의 위생 등록 관리규정” 및 관련 위생 규범이 규정하는 위생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

- 수출 식품 생산기업의 위생 등록 신청서 1식 3부
- 기업 법인 영업허가증 복사본
- 위생 품질체계 서류
- 공장구역 평면도, 작업실 평면도, 공예 흐름도 및 생산 공예 핵심 부위의 그림서류

○ 등록 절차

- 신청
 - ※ 수출 식품 생산기업이 대외 등록을 신청 시, 먼저 소재지 검험·검역기관에 신청을 제출하며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함.
- 평가심사
 - ※ 현지 검험·검역기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위생 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평가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국외 위생 등록조건에 대해 사전 심사를 하여 “사전 심사 결과표”를 작성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 대해 “추천 수출 식품 가공기업의 국외 위생 등록 신청표”를 작성하여 國家質檢總局에 제출함.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은 지방 검험·검역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 평가심사팀을 파견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수입국 주관부서에 추천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평가심사를 중지하며 수정을 건의하며 요구에 도달한 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음.

- 증서 발급

※ 평가심사 결과 합격되는 기업에 대해 위생 등록증서와 등록번호를 발급하며 증서 유효기한은 3년임.

※ 평가심사에 합격되지 않거나 재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기업은 검험·검역기관이 기업에 통지서를 발급한 후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음.

※ 기업이 만기 전 3개월에 반드시 재심사 및 증서 교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재심사에 합격되지 않을 경우, 검험·검역기관에서 등록증서를 회수하며 등록번호를 취소함.

□ 수출 식품 가공기업의 대외 등록 관리

○ 관련 법규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식품 위생 관리방법”, “수출 식품 생산기업의 위생 등록 관리규정”

○ 주관부서

- 國家質檢總局는 중국 수출 식품 생산기업의 국외 위생 등록을 통일적으로 관리

- 각 지역의 검험·검역기관은 관할구역 수출 식품 생산기업의 국외 위생 등록의 사전 심사, 보고와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책임짐.

○ 등록 신청조건

- 생산에 필요한 관련 제품 생산시설이 있어야 하며, 안정적인 원료 내원이 있어야 하며 또한 등록 신청 국가의 제품에 관한 수출 계약서 또는 협의서가 있어야 함.
- 수출 식품 생산, 위생 품질관리는“수출 식품 생산기업의 위생 관리요구”및 수입국의 위생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여 유효하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함.
- 생산기업이 1년 내 품질 사고가 없거나 그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또는 고객의クレ임이 없어야 함.
- 생산기업은 검험·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수출 식품 생산기업의 위생 등록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국외 위생 등록 신청서”(1식 2부)
- 그 외, 공장 평면도, 공예 흐름도, 품질 매뉴얼, 위생 등록번호 및 주요 생산 프로세스의 칼러 사진

○ 등록 절차

- 등록 신청조건을 갖춘 수출 식품 생산기업은 현지 검험·검역기관에 국외 위생 등록 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 검험·검역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초심을 진행하며 조건에 부합될 경우, 國家質檢總局에 제출함.
- 國家質檢總局은 검험·검역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 평가심사인원을 파견하여 공장 심사를 진행함.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수입국 주관 부서에 추천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평가심사를 중지하며 수정을 건의하며 요구에 도달한 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음.

5) 수출 식품 품질안전체계 관리

□ HACCP품질관리체계인증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체계는 위험을 통제하는 예방적인 체계로 식품을 보호하며 생물, 화학, 물리적 위험을 방지하는 관리방법임.

※ HACCP체계는 기업이 양호한 작업규범(GMP), 표준 작업규범(SOP), 위생표준 작업규범(SSOP) 등 식품 안전항목의 기초에서 자체 통제를 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임.

○ 관련 법규

- 식품 생산기업의 HACCP관리체계의 수립, 실시, 검증 및 HACCP 인증을 규범화하며 식품의 안전위생 품질을 높이며 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위생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법 실시조례”와 국무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식품 생산기업 HACCP관리체계인증 관리 규정”을 제정
- “수출 식품 위생 등록이 HACCP관리체계를 평가심사할 필요가 있는 제품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반드시 HACCP관리체계를 구축 및 실시하여야 함.

○ 주관부서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 HACCP관리체계 인증인가의 통일적인 관리, 감독과 종합적인 협조를 책임지며, HACCP관리체계의 실행과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의 검증을 감독관리하며 “수출 식품 위생 등록이 HACCP관리체계를 평가심사할 필요가 있는 제품목록”의 조절과 발표를 책임짐.

- 각 지역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기업 HACCP관리체계의 검증업무를 책임지며 국외 식품 위생관리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HACCP검증증서를 발급함.

○ 위행등록 시 HACCP체계의 평가심사가 필요한 제품

- ※ 통조림, 수산물류(산 것, 신선한 것, 말린 것, 소금에 절인 것을 제외), 육류 및 육류제품, 급속 냉동 채소, 과일채소즙, 육류 또는 수산물을 포함한 냉동 라면

○ 신청 및 검증

- ※ 신청기업은 반드시 국가 관련 식품 안전위생 요구의 기초에서 HACCP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신청기업은 반드시 위생표준 절차를 구축 및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위생요구에 도달하여야 함.
- ※ 식품(원료, 반제품, 완제품을 포함)과 접촉하거나 식품과 접촉하는 물품과 접촉하는 물과 얼음은 반드시 안전, 위생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 식품과 접촉하는 용기, 장갑과 내외부 포장재료 등은 반드시 청결, 위생, 안전하여야 함.
- ※ 식품은 교차 오염을 피면하여야 함.
- ※ 작업인원의 손은 청결, 소독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 ※ 윤활제, 연료, 청결소독용품, 냉각수 및 기타 화학, 물리, 생물 등 오염물이 식품에 대한 안전위험을 방지하여야 함.
- ※ 각종 유독 화학물질을 정확하게 표기, 저장, 사용하여야 함.
- ※ 식품과 접촉하는 직원의 건강과 위생을 보증하여야 함.
- ※ 쥐 피해, 해충 피해를 제거 및 예방하여야 함.
- 신청기업이 구축 및 실시한 HACCP체계는 HACCP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규정에 의하여 요구에 부합 여부를 평가심사

하며 합격될 경우 인증기관에서 HACCP인증증서를 발급함.

- 검증

※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구축 및 실시하는 HACCP관리체계에 대해 검증을 진행함.

※ 중국정부 주관부서와 외국(지역) 관련 기관과체결한 쌍변 협의서 또는 계약의약정 및 국외 관련 요구에 의하여 기업은 반드시 국외 식품위생 관리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함.

※ 검증 대상

(1) 제품이 “수출 식품 위생 등록이 HACCP관리체계를 평가심사할 필요가 있는 제품목록”에 포함된 기업

(2) 국외 관련 기관이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에서 HACCP검증증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는 기업

※ 검증 중점

(1) 기업이 HACCP관리체계를 구축 및 실시한 증명서류 또는 인증기관의 HACCP인증서류

(2) 기업 HACCP계획의 합리성, 즉, 모든 잠재적인 뚜렷한 위해에 대해 전반적이고 합리한 분석을 하여 적당한 통제조치를 제출하여야 함.

(3) 기업 HACCP계획 실시의 유효성, 즉, HACCP계획의 실시상황 및 실시 후 기업 및 제품 위생품질이 유효하게 보증을 받아야 함.

□ ISO9000품질체계인증

○ 관련 법규

※ 중국은 1991년부터 정식으로 ISO9000품질체계인증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음. 1991년 5월 7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인증 관리조례”를 발표하여 시행하였음.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ISO9000품질체계인증은 국제시장으로 나가는 통행증으로 되었음.

○ 주관부서

-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 인증인가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 및 종합적으로 협조하는 주관부서임.
- 기업이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이 있는 제품에 대해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설립하거나 권한을 부여하여 설립한 업종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인증 신청조건

- 제품품질 인증
 - ※ 중국기업은 공상행정부관부서에서 발급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외국기업은 관련 부서기관의 등록증명을 소지하여야 함.
 - ※ 제품은 중국 국가표준, 업종표준 및 그 보충 기술요구 또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한 표준에 부합되어야 함.
 - ※ 제품 품질이 안정적이며 정상적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생산기업의 품질체계는 GB/T19000-ISO9000시리즈 표준 또는 외국 신청인 소재지 동등하게 채택한 ISO9000시리즈 표준 및 그 보충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품질체계 인증
 - ※ 관련 등록증명이 있어야 함.
 - ※ GB/T19000-ISO9000시리즈 표준 또는 기타 국제 공인하는 품질체계규범에 따라 문서화한 품질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인증 신청서류

- 기업 소개자료
- 품질 매뉴얼(프로세스화 문서목록을 포함)
- 품질보증체계가 포함하는 제품 범위
- 제품 합격 인증의 제품 모델, 규격 및 그 표준
- 제품 안전 인증의 제품 모델, 규격 및 그 표준

○ 인증 취득절차

- 중국기업은 인증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며, 국외 기업 또는 그 대리인은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 또는 그 지정한 인증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제출함.
- 인증위원회는 인증 검험을 담당하는 검험기관에 제품에 대한 검험을 진행하도록 알림.
- 인증위원회는 인증을 신청한 생산기업의 품질체계에 대해 심사를 진행
- 인증위원회는 인증 합격한 제품에 대해 인증증서를 발급하며 인증마크의 사용을 허락함.
- 품질인증을 취득할 경우, 인증위원회와 제품인증의 “품질인증 협의서”와 체계인증의 “품질체계인증 협의서”를 체결함.

○ 인증증서 유효기한

- 제품인증증서 : 3년, 4년, 5년
- 체계 인증증서 : 3년

○ 관련 법규 위반 시 제재조치

- 인증증서를 받은 제품이 인증 취득 시 채택한 표준에 부합되지 않으면서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판매할 경우
※ 제재조치 : 표준화 행정주관부서는 판매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며 불법소득의 2배 이하 벌금을 부과

- 제품이 인증을 거치지 않았거나 인증에 불합격되었지만 인증파크를 사용하여 판매할 경우
 - ※ 제재조치 : 표준화 행정주관부서는 판매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며 불법소득의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업체의 책임자에 5,000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함.
- 인증마크를 양도할 경우
 - ※ 표준화 행정주관부서는 불법소득의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그 법률 위반기업 책임자에게 5,000천 위안 벌금을 부과함
-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일 경우
 - (1) 인증제품의 품질이 엄중하게 하락하였거나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품질체계가 인정 취득 시의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여 고객 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줄 경우
 - (2) 감독검사 결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 불합격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 책임이 생산기업에게 있을 경우
 - ※ 제재조치 : 상기 상황 중의 하나일 경우, 인증증서를 발급한 인증위원회는 인증증서를 취소함
- 인증을 받은 제품이 출하하여 판매할 때에 인증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 ※ 제재조치: 생산기업은 반드시 수리, 교환, 반환을 책임져야 하며, 고객 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생산기업은 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수출 식품 생산기업이 ISO9000품질체계를 구축 시 주의사항

- 적합한 품질보증모델을 선택
- “위생등록요구”와의 연관성을 주의
- HACCP체계와의 관계를 주의
- 좋은 심사평가기관을 선택

□ HACCP인증과 ISO9000 품질체계인증 관계

※ ISO9000과 HACCP는 예방적인 품질보증체계이지만 ISO9001 : 2000는 각종 산업에 적용되며 HACCP는 식품업종에만 적용하여 식품의 안전, 위생을 보증함.

ISO9001과 HACCP의 차별점

적용범위	ISO9001인증	HACCP인증
	각종 업종	식품업종
목표	품질이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강조	식품 위생을 강조하여 소비자에 대한 손해를 피면함
표준	기업은 ISO9001:2000표준에 따라 작업표준을 더 높일 수 있음	기업은 시장 소재 국가정부의 법규 또는 규범(예를 들면 내수 판매제품은 중국 농업부에서 발표한 “수산물 가공품질 관리규정”에 의하여 생산,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미국 “수산물 생산 및 수입의 안전위생절차”에 따라야함)의 요구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
표준내용	표준 내용이 포함하는 범위가 넓으며 설계, 개발, 생산, 설치와 서비스를 포함	표준 내용범위가 비교적 작으며 생산과정에서의 통제를 위주로 함.
감시대상	특별 감시대상이 없음	특별감시대상이있음. 예를들면병원체병원균
실시	자원	자원에서 강제로 과도

6) 식품 품질안전 시장 진출제도

□ 관련 법규

※ 식품 품질안전 시장진출제도는 國家質檢總局이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시행조례” 등 법률, 법규 및 “국무원 제품품질 강화 문제에 관한 결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 품질안전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정한 식품 및 그 생

산가공기업에 대한 감독제도임.

☐ 주관부서

※ 國家質檢總局은 중국 식품 품질 감독관리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식품 품질안전 감독관리에서의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음.

- (1) 식품 품질안전 감독관리의 관련 규정과 규범적 문건 및 “식품 품질안전 감독관리 중점 제품목록”, 각종 생산 허가증 실시세칙을 제정 및 발표
- (2) “식품생산 허가증” 증서, 식품 시장진출 표시의 양식 및 사용방법을 제정하며 통일적으로 “식품생산 허가증”을 인쇄 제작.
- (3) 특별 규정이 있는 식품 생산가공기업이 제출한 “식품생산 허가증”의 신청을 접수 및 심사
- (4)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 대해 심사비준을 하며 “식품생산 허가증”을 발급.
- (5) 검험임무를 담당하는 기관 명단, “식품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 명단과 “식품생산 허가증”을 취소한 기업 명단 등 관련 정보를 통일적으로 공고
- (6) “식품생산 허가증”의 심사, 허가증 발급업무의 감독검사를 책임지며, 허가증이 없는 생산판매 등 위법행위를 조사, “식품생산 허가증”업무에서의 크레임을 접수처리, “식품생산 허가증” 쟁의사항을 처리

☐ 식품 품질안전 시장진출제도

○ 식품 생산기업에 생산 허가증제도를 실시

- 기본적 생산조건을 갖추고, 식품 품질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식품생산 허가증”을 발급하여 허가증 범위 내의 제품을 생산하

게 함.

- “식품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은 식품을 생산하지 못하며 어떠한 기업과 개인도 허가증이 없는 식품을 판매하지 못함.

○ 기업이 생산한 식품에 대해 강제성 검토회도를 실시

- 식품 강제성 검토회는 식품 허가증 발급 검토회, 공장 검토회, 감독 검토회 등 방식이 있으며 검토회 항목의 강제성 관리를 실시함.
- 즉, 검토회를 거치지 않거나 검토회에 합격되지 않은 식품은 출하하여 판매하지 못하며 자체 검토회조건이 없는 생산기업에 대해 위탁 검토회를 실행함.

○ 식품생산 허가증을 실시하는 제품에 대해 시장진출 표시제도를 실시

- 시장진출 표시제도는 검토회·검역부서에서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식품 생산기업이 제품 출하 검사합격의 기초에서 검토회에 합격된 식품에 대해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시장진출 표시(QS마크)를 인쇄(붙임)하여 품질안전의 기본적 요구에 부합된다는 것을 나타냄. QS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식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음.

□ 식품 품질안전 시장진출제도의 적용범위

○ 적용지역 : 중국 국내

○ 적용대상: 식품 생산가공을 하며 또한 그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 적용제품: 國家質檢總局에서 발표한 “식품 품질안전 감독관리 중점 제품목록”에 포함되며 또한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식품

※ 수출입 식품은 국가 관련 수출입 상품 감독관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 식품생산 허가증

○ 식품 생산기업의 신청

- 생산기업은 시(지)급 또는 성급 검험·검역부서에 “식품생산 허가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신청서류의 합격 여부를 검사함.

※ 생산기업의 신청서류

- (1) “식품생산 허가증 신청서”(표지에 반드시 기업 공인을 날인하여야 함. 복사한 인장은 무효임)
- (2) 기업 영업허가증, 식품 위생 허가증, 기업 코드증서(복사본) 1부(코드증서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기업 책임자 신분증 복사본 1부를 제공)
- (3) 기업 생산 장소 배치도 1부
- (4) 기업 생산 공예 흐름도(핵심 설비와 파라미터를 표기) 1부
- (5) 기업 품질관리 서류 1부
- (6) 만약 제품이 기업표준을 적용하며, 검험·검역부서에 등록된 기업 제품표준 1부를 제출
- (7) 신청서에 규정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기타 서류

○ 서류 심사와 접수

- 시(지)급 또는 성급 검험·검역부서에서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서류에 대한 서면서류 심사를 진행해야 함.
- 서면서류 심사 결과 요구에 부합될 경우, 생산기업에 “식품생산 허가증 접수 통지서”를 발급하며,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20개 근무일(1개월) 내에 기업이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가한을 넘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 철회로 간주함.

○ 현장 심사, 샘플링과 검험

- 서면서류의 심사 결과 요구에 부합되는 기업에 대해 검험·검역부서

는 심사팀을 구성하여 기업의 생산조건과 검험능력에 대한 현장 심사를 진행

- 현장 심사에 합격될 경우, 심사팀은 그 기업이 생산하는 식품에 대해 규정에 따라 샘플링을 진행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검험기관에 보내어 검험을 진행함.
- 현장 심사에 합격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반드시 수정조치 또는 시정을 하여야 하며 확인 또는 재심사 결과 요구에 부합될 경우, 기업이 생산하는 식품에 대해 규정에 따라 샘플링을 진행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검험기관에 보내어 검험을 진행함.

○ 심사비준

- 성급 검험·검역부서는 제품 품질을 보증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으며 제품 검험에 합격된 기업 명단을 國家質檢總局에 보내어 심사비준을 받음.

○ 허가증 발급

- 성급 검험·검역부서는 國家質檢總局의 심사비준에 의하여 허가증 발급조건에 부합되는 생산기업에 제때에“ 식품생산 허가증 ”을 발급함.
- 허가증 발급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 “ 생산 허가증 심사 불합격 통지서 ’를 발급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며 동시에 “ 생산 허가증 접수 통지서 ’를 회수함.

○ 대외 공고

- 國家質檢總局는 “ 식품생산 허가증 ”을 취득한 기업 명단을 國家質檢總局 성명, 관련 신문간행물(중국품질보 등), 國家質檢總局 웹사이트 (www.aqsiq.gov.cn)를 통하여 대외로 공고함.

○ “ 수출 식품공장 위생 등록증서 ”를 취득한 기업의“ 식품생산 허가증 ”신청

-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수출 식품공장 위생 등록증서”를 취득한 기업이 자체 생산한 제품을 중국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반드시 “식품생산 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지만 심사항목은 될수록 간소화함.
- “수출 식품공장 위생 등록증서”를 취득한 기업이 “식품생산 허가증”을 신청할 때에 기타 기업과 아래와 같은 방면에서 다름.
 - ※ 기업이 서류를 제출할 때에 반드시 증가하는 증서와 증명(“수출 식품공장 위생 등록증서”, HACCP 인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또한 인증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 “수출 식품공장 위생 등록증서”를 신청할 때에 이미 심사에 통과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하지 않음. 만약 “식품생산 허가증”의 심사내용을 포함하면 현장 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

○ “식품생산 허가증”번호의 주요 내용

- “식품생산 허가증”번호는 영문 자모 QS에 12자리 아라비아 수자로 구성. QS는 Quality safety(품질안전)의 약자이며 번호 앞 4자리는 접수기관 번호, 중간 4자리는 제품 유형 번호, 마지막 4자리는 허가증 취득 기업 번호임.
- 접수기관 번호: 앞 2자리는 성, 자치구, 직할시를 대표하며 마지막 2자리는 시(지)를 대표함.
- 제품 유형 번호: 앞 2자리는 제품 종류를 대표하며, 마지막 2자리는 제품 품종을 대표함.

밀가루	0101(01는 식량 가공품, 01는 밀가루)
쌀	0102(01는 식량 가공품, 02는 쌀)
식용 식물유	0201(02는 식용 식물유 및 그 제품, 01는 식용 식물유)
간장	0301(03는 조미료, 01는 간장)
식초	0302(03는 조미료, 02는 식초)

- 허가증 취득 제품번호: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은 각각 기업 번호를 편 제함.

○“식품생산 허가증”유효기한

- ※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임. 구체적인 유효기한은 “식품생산 허가증 실시세칙”에서 규정함.

□ 식품 품질안전 시장진출제도를 위반 시 제재조치

○ 기업이 함부로 허가 범위를 확대하여 식품을 생산 가공하였을 경우

- ※ 제재조치 : 검험·검역기관은 법에 의하여 대응되는 처벌을 함.

○ 기업이 식품생산 허가증을 양도하였을 경우

- ※ 제재조치 : 검험·검역기관에서 식품생산 허가증을 취소시킴.

○ 기업이 타인의 식품생산 허가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여 식품을 생산 판 매하였을 경우

- ※ 제재조치 : 불법 생산판매의 제품을 몰수하며 불법 생산판매 제품의 화물가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을 몰수. 상황이 엄중할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함.

○ 감독검사 시 생산기업의 불합격 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 ※ 제재조치 : 생산업체, 판매업체가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며, 기한을 넘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성급 이상 제품품질감독부서에 통보.

○ 식품 생산가공기업이 품질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 ※ 제재조치 : 생산 판매를 중지시키며,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을 몰수.

○ 식품생산기업의 위법행위에 편의를 제공하였을 경우

※ 제재조치 : 전체 운송, 보관, 저장 또는 이조 생산기술 제공으로 얻은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50% 이상 3배 이하 벌금을 부과.

○ 감독검사를 접수하지 않는 기업

※ 제재조치 : 경고를 하며 시정할 것을 명령함.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생산을 중지시키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시킴.

나. 식품표준 체계

1) 식품표준 현황

☐ 식품표준 종류

※ 중국 식품표준은 식품 가공제품 표준, 식품공업 기초표준 및 관련 표준, 식품 검험방법 표준, 수출입 식품 검험방법 표준이 있음.

☐ 식품공업 표준화체계

○ 중국 식품공업 표준화 체계는 곡물식품, 식용 유지, 도살 및 날짐승제품, 수산물식품, 통조림, 설탕, 굽은 식품, 사탕과장, 조미료, 우유 및 유제품, 과일채소제품, 전분 및 전분제품, 식품 첨가제, 조란제품, 발효제품, 음료술, 청량음료 및 냉동음료, 차잎, 조식식품 등 19개 분류가 있음.

○ 중국 식품표준체계의 특징

- 식품표준 수량이 적지 않지만 구조가 합리하지 않으며 체계화가 비교적 낮음.

- 표준의 혁신이 늦으며 선진성 수준과 실용성이 비교적 낮음.
- 식품표준체계가 완벽하지 않아 시장경제의 발전에 적응하기 어려움.

□ 식품표준 2004년 ~ 2005년 발전계획

○ 식품안전을 원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2004년에 “식품안전을 강화할데 관한 결정”을 하달한 후 국가표준위원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상업부, 위생부, 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과 국가식품약품감독국과 식품안전 표준체계 지도팀을 설립하여 “중국 식품표준 2004년 ~ 2005년 발전계획”을 제정하였음

- 8개 중점 프로젝트

- ※ 식품 위생표준의 제정의 중점은 유해 물질 함량 제한표준 및 대응되는 선진적인 검험방법 표준, 과학기술부 “10.5계획” 국가 중대한 과학기술 전문 항목 식품 안전 핵심 기술에 포함된 표준, 식품 첨가제와 식품 영양 강화제 사용의 위생표준에 집중함.
- ※ 국제표준과 국외 선진적 표준 369개를 전환하며 동시에 토마도, 복숭아, 버섯, 절인 소고기, 午餐肉 등 5개 통조림의 국제표준 수정을 담당하며 또한 녹차, 양조 간장과 양조 식초 등 3개 국제표준을 제정.
- ※ 특별 식용 식품과 유제품 표준을 연구 제정하며, 주로 유아 식품표준, 노인 식품표준과 유제품 통칙 및 선진적 검험방법 표준이 있음.
- ※ 시장 또는 수출에 급히 필요한 가공식품제품 표준을 제정
- ※ 사기를 방지하며 소비자 이익을 보화하는 표준을 제정
- ※ 관리와 기초표준을 제정함. 주로 GHP, GMP, HACCP표준을 포.
- ※ 표준구조의 표준 통합을 최적화함. 예를 들면, 白砂糖, 綿砂糖, 原糖, 赤砂糖 표준을 설탕표준으로 통합하며, 각종 과자표준을 1개 표준으로 통합하며, 각종 향기의 고, 저농도 소주를 1개 소주 표준으로 통합.

※ 검험방법 표준을 조절하여 식품 통용 물리화학 검험방법을 물리 특성, 화학성분, 유해 금속과 비금속 및 화합물, 농약 잔류물, 수의 (獸醫) 약 잔류물, 진균독소의 측정 통용표준으로 분류함.

2) 주요 식품표준

※ 중국 식품 기초표준은 주로 식품공업 기초 전문 용어 표준, 식품 종합 기초표준, 식품 첨가제 표준, 식품 중 유독·유해물질 최고 함량 제한 표준, 식품기업 위생규범, 식품 가공기계와 설비 기초표준 및 식품표준의 편집표준 등을 포함.

□ 식품기업 위생규범(GMP)

○ 중국은 1988년부터 18개 식품기업 위생규범과 1개 식품기업 통용 위생규범'을 발표하였음.

- (1) GB 8950-1988“ 통조림공장 위생규범 ”
- (2) GB 8951-1988“ 소주공장 위생규범 ”
- (3) GB 8952-1988“ 맥주공장 위생규범 ”
- (4) GB 8953-1988“ 간장공장 위생규범 ”
- (5) GB 8954-1988“ 식초공장 위생규범 ”
- (6) GB 8955-1988“ 식용 식물유공장 위생규범 ”
- (7) GB 8956-1988“ 당과공장 위생규범 ”
- (8) GB 8957-1988“ 케이크공장 위생규범 ”
- (9) GB 12693-1990“ 유제품공장 위생규범 ”
- (10) GB 12694-1990“ 육류가공공장 위생규범 ”
- (11) GB 12695-1990“ 음료공장 위생규범 ”
- (12) GB 12696-1990“ 포도주공장 위생규범 ”

- (13) GB 12697-1990“ 과일주공장 위생규범 ”
- (14) GB 12698-1990“ 향주공장 위생규범 ”
- (15) GB 16330-1996“ 음용 천연 광천수공장 위생규범 ”
- (16) GB 17403-1998“ 초콜릿공장 위생규범 ”
- (17) GB 17404-1998“ 튀김식품 양호 생산규범 ”
- (18) GB 17405-1998“ 보건식품 양호 생산규범 ”
- (19) GB 14881-1994“ 식품기업 통용 위생규범 ”

○ GB 14881-1994“ 식품기업 통용 위생규범 ”

- 주요 내용 : 식품기업의 식품 가공과정, 원료 구매, 운송, 저장, 공장 설계와 시설의 기본 위생요구 및 관리준칙을 규정
- 적용 범위 : 식품 생산 및 경영을 하는 기업, 공장에 적용하며 또한 각종 식품공장의 전문 위생규범을 제정하는 근거로 됨.
- 인용한 표준: GB3841“ 보일러 먼지연기 배출표준 ”, GB5749“ 생활 음용수 위생표준 ”, GB7718“ 식품라벨 통용표준 ”

○ GB 17405-1998“ 보건식품 양호 생산규범 ”

- 주요 내용 : 특정 보건기능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인원, 설계 및 시설, 원료, 생산과정, 완제품 저장과 운송 및 품질과 위생관리에 대한 기본 기술요구를 규정
- 적용 범위 : 모든 보건식품 생산기업
- 인용한 표준 : GBJ 73-1984“ 청결공장건물 설계규범 ”, GB 5749-1985“ 생활 음용수 위생표준 ”, GB 7718-1994“ 식품라벨 통용표준 ”, GB 14881-1994“ 식품기업 통용 위생규범 ”
- 발표부서 및 시행날짜 : 중국 위생부는 1998년 5월 5일에 "보건식품 양호 생산규범"을 비준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

□ GB 2760-1996“ 식품 첨가제 사용 위생표준 ”

○ 주요 내용 : 식품 첨가제의 품종, 사용범위 및 최대 사용량을 규정

○ 인용한 표준 : GB 12493-1990 “ 식품 첨가제 분류와 코드 ”, GB/T 14156-1993“ 식품용 향료 분류와 코드 ”, GB 14880-1994“ 식품 영양 강화제 사용 위생표준 ”

○ 식품 첨가제 정의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위생법”(1995년)의 식품 첨가제 정의: 식품 첨가제는 식품 물질과 색깔, 향기, 맛 및 부식 방지와 가공공예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 중에 첨가한 화학 합성물질 또는 천연 물질을 가리킴.

○ 주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제

- 현재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제는 (1) 식품 영양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첨가하는 영양 강화제, (2) 식품 부식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방부제, 항산화제, (3) 품질 개선을 위하여 첨가하는 색소, 향료, 표백제, 增味劑, 甜味劑, 疏松劑 등, (4) 가공의 편리성을 위하여 첨가하는 消泡劑, 脫膜劑, 乳化劑, 穩定劑 등 22 종류

- 식품 첨가제 분류

(1) 내원에 따른 분류: 천연 식품 첨가제와 인공 화학 합성제품

(2) 생산방법에 따른 분류: 화학 합성, 생물 합성(효소법과 발효법), 천연 추출물

(3) 역할과 기능에 따른 분류: 산도 조절제, 抗結劑, 消泡劑, 산화 방지제, 표백제, 膨松劑, 膠姆糖 기초제, 착색제, 색깔 보호제, 유화제, 효소제제, 增味劑, 밀가루 처리제, 被膜劑, 수분 유지제, 영양 강화제, 방부제, 안정과 고정제, 甜味劑, 增稠劑, 기타, 향료 등 22 종류(“ 식품 첨가제 분류와 코드 ”GB14493-1990)

- 사용을 금지하는 유독 첨가제

※ 유독 첨가제는 20가지이며 주로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붕산(boracic acid), β -나프톨(β -naphthol), 살리실산(salicylic), 吊白塊, 황산동, 사프롤(safrole), 쿠마린(coumarin)을 사용하며 나머지 품종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식품 첨가제 관리방법 및 규범

- 법률 :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위생법 ”(1개)
- 행정법규 : “ 식품 첨가제 위생 관리방법 ”, “ 위생부 식품 첨가제 신고 및 접수처리규정 ”, “ 식품 첨가제 생산기업 위생규범 ”, “ 식품 첨가제 제품 생산 허가증 발급(교환) 실시세칙 ”, “ 식품 위생 허가증 관리방법 ”, “ 식품 첨가제 젤라틴(glutin) 생산기업 위생규범 ”(6개)
- 표준 : “ 식품 안전성 독리학 평가절차 ”(GB 15193.1-1994), “ 식품 첨가제 사용 위생표준 ”(GB2760-1996), “ 식품 첨가제 분류와 코드 ”(GB 12493-1990), “ 식품용 향료 분류 및 코드 ”, “ 식품 영양 강화제 사용 위생표준 ”(GB14880- 1994), “ 사전포장 식품 라벨 통요 표준 ”(GB7718-2004)(๕)

○ 식품 첨가제 신제품의 심사비준

- “ 식품 첨가제 사용 위생표준 ”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식품 첨가제가 생산과정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식품 첨가제 신제품 관리방법 ”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음.
- 심사비준 절차
 - (1) 연구제작, 생산 또는 사용업체는 성, 자치구, 직할시 1급 식품 위생 감독기관에 신청 보고서 및 관련 서류(식품 첨가제 명칭, 물리 화학 성격, 생산 공예, 품질 표준, 독리학 시험, 사용 효과, 사용 범위, 사용량, 잔류량 및 검험방법 및 국외 비준 사용서류 또는 FAO/WHO 연합 전문가 위원회의 평가서류 등)를 제출함.

- (2)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 위생 감독기관에서 초심을 진행함.
 - (3) 국가 위생부 식품 첨가제 위생표준 과학연구 협력조직에서 예심을 진행하며, 전국 식품 첨가제 표준화 기술위원회에서 종심을 함.
 - (4) 통과된 제품은 식품 첨가제 사용 위생표준에 포함시키며, 국가 위생부에서 비준하여 발표함. 신제품의 심사비준은 공예, 품질표준에 대한 심사 외에 중점으로 제품에 대해 안전 독리학 평가를 진행함.
- 수입 식품 첨가제 신제품과 수입 사용범위 또는 사용량을 확대하는 식품 첨가제 생산기업 또는 수입 대리업체는 반드시 직접 위생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시 생산 국가(지역) 정부 또는 그 인정 기관에서 발급한 생산과 판매를 허락하는 증명서류, 생산기업 소재지 국가(지역)의 관련 기관 또는 조직에서 발급한 생산업체 심사 또는 인증에 대한 증명서류
- 수입 식품 중의 식품 첨가제는 반드시 “식품 첨가제 사용 위생표준”에 부합되어야 함.

○“식품 첨가제 위생 관리방법”을 위반 시 제재조치

- (1) “식품 첨가제 사용 위생표준” 또는 “식품 첨가제 위생 관리방법”에서 관련 규정이 있는 식품 첨가제를 생산경영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 제재조치 : “식품 위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함.
- (2) 식품 첨가제의 포장 표시 또는 제품 설명서에 생산날짜, 품질 보증기한 등 규정사항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기하였을 경우, 또는 중문 표시를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 제재조치 : “식품 위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함.
- (3) “식품 위생법” 또는 기타 관련 위생요구를 위반하였을 경우
※ 제재조치 :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함.

□ 식품 중 유독유해물질 최고 잔류량 제한표준

○ 주요 농약 최고 잔류량 제한표준

※ 최근 몇 년간 중국은 79가지 농약이 32가지(종류) 농산물에서 197개 농약 최고 잔류량 제한량(MLIs)의 국가표준을 제정하였음.

중국 주요 농약 최고 잔류량 제한표준

No.	농약 명칭	농산물/식품 명칭	최고 잔류량 제한치 (mg/kg)	표준번호
1	2, 4-D	채소 피곡	0.2 0.5	GB15194-94 GB15194-94
2	chlormequatchloride	피곡	5	GB15194-94
3	paraquat	유채기름 알곡 감귤	0.05 0.5 0.3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4	chlorothalonil	곡류(알곡으로 계산) 채소 과일	0.2 1 1	GB14869-94 GB14869-94 GB14869-94
5	fenthion	곡류(알곡으로 계산) 식용유 채소 과일	0.05 0.01 0.05 0.05	GB4788-94 GB4788-94 GB4788-94 GB4788-94
6	fenbutatinoxide	감귤 이과배 따위	5 5	GB16333-1996 GB16333-1996
7	ethoprophos	땅콩	0.02	GB15194-94
8	propiconazole	피곡	0.1	GB15194-94
9	glyphosate	사탕수수 과일	2 0.1	GB14968-94 GB14968-94
10	diflubenzuron	감귤 이과배 따위 피곡	1 1 0.2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11	mancozeb	이과배 따위 작은 알갱이 과일 과일채소	3 5 0.5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12	phenthoate	알곡 감귤	0.05 1	GB16333-1996 GB16333-1996

13	DDT	식량(알곡) 채소 과일 어류	0.2 0.1 0.1 1	GB2763-81 GB2763-81 GB2763-81 GB2763-81
14	thichlorfon	채소 가일 피곡	0.1 0.1 0.1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15	divhlorvos	식용유 채소 과일 피곡	검사할 수 없음 0.2 0.2 0.1	GB5127-1998 GB5127-1998 GB5127-1998 GB5127-1998
16	anilazine	채소 피곡	10 0.2	GB15194-94 GB15194-94
17	edifenphos	알곡	0.1	GB16333-1996
18	carbosulfan	벼 감귤	0.5 2	GB16333-1996 GB16333-1996
19	chlorpyrifos	알곡 이과배 따위 면실유 엽채	0.1 1 0.05 1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20	parathion	식용유 채소 과일 피곡	0.1 검사할 수 없음 검사할 수 없음 0.1	GB5127-1998 GB5127-1998 GB5127-1998 GB5127-1998
21	carbendazim	곡류(피곡으로 계산) 채소 과일	0.5 0.5 0.5	GB14870-94 GB14870-94 GB14870-94
22	paclobutrazol	유채기름 피곡	0.5 0.5	GB16333-1996 GB16333-1996
23	diazinon	곡류(피곡으로 계산) 채소 과일	0.1 0.5 0.5	GB14928.1-94 GB14928.1-94 GB14928.1-94
24	phosalone	면실유 엽채	0.1 1	GB16333-1996 GB16333-1996
25	cyfluthrin	면실유	0.05	GB16333-1996
26	flucythrinate	면실유 채소 과일 피곡	0.2 0.2 0.5 0.2	GB15194-94 GB15194-94 GB15194-94 GB15194-94
27	procymidone	유채기름 과일채소	1 2	GB16333-1996 GB16333-1996
28	methamidoophos	벼	0.1	GB14873-94

29	phorate	곡류(피곡으로 계산) 식용유 채소 과일	0.02 검사할 수 없음 검사할 수 없음 검사할 수 없음	GB4788-49 GB4788-49 GB4788-49 GB4788-49
30	parathion-methyl	벼 면실유	0.1 0.1	GB14874-94 GB14874-94
31	piromiphose-methyl	곡물	5	GB14928.3-94
32	carbary	식량 식용유 채소 과일 담배	5 0.5 2 2.5 1	GB14971-94 GB14971-94 GB14971-94 GB14971-94 GB14971-94
33	metalaxyl	과일채소 작은 알갱이 과일 피곡	0.05 1 0.05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34	monocrotophos	벼 면실유	0.02 0.05	GB16333-1996 GB16333-1996
35	pirmicarb	식량(대두를 포함) 채소 과일	0.05 1 0.5	GB14928.2-94 GB14928.2-94 GB14928.2-94
36	carbofuran	벼	0.5	GB14928.7-94
37	captan	과일	15	GB15194-94
38	cadusafos	사탕수수 감귤	0.005 0.005	GB15194-94 GB15194-94
39	quinalphos	쌀 감귤 채소	0.2 0.5 0.2	GB14928.10-94 GB14928.10-94 GB14928.10-94
40	dimethoate	식용유 채소 과일 피곡	검사할 수 없음 1 1 0.05	GB5127-1998 GB5127-1998 GB5127-1998 GB5127-1998
41	lindane	달걀 소젖, 유제품 고기, 지방 함량≤10%(FW로 계산) 고기, 지방함량>10%(FW로 계산) 피곡	0.1 0.01 0.2 2 0.1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42	phosphamidon	피곡	0.1	GB15194-94
43	thiodicarb	면실유	0.1	GB16333-1996
44	HCH; BHC	식량(알곡으로 계산) 채소 과일 어류	0.3 0.2 0.2 2	GB2763-81 GB2763-81 GB2763-81 GB2763-81

45	cyhalothrin	면실유 이과배 따위 과일채소 감귤 엽채	0.02 0.2 0.5 0.2 0.2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46	permethrin	곡류(피곡으로 계산) 채소 과일	1 1 2	GB14871-94 GB14871-94 GB14871-94
47	malathion	알곡 식용유 채소 과일 피곡	3 검사할 수 없음 검사할 수 없음 검사할 수 없음 8	GB5128-1998 GB5128-1998 GB5128-1998 GB5128-1998 GB5128-1998
48	bentazone	피곡	0.05	GB16333-1996
49	methomyl	양배추 감귤	2 1	GB16333-1996 GB16333-1996
50	chlorbenzuron	채소 피곡	3 3	GB15195-94 GB15195-94
51	fenvalerate	뿌리류 채소 곡류(피곡으로 계산) 과일채소 과일 엽채	0.05 0.2 0.2 0.2 0.5	GB14928.5-94 GB14928.5-94 GB14928.5-94 GB14928.5-94 GB14928.5-94
52	propargite	감귤 이과배 따위 면실유 엽채	5 5 0.1 2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53	thiabendazole	감귤 바나나	10 3	GB16333-1996 GB16333-1996
54	hexythiazos	감귤 이과배 따위	0.5 0.5	GB16333-1996 GB16333-1996
55	buprofezin	식량 채소	0.3 0.3	GB14970-94 GB14970-94
56	tricyclazole	벼	2	GB14928.9-94
57	triadimenol	피곡	0.1	GB15194-94
58	triadimefon	곡류(피곡) 채소 과일	0.5 0.2 0.2	GB14972-94 GB14972-94 GB14972-94
59	azocyclotin	감귤 이과배 따위	2 2	GB16333-1996 GB16333-1996
60	thiocyclam	쌀	0.2	GB14928.11-94
61	disosultap	쌀	0.2	GB14928.12-94
62	cartap	알곡 감귤	0.1 1	GB16333-1996 GB16333-1996
63	fenitrothion	곡류(피곡으로 계산) 식용유 채소 과일	5 검사할 수 없음 0.5 0.5	GB4788-94 GB4788-94 GB4788-94 GB4788-94

64	methidathion	감귤	2	GB16333-1996
65	amitraz	감귤 과일채소 이과배 따위 면실유	0.5 0.5 0.5 0.05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66	isocarbophos	벼 감귤(과육)	0.1 0.02	GB14928.8-94 GB14928.8-94
67	clofentezine	과일	1	GB15194-94
68	aldicarb	땅콩알 면실유 땅콩기름	0.05 검사할 수 없음 검사할 수 없음	GB14928.6-94 GB14928.6-94 GB14928.6-94
69	quintozene	채소 피곡	0.2 0.1	GB15194-94 GB15194-94
70	phoxim	곡류(피곡으로 계산) 채소 과일	0.05 0.05 0.05	GB14868-94 GB14868-94 GB14868-94
71	methylebromide	피곡	50 (무기 브롬으로 계산)	GB15194-94
72	bromopropylate	감귤	5 5	GB16333-1996 GB16333-1996
73	deltametrin	감귤 과일채소(껍질은 식용 가능) 과일(껍질은 식용 가능) 피곡 엽채	0.05 0.2 0.1 0.5 0.5	GB14928.4-94 GB14928.4-94 GB14928.4-94 GB14928.4-94 GB14928.4-94
74	phosmet	참외 채소 과일 피곡	0.5 0.5 0.5 0.5	GB16320-1996 GB16320-1996 GB16320-1996 GB16320-1996
75	ethion	면실유 피곡	0.5 0.2	GB15194-94 GB15194-94
76	vinclozolin	채소	5	GB15194-94
77	acephate	곡류(피곡으로 계산) 채소 과일	0.2 0.2 0.5	GB14872-94 GB15194-94 GB15194-94
78	iprodione	이과배 따위 과일채소	10 5	GB16333-1996 GB16333-1996
79	atrazine	사탕수수 옥수수	0.05 0.05	GB16333-1996 GB16333-1996

※ “중화인민공화국 농약 관리조례”의 규정 : “극독, 높은 독성 농약5을 채소, 과일, 참외와 약초에 사용하지 못함”

○ 동물성 식품 중의 농약 최대 잔류량 제한표준

※ 중국 농업부는 2002년 2월 24일에 농업부 제 235호 공고로 “동물성 식품 중의 농약 최대 잔류 제한량”을 발표하였음. 기존에 農牧發(1997) 7호 문건으로 발표한 “동물성 식품 중의 농약 최대 잔류 제한량”을 폐지함.

○ 식품 중 방사성물질의 최대 잔류량 제한표준

분류별 식품 중 몇 가지 방사성 동위원소의 제한농도

품 종	Sr-89 /(Bq/kg)	Sr-90 /(Bq/kg)	iodin-131 /(Bq/kg)	Cs-137 /(Bq/kg)	Ra-226 /(Bq/kg)	천연 토륨 /(Bq/kg)	천연 우라늄 /(Bq/kg)
음용수, 음료	111	2.6	22.2	37	1.1	0.1	0.05
식량, 감자류, 채소	259	7.4	37	74	2.6	0.2	0.10
과일, 두류, 설탕	370	11.1	111	148	37	0.4	0.20
우유류	370	11.1	14.8	148	3.7	0.4	0.20
고기, 달걀, 수산물, 식용유	1,110	2.2	185	333	11	0.9	0.40
소금	1,480	33.3	296	370	14.8	1.3	0.60
차잎(말린 것)	1,480	333	296	370	14.8	1.3	0.60
식용 해조류(말린 것)	2,590	74	370	740	26	2.2	1.10

자료출처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수산물 중 어류약 잔류량 제한표준

※ 중국 농업부는 2002년 7월 25일에 “수산물 중 어류약 잔류 제한량”을 발표하였음.

수산물 중 어류약 잔류량 제한표준

No.	약물명칭	최고 잔류량 제한치 (ug/kg)
1	chlortetracycline	100
2	oxytetracycline	100
3	tetracycline	100
4	chloramphenicol	검사할 수 없음
5	sulfadiazine	100 (전체 중량으로 계산)
6	sulfamerazine	
7	sulfadimidine	
8	sulfamethoxazole	
9	trimethoprim	50
10	oxilinic acid	300
11	furazolidone	검사할 수 없음
12	diethylstilbestrol	검사할 수 없음
13	olaquinox	검사할 수 없음

다. 유전자 변형식품 관리제도

□ 유전자 변형식품 수입 관련 정책법규

○ 1992년, 위생부는 “신자원 식품 위생 관리방법”을 발표하여 유전자 변형식품의 생산 심사비준제도와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음.

○ 1993년 12월 24일, 기존 국가과학위원회는 ‘유전자공정 안전 관리방법’을 발표하여 캐리어 시스템의 DNA 조합기술 및 물리적 방법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역이종 DNA를 직접 유기체에 도입하는 기술의 기술관리를 규정하여, 유전자 변형제품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안전 통제방법과 조치를 규정하였음.

- 1996년 7월 10일, 농업부는 “농업 생물 유전자공정 안전관리 실시방법”을 정식으로 발표하여 중국 농업 유전자원, 농업 생물공정과 농업 생산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 시험연구, 중간단계, 환경 배출에서 마지막 상업화 생산까지의 전반 과정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음.
- 1998년, 국무원 辦公廳은 과학기술부와 위생부에 “인류 유전자원 관리 임시 방법”을 전달하였음. 2000년 세계 환경계획서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은 “중국 국가 생물안전체계”를 편제하여 중국 생물안전 법규, 정책,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였음. 2000년 8월 8일, 국무원은 “생물 안전 협정서”를 체결하였음.
- 2001년 5월 23일, 국무원은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안전 관리조례”(2001년 6월 6일부터 시행)를 발표하여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의 연구 및 시험, 생산과 가공, 경영, 수출입, 감독, 벌칙 등에 대해 규정하였음.
- 2002년 1월 7일, 농업부는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안전 관리조례”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안전 관리조례 실시세칙”(“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안전 평가 관리방법”,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수입 안전 관리방법”,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표시 관리방법”으로 구성)을 제정하여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였음.
- 2002년 3우리 11일, 농업업부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안전 관리 임시 조치 공고”를 발표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유전자 변형생물의 외국회사는

안전증서를 신청한 기초에서 소재 국가 또는 제3국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안전 평가의 유효한 서류를 소지하여 농업부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안전 관리사무실에 “임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심사에 합격될 경우, 농업부는 30일 내에 “임시 증명”을 발급하며 수입업체는 국외회사가 취득한 “임시 증명”을 소지하여 검사 신고수속을 밟을 수 있으며 또한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표시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 2002년 7월, 농업부에서 발표하여 실시한 “유전자 변형식품 위생 관리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위생법”과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안전 관리조례”의 기초에서 유전자 변형식품의 위생 안전성과 영양 품질 평가, 유전자 변형식품의 생산 신고와 비준, 유전자 변형식품의 표시와 감독 등 관리방법을 규정하였음.

※ 유전자 변형식품은 1류 신자원 식품으로서 반드시 위생부의 심사비준을 받은 후에 생산 또는 수입할 수 있음.

※ 유전자 변형식품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위생법” 및 관련 법규, 규정, 표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인체에 급성, 만성 또는 기타 잠재적 건강위해를 주지 말아야 함.

※ 유전자 변형식품의 식용 안전성과 영양 품질은 대응되는 기존의 식품보다 낮아서는 않됨.

※ 유전자 변형식품의 생산기업은 반드시 국가 관련 식품 생산기업 위생규범의 요구에 도달하여야 함.

※ 유전자 변형식품의 생산 경영업체는 반드시 생산 경영하는 유전자 변형식품의 식용 안전성과 영양 품질을 보증하여야 함.

※ 유전자 변형식품의 생산자는 반드시 유전자 변형식품 입고(출하) 기록(입고(출하)기업, 주소, 수량을 포함)을 보류하여 최소 2년 조사하게 함.

○ 2002년 7월 1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은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안전조례” 및 “중국 동식물 수출입 검험검역법”에 의하여 “수입 동식물 검역 재심사”(2002년 9월부터 실시)를 제정하여 AQSIQ가 모든 수입 유전자 변형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 허가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였음.

○ 2002년 4월 25일, 위생부는 유전자 변형 수입식품의 관리규정을 발표하였지만 실시세칙을 발표하지 않았음. 2002년 7월 9일, 위생부는 2002년 12월 21일부터 수입 허가증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하였음.

○ 2004년 2월 23일, 농업부는 “204년 수입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안전 심사비준현황”의 통보를 발표하였음.

□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안전 관리조례” 및 기타 법규의 내용

○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안전 관리조례”의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총칙, 연구 및 시험, 생산 및 가공, 경영, 수입 및 수출, 감독검사, 벌칙과 부칙 등 총 8장

- 주요 유전자 변형생물: 유전자 변형 동식물과 미생물, 유전자 변형 동식물제품과 미생물제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직접 가공제품, 유전자 변형동식물과 미생물 또는 기타 제품성분을 포함한 종자, 모종, 수산물 치어, 농약, 짐승 약, 비료와 첨가제 등 제품
- III, IV급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의 연구는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국무원 농업부에 보고하여야 함.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의 시험은 중간단계 시험, 환경 배출과 생산성 시험 등 3개 단계로 구성.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은 심사결정, 등록 또는 평가, 심사비준 전에 반드시 안전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중외 합작, 중회 합자 또는 외자 독자기업이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의 연구 및 시험을 진행할 때 반드시 농업부의 비

준을 받아야 함.

- 국외로부터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을 수입하는 기관 또는 국외 기업은 반드시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안전증서와 관련 비준서류를 취득하여야 하며, 검역에 합격되어야 세관에 통관 신고수속을 밟을 수 있음.
- 국외로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 외국업체는 비 유전자 변형 농산물 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항구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은 테스트를 진행하여 증명을 발급함.
- 농업부에서 발급한 안전증서와 관련 비준서류가 없거나 증서, 비준서류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반환 또는 소각 처리를 함.
- 수입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이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표시를 한 후에 입국할 수 있음.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안전 관리조례 실시세칙”의 주요 내용

-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안전 평가 관리방법”은 중국 국내에서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의 연구, 시험, 생산, 가공, 경영, 수입과 수출을 할 경우, 반드시 실시세칙에 의하여 안전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수입 안전 관리방법”은 유전자 변형생물의 수입 조건, 절차, 유전자 변형생물 안전증서의 발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표시 관리방법”은 국가에서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에 대해 표시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
 - ※ 표시 관리를 실시하는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목록은 국무원 농업부와 관련 부서에서 제정, 조절 및 발표함.
 - ※ 농업부에서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표시의 심사결정과 감독관리를 책임지고, 현(縣)급 이상 농업 행정주관부서에서 관할구역 내의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 표시의 감독관리를 책임지며, 國家質檢總局에서 수입 농업 유전자 변형생물의 항구 표시 검사검증을 책임.

5. 수출입 규제제도

가. 수출입 금지·제한화물

1) 수출입 금지화물

☐ 수입 금지화물 범위

-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주는 화물
- 인체 생명 또는 건강에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을 금지하는 화물
-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화물
-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금지하여야 할 화물

☐ 수출 금지화물 범위

-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주는 화물
- 인체 생명 또는 건강에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을 금지하는 화물
-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화물
-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을 금지하여야 할 화물

□ 수출입 금지화물 목록

- 수출입 금지화물 목록은 국무원 상무부에서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절 및 발표함.
- 중국은 현재까지 여섯 차례 수입 금지화물 목록, 네 차례 수출 금지화물 목록을 발표하였음.(목록은 상무부 웹사이트 www.mofcom.gov.cn를 참조)
 - ※ 수출입 금지의 화물은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없음.

2) 수출입 제한화물

□ 수입 제한의 화물범위

-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화물
- 국내 특정 산업을 건설 또는 가속화하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화물
- 어떠한 형식의 농업, 목축업, 어업제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화물
- 국가의 국제 금융지위와 국제 수지평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화물
-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화물

☐ 수출 제한화물 범위

-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화물
-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거의 소모한 국내자원을 유효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화물
- 수출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시장규모가 제한되었을 경우
-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수출입 제한화물 목록

- 수출입 제한화물 목록은 국무원 상무부에서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절 및 발표함. 수출입 제한화물 목록은 최소 정식 시행일의 21일 전에 발표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도 시행일 전에 발표해야 함.(목록은 상무부 웹사이트 www.mofcom.gov.cn를 참조)

※ 국가에서 수량 제한이 있다고 규정한 수출입화물에 대해 할당 관리를 실행하며, 기타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해 허가증 관리를 실행함.

3) 임시 제한 및 금지조치

☐ 임시 수입 제한조치

- 국제 수지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 수지가 엄중하게 평형을 잃었거

나 엄중한 평형 상실 위협이 있을 경우, 또는 경제 발전계획의 실시에 대응되는 외화 비축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 화물의 가치 또는 수량에 임시 제한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 국내 특정 산업을 건설 또는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존 조치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 국가에서 아래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어떤 형식의 농산물,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 같은 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의 국내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해 제한 조치를 채택할 경우

※ 소비 보조형식을 통하여 국내 과잉상태의 같은 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을 제거할 경우

※ 완전하게 또는 주로 수입 농산물, 수산물로 형성한 동물제품에 대해 생산 제한조치를 채택할 경우

□ 임시 수출 제한 또는 금지 조치

○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일 경우, 상무부는 특정 화물의 수출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의 임시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 엄중한 자연재해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수출 경영질서가 엄중하게 혼란하여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무역법”의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임시 제한 및 금지화물 목록

※ 상무부에서 실시 전에 발표함.(목록은 상무부 웹사이트 www.mofcom.gov.cn를 참조)

나. 수출입 규제제도

1) 수입 규제제도

□ 수입 할당제도

○ 관련 법규

- “대외 무역법”,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에 의하여 중국은 수량 제한이 있는 수입 화물에 대해 수입 할당관리를 실행.

○ 주관부서

- 할당 관리를 실행하는 수입 제한화물은 국무원 상무부와 국무원 관련 부서에 국무원에서 규정한 정책에 따라 관리를 진행

○ 할당 관리의 종류 및 상품범위

- 수입 할당 종류: 중국의 수입 할당은 기계전기제품의 수입 할당, 중요한 공업제품의 수입 할당, 관세 할당과 기타 수입 할당 등이 있음.

※ 수입 할당 관리의 기계전기제품: 기계설비, 전기설비, 교통운송수단, 전자제품, 가전제품과 계기계량기 등 및 그 부품, 소자

※ 수입 할당 관리의 중요한 공업제품: 완제품 기름과 자동차 타이어

※ 관세 할당 관리의 수입 제품: 주로 농산물과 화학비료

※ 관세 할당 관리의 기타 상품: 상기 몇 개 수입 할당 외의 기타 수입 할당 관리가 필요한 상품

- 수입 할당 관리의 상품범위

- ※ 국가에서 적당한 량으로 수입하여 시장공급을 조절하여야 하지만
과량의 수입은 국내 관련 공업의 발전에 엄중하게 손해를 주는 수
입 제품
- ※ 직접 수입 구조, 산업 구조의 조절에 영향을 주는 수입 제품
- ※ 국가 외화 수지지위에 위협을 주는 수입 제품.

○ 수입 할당량의 발표 및 분배

- 할당 관리의 수입 제한화물에 대해 수입 할당 관리부서는 반드시 매
년 7월 31일 전에 다음 년도 수입 할당량을 발표해야 함.
- 할당 신청인은 반드시 매년 8월 1일~8월 31일에 수입 할당 관리부
서에 다음 년도 수입 할당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 할당 관리부
서는 매년 10월 31일 전에 다음 년도의 할당을 할당 신청인에게 분배
해야 함.
- 수입 할당 관리부서는 수요에 의하여 년도 할당량에 대해 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실시하기 21일 전에 공고함.
- 할당은 모든 신청에 대한 통일 분배방식으로 분배하여야 하며, 수입
할당 관리부서는 규정한 신청 마감일로부터 60일 내에 할당 발급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함.
- 수입 할당 분배 시 고려사항
 - ※ 신청인의 수입 실적
 - ※ 이전 분배한 할당에 대해 충분하게 사용한 여부
 - ※ 신청인의 생산능력, 경영규모, 판매상황
 - ※ 새로운 수입 경영업체의 신청상황
 - ※ 할당 신청 수량상황
 - ※ 고려하여야 하는 기타 요소

○ 수입 할당의 사용

- 수입 경영업체는 수입 할당 관리부서에서 발급한 할당증명을 소지하여 세관에 통관 신고수속을 밟음.
- 할당 소유자가 년도 할당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드시 당해 9월 1일 전에 사용하지 못한 할당을 수입 할당 관리부서에 넘겨야 함.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았으며 또한 당해 말 전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입 할당 관리부서는 다음 년도에 대응되는 할당을 공제할 수 있음.

□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제도

○ 관련 법규

- ※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3년 9월 27일에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에 의하여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 관리 임시 시행방법”을 제정하여 확정된 수량 내의 농산물 수입에 대해 관세 할당 내 세율을 적용하며 확정된 수량 외와 확정된 수량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 관세 할당 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음.

○ 수입 관세 할당의 농산물 품종

- 밀, 옥수수, 쌀, 두유, 설탕, 면화, 양모 및 섬수모
- 구체적인 품목 및 세목은 별도로 발표함.
- 밀, 옥수수, 쌀, 설탕, 면화는 국유 무역 할당과 비국유 무역 할당으로 나눔. 섬수모에 대해 수입 지정회사 경영제도를 실행함.

○ 수입 관세 할당의 농산물 범위

-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은 일반 무역, 가공 무역, 화물교환 무역, 변경지역 소액무역, 원조, 증정 등 무역방식의 수입에 적용됨.
- 보세창고, 보세구, 수출가공구에서 수입하는 제품은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을 면제함.

○ 주관부서

- 밀, 옥수수, 쌀, 면화의 수입 관세 할당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상무부와 회동하여 분배하며, 설탕, 양모, 섬수모의 수입 관세 할당은 상무부에서 분배함.
-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각각 권한을 부여한 기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탁함.
 - ※ 신청인의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을 위탁 부서에 전달
 - ※ 컨설팅을 접수하며 또한 위탁 부서에 전달
 - ※ 신청인의 신청을 검사하여 발표 표준에 부합 여부를 확정
 - ※ 신청인에게 신청 중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며 신청인에게 신청 중의 부족한 부분을 제거할 기회를 줌.
 - ※ 비준을 받은 신청인에게“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을 발급.

○ 수입 관세 할당의 신청

- 수입 관세 할당의 신청기간은 매년 10월 15일~30일(계약에 의하여 선후 순서의 분배상식을 제외)임.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각각 신청기간 1개월 전에 “國際商報”, “中國經濟導報” 및 상무부 웹사이트(www.mofcom.gov.cn),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웹사이트(www.sdpc.gov.cn)에 농산물 다음 년도 수입 관세 할당량 및 관세 할당 신청조건을 발표하며 동시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확정한 관세 할당 상품 세목 및 할당 내의 세율, 할당 외의 세율을 공고함.
- 설탕, 양모, 섬수모의 수입 할당은 상무부에서 발표하며, 밀, 옥수수, 쌀, 면화의 수입 관세 할당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함.

2006년 수입 관세 할당 상품의 관세율

No.	상품유형	세칙번호	할당 외 세율		할당 내 세율
			최혜국 세율	이반 세율	
1	밀	10011000	65	180	1
		10019010	65	180	1
		10019090	65	180	1
		11010000	65	130	6
		11031100	65	130	9
		11032010	65	180	10
2	옥수수	11051000	20	180	1
		10059000	65	180	1
		11022000	40	130	9
		11031300	65	130	9
		11042300	65	180	10
3	벼와 쌀	11061011	65	180	1
		10061019	65	180	1
		10061091	65	180	1
		10061099	65	180	1
		10062010	65	180	1
		10062090	65	180	1
		10063010	65	180	1
		10063090	65	180	1
		10064010	65	180	1
		10064090	65	180	1
		11023010	40	130	9
		11023090	40	130	9
		11031921	10	70	9
		11031929	10	70	9
4	설탕	17011100	50	125	15
		17011200	50	125	15
		17019100	50	125	15
		17019910	50	125	15
		17019920	50	125	15
		17019990	50	125	15

5	양모	51011100	38	50	1
		51011900	38	50	1
		51012100	38	50	1
		51012900	38	50	1
		51013000	38	50	1
		51031010	38	50	1
6	섬수모	51051000	50	38	3
		51052100	50	38	3
		51052900	50	38	3
7	면화	52010000	125	40[비고]	1
		52030000	125	40	1
8	화학비료	31021000	150	50	4
		31052000	150	50	4
		31053000	150	50	4

비고 : 1. 수입 면화 납세가격이 10,746위안/톤 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임시 관세 세율은 5%
2. 수입 면화 납세가격이 10,746위안/톤 보다 낮을 경우, 임시 관세 세율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함.

$$Ri = \text{INT}[(Pi/PixE - 1) \times 1000 + 0.5] / 1000 \quad (Ri \geq 40\%)$$

관세 = $Ri \times PixE$
Ri-임시 관세 세율, Ri가 상기 공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가 40%보다 높은 경우 40%로 함.
E-달러 환율
Pi-관세 납세가격(달러)
Pt-상수, 11283
INT-소수점 이후 수치를 없앴

- 상업부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설탕, 양모, 섬수모의 수입 관세 할당 신청을 접수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밀, 옥수수, 쌀, 면화의 수입 관세 할당 신청을 접수함.
- 상업부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발표한 구제적인 조건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설탕, 양모, 섬수모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심사하며 또한 11월 30일 전에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상무부에 보고함.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발표한 구제적인 조건에 의

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밀, 옥수수, 쌀, 면화의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심사하며 또한 11월 30일 전에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함.

○ 수입 관세 할당의 분배

- 수입 관세 할당은 신청인의 신청수량과 이전의 수입 실적, 생산능력, 기타 관련 상업표준 및 선후 순서방식에 의하여 분배함. 분배하는 최소 수량은 종류별 상품의 상업에서 가능한 운송량에 의하여 확정함.
- 상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각각 매년 1월 1일 전에 최종 고객에게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을 발급하며 또한 “상업부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 전용도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 전용도장”을 날인함. 국영 무역 할당은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에 표기함.

○ 수입 관세 할당의 기한

- 수입 관세 할당은 매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며 또한 양력 년도 내에 유효함.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은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계약에 의하여 선후 순서방식을 실행한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의 유효기한은 발표한 실시세칙에 의하여 실행함.
- 당해 12월 31일 전에 출발 항구에서 출발하여 다음 년도에 화물이 도착하는 수입 관세 할당 농산물은 최종 고객이 12월 31일 전에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 및 관련 증명서류를 소지하여 기존 증서 발급기관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증서 발급기관은 상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한 후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연장기한은 다음 년도 2월 15일을 초과하지 못함.

○ 수입 관세 할당의 집행

- 최종 고객은 국가 관련 상품 수입 경영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자체로

또는 위탁하여 수입 계약서를 체결함.

- 가공무역기업은 “가공무역 업무 비준증”과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을 소지하여 세관에 가공무역 등록수속을 밟아야 하며 규정에 의하여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함.
- 가공무역기업이 규정한 기한 내에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기한 만기 후 30일 내에 가공무역 계약서의 검사 삭제수속을 밟아야 함. 세관은 가공무역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행함.
-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은 1개 증서, 몇 차례 비준제도, 즉, 최종고객이 몇 차례로 나누어 수입할 경우, 관세 할당증서를 소지하여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밟음.
- 보세창고, 보세구, 수출가공구의 수입 관세 할당상품에 대해 세관은 현행 규정에 의하여 검수 및 통관을 시키며 또한 감독관리를 실시함.
- 최종 고객은 화물의 세관 수속을 마친 후 20개 근무일 내에 세관에서 사인 및 날인한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 첫 번째 페이지(수하인 세관수속 처리용) 복사본 및 통관 신고서 복사본을 기존 증서 발급기관에 제출함.

○ 수입 관세 할당의 조절

- 최종 고객에게 분배하는 국영 무역 할당량을 당해 8월 15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 관리 임시 시행방법”의 제7조에서 규정한 관할권한에 의하여 상무부 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으며 최종 고객은 무역권한이 있는 비국영 무역기업에 위탁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무역권한이 있는 최종 고객은 직접 수입할 수 있음. 비준을 받지 않을 경우, 비국영 무역기업에 수입을 위탁하거나 직접 수입할 수 없음.
- 수입 관세 할당을 갖고 있는 최종 고객은 당해에 신청받은 전체 할당량의 수입 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9월 15일 전에 완수하지 못하는 할당량은 기존 증

서 발급기관에 넘겨주어야 함.

- 관세 할당 재분배량의 신청기한은 매년 9월 1일~15일(계약에 의한 선후 순서의 분배상식을 제외)임.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각각 신청기간 1개월 전에 “國際商報”, “中國經濟導報” 및 상무부 웹사이트(www.mofcom.gov.cn),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웹사이트(www.sdpc.gov.cn)에 관세 할당 재분배량의 구체적인 조건을 발표함. 신청은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서 상무부 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함.
- 설탕, 양모, 섬수모의 수입 할당은 상무부에서 발표하며, 밀, 옥수수, 쌀, 면화의 수입 관세 할당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함.
- 이미 신청 받은 관세 할당량을 전부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9월 1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은 할당량을 반환한 최종 고객은 다시 관세 할당 재분배량을 신청할 수 없음.
- 상무부는 매년 9월 30일 전에 설탕, 양모, 섬수모의 관세 할당 재분배량을 최종 고객(계약서에 의한 선후 순서방식을 제외)에게 분배함. 상무부는 매년 9월 30일 전에 밀, 옥수수, 쌀, 면화의 관세 할당 재분배량을 최종 고객(계약서에 의하여 선후 순서방식을 제외)에게 분배함.
- 관세 할당 재분배량은 발표한 신청조건에 의하여 선후 순서방식으로 분배함.

○ 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가공무역기업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합부로 보세 수입 원료 또는 그 완성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 제재조치 : 세관에서 밀수로 처리함.
-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을 위조, 변형 제조 또는 매매하였을 경우
※ 제재조치 : 형법이 불법 경영한 범죄 또는 국가 기관의 공문, 증서, 인장을 위조, 변형제조, 매매한 범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함. 할당을 소지함 최종 고객이 상기 행위

가 있을 경우,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년 내에 그 수입 관세 할당액의 신청을 다시 접수하지 않음.

-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 제재조치 : 법에 의하여 그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을 몰수하며,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년 내에 그 수입 관세 할당액의 신청을 다시 접수하지 않음.
- 수입 관세 할당을 갖고 있는 최종 고객이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 관리 임시 시행방법”의 제23조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전체 관세 할당량의 수입을 완수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9월 15일 전에 당해 수입을 하지 못한 관세 할당량을 기존 증서 발급기관에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 제재조치 : 다음 년도에 분배하는 관세 할당량에서 완수하지 못한 비례에 따라 공제함.
- 수입 관세 할당을 갖고 있는 최종 고객이 연속 2년 분배받은 전체 관세 할당량의 수입을 완수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9월 15일 전에 당해 수입을 하지 못한 관세 할당량을 기존 증서 발급기관에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 제재조치 : 다음 년도에 분배하는 관세 할당량에서 최근 1년에 완수하지 못한 비례에 따라 공제함.
- 최종 고객이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 관리 임시 시행방법”의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한 시간에 세관에서 사인 및 날인한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의 첫 번째 페이지(수하인 세관수속 처리용) 복사본 및 통관 신고서 복사본을 기존 증서 발급기관에 제출지 않았을 경우
※ 제재조치 : 수입을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 년도의 관세 할당량에서 공제함.
- 수입 관세 할당 상품을 밀수할 경우
※ 제재조치 : 관세 할당 외의 세율로 탈세금액을 계산하며 또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함.

□ 수입 허가제도

※ 중국은 수량 제한이 있는 수입 화물과 기타 제한이 있는 수입 화물에 대해 수출입 허가증 관리를 실행함.

○ 관련 법규

- 상무부는 수입 허가증 관리를 규범화하며 화물 수입의 질서를 유지하고 대외 무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4년 12월 9일에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 수입 허가증 관리방법”(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제정하였음.

○ 주관부서

- 상무부는 중국 수입 허가증 관리부서로서 수입 허가증 관리방법 및 규정제도를 제정하며 수입 허가증 관리방법의 실행상황,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독, 조사함.
- 상무부는 세관총서와 회동하여 “수입 허가증 관리 화물목록”을 제정, 조절 및 발표함. 상무부는 년도 “수입 허가증 관리 화물 등급별 허가증 목록”의 제정, 조절 및 발표를 책임짐.

※ “수입 허가증 관리 화물목록”과 “수입 허가증 관리 화물 등급별 허가증 목록”은 상무부에서 공고형식으로 발표함.

- 상무부의 권한을 부여받은 할당 허가증 사무국은 통일적으로 중국 각 허가증 발급기관의 수입 허가증 발급을 관리, 지도하며, 상무부가 허가증 사무국에 대해 책임을 짐.
- 허가증 사무국 및 상무부 각 지역 특파원 사무소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배정도시 및 상무부에서 권한을 수여한 기타 성 소재지 도시의 상무청(국), 대외 경제무역위원회(청, 국)은 수입 허가증 발급 기관이며 허가증 사무국에서 통일적으로 관할하며 권한범위 내의 허

가증 발급업무를 책임짐.

○ 수입 허가증 발급대상

- 수입 허가증 관리에 속하는 화물은 국가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영업체는 반드시 수입하기 전에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허가증 발급기관에 수입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수입 허가증에 의하여 통관 신고를 접수하며 통관을 허가시킴.
- 수입 허가증은“ 수입 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 ”내의 화물 수입에 적용됨.
- 상무부는 상무부, 세관총서의 공고 2005년 제90호 “2006년 수입 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 ’에 의하여 “2006년 수입 허가증 관리 화물 등급별 허가증 목록 ’을 발표하였음.

※ 2006년에 수입 허가증 관리를 실행하는 화물은 3가지(83개 8위 HS코드)이며, 그 중 할당 허가증 사무국에서 수입 허가증을 발급하는 화물은 1가지, 각 지역 대외 경제무역위원회(청, 국), 상무청(국)에서 수입 허가증을 발급하는 화물은 2가지임.

2006년 수입 허가증 관리 화물 등급별 허가증 목록

(1) 할당 허가증 사무국에서 발급하는 수입 허가증 화물

No.	화물종류	HS코드	단 위
1	감독제어 화학제물*		
	화학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	2921193000	Kg
		2921194000	Kg
		2921195000	Kg
		2930909013	Kg
		2930909014	Kg
		2930909015	Kg
		2930909016	Kg
		2930909017	Kg
		2930909018	Kg
		2930909019	Kg
		2930909021	Kg

		2930909022	Kg
		2930909026	Kg
		2931000011	Kg
		2931000012	Kg
		2931000013	Kg
		2931000014	Kg
		2931000015	Kg
		2931000016	Kg
		2931000017	Kg
		2931000018	Kg
		3002901000	Kg
		3002902000	Kg
화학무기 핵심 前體(forebody)		2812104400	Kg
		2903301000	Kg
		2905191000	Kg
		2918191000	Kg
		2921196000	Kg
		2922192900	Kg
		2929902000	Kg
		2929903000	Kg
		2930909023	Kg
		2930909024	Kg
		2930909025	Kg
		2930909027	Kg
		2933391000	Kg
화학무기 원료		2811191000	Kg
		2812101000	Kg
		2812102000	Kg
		2812103000	Kg
		2812104100	Kg
		2812104200	Kg
		2812104300	Kg
		2812104500	Kg
		2813900010	Kg
		2837111000	Kg
		2837191000	Kg
		2851002000	Kg
		2904903000	Kg

		2914190010	Kg
		2918199010	Kg
		2920901100	Kg
		2920901200	Kg
		2920901300	Kg
		2920901400	Kg
		2921110010	Kg
		2921110020	Kg
		2922131000	Kg
		2922132020	Kg
		2922193000	Kg
		2922134000	Kg
		2933399030	Kg
		2933399040	Kg

(2) 각 지방 허가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하는 수입 허가증 화물

No.	화물종류	HS코드	단 위
2	제작하기 쉬운 유독 화학제품	2806100000	Kg
		2807000010	Kg
		2841610000	Kg
		2902300000	Kg
		2903130000	Kg
		2909110000	Kg
		2914110000	Kg
		2914120000	Kg
		2914310000	Kg
		2915240000	Kg
		2916340010	Kg
		2922431000	Kg
		2924299020	Kg
		2923910000	Kg
		2932920000	Kg
		2932940000	Kg
		2932999050	Kg
		2933321000	Kg
		2939410010	Kg

		2939410020	Kg
		2939410030	Kg
		2939410040	Kg
		2939420010	Kg
		2939420020	Kg
		2939490010	Kg
		2939490020	Kg
		2939490030	Kg
		1302199011	Kg
		1302199012	Kg
		1302199013	Kg
		1302199014	Kg
		1211903910	Kg
		1211905010	Kg
		1211909910	Kg
		3004409010	Kg
		2932930000	Kg
		2939610010	Kg
		2939620010	Kg
		2939630010	Kg
		3301299010	Kg
3	오존층을 소모하는 물질	2903191010	Kg
		2903191090	Kg
		2903309030	Kg
		2903410000	Kg
		2903420000	Kg
		2903430010	Kg
		2903440010	Kg
		2903440090	Kg
		2903451000	Kg
		2903460010	Kg
		2903460020	Kg
		2903491011	Kg
		2903491012	Kg
		2903491013	Kg
		2903491014	Kg

	2903491015	Kg
	2903491016	Kg
	2903491017	Kg
	2903491018	Kg
	2903491019	Kg
	2903491021	Kg
	2903491022	Kg
	2903491023	Kg
	2903491024	Kg
	2903491025	Kg
	2903491026	Kg
	2903491027	Kg
	2903491028	Kg
	2903491029	Kg
	2903491031	Kg
	2903491032	Kg
	2903491033	Kg
	2903491034	Kg
	2903491035	Kg
	2903491036	Kg
	2903491037	Kg
	2903491038	Kg
	2903491039	Kg
	2903491041	Kg
	2903491042	Kg
	2903491043	Kg
	2903491044	Kg
	2903491045	Kg
	2903491046	Kg
	2903491047	Kg
	2903491048	Kg
	2903491049	Kg
	2903491051	Kg
	2903491052	Kg

※ 자료 출처 : 상무부(www.mofcom.gov.cn)

비고 : “*”로 표기한 화물은 관리방식이 조절된 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행.

○ 수입 허가증 신청 시 제출서류

- 경영업체가 수입 허가증을 신청 시, 반드시 수입 허가증 신청표를 작성하며 또한 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 경영업체는 수입 화물의 상황에 의하여 허가증 발급기관에 관련 수입 비준증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경영업체는 반드시 연도검사에 합격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및 대외 무역경영업체 등록 전용도장을 날인한 “대외 무역경영업체 등록표” 또는 수출입기업 자격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외자투자기업일 경우, 또한 외자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 화물이 국가에서 국영 무역 또는 기타 자격 관리의 요구를 실행할 경우, 반드시 상무부 또는 관련 부서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 허가증의 발급

- 허가증 발급기관은 반드시 상무부에서 발표한 년도 “수입 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과 “수입 허가증 관리 화물 등급별 허가증 목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상품의 수입 허가증을 발급함.
- 경영업체가 “수입 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 중의 상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수입 허가증 관리 화물 등급별 허가증 목록”에서 지정한 허가증 발급기관에서 수입 허가증을 받아야 함.
- 신청이 요구에 부합될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 근무일 내에 수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특수 상황에서 10개 근무일을 초과하지 못함.

○ 수입 허가증의 유효기간

- 수입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임.
- ※ 수입 허가증은 반드시 수입 관리부서의 비준서류에 규정한 유효기간 내에 발급하여야 함.

- ※ 수입 허가증은 당해에 유효함. 특수 상황에서 년도를 경과하여 사용할 경우, 유효기간은 다음 해 3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함.
- ※ 수입 허가증은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세관은 통관을 시키지 않음.
- 수입 허가증을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영업체는 반드시 수입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기존 허가증 발급기관에 연장 신청을 제출하여야 함. 수입 허가증은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규정을 위반하여 사기 또는 기타 부정당한 방법으로 수입 허가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 ※ 제재조치: 법에 의하여 수입 허가증을 몰수하며, 상업부는 3년 내에 위법 행위자가 제출한 수입 허가증 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자의 1년 이상 3년 이하 기한 내에 관련 화물 수입 경영활동을 금지함.
- 수입 허가증을 위조, 변형 제조 또는 매매하였을 경우
 - ※ 제재조치: 형법에 의하여 불법 경영의 죄 또는 국가 기관 공문, 증서, 인장을 위조, 변형 제조 또는 매매한 죄로 형사책임을 추궁. 형사 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경우, 세관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 상무부는 위법 행위자가 1년 이상 3년 이하 기한 내에 관련 화물 수입의 경영활동을 금지할 수 있음.

2) 수출 규제제도

□ 수출 할당제도

○ 관련 법규

-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와 “수출 상품 할당 관리방법”에 의하여 수량 제한이 있는 수출 상품에 대해 수출 할당 관리를 실시함.

○ 주관부서

- 상무부는 중국 수출 상품 할당 관리업무를 책임지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배정도시 대외 경제무역위원회(청, 국)은 상무부의 권한을 받아 관할지역의 수출 상품 할당 관리를 책임짐.

○ 할당 관리의 수출 상품 목록

- 할당 관리의 수출 상품 목록은 상무부에서 제정.

2006년 중국 농산물, 방직품과 일부 공업품의 수출 할당량

유 형	상품품목	할당량	단 위
농산물	제재목	11	만 m ³
	산 돼지(大)	170	만 마리
	그 중 : 홍콩	155	만 마리
	마카오	15	만 마리
	산 돼지(中)	28.4	만 마리
	그 중 : 홍콩	28	만 마리
	마카오	0.4	만 마리
	산 소	5.65	만 마리
	그 중 : 홍콩	5	만 마리
	마카오	0.65	만 마리

	산 닭	1,825	만 마리
	그 중 : 홍콩	1,500	만 마리
	마카오	325	만 마리
	난초 및 그 제품	3,700	만 kg
공업품	텅스텐 및 그 제품	1.58	만 톤
	안티몬 및 그 제품	6.37	만 톤
	주석 및 그 제품	5.3	만 톤
	감초 및 그 제품	7,600	톤
	백금	4,000	톤
	형석	71	만 톤
	활석	63.5	만 톤
	탄화규소	22.3	만 톤
	경(중)소 마그네슘	136	만 톤
	반토	97	만 톤
방직품	잠사(누에 실)류	2.1	만 톤

자료출처 : 상무부(www.mofcom.gov.cn)

○ 수출 할당량의 발표

- 상무부에서 수출 상품 할당액을 확정할 때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함.
 - ※ 국가 경제안전을 보장하는 수요
 - ※ 국내 제한된 자원을 보호하는 수요
 - ※ 국가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발전계획, 목표와 정책
 - ※ 국제, 국내시장의 수요 및 생산판매상황
- 상무부는 매년 10월 31일 전에 다음 년도 수출 할당액을 발표함.
- 상무부는 실제 수요에 의하여 년도 수출 상품 할당액을 조절할 경우, 당해 9월 30일 전에 조절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 수출 할당의 신청

- 지방 경영기업은 지방 대외 경제무역 주관부서에 수출 할당 신청을 제출하며, 지방 대외 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관할구역 기업의 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상무부의요구에 따라 상무부에 보고함.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은 직접 상무부에 수출 상품 할당을 신청할 수 있음.

- 수출기업은 반드시 정식 서면방식으로 할당 신청을 제출하며 또한 요구에 따라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할당 신청인은 매년 11월 1일~11월 15일에 수출 할당 관리부서에 다음 년도 수출 할당 신청을 제출해야 함.

○ 수출 할당의 분배

- 수출 할당 관리부서는 반드시 매년 12월 15일 전에 다음 년도 수출 할당을 할당 신청인에게 분배하여야 함.
- 할당은 직접 분재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으며 입찰 등 방식으로 분배할 수도 있음.
- 수출 할당 관리부서는 반드시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또한 당해 12월 15일 전에 할당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국제시장이 불안정한 요소가 존재할 경우, 상무부는 다음 년도 수출 할당을 2차례 나누어 분배할 수 있음, 매년 12월 15일 전에 먼저 다음 년도 70% 이상 할당을 분배하며 나머지는 당해 6월 30일 전에 분배함.
- 상무부와 지방 대외 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수출 할당을 분배할 때, 반드시 신청기업 또는 지역의 최근 3년 내 동 상품의 수출 실적, 할당 사용율, 경영능력, 생산규모, 자원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함.

○ 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수출 경영업체가 상품명칭을 허위로 보고, 수출 수량을 적게 보고 등 방식으로 비준, 허가 범위를 초과하거나 비준을 거치지 않고 할당 관리를 실행하는 수출 상품을 수출할 경우

※ 제재조치 : “ 화물 수출입조례 ” 제65조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상무부는 이미 취득한 수출 상품 할당을 취소할 수 있음.

- 수출 상품 할당증명, 비준서류 또는 수출 할당 허가증을 위조, 변형 제조 또는 매매하였을 경우
 ※ 제재조치 : “ 화물 수출입조례 ”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며 상무부는 이미 취득한 수출 상품 할당을 취소할 수 있음.
- 수출 경영업체가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상품 할당, 비준서류 또는 수출 할당 허가증을 취득할 경우
 ※ 제재조치 : “ 화물 수출입조례 ”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며 상무부는 이미 취득한 수출 상품 할당을 취소할 수 있음.

□ 수출 허가제도

○ 관련 법규

- 상무부는 수출 허가증 관리를 규범화하며 화물 수출의 질서를 유지하고 대외 무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4년 12월 10일에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무역법 ”과 “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 화물 수출 허가증 관리방법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제정하였음.

○ 주관부서

- 상무부는 중국 수출 허가증 관리부서로서 수출 허가증 관리방법 및 규정제도를 제정하며 수출 허가증 관리방법의 실행상황,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독, 조사함.
- 상무부는 세관총서와 회동하여 “ 수출 허가증 관리 화물목록 ”을 제정, 조절 및 발표함. 상무부는 년도 “ 수입출 허가증 관리 화물 등급별 허가증 목록 ”의 제정, 조절 및 발표를 책임짐.
 ※ “ 수출 허가증 관리 화물목록 ”과 “ 수출 허가증 관리 화물 등급별 허가증 목록 ”은 상무부에서 공고형식으로 발표함.
- 상무부의 권한을 부여받은 할당 허가증 사무국은 통일적으로 중국 각

허가증 발급기관의 수출 허가증 발급을 관리, 지도하며, 상무부가 허가증 사무국에 대해 책임을 짐.

- 허가증 사무국 및 상무부 각 지역 특파원 사무소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배정도시 및 상무부에서 권한을 수여한 기타 성 소재지 도시의 상무청(국), 대외 경제무역위원회(청, 국)은 수출 허가증 발급 기관이며 허가증 사무국에서 통일적으로 관할하며 권한범위 내의 허가증 발급업무를 책임짐.

○ 수출 허가증 발급대상

- 상무부는 상무부, 세관총서의 공고 2005년 제85호 “2006년 수출 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에 의하여 “2006년 수출 허가증 관리 화물 등급별 허가증 목록”을 발표하였음.

※ 2006년에 수출 허가증 관리를 실행하는 화물은 46가지(312개 8위 HS코드)이며, 그 중 할당 허가증 사무국에서 수출 허가증을 발급하는 화물은 7가지, 각 지역 특파원 사무처에서 수출 허가증을 발급하는 화물은 31가지이며, 각 지역 대외 경제무역위원회(청, 국), 상무청(국)에서 수출 허가증을 발급하는 화물은 8가지임.

2006년 수출 허가증 관리 화물 등급별 허가증 목록(농산물)

(1) 할당 허가증 사무국에서 발급하는 수출 허가증 화물(농산물)

No.	화물종류	HS코드	단위
1	밀	1001100010	kg
		1001100090	kg
		1001901010	kg
		1001901090	kg
		1001909010	kg
		1001909090	kg
2	옥수수	1005100010	kg
		1005100090	kg

6		1005900010	kg
		1005900090	kg
		1104230010	kg
		1104230090	kg
	면화	5201000010	kg
		5201000090	kg
		5203000010	kg
		5203000090	kg

(2) 각 특파원 사무서에서 발급하는 수출 허가증 화물(농산물)

No.	화물종류	HS코드	단위
1	산 소	0102900010	마리
		0102900090	마리
2	산 돼지		
	산 돼지(大)	0103920010	마리
		0103920090	마리
	산 돼지(中)	0103912010	마리
		0103912090	마리
	산 돼지(乳)	0103911010	마리
		0103911090	마리
3	산 닭	0105929000	마리
		0105939000	마리
		0105999300	마리
		0105921000	마리
		0105931000	마리
4	소고기	0201100011	kg
		0201100019	kg
		0201100091	kg
		0201100099	kg
		0201300011	kg
		0201300019	kg
		0201300091	kg
		0201300099	kg

		0202200010	kg
		0202200090	kg
		0202300010	kg
		0202300090	kg
		0206100010	kg
		0206100090	kg
		0206210000	kg
		0206220000	kg
5	돼지고기	0203119011	kg
		0203119019	kg
		0203119091	kg
		0203119099	kg
		0203120011	kg
		0203120019	kg
		0203120091	kg
		0203120099	kg
		0203190011	kg
		0203190019	kg
		0203190091	kg
		0203190099	kg
		0203219010	kg
		0203219090	kg
		0203220010	kg
		0203220090	kg
		0203290010	kg
		0203290090	kg
		0206300010	kg
		0206300090	kg
		0206410000	kg
		0206490000	kg
		0203111011	kg
		0203111019	kg
		0203111091	kg
		0203111099	kg
		0203121010	kg
		0203121090	kg

6	닭고기	0207110010	kg
		0207110090	kg
		0207120000	kg
		0207131110	kg
		0207131190	kg
		0207131910	kg
		0207131990	kg
		0207132110	kg
		0207132190	kg
		0207132910	kg
		0207132990	kg
		0207141100	kg
		0207141900	kg
		0207142100	kg
		0207142200	kg
		0207142900	kg
7	쌀	1006101110	kg
		1006101190	kg
		1006101910	kg
		1006101990	kg
		1006109110	kg
		1006109190	kg
		1006109910	kg
		1006109990	kg
		1006201010	kg
		1006201090	kg
		1006209010	kg
		1006209090	kg
		1006301010	kg
		1006301090	kg
		1006309010	kg
		1006309090	kg
		1006401010	kg
		1006401090	kg
		1006409010	kg
		1006409090	kg

8	감초 및 감초제품	1211101000	kg
		1211109000	kg
		1302120000	kg
		2938900010	kg
		2938900020	kg
		2938900030	kg
9	난초 및 그 제품	1401903010	kg
		4601202111	kg
		4601202112	kg
		9404210010	kg

※ 자료 출처 : 상무부(www.mofcom.gov.cn)

○ 수출 허가증 신청 시 제출서류

- 경영업체가 수출 허가증을 신청 시, 반드시 수출 허가증 신청표를 작성하며 또한 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 경영업체는 수출 허가증을 신청할 때에 반드시 허가증 발급기관에 관련 수출 할당 또는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경영업체가 수출 허가증을 신청할 때에 반드시 허가증 발급기관에 대외 무역경영업체 등록 전용도장을 날인한 “대외 무역경영업체 등록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기업 자격증서” 또는 외자투자기업 비준증서(복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 수출 허가증의 발급

- 허가증 발급기관은 반드시 상무부에서 발표한 “수출 허가증 관리 화물 등급별 허가증 목록”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허가증을 발급함.
- 허가증 사무국의 허가증 발급범위
 - ※ 상무부에서 규정한 “수출 허가증 관리 등급별 허가증 발급목록”에 의하여 “수출 허가증 관리 등급별 허가증 발급목록”의 권한범위 내의 수출 허가증을 발급.
 - ※ 북경에 있는 중앙 관리기업의 수출 허가증

- 각 특과원 사무처의 허가증 발급범위
 - ※ 상무부에서 규정한 “수출 허가증 관리 등급별 허가증 발급목록”에 의하여 연락지역 내의 경영업체, 연락지역 내의 중앙 관리기업 및 할당을 지방에서 관리하는 북경 주재 중앙 관리기업 자회사의 수출 허가증을 발급.
 - ※ 상무부에서 규정한 “수출 허가증 관리 등급별 허가증 발급목록”에 의하여 연락지역 내의 경영업체 할당 입찰 화물의 수출 허가증을 발급.
 - ※ 상무부에서 규정한 기타 화물의 수출 허가증을 발급.
- 각 지역 허가증 발급기관의 허가증 발급범위
 - ※ 상무부에서 규정한 “수출 허가증 관리 등급별 허가증 발급목록”에 의하여 관할지역 내 경영업체의 수출 허가증을 발급.
 - ※ 상무부에서 규정한 기타 화물의 수출 허가증을 발급.
- 지정받은 허가증 발급기관의 허가증 발급 화물
 - ※ “수출 허가증 관리 등급별 허가증 발급목록” 중의 지정 허가증 발급기관에 속하는 화물에 대해 경영업체는 지정한 허가증 발급기관에서 수출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함.

○ 수출 허가증의 유효기간

- 수출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당해 12월 31일 전(12월 31일을 포함)까지이며 별도 규정이 있는 외에 경영업체는 반드시 할당 유효기간 내에 허가증 발급기관에 수출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함.
- 각 허가증 발급기관은 당해 12월 16일부터 상무부 또는 각 지방 상무주관부서에서 하달한 다음 년도 수출 할당에 의하여 다음 년도의 수출 허가증을 발급함.
- 수출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수출 허가증을 위조, 변형 제조 또는 매매하는 경영업체에 대해
 - ※ 제재조치 : 형법에서 불법 경영의 죄 또는 국가 기관 공문, 증서, 인장을 위조, 변형 제조 또는 매매한 죄로 형사 책임을 추궁. 형사 처벌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세관법 등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함.
- 규정을 위반하여 사기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수출 허가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 ※ 제재조치 : 상무부는 법에 의하여 수출 허가증을 몰수함.

다. 반덤핑 정책

□ 관련 법규

대외 무역의 질서와 공평 경쟁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4년 3월 31일에 수정을 하여 수정안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 덤핑과 손해

○ 덤핑

- 덤핑이란 정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수입 제품이 정상적인 가치보다 낮은 수출 가격으로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가리킴.
- 덤핑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에서 책임짐.

○ 손해

- 손해란 덤핑이 이미 건설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었거나 실질적인 손해의 위협을 발생하였거나 국내 산업의 건설에 실질적인

저해를 주는 것을 가리킴.

- 손해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에서 책임짐. 그 중 농산물 반덤핑의 국내 산업 손해 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의 회동하여 진행함.

□ 반덤핑 조사 신청

○ 반덤핑 조사의 신청인

- 국내 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의 서면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 반덤핑 조사 신청서 내용

- 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관련 상황
- 조사를 신청하는 수입 제품에 대한 완전한 설명(제품명칭, 관련 수출국(지역)또는 원산국(지역), 이미 알고 있는 수출 경영업체 또는 생산업체, 제품이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국내시장 소비 시의 가격정보, 수출가격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
- 국내 같은 종류 제품의 생산수량과 가치에 대한 설명
- 조사를 신청하는 수입 제품의 수량과 가격이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 신청인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내용

○ 반덤핑 조사 신청 접수

- 상무부는 반드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거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신청이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출한 것인가를 심사, 신청서 내용 및 첨부한 증거 등에 대해 심사하며 또한 입안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입안 조사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수출국(지역) 정부에 통지해야 함.

□ 반덤핑 조사 실시

- 신청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국내 산업에서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전체 생산량에서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반드시 신청은 국내 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덤핑 조사를 가동해야 함. 그러나 신청 지지를 표시하는 국내 생산업체의 생산량이 국내 같은 조류 제품 전체 생산량의 25% 미만일 경우,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수 없음.
- 상무부는 설문 조사, 무작위 조사, 청문회, 현장 조사 등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반덤핑 조사는 반드시 입안 조사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마쳐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반덤핑 조치

○ 임시 반덤핑 조치

- 초보적인 판정에 의해 덤핑이 성립된다고 확정되며 또한 국내산업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임시 반덤핑 조치를 채택함.
 - ※ 임시 반덤핑세를 징수.
 - ※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
- 임시 반덤핑 조치 실시기한은 임시 반덤핑 조치 결정의 공고 및 실시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특수한 상황에서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 반덤핑 입안 조사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60일 내에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가격 약속

- 덤핑 수입 제품의 수출 경영업체는 반덤핑 조사기간에 상무부에 가격 변경 또는 덤핑가격의 수출을 정지한다는 가격 약속을 할 수 있음.
- 상무부는 수출 경영업체에 가격 약속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수출 경영업체에 강박적으로 가격 약속을 요구할 수 없음.
- 수출 경영업체가 가격 약속을 하지 않거나 또는 가격 약속에 관한 건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반덤핑 안건의 조사와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수출 경영자가 제출한 가격 약속을 접수할 수 있고 또한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의 중지 또는 종지를 결정하며 임시 반덤핑 조치 또는 반덤핑세 징수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출 경영업체가 가격 약속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무부는 본 조례 규정에 의해 반덤핑 조사의 회복을 즉각 결정할 수 있음. 이미 장악한 가장 확실한 정보에 의하여 임시 반덤핑조치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임시 반덤핑조치를 실시하기 전 90일 내에 수입한 제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추징할 수 있지만 가격 약속 위반 전에 수입한 제품을 제외함.

○ 반덤핑세

- 반덤핑세는 상무부에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상무부가 공고함. 세관은 공고 규정의 실시일로부터 집행함.
- 반덤핑세의 납세인은 덤핑 수입 제품의 수입 경영업체임.

□ 반덤핑세와 가격 약속의 기한과 재심

- 반덤핑세의 징수기한과 가격약속의 이행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않음.

○ 반덤핑세가 효력을 발생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반덤핑세의 계속적인 징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음.

○ 재심기한은 재심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라. 중국의 WTO 가입이 한중 농산물 무역에 대한 영향

※ 농업분야세 한중 양국의 농업구조와 생산방식 및 음식문화가 비슷하며 농산물 종류와 품질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음. 그러나 중국 농산물의 생산 원가가 낮아 가격은 한국의 20%~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중 농산물무역에서 중국은 뚜렷한 우위가 있음.

※ 중국은 풍부한 농업 자연자원과 노동력자원이 있지만 한국은 농업기술, 관리경험과 국제시장 개척에서 비교적 선진적이며 농업 발전기금이 충족하지만, 한국의 국토면적이 작으며 노동력이 부족한 등 요소는 한국 농업의 발전을 엄중하게 제약함. 그러므로 한중 양국은 우위와 부족이 있어 양국의 농업 합작에 기회를 제공하였음.

□ 긍정적인 효과

○ 한중 양국의 경제합작 관계의 발전을 촉진

- 한국 농업기업은 선진적 기술과 충족한 자금, 양호한 농업기업의 관리경험과 국제시장 개척능력이 있어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은 중국 농업에 활력을 주게 됨.
-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실시하는 “수입 개발”의 전략은 중국이 수출 농산물의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농업구조 조절 및 농산물무역 발전을 촉진

- WTO협약서의 요구에 의하면 2004년 1월까지 선진국의 관세는 37% 하락하며, 개도국의 관세는 24% 하락, 중국 농산물의 관세는 17%로 하락하였음. WTO체제에서 농업 개방정책을 실행하여 무역 정책의 투명도를 높였으며 WTO를 이용한 무역마찰 중재메커니즘은 문제점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음.

○ 농업기술 합작과 교류를 추진

-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한중 양국은 농업 생물공정, 농업 생태환경 보호, 자원 개발과 가공이용 등 방면에서 여러 가지 형식의 합작을 진행할 수 있음.
- 농업 과학기술 관리, 교육, 농업 보급에서 양국은 각종 형식의 교류와 합작을 진행하여 쌍방의 농업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부정적인 효과

○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농산물이 충격을 받게 됨

- 장기간 한중 양국은 모두 대외 무역에서 농업을 중점 보호 대상으로 하여 높은 수입 관세 또는 관세 할당정책을 실시하였음.
- 중국이나 한국이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국외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어 자국 농산물시장에 비교적 큰 충격을 주게 됨.

○ 무역의 확대는 무역마찰이 증가하게 함.

-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무역이 증가하여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늘어나 중국은 한국이 중국 농산물의 수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은 중국 농산물이 한국에 대한 수출이 증?하여 한국 농업에 충격을 주는 것을 우려함.

- 한중 양국의 무역적자문제에 대하여 중국은 과일, 채소와 축산물 등 우위 농산물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이 검역조치 제한 등 기술 장벽을 줄일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양국 무역마찰의 가능성이 증가함.
- 축산물, 과일, 신선한 채소 등은 한국 농민의 수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산물의 수입은 하나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
- 그 외,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낮은 관세 대우를 받게 되어 일본, 미국과 유럽 등 시장에서 중국 농산물의 증가는 한국 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을 더 내리게 하여 제3국제시장에서의 경쟁도 날로 치열하게 됨.

□ 한중 농산물무역의 발전전망

○ 상호 보완형 농업 합작교류가 끊임없이 확대

- 한중 양국이 거리상 가까우며 운송비용이 낮아 농업 합작과 농산물 무역의 발전에 유리함.
- 중국은 면적이 크며 서로 다른 지역 및 성도 서로 다른 지리적 기후조건이 있으며 비교적 풍부한 농업 토지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이 있으며, 한국은 육종, 가공, 유통기술 및 자금 등 방면에서 우위가 있어 농업합작 형식을 통하여 한국은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국내시장이 결핍한 농산물을 얻을 수 있으면 한국의 농산물 품종, 식품 가공기계, 농업 생산시설기자재 등의 대중국 수출도 증가하게 됨.

○ 중국은 농업 이용 외자규모를 확대

- 중국의 WTO가입은 농업분야에서의 외자 이용량이 증가하게 되어 농업의 산업화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며 한국기업이 중국에 대한 투자에 기회를 창출하였음.
- 현재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농산물 “수입 개발” 모델은 한국기업이 우량 품종, 자원과 기술을 도입하여 중국에서 생산하며 제품을 한국에

판매함. 이러한 모델은 쌍방에게도 유리함.

- 그 외, 일부 한국의 농업기계, 농용설비기업도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음.

○ 무역구조의 조절을 통하여 무역마찰을 줄임.

- 무역마찰의 생산은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에 불리함. 중국은 한국 농산물의 수출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지만 대량의 채소류 농산물 진출에 대해 한국도 어쩔 수가 없음.

○ 무역마찰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

- 1999년 한국은 중국 마늘의 수입량이 급증하여 임시 보호조치를 채택하여 중국 산둥 등 수출 마늘의 생산지역에 아주 큰 손실을 주어 중국도 보호조치를 채택하여 한국 핸드폰과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의 수입을 임시 중지시켰음.
- 이러한 무역 분쟁은 양국이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였지만 농산물 무역마찰문제는 한중 양국의 농업생산은 일정한 유사성이 있는 것을 나타냈음. 이러한 유사성은 제품이 상호 대체성이 있게 하며 농산물 무역은 양국 농업 생산자 사이에 경쟁을 하게 함.
- 그러므로 양국은 농산물 무역문제에 대해 답판을 하여 관련 협의서를 체결하여 쌍변 무역에서 WTO의 관련 규정을 지키는 것을 확보하여야 함.
- 그 다음으로 한중 양국은 생산과 시장정보의 교류를 강화하며 주요 농산물제품의 무역수량에 대한 협의서를 체결하여 농업 생산을 지도하며 생산의 맹목성을 줄임.

6. 기타 사항

가. 농산물(식품) 관련 법률·법규

☐ 농산물 수입 관련 법률·법규

1) 1급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전국인민대표대회, 2004.7.1)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전국인민대표대회, 2000.7.8)

2) 2급 법류

※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조례(국무원, 2002.1.1)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재정부, 1992.4.1)

3) 3급 법류

※ 화물 자동 수입허가증 관리방법(국무원, 2002.1.1)

※ 화물 수입 지정경영 관리방법(재정부, 1992.4.1)

※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방법(국무원, 2002.1.1)

※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액 관리임시방법(국무원, 2002.1.1)

☐ 농산물 상품검역 관련 법률·법규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법(전국인민대표대회, 1951.4.18)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법 시행조례(국무원, 2005.8.31)

※ 수입 과일 검험·검역 감독관리법(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05.7.5)

□ 식품 법률

1)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 안전법(전국인민대표대회, 2006.11.1)

2)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위생법(전국인민대표대회, 1995.10.30)

※ 괄호 안의 날짜는 시행일임.

□ 식품 법규, 규정과 규범성 문건

법규와 문건	행정법규	국무원 규범성 문건	부서 규정	부서 규범성 문건
식품	9	5	64	131
종합	1	3	3	18
생산	0	0	3	12
표준	0	0	0	5
포장과 라벨	0	0	8	3
유통과 광고	1	0	4	11
수출입	1	0	4	16
안전	0	1	2	12
농산물	3	0	14	8
수산물	0	1	2	1
보건식품	0	0	2	24
식품 첨가제	2	0	3	14
기타	1	0	19	7

- 1)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시행조례(국무원, 1997.1.1)
- 2) 식품위생 감독절차(위생부, 1997.6.1)
- 3) 식염 전문경영허가증 관리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6.4.28)
- 4) 식품위생 행정처벌방법(위생부, 1997.3.15)
- 5) 수출식품 생산기업 위생 등록관리규정(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02.5.20)
- 6) 수출입 식품 라벨 관리방법(국가출입국검험·검역총국, 2000.4.1)
- 7) 출입국 항구 식품위생 감독관리규정(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06.4.1)
- 8) 입국 수생동물 검험·검역 관리방법(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03.11.1)

- 9) 농업 유전자 변이 생물 수입안전 관리방법(농업부, 2002.3.20)
 - 10) 무공해 농산물 관리방법(농업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02.4.29)
 - 11) 식량 위생 관리방법(위생부, 1990.11.20)
 - 12) 꿀벌 위생 관리방법(위생부, 1990.11.20)
 - 13) 콩식품, 절인 채소 위생 관리방법(위생부, 1990.11.20)
 - 14) 육제품 위생 관리방법(위생부, 1990.11.20)
 - 15) 계란제품 위생 관리방법(위생부, 1990.11.20)
 - 16) 찹쌀 위생 관리방법(위생부, 1990.11.20)
 - 17) 수산물 위생 관리방법(농업부, 1990.11.20)
 - 18) 수산물 양식 품질안전 관리규정(위생부, 2003.9.1)
 - 19) 보건식품 등록 관리방법(시행)(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05.7.1)
 - 20) 보건식품 관리방법(위생부, 1996.6.1)
 - 21) 식품 첨가제 위생 관리방법(위생부, 2002.7.1)
 - 22) 설탕 위생관리방법(위생부, 1990.11.20)
 - 22) 생활음용수 위생감독관리방법(건설부, 위생부, 1997.1)
 - 23) 유기식품 인증 관리방법(국가 환경보호총국, 2001.6.19)
 - 24) 요식업 식품 위생 관리방법(위생부, 2000.6.1)
 - 25) 조미료 위생 관리방법(위생부, 1990.11.20)
 - 26) 식용 식물유 위생 관리방법(위생부, 1990.11.20)
 - 27) 청량음료식품 위생 관리방법(위생부, 1990.11.20)
- ※ 괄호 안의 날짜는 시행일임

나. 관련 주요 정부기관 내역

☐ 농산물 수입 관리부서

- 1) 국가급 : 상무부
- 2) 성(省)급 : 성(省)급 상무(대외경제무역)청(위원회, 국)
- 3) 지방 시, 현급: 대외경제무역국
- 4) 기타 수입 관리부서 :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농업부, 임업부, 국가품질 감독검험·검역총국

□ 주요 관련 정부부서

기관명칭	주 소	전화 및 팩스번호	홈페이지 및 E-mail
國家發展改革委員會	北京市西城區月壇南街 38號	전화: 86-10-68502000	www.ndrc.gov.cn ndrc@ndrc.gov.cn
商務部	北京市東長安街2號	전화: 86-10-65121919 팩스: 86-10-65599340	www.mofcom.gov.cn
農業部	北京市朝陽區農展館南里 11號	전화: 86-10-64192292 팩스: 86-10-64192468	www.agri.gov.cn
衛生部	北京市西城區后海北沿 44號	전화: 86-10-68792114	www.moh.gov.cn
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北京市西城區三里河東路8號	전화: 86-10-68032233	www.saic.gov.cn info@mail.saic.gov.cn
國家環境保護總局	北京市西城區西直門南小街 115號	전화: 86-10-66556014 팩스: 86-10-66556020	www.zhb.gov.cn
中國海關總署	北京市建國門內大街6號	전화: 86-10-65194114	www.customs.gov.cn
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局	北京市西城區北禮士路甲 38號	전화: 86-10-68313344	www.sfda.gov.cn
國家質量檢驗檢疫總局	北京市海澱區馬甸東路8號	전화: 86-10-82262114	www.aqsiq.gov.cn
國家稅務總局	北京市海澱區羊坊店西路5號		www.chinatax.gov.cn
國家外匯管理局	北京市海澱區阜成路 18號	전화: 86-10-68402265	www.safe.gov.cn
國家知識產權局	北京市海澱區門橋西土城路6號	전화: 86-10-62083334	www.sipo.gov.cn
國家糧食局	北京市西城區木樨地北里甲11號	전화: 86-10-63906078	www.chinagrains.gov.cn
國家海洋局	北京市復興門外大街1號	전화: 86-10-68012770	www.soa.gov.cn
國家中醫藥管理局	北京市朝陽區白家莊東里 13號	전화: 86-10-65063322	www.satcm.gov.cn
國家統計局	北京市西城區月壇南街 58號	전화: 86-10-68576320 팩스: 86-10-68782000	www.stats.gov.cn

□ 주요 검역기관

기관명칭	주 소	전화 및 팩스번호	홈페이지 및 E-mail
國家質量檢驗檢疫總局	北京市海澱區馬甸東路 8號	전화: 86-10-82262114	www.aqsiq.gov.cn
國家食品質量監督檢驗中心	北京市朝陽區雲路 32號	전화: 86-10-64645551 팩스: 86-10-64625604	www.cfda.com.cn
北京出入境檢驗檢疫局	北京市朝陽區靛水園街 6號	전화: 86-10-67881991 팩스: 86-10-67881991	www.bjciq.gov.cn
天津出入境檢驗檢疫局	天津市經濟技術開發區第2大街 兆發新村 8號	전화: 86-22-66298452 팩스: 86-22-66298451	www.tjciq.gov.cn
上海出入境檢驗檢疫局	上海市浦東新區民生路 1208號	전화: 86-21-68549999 팩스: 86-21-68547485	www.shciq.gov.cn

上海出入境檢驗檢疫局	上海市 浦東新區 民生路 1208號	전화:86-21-68549999 팩스:86-21-68547485	www.shciq.gov.cn
廣東出入境檢驗檢疫局	廣東省 廣州市 珠江新城大道 66號	전화:86-20-38291737 팩스:86-20-38290146	www.gdciq.gov.cn
浙江出入境檢驗檢疫局	浙江省 杭州市 文三街 2號	전화:86-571-8714779 팩스:86-571-8838159	www.ziq.gov.cn
江蘇出入境檢驗檢疫局	江蘇省 南京市 中華路 99號	전화:86-25-4406797 팩스:86-25-4406797	www.jsciq.gov.cn jsciq@jsciq.gov.cn
福建出入境檢驗檢疫局	福建省 福州市 湖東路 312號	전화:86-591-8787900 팩스:86-87065120	www.fjciq.gov.cn
山東出入境檢驗檢疫局	山東省 青島市 瞿塘峽路 70號	전화:86-532-8267010 팩스:86-532-8267527	www.sdciq.gov.cn
吉林出入境檢驗檢疫局	吉林省 長春市 普陽街 130 號	전화:86-431-7607777 팩스:86-431-7671927	www.jlciq.gov.cn
遼寧出入境檢驗檢疫局	遼寧省 大連市 中山區 人民路 81號	전화:86-411-8263772	www.lnciq.gov.cn ciqnews@lnciq.gov.cn
黑龍江出入境檢驗檢疫局	黑龍江省 哈爾濱市 南崗區 kg水路 9號	전화:86-451-8237601	www.hljq.gov.cn
四川出入境檢驗檢疫局	四川省 成都市 一環路 四段 28號	전화:86-28-85559969 팩스:86-28-85559979	www.scciq.gov.cn
深圳出入境檢驗檢疫局	深圳市 福田強路 101 號	전화:86-755-8388607 팩스:86-755-8375881	www.szciq.gov.cn
煙臺出入境檢驗檢疫局	煙臺市 北馬路 66號	전화:86-535-6646988 팩스:86-535-6652447	http://ciq.yantai.gov.cn
廈門出入境檢驗檢疫局	廈門市 東渡路 118號	전화:86-592-5675735	www.xmciq.gov.cn

□ 주요 품질감독기관

기관명칭	주 소	전화 및 팩스번호	홈페이지 및 E-mail
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局	北京市 西城區 北禮士路甲 38號	전화:86-10-68313344	www.sfda.gov.cn
北京食品藥品監督管理局	北京市 宣武區 棗林前街 70號	전화:86-10-83979401 팩스:86-10-83560780	www.bjda.gov.cn
天津食品藥品監督管理局	天津市 和平區 岳陽道 79號	전화:86-22-23322300 팩스:86-22-23129559	www.tda.gov.cn
上海食品藥品監督管理局	上海市 河南南路 288號	전화:86-21-53524866 팩스:86-21-63203337	www.shfda.gov.cn
廣東食品藥品監督管理局	廣東省 廣州市 東風東路 735 號	전화:86-20-37886888 팩스:86-20-37886128	www.gdfda.gov.cn

浙江食品藥品監督管理局	浙江省 杭州市 莫干山路 文北巷 27號	전화:86-571-88903264 팩스:86-571-88903262	www.zjfd.gov.cn spaq@zfd.gov.cn
江蘇食品藥品監督管理局	江蘇省 南京市 鼓樓街 5號	전화:86-25-83273610 팩스:86-25-83329739	www.jsfda.gov.cn
福建食品藥品監督管理局	福建省 福州市 通湖路 330號	전화:86-591-87822885	www.fjfd.gov.cn
山東食品藥品監督管理局	山東省 濟南市 解放路 11號	전화:86-531-88562015	www.sdfda.gov.cn
吉林食品藥品監督管理局	吉林省 長春市 人民大街 1485號	전화:86-431-2734669 팩스:86-431-2763973	www.jlfd.gov.cn
遼寧食品藥品監督管理局	遼寧省 沈陽市 和平區 十緯路 16號	전화:86-24-82637725 팩스:86-24-31607100	www.lfd.gov.cn
黑龍食品藥品監督管理局	黑龍江省 哈爾濱市 道外區 南馬路 137號	전화:86-451-88337400 팩스:86-451-88337415	www.hlfd.gov.cn
四川食品藥品監督管理局	四川省 成都市 玉沙路 98號	전화:86-28-86785160	www.scda.gov.cn bgs@scda.gov.cn
深圳食品藥品監督管理局	深圳市 福田區 福中路 市民中心西區 一樓	전화:86-755-82002770	www.szda.gov.cn
煙臺食品藥品監督管理局	煙臺市 芝罘區 毓西路 7-5號	전화:86-535-6692301	www.ytfd.gov.cn bgs@ytfd.gov.cn
廈門食品藥品監督管理局	廈門市 湖濱路 170號	전화:86-592-2699801	www.xmda.gov.cn
青島食品藥品監督管理局	山東省 青島市 市南區 沂水路 7號甲	전화:86-532-82899079 팩스:86-532-82899062	www.sfda-qd.gov.cn

□ 주요 세관

기관명칭	주 소	전화 및 팩스번호	홈페이지 및 E-mail
中國海關總署	北京市 建國門內大街 6號	전화:86-10-65194114	www.customs.gov.cn
北京海關	北京市 朝陽區 光華路 甲10號	전화:86-10-65396114	http://beijing.customs.gov.cn
天津海關	天津市 經濟技術開發區 宏達街 15號	전화:86-22-84201132	http://tianjin.customs.gov.cn
上海海關	上海市 中山東一路 13號	전화:86-21-68890000	http://shanghai.customs.gov.cn
廣東海關分署	廣東省 廣州市 沙面大街 53號	전화:86-20-81108000	http://guangdong_sub.customs.gov.cn
杭州海關	浙江省 杭州市 黃龍路 7號	전화:86-571-88666114	http://hangzhou.customs.gov.cn
南京海關	江蘇省 南京市 龍蟠中路 360號	전화:86-25-84422114	http://nanjing.customs.gov.cn
福州海關	福建省 福州市 五一北路 110號	전화:86-591-87538440	http://fuzhou.customs.gov.cn
重慶海關	重慶市 江北區 建新北路 82號	전화:86-23-67709438	www.sdfda.gov.cn sdda@sdfda.gov.cn
長春海關	吉林省 長春市 自由大路 4448號	전화:86-431-4601114	http://changchun.customs.gov.cn
沈陽海關	遼寧省 沈陽市 沈河區 青年大街 56號	전화:86-24-22856668	http://shenyang.customs.gov.cn
哈爾濱海關	黑龍江省 哈爾濱市 南崗區 嵩山路 88號	전화:86-451-82381888	http://harbin.customs.gov.cn
成都海關	四川省 成都市 通錦橋路 67號	전화:86-28-86401114	http://chengdu.customs.gov.cn

深圳海關	深圳市 和平路 108號	전화:86-755-8439811	http://shenzhen.customs.gov.cn
大連海關	大連市 人民路 75號	전화:86-411-8261811	http://dalian.customs.gov.cn
廈門海關	廈門市 海后濱路 34號	전화:86-592-2152999	http://xiamen.customs.gov.cn
青島海關	山東省 青島市 西陵峽二路 2號	전화:86-532-8295511	http://qingdao.customs.gov.cn

□ 주요 협회

기관명칭	주 소	전화 및 팩스번호	홈페이지 및 E-mail
中國食品工業協會	北京市 宣武區 馬連道南街 12號	전화:86-10-63360889 팩스:86-10-63360886	www.cfiin.com cfiinnew@cfiin.com
中國飲料工業協會	北京市 西城區 阜外大街 乙22號	전화:86-10-68396521 팩스:86-10-68396524	www.chinabeverage.org
中國糖業協會	北京市 西城區 阜外大街 乙22號	전화:86-10-68396510 팩스:86-10-68396568	www.csa.gov.cn csa@csa.gov.cn
中國乳製品工業協會	北京市 西城區 阜外大街 乙22號	전화:86-10-68396520 팩스:86-10-68396665	www.cdia.org.cn ruzhipin@163.com
中國發酵工業協會	北京市 西城區 阜外大街 乙22號	전화:86-10-68034959 팩스:86-10-68396507	www.cfia.org.cn cfa2@clii.com.cn
中國罐頭行業協會	北京市 西城區 阜外大街 乙22號	전화:86-10-68396528 팩스:86-10-68396661	www.topcanchina.org ccc@topcanchina.org
中國麴業協會	北京市 德勝門外 清河南鎮 北京麴牛中心	전화:86-10-62948025 팩스:86-10-62948006	www.dac.com.cn dac999@sohu.com
中國綠色食品協會	北京市 海澱區 學院南路 59號	전화:86-10-62122266 팩스:86-10-62191431	www.greenfood.org
中國食品土畜進出口商會	北京市 東城區 西堂子胡同 21號	전화:86-10-65132567 팩스:86-1065227911	www.agriffchina.com w@cccfn.org.cn
中國調味品協會	北京市 海澱區 復興路 47號	전화:86-10-51921963 팩스:86-10-51921960	www.chinacondiment.com
中國蜂產品協會	北京市 復興門內大街 45號	전화:86-10-66011291 팩스:86-10-66011295	www.china-bee.com
中國蔬菜流通協會	北京市 復興門內大街 45號	전화:86-10-66094388 팩스:86-10-66094084	www.luna.com.cn
中國連鎖經營協會	北京市 海澱區 北蜂窩 8號	전화:86-10-51916555 팩스:86-10-51916850	www.ccfa.org.cn
中國保健協會	北京市 東城區 東中街 22號	전화:86-10-64150523 팩스:86-10-64174114	www.chc.org.cn
中國質量協會	北京市 西城區 中京畿道 12號	전화:86-10-66079100 팩스:86-10-66017824	www.caq.org.cn
中國畜牧業協會	北京市 朝陽區 農展北路 55號	전화:86-10-65911643 팩스:86-10-65917940	www.caaa.cn

□ 관련 홈페이지

사이트	홈페이지	사이트	홈페이지
중국농업정보망	www.agri.gov.cn	중국수산물망	www.shuichan.com
중국농업대외경제국제무역정보망	www.cafte.gov.cn	중국사료공업정보망	www.chinafeed.org.cn
해충망 식품공업	www.food.hc360.com	중국농업온라인	www.chinaagronline.com
중국농산물 공급수요정보망	www.agrisd.gov.cn	중국농부망	www.ac88.cn
국가식품품질안전망	www.nfqs.com.cn	중자중국	www.zhongzi.net
중국식품산업망	www.foodqs.com	중국농산물정보망	www.chineseagri.com
전국식품망	www.efoods.com.cn	중국목축업정보망	www.caaa.cn
중국식품비즈니스망	www.21food.cn	제1식품망	www.foods1.com
중국우유업정보망	www.chinadairy.net	1식품중국망	www.ifood1.com
중국채소망	www.vegnet.com.cn	금농망	www.jinnong.cn
중국양식망	www.chinabreed.com	중국종업신식망	www.seedchina.com.cn
중국농업망	www.agronet.com.cn	중국삼농정보망	www.sannong.gov.cn
중국식품감독망	www.cnfdn.com	중국수산물무역망	www.fisherycn.com
중국어업정부망	www.cnfm.gov.cn	중국어업무역망	www.fish.gov.cn
중국어업망	www.zgyy.com.cn	식품파트너망	www.food.mate.net
중국수산물망	www.china-fishery.n	중국농업망	www.agronet.com.cn

다. 참고자료(문헌)

No.	자료/문헌	발표/발행
1	월별 중요 농산물 수출 보고서	중국 상무부
2	중국 농산물 수출입 통계보고서(2003년)	중국 상무부
3	2003년 중국 농산물 수출입무역 분석	중국 농업부
4	2003년 중국 수산물 수출입무역 분석	중국양식망
5	중국 농산물 대일본 수출 리스크 평가 보고서	중국 농업부
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세칙(2006)	중국 세관총서
7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동물의 1류, 2류 전염병 및 기생충병 목록	중국 농업부
8	입국 식품 검역 입국 금지물 목록	중국 농업부
9	중국 수출입 식품 검험검역 실무지침	중국세관출판사
10	식품 라벨링 국가표준 실시지침	중국표준화출판사
11	식품표준 및 법규	중국경공업출판사
12	식품안전 및 국제무역	화학공업출판사
13	수출입 통관실무	중국물자출판사
14	WTO규칙 및 중국 무역정책	남개대학출판사
15	식품안전 환경관리	중국환경과학출판사

<자료 문의처>

- 태국, 멕시코 수입제도 문의처 (정보서비스본부 무역정보 1팀)
 - 전화 : (02)6300-1391~1397 / 팩스 : (02)6300-1609
- 일본 수입제도 문의처(도쿄 aT센터)
 - 전화 : 81-3-5367-6656 / 팩스 : 81-3-5367-6657
- 중국 수입제도 문의처(베이징 aT센터)
 - 전화 : 86-10-6410-6120~1 / 팩스 : 86-10-6410-6122
- 미국, 캐나다 수입제도 문의처
 - 전화 : 1-516-829-1633 / 팩스 : 1-516-829-6521
- 인도네시아 수입제도 문의처(싱가포르 aT센터)
 - 전화 : 65-6324-1233, 0402~3 / 팩스 : 65-6324-0446
- EU 수입제도 문의처(로테르담 aT센터)
 - 전화 : 31-10-415-1091 / 팩스 : 31-10-462-1271
- 러시아 수입제도 문의처(모스크바 aT센터)
 - 전화 : 7-495-258-1397 / 팩스 : 7-495-258-1396
- 대만 수입제도 문의처(타이페이 aT센터)
 - 전화 : 886-2-8786-6791 / 팩스 : 886-2-8786-6793

※ 본자료집에 실린 내용의 무단전제, 복사 또는 인터넷 게재 등을 금합니다.

본 자료집은 조사시점의 제도, 통계자료 및 현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사된 것임을 알려드리오며, 본 자료집의 발간이후 조사대상국의 상황변화 등에 따라 자료집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 「24시간 부정비리신고 모바일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